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2018

규제개혁백서

2018 REGULATORY REFORM BOOK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규제개혁으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규제개혁백서는 한 해 동안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의 이정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6년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입니다. 이로써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을 지칭하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쁘하고 축하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수출이 몇 달째 연속 줄어드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체감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기업이 창의와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혁신기술의 상용화, 혁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실행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존의 경직적 규제를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규제혁신 5법을 제·개정하여 「규제샌드박스」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정보통신, 산업융합, 핀테크, 지역특구에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는 20여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부처가 신설·강화를 제안한 총 1,083건의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54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대면심사를 하여 총 29건을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부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신산업, 일자리, 민생 분야에서 약 1,800여개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료기기, 인터넷전문은행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국민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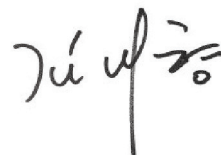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대상 규제정책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상위권(분야별 3~6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갖추어진 제도에 더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한 해 동안 힘써주신 공직자 및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규제개혁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9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형





내
정

규

내 삶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

신
꾸는 힘

이명환
김영주
이병권

나라답게
정의를롭게

규제혁신,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토론회

2018.1.22(월)

규제혁신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삶을 바꾸는 힘



2018. 1. 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2018.11.21.(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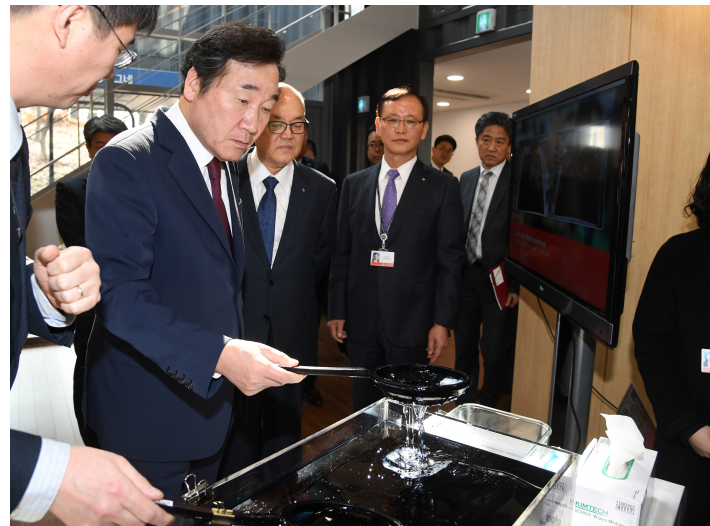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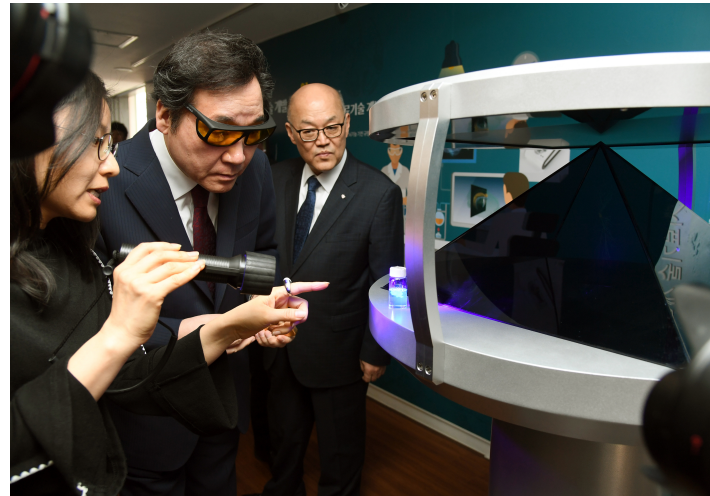


특수법인 다나 대표 변호사
박유연

한양대
아

1	2
	3
	4

1. 2018. 11. 2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2. 2018. 11. 2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3. 2018. 3. 8.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4. 2018. 3. 8.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2	1
3	
4	

1. 2018. 10. 26. 규제개혁위원회
2. 2018. 11. 23.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3. 2019. 2. 25.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
4. 2018. 10. 2.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1	3
2	
4	

1. 2018. 10. 26. 규제개혁위원회 워크숍
2. 2018. 12. 14. 규제개혁신문고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매일경제) 수상
3. 2018. 7. 19. 강원도 규제혁신간담회
4. 2018. 10. 9. 제4차 OECD-ASEAN GRPN



PART 0

1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10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2
1. 개요	12
2. 규제개혁위원회	13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15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22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23

PART 0

2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1절 2018년 규제혁신 회의 및 현장소통	26
1.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추진회의	26
2.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45
3. 기타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51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58
1.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 전환 추진	58
2.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63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73
4. 혁신성장 선도사업	77
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81
6. 부처 발굴·개선 과제	86
제3절 일자리 규제혁신	87
1. 영업·입지규제 혁신	87
2.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	90
3. 창업규제 혁신	94
4. 부처 발굴·개선 과제	100

PART ○

2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4절 민생불편·부담 해소	101
1.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101
2.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106
3.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113
4. 부처 발굴·개선 과제	119
제5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120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120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3단계 검토과정)	120
3. 문재인 정부 국민참여 기반 강화	121
4. 2018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현황 및 성과	122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123
6. 향후 운영 계획	128
제6절 일몰규제 정비	129
1. 규제일몰제 개요	129
2. 2018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130
3. 주요 정비 사례	131
4. 향후 계획	137

PART 0

3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140
1. 입법 연혁	140
2. 2018년 개정 추진경과	141
3. 향후 추진계획	144
제2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5법 제·개정 : 포괄적 네거티브 및 규제 샌드박스 근거 마련	145
1. 추진배경 및 경과	145
2. 개정안 주요내용	145
3. 향후계획	147
제3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추진	148
1. 추진배경	148
2. 주요내용	149
3. 향후계획	150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51
1. 개요	151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153
제5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161
1. 개요	161
2. 2018년 개편 주요내용	161
3. 향후계획	167

PART ○

3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68
1. 개요	168
2. 등록 대상 및 단위	168
3. 2018년 개편내용	169
제7절 적극행정 지원	170
1. 추진배경	170
2. 기관별 주요 적극행정 제도 현황	170
3. 2018년도 주요 개선내용	172
4. 향후계획	174
제8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75
1. 개요	175
2. 2018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176
3. 국제회의 참석	178

PART 0

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82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182
2. 2018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183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85
1. 기획재정부	185
2. 금융위원회	190
3. 금융감독원	241
4. 공정거래위원회	253
5. 관세청	261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66
1. 산업통상자원부	266
2. 중소벤처기업부	291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97
1. 국토교통부	297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5
3. 해양수산부	387
제5절 농림·산림 분야	428
1. 농림축산식품부	428
2. 산림청	438
3. 농촌진흥청	451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45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4
2. 방송통신위원회	469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73
1. 고용노동부	473
2. 환경부	489
3. 기상청	545

PART ○

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8절 교육·문화 분야	546
1. 교육부	546
2. 문화체육관광부	559
3. 문화재청	567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70
1. 보건복지부	570
2. 여성가족부	590
3. 식품의약품안전처	591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40
1. 외교부	640
2. 통일부	642
3. 국가보훈처	644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54
1. 행정안전부	654
2. 법무부	679
3. 인사혁신처	682
4. 경찰청	684
5. 소방청	688
6. 국민권익위원회	693
제12절 규제영향분석	694
1. 제도 개요	694
2. 작성항목 및 요소	695
3. 작성대상 및 절차	697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699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708

PART ○

5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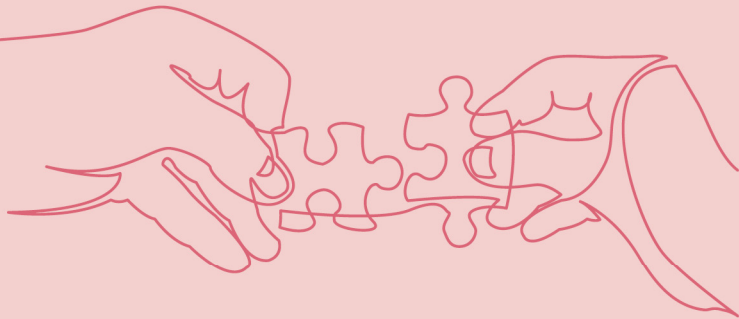
제1절 2018년 규제혁신 평가	712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712
2. 2018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713
3. 부처별 평가결과	714
4. 분야별 평가결과	714
제2절 201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16
1. 기본방향	716
2. 세부 추진방향	717

부록 ○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722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725



2018 REGULATORY REFORM BOOK



PART

1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 1 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집필자 |

신용현 사무관(Tel. 044-200-2452, trustyonghyun@korea.kr)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20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인 공동)와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규제를 찾아내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엄격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면서 2017년 9월에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추진목표로는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분야 △민생분야 등 3대 분야별로 규제효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진방향 아래 2018년에 정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체계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네거티브 개념(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장하여 先허용·後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전환을 추진하여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선과제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5법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한편 신산업·신기술의 미래 발달단계 예측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차 분야에 최초로 구축하였고, 다른 핵심 신산업 분야(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까지 로드맵 확산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와 회의를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데이터규제 완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이른바 ‘Big Issue’를 해결하였다. 또한 신산업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 중심으로 현장애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업·영업활동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같은 규제라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4월에는 영업요건 완화, 영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영업·입지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창업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18.10월)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테마별로 발굴하여 혁파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5월에는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고, 6월에는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또한 12월에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기업 등으로부터 발굴하여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여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에 주력하였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불만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 2018년에는 두 차례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역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현장건의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인터넷으로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8년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규제정책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규제혁신시스템·제도에 대해 전체 34개 회원국 중 3~6위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의 개선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책발표와 집행간의 시차, 가치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규제혁신의 어려움, 소통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기여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므로, 정부는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집필자]

이대섭 사무관(Tel. 044-200-2416, kkachi70@opm.go.kr)

문재인 정부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가 중요 정책의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주요 안전을 논의·발표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2. 규제개혁위원회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18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 |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2)	이 낙 연 김 지 형	국무총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7)	홍 남 기 김 부 겸 성 윤 모 홍 중 학 노 형 욱 김 상 조 김 외 속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강 경 희 국 경 복	조선경제아이 디지털편집국장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석좌교수

구 분	성 명	현 직
	김 찬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박 소 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 옥 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 구 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 숙 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 소 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 덕 승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이 세 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 정 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철 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 재 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재 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조 성 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 희 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2018년 본회의 운영 실적

2018년에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총 20회(406회~425회) 개최되었으며, 17개 부처의 총 54개 안건을 논의(의결 35건, 보고 19건)하였다. 35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총 54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5건, 개선권고 26건, 철회권고 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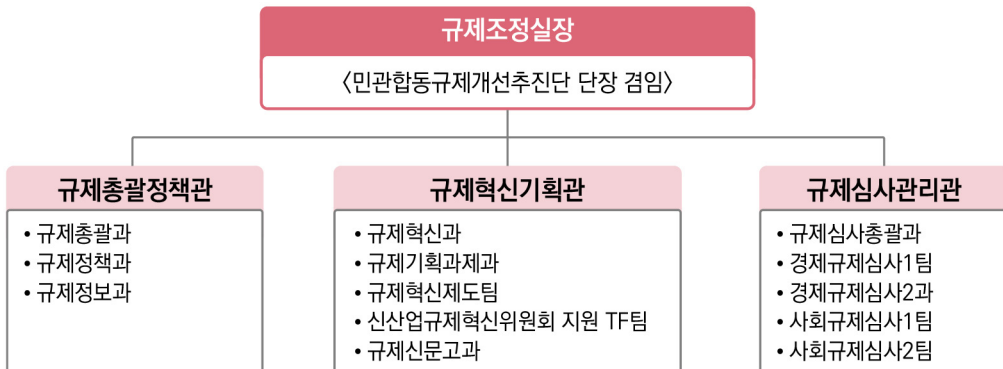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집필자]

이대섭 사무관(Tel. 044-200-2416, kkachi70@opm.go.kr)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18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3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집필자]

박광훈 사무관(Tel. 044-200-2666, toneido3@korea.kr)

(1) 설치배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¹⁾에서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검토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국무조정실로 위원회를 이관(‘16년 3월)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체계화하고 ‘신산업규제혁신 위원회’로 확대·재편(‘17년 6월)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신산업 규제혁신과 추진방향

신산업 규제는 기존 규제개혁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 ‘官’이 아닌 ‘民’ 주도 규제 시스템 확립 △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 도입 △ 국제수준에서 규제 최소성 달성이라는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원칙」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첫 번째, 민간주도의 규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20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²⁾를 구성하였다. 특히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과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파생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원칙 개선·예외 소명 심사 방식은 생명·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규제 심사 원칙으로, 이러한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시에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1)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민간 주도, 원칙 개선·예외 소명 검토방식 처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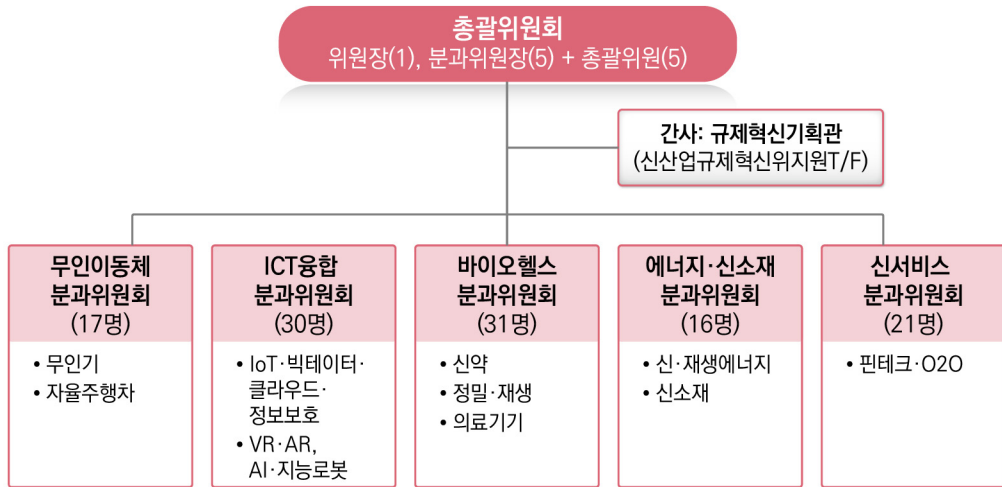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

세 번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국내 규제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무인이동체,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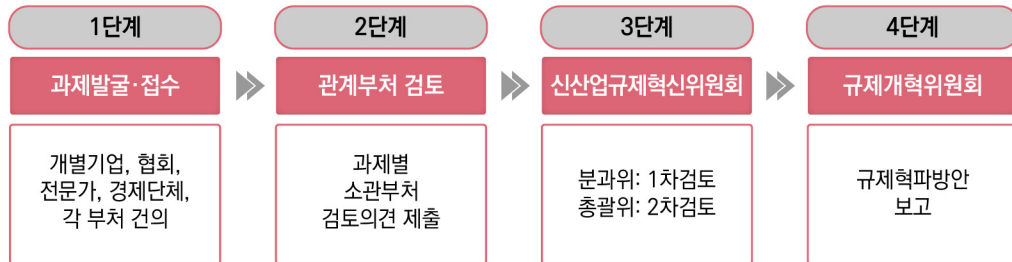
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구성 Ⅰ



신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 내에 세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는 무인기, 자율주행차, △ICT 융합 분과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지능로봇,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신약개발, 정밀·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분과위원회는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검토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분과위원회의 검토로 이루어진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주도의 원칙하에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위원회가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2단계는 총괄위원회의 검토 단계이다.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혁신 검토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조정한다.

| 신산업 규제혁파 시스템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혁파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되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및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공개된다.

(3) 2018년 위원회 개최실적

올해는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드론, 신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애로 과제 94건을 발굴한 후, 총 39회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및 다수의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82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과제 발굴은 현장성과 시의적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관련 업계·협회 등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중소기업 음부즈만, 산업융합축진 음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 건의도 수집하였다. 특히 올해는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친환경차(19건)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소재 분과(34건),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과(12건), VR, 로봇, 스마트러닝 등 ICT 융합(15건), 제약바이오, 3D 프린팅, 스마트헬스 등 바이오헬스 분과(28건), O2O 등 신서비스 분과(5건)에서 총 94건의 검토과제가 발굴되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안전 토론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풀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생생한 신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위원풀 120명 내에서 교수·대기업 출신 위원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출연(연) 위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94건의 검토안전에 대하여 관계 부처,

3) 2018년 분과위(37회) : 2018년 1월 11일 ~ 9월 20일, 총괄위(2회) : 2018년 6월 19일, 10월22일(서면)

업계 건의자, 민간위원이 함께 안전의 심층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당초 소관부처가 불수용 또는 기조치 의견을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용 또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⁴⁾할 수 있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검토과제 94건 중 42건은 건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관부처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2건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82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① 무인비행장치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요구(안전), ② 의료전문가 대상 마약류 정보전달 방법을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확대 요구(생명) 등 12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국민 생명, 환경, 안전을 고려하여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2018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 결과 |

분과(횟수)	개선 건의	규제애로 해소			규제 존치*
		수용	대안마련	기조치	
무인이동체(드론, 7회)	12건	4건	5건	1건	2건
ICT 융합(6회)	15건	13건	1건	1건	-
바이오헬스(9회)	28건	9건	12건	2건	5건
에너지·신소재(10회)	34건 *친환경차 19건	13건 *9건	12건 *4건	4건 *2건	5건 *4건
신서비스(5회)	5건	3건	2건	-	-
합 계(37회)	94건	42건	32건	8건	12건

*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무인비행장치 비행·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등)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2018년 운영결과는 2018년 1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되었고, 2018년 11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되었다.

4) 관련예: ① (불수용 → 수용)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사설과 비유기사설 설치 불허 → 기존 유원시설업 (VR시뮬레이터)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② (기조치 → 수용)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설치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준 부재) → 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집필자]

이미경 사무관(Tel. 02-6050-3292, lmgjae@korea.kr)

(1) 설치배경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 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규제개선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 청취 및 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추진단은 참여정부 시절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출범한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정부 출범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2)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추진단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총 25명(공무원 13명, 민간 12명, 단장제외)으로 운영된다.

| 추진단 조직도 |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3)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불합리하고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추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이행상황을 수시로 자체점검하고, 이후 추진단에서 확인함으로써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늘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규제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추진한다.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개선 과제는 언론사를 통해 발표하여 규제개선 추진실적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완료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이다은 사무관 (Tel. 044-200-2429, leeda@opm.go.kr)

신용현 사무관(Tel. 044-200-2452, trustyonghyun@korea.kr)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7인~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기획, 과제 이행 및 점검, 규제심사 업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으로 규제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행정법무감사담당관실 등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소관 규제의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김동현 서기관(Tel. 044-200-2917, donghyeon@opm.go.kr)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규제개혁 교육·홍보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등록규제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8 REGULATORY REFORM BOOK



PART

2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1절 2018년 규제혁신 회의 및
현장소통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제3절 일자리 규제혁신

제4절 민생불편·부담 해소

제5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제6절 일몰규제 정비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 1 절

2018년 규제혁신 회의 및 현장소통

1.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추진회의

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1.22)

|집필자|

고지숙 서기관(Tel. 044-200-2397, jiko12@opm.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그 실질적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함께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입법방식 유연화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2) 주요 규제혁신 추진방안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안건 |

-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무조정실)
-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관계부처)
 -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드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교통부)

우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보고, 논의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의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혁파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과 함께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3) 안건별 주요 사례

(가)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추진방안

① 입법방식 전환

(포괄적 개념정의) 기존 법령에 요건·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수용 곤란한 점을 개선하여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7건)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기존**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으로 한정
- 개선**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 효과**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연간 4.5억불) △대기환경 개선효과 (기존 선박연료 대비 미세먼지 약 90% 저감) 기대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 기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를 통해 발현하는 방식 한정
- 개선** 광섬유 → 발광체로 개념 확대
- 효과**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OLED 활용시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 20% 절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범위 확대 (산업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기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7개 분야*로 구분
*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종합디자인(3개 이상의 분야)
- 개선** 열거규정 삭제
- 효과**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또는 경계가 모호한 디자인 분야 포괄 가능
* 연간 100여개 내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 '17.12월 기준 5,567개 등록)



(유연한 분류체계) 현재 기술수준을 전제로 하는 제품·서비스 유형 분류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제한하고 있어, 신제품 등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13건)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 원형핸들타입 삼륜전기자동차는 현 체계내 분류 곤란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효과 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의 예측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가능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예: 트위지) 시장출시 가능)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복지부, 장기이식법)

기존 이식이 가능한 장기·조직 13종 열거(신장, 간장, 췌장 등)

개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도입

효과 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하여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안면·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등에 포함 가능)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기존 옥외광고물 종류를 16종*으로 한정 열거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단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는 혁신카테고리 도입

효과 디지털기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 시장 출시 가능,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 촉진(예,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방법 다양화(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 열거

* 우편, 전화, FAX, 전자우편, 인터넷사이트

개선 새로운 동의방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 도입

효과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동의 가능, 사업자·이용자 편의 증진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10건)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복지부, 생명윤리법)

- 기존** 유전자 치료 연구의 대상질환 제한(유전질환, 암, AIDS 등)
- 개선** 대상 질환 삭제, 일정 조건 준수시 모든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
- 효과** 질병 극복 및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기대(그간 금지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부, 환경정책법 시행령)

- 기존** 대기오염물질 8종별 측정방법을 각 1개씩 규정
* △ 오존(O₃) - '자외선광도법' △ 아황산가스(SO₂) - '자외선형광법'
- 개선** 대기오염물질별 측정방법 삭제
- 효과** IoT(사물인터넷)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 적용 가능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문체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기존** 음악영상물과 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 개선**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 효과**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가능, 콘텐츠 제작자 자율 및 창의성 확보



(사후평가·관리) 사전심의·검사를 자율심의,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설비기준 적정성 검사로 전환(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 기존**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 지정요건에서 정한 '장비 및 기구 목록표'에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 개선** 사전에 규정된 설비기준(목록표) 삭제, 사후에 보유 설비 적정성 평가
- 효과**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 구비 부담완화, 기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시험·검사 실시 가능(예: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 : 양수펌프, 휴대용 발전기 구비 불요)



② 혁신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금융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기존** 고객정보와 관련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이용 허용
*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 개선**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범사업 (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성 제고 △리스크 대비 비용절감 △고객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사업 개발 가능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금융위,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 기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 위탁 불가
*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신탁인수 등
- 개선** 제3자(지정대리인)에 '본질적 금융 업무' 위탁(최대2년) 허용
- 효과** 업무위수탁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 가능
*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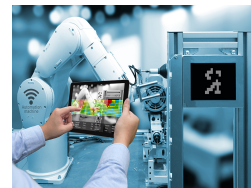


③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기존 규제와의 상충 해소 건의가 가장 많았고(44%), 복잡한 행정절차, 근거규정 미비, 현행 규정의 적용여부 불명확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기존** 사람이 협동작업장 내 체류 시 로봇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므로 공동작업 불가
- 개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 공동작업 허용
- 효과**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 위한 Fast Track 마련 (교육부, Fast Track 도입방안)

- 기존** 이미 검정을 마친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에도 검정공고기간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최소 1.5년)
- 개선** 디지털 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별도의 Fast Track 마련
- 효과**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나)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초연결 지능화 혁신)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

- 기존**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
- 개선**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하여 드론·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위치정보법)
- 효과** 개인/위치정보와 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핀테크 금융혁신) 클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 확대

- 기존** 업종제한 규제*로 좋은 창업 아이디어라도 클라우드펀딩 이용이 불가능하고, 투자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과대한 투자한도가 적용
* 음식점업(근로자 20인 미만), 이미용업 등은 클라우드펀딩 이용이 제한
- 개선**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하여 투자한도(연간) 확대*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
- 효과** 클라우드펀딩 이용 확대로 혁신적 스타트업 양성

(에너지신산업 혁신) 태양광설비 설치 입지규제 완화

- 기존**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 불가
-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
- 효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 1.5만ha)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험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 기존** ① 업계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고려해야하는 부담
②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
- 개선** ①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②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
- 효과** 기술개발 촉진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드론산업 육성) 드론 분류기준 정비

- 기존** 드론을 무게·용도 중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기체신고,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 중이나, 사고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에도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 적용
- 개선** 무게·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선
- 효과** 저성능드론에 대한 활용규제 완화 및 고성능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내실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 기존**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경우 각 분야의 수많은 규제들을 일괄 혁신해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나, 현재 개별법 상에서는 추진에 한계
- 개선**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
 -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외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
- 효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총집적한 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확산 촉진

나. 핵심규제이슈 혁파

2018년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해결이 지연되어온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정보규제, 입국장 면세점 등 핵심규제와 관련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1) 의료기기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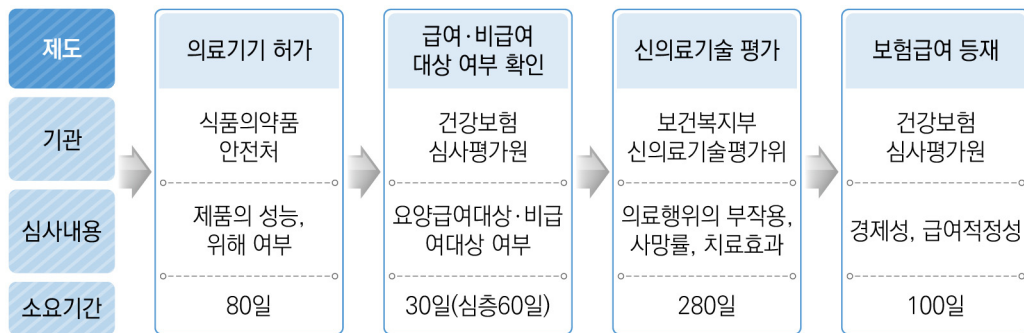
집필자

이규배 사무관(Tel. 044-200-2407, ninepear@opm.go.kr)

(가)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어 정부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였다. 이에 따라 업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규제에 막혀 개발 이후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신의료기술인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대 520일이 소요된다.

신의료기술인 경우 시장진입 절차



이에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2) 주요내용

① 혁신·첨단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그간 개발이력이 짧은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시장진입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어렵게 시장진입을 하더라도 혁신가치에 대한 저평가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는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기존에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혁신·첨단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첨단 의료기기가 개발과 동시에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신속허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신속허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진의 편의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조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비분류 코드(보험수가를 별도로 받지는 못하지만, 해외시장에서 국내 보험 등재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하는 일종의 가상코드) 혹은 심평원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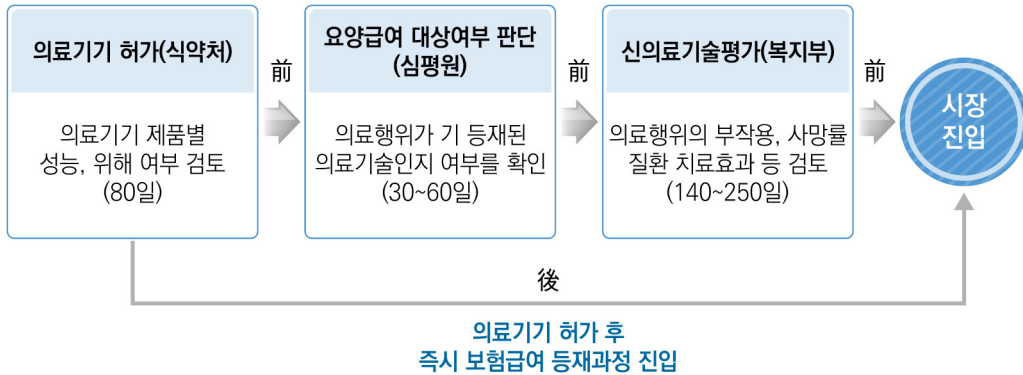
둘째,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첨단 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는 의료기술에 대한 문헌 중심 평가로서 새롭게 개발된 혁신·첨단의료기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헌 외에도 혁신·첨단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효과성 등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시장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그간 의료기기 위험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호소하였다. 특히, 체외진단기기는 인체에서 추출된 검체를 인체 밖에서 검사하는 의료기기로서 진단과정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료기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시장진입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단계적(감염병 → 전체 확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 후 1년 넘게(최대 390일) 걸리던 시장진입이 8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둘째, 제외진단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등 중대한 변경 대상이 아니면 식약처의 변경허가가 면제되어 최대 60일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③ 규제 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기업들은 연구·개발부터 시장진입까지 산업 전주기에 걸친 정보가 필요하나, 규제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통합적인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규제기관별로 상담창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또한 허가기준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허가 과정에서 신청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의료기기 규제 절차 전(全) 주기 통합상담을 실시한다.

- 개발단계 : △신개발 의료기기의 상품가치 △보험 등재 시 수가 책정 전망
△R&D 관련 정부투자 유치 방법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
- 허가단계 : △기술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자료, △안전성·유효성, 성능 평가 방법
- 평가단계 :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문헌 추출 방법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관련 상담
- 탈락 후 단계 : △추후 보완해야 되는 문헌
△재신청을 위해 거쳐야 되는 추가 임상시험 관련 내용
- 보험등재 단계 :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서류 관련 상담

둘째, 각 규제기관별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통합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신의료기술평가의 심사 문헌범위, 심사기준, 평가결과(탈락한 기술의 심의결과서 등)를 공개하는 절차를 복지부 고시에 명확히 규정한다.

넷째, 심의과정에 있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허가의 경우 신개발제품에 해당되면, 허가심사 전에 개발자가 식약처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최종 의결 전,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그동안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진입을 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 요구가 많았기에 정부는 의료기기와 이에 수반되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유사한 경우 의료기기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 간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통합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심의기간 자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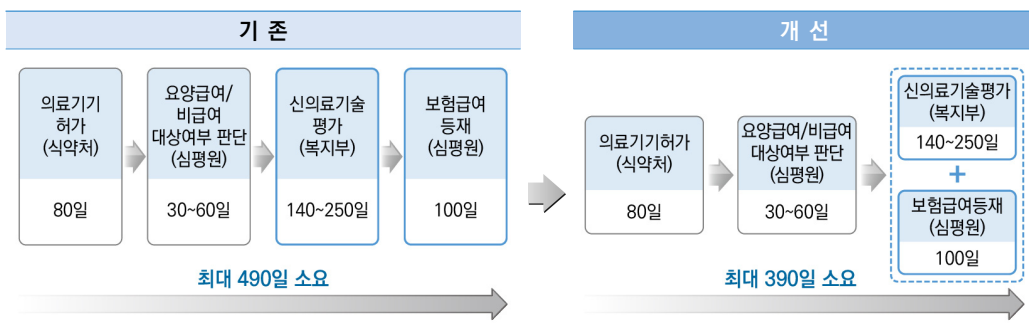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심사안전별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심사안전이 접수되면 기관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도 선임 책임담당자(식약처)가 심사일정 등을 일괄 통보한다. 또한 기관별 심사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통합운영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기관별 협업을 강화한다.

둘째,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과정(외부 전문가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중간심의)을 거친다. 이 중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심의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평가 대상 심의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한 달 가량 단축시킬 예정이다.

셋째,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을 도입한다. 통합심사 대상이 아닐지라도, 신의료기술평가 중 비용효과성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될 경우, 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따라 최대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로 100일 가량 단축시킬 예정이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2) 인터넷 전문은행 (8.7)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추진배경 및 경과

2017년 기존 은행법 하에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출범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대출액 약 5.3조원, 고객 수 약 546만명을 확보하는 등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 유도, 인증 간소화, 모바일뱅킹 활성화 등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기존 규제 하에서 창의력·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반 기업의 주도를 통한 적극적인 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된다는 전제 하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금번 특례법으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자본과 기술투자가 확대되어 은행업 진입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 증자를 통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은행 접근성이 중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고, 영업점포가 없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최저자본금 기준을 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25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기존 은행법 대비 대주주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 대주주 거래규제 등 관련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증권취득	자기자본의 25%/1% 이내	원칙 금지 * 예외 :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	매매, 교환, 신용공여	모든 계약으로 확대 (용역, 리스 등 포함)
동일차주/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25%/20% 이내	자기자본의 20%/15% 이내

(다) 향후계획

2019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시행으로 2개사 이내의 추가 인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예비인가 접수 및 심사, 외부평가 등을 거쳐 2019년 5월경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3) 개인정보규제 (8.31)

[집필자]

김정훈 사무관(Tel. 044-200-2437, hardboiled@opm.go.kr)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대통령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 추진배경 및 현황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오히려 취약하여 데이터 활용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나) 주요 내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규제 혁신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은 11월 15일 발의된 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정안에 구체화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행안위), 신용정보법(정무위), 정보통신망법(과방위)

①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첫째,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익명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명시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조치된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시간·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정보이다.

둘째, 가명정보의 이용범위를 기존의 통계작성·학술연구에서 '산업적 목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셋째,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되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선진화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 결합 시 재식별금지, 식별정보 별도 보관·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형사벌·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안부·방통위(전부)·금융위(일부)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이관한다. 위원장의 새로운 권한으로 국회 출석·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조사·처분권 등이 신설된다.

(다) 향후 계획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 3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업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예를 적극 참조하여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4) 입국장 면세점 (9.27)

[집필자]

최정석 사무관(Tel. 044-200-2634, snddp@korea.kr)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 법률안’이 6차례 국회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법 개정은 번번히 무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단계에서 면세품 판매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유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환경 및 주변국 상황 변화로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는 최근 10년간 매년 7.1%이상 증가하였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광환경의 변화추세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부재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선물 등을 휴대하고 다녀야하는 불편을 가중시켜왔고, 내·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전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도 한계를 초래하였다.

한편, 주변국은 관광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였다. 일본은 소비지 과세원칙을 완화하여 2017년 4월 최초 도입(나리타 공항)하였고, 중국도 2008년 최초 도입 이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통령은 2018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불편해소, 일자리 창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에 검토지시를 내렸다.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견 조사, 해외실태 파악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세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5월 31일 인천공항에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나) 주요내용

2018년까지의 국내 관세법에 따르면 출국 단계에서 면세품 판매는 허용되나, 입국 단계에서 면세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면세품의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지 과세원칙이 있으나 여행객의

관광편의에 중점을 두고 원칙을 완화(세법 개정)하여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입국하는 기내에서의 면세품 판매는 소비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의 경우 물품의 수량·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선물 등을 사고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같은 국민불편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이다.(앞서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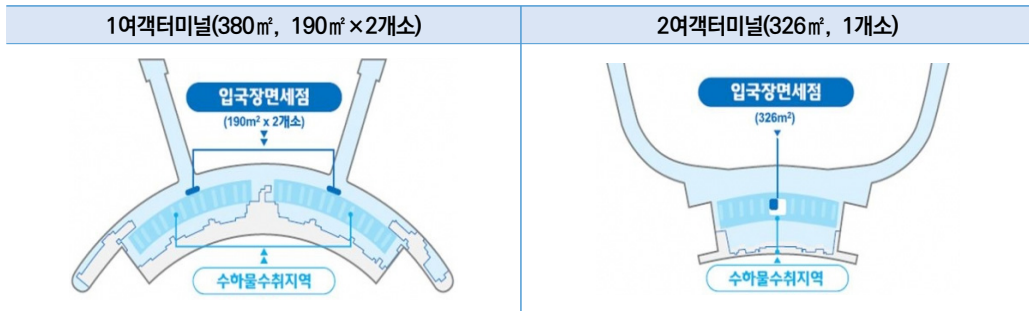
국민여론조사와 해외사례 등을 통해 도입필요성을 확인한 정부가 확정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단계적 도입이다. 도입 후 발생한 부작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전국적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세관·검역 기능 보완이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들로 인해 공항이 혼잡해지면 범죄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어려워지고, 불법 농·축산물 등에 대한 검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운영업체 선정과 수익의 공익목적의 사회 환원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 도입하여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 추진하게 된다. 또한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휴대품 면세한도)하고, 판매품목 중 담배는 내수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 또 과일, 축산가공품 등도 검역 대상 품목이므로 판매품목에서 제외하고, 향수 등은 마약탐지견의 후각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밀봉상태로 판매한다. 이러한 도입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매자,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 세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한 측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 제기한 것은 입국장 혼잡으로 인해 세관·검역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막고자 세관 감시기능과 검역 기능의 보완책이 마련된다. 먼저 세관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원격감시를 통해 '이상행위자'는 순회감시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를 추적하는 등 입체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농·축산물 검역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농·축산물 반입 위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장내 운영상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간당 예상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혼잡도가 최소화되는 공간을 선정하여 사업구역으로

하고, 수하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차단봉을 설치하여 일반여행객과 면세점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 수하물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말에 실시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역 확정, 세부 보완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세관통제 또는 검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인력과 장비도 확충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예정부지 |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매장면적의 2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임대수익 사회환원을 추진하게 된다.

(다) 향후계획

2019년에는 개정된 관세법 및 하위법령(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될 계획이다. 선정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운영 준비 작업을 하여, 2019년 5월에는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시범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 국무총리 주제 규제혁파 현장대화

[집필자]

이현경 사무관(Tel. 02-6050-3393, lhk0920@korea.kr)

(1) 추진배경 및 개요

규제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주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고자, 업종·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요구하는 수요자와 진솔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대화는 먼저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제와 관련된 기업인, 기관 종사자, 연구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장대화에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국무총리, 관계부처 차관 등이 즉시 답변 가능한 사항은 설명 드리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제1차, 제2차 현장대화를 실시한 데에 이어 2018년에는 제3차, 제4차 현장대화를 실시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가) 개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는 서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국무총리 주제의 한국과학기술원 내 연구업적관 및 기획전시관 방문과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장대화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연구자·기업인·전문가들의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었다.



① 일시·장소

- '18. 3. 8.(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②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 (민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 교수, 기업대표 등 10명

(나) 주요 내용

①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 현장방문

국무총리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시작 전 한국과학기술원내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보고 받고,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를 변환하는 3D 몽타주 생성기술 시연을 참관하였다.

<p>3D 뇌신경망 홀로그램</p>	<p>나이변환 3D 인물 몽타주 생성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연결 부위(시냅스)를 3차원으로 시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에 따른 몽타주 생성

②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제3차 현장대화 회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발표·논의되었다. 현장대화에 참석한 연구자·기업인 등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주요 내용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은 국가 R&D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R&D 프로세스 전반의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R&D 관리규정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개선내용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 조기 공개 창의적 경쟁과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 개선 연구 방법까지 제한하는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고 개선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 연구중단 허용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최종평가는 간소화(선정평가 강화·다변화)
	(연구관리)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 개편 1년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 폐지 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초·연말에 집중된 과제 평가 분산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자에 집중된 책임과 부담 분산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연구현장의 선의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부처별 R&D제도·시스템 통합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 통합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로 나누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단일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 서비스 통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제도와 별도로 임의 운영되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관행 철폐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R&D 관리 법규를 동시에 개정하고 연구현장 소통 체계화

○ 현장건의 주요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R&D 연구비관리규정 개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D 수행주체별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연구비관리규정 유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 시 하위 시행령에 반영 예정('19 예정) * 부처 및 R&D 사업과 무관하게 연구 기관 유형(산, 학, 연, 기타)에 따라 통합된 연구비 사용기준 적용 	과기정통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개선 (단국대학교 교수)	재료비 집행 내역 업로드 시 잦은 에러 등 문제발생으로 개선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부처마다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편리성 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설치('18. 6월) *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구축·운영 ('19. 하반기 예정) 	과기정통부

(3)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가) 개요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는 현장방문에 이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안건으로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발표 되었으며, 기업인·전문가들의 신기술 사업화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었다



① 일시·장소

- '18. 11. 21.(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특허청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 (민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한양대 교수, 관련 기업 대표 등 11명

(나) 주요 내용

① 현장방문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회의에 앞서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시연이 실시되었다.

VR코스터용 콘텐츠	직접메탄올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p>가상 역사를 인지하면 진동을 느끼게 되는 '합력 인터랙션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입감이 우수한 가상현실(VR) 콘텐츠와 어트랙션형 모션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한정된 실내공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VR테마파크용 콘텐츠 체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수소이온과 공기 중의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전시키는 기술

②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차 현장대화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발표·논의되었다.

이어서 현장대화에 참석한 연구자·기업인 등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 주요 내용

R&D 성공 후 기술이전·제품화, 시장진입 및 시장확대 등 사업화 단계별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구분	개선내용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1회 5년 연장 허용)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20% → 10%) 기술거래 전문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중인 특허도 지원 대상에 포함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인증 제도 마련 택시 앱(APP)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입 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 직접 펀드운용 허용, 위탁을 통한 자산운용 허용, 테스트베드 대상확대 및 심사주기 개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 신공법 참여 허용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 현장건의 주요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문헌 중심 사후평가제도 개선 ((주)수젠텍 대표)	문헌을 통한 사후 평가 방법을 실효성 있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문헌 평가 이외에도 신청인이 선진입 기간 동안 축적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실시('19 하반기 예정)	복지부
산업단지 내 입주제한업종 완화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필요	•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정개정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19 하반기 예정)	산업부
원가절감 중소기업의 이익 배분 제도개선 (배재대 교수)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	• 협력사업 등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연동하여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 예정)	중기부

3. 기타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조경윤 주무관(Tel. 02-6050-3362, 302008@korea.kr)

임미희 사무관(Tel. 02-6050-3372, maya999@korea.kr)

(1) 개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대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18.12.) 총 7,711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5,664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중 2,001건(35.3%)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7,711	2,047	5,664	2,001 (995)	722	2,941
		100%	35.3% (17.6%)	12.8%	51.9%

제 2 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분야별로는 영업 328건(16.4%), 국민불편 190건(9.5%), 위생안전 173건(8.7%), 환경 163건(8.2%), 기술인증 151건(7.6%), 자금·금융 149건(7.5%) 등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영업	국민 불편	위생 안전	환경	기술 인증	자금 금융	공장 입지	판로 조달	재정 세제	인력	창업	교육 의무	대중소 상생	기타
2,001	328	190	173	163	151	149	147	124	122	116	42	32	27	237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280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227건, 산업부 186건, 고용부 156건, 식약처 149건, 금융위 113건, 복지부 99건, 중기부 94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식약처	금융위	복지부	중기부	기타
2,001	280	227	186	156	149	113	99	94	697

(3)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총 1,318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900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중 328건(36.4%)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318	418	900	328(118)	101	471
		100%	36.4%(13.1%)	11.2%	52.4%

(가)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부)

- 기존**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드론,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이 미지정
→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 시 입지 제한
- * 첨단업종 지정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적용
 -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절임배추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체들의 현장 애로로 작용
- 개선** 16개 첨단업종 신규 지정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 *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 신규 지정
- 효과** 드론산업, ICT산업, 초정밀 액체펌프 등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애로 해소
초정밀 정량 액체펌프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기대 및 대다수 펌프제조업체의 R&D 기술 촉진 등 동기 부여

(나)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대법원)

기존 토지개발 시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후 개발된 토지에 재설정 필요
→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비용 발생

개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18.12월)

효과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비용 절감

(다)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 완화 (행안부)

기존 일부 시도는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
→ 4층 이상 입주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개선 광고물 제작·설치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18.12월)

효과 벽면이용 간판 광고를 통한 사업장 홍보로 영업매출 제고 기대
(3층 이하만 설치가능한 주요 지자체(서울, 세종, 충남, 경남) 소재기업의 애로 해소)

(라)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자격 요건 완화 (금융위)

기존 미소금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은 기존에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활용에 애로

개선 사업자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서민금융진흥원 내부세칙 개정, '18.7월)

효과 자격요건 완화로 소상공인 자금수혜 확대

(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간소화 (식약처)

기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절차(영업신고지와 등록기준지 간 공문 의뢰·확인)가 오래 걸려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초래

* 민원인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확인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즉시 신원조회 확인토록 개정(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효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증대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조검토·지반 조사의무 완화 (환경부)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안전 확보를 위해 취급시설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확인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사한 타 안전성 검사와 중복되어 애로
- 개선** 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동일 내용의 검사 결과를 인정하도록 개선 (유권해석 시행, '18.5월)
 -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탱크안전성능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정기검사 등
- 효과** 조사애로 해소로 비용 절감 및 효율적 기업운영 도모

(사)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환경부)

- 기존** 법령에서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9종)*을 지정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면제 품목으로 추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1회용 채혈침 등 9종
- 개선** 신제품 등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입법방식(시행령 → 고시) 개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12월)
- 효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품목 반영이 신속해져 기업 부담 경감

(아) 전통주유통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 허용 (중기부)

- 기존** 정부는 전통주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강화에 노력 중이나,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도매업은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
- 개선** 전통주 등 특정주류도매업자를 재보증 제한업종에서 해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규정 개정, '18.8월)
- 효과** 전통주 등 주류도매업자에 운전자금 적시 공급을 통한 자금난 해소

(자) 1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문체부)

- 기존** 1인 관광통역안내사가 '일반여행업'에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부담으로 작용
 - * 일반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요건은 2억원(1인 관광통역사 '18.6월까지 한시적으로 1억원)
- 개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의 50% 한시적 완화 규정을 상시적 규정으로 전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8.7월)
- 효과** 소규모 여행업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

(차)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기재부)

- 기존** 적격심사낙찰제(300억 미만)의 낙찰율이 고정되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의 경우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요소들로 인해 낙찰률 지속 하락
- 개선**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선, 저가투찰 유도요소 개선 등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18.12월)
- 효과** 공사비용의 적정성 제고로 시공업체 부담 완화 및 입찰 참여 활성화

(4) 현장 간담회 운영실적 및 사례

추진단은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 소통하도록 지역별, 업종별 현장을 찾아가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산업입지, 문화·콘텐츠,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주요 협·단체, 산업단지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창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을 중점으로 대구, 경남, 부산, 인천 등 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하여 신산업, 석유·화학·에너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재택·원격근무 관련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애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강원, 부산, 전북, 전남, 경남 5개 지역에서 규제개혁위원장, 국무1차장, 규제조정실장 등이 직접 찾아가는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 국·과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역현장과 소통하고 지역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총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280여건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애로 개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와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 현장간담회 건의 주요 개선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소규모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양성교육 후 자격 부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0월) 	환경부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이상 수상레저기구 (보트, 요트 등)를 조종하려는 자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수부가 발급하는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한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해수부를 별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면허와 한정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두 부처간의 자료 또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18.11월) 	해수부 해경청
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선별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응시 대상 확대 *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경력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면허를 받기 위해 중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완화('18.9월) 	해수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해양수산분야 드론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관련 사업·시험비행 추진 시 특별비행승인 절차 복잡 및 승인 기간이 90일로 오래 걸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 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11월) 	국토부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영세 선박수리업체는 선박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공장등록 및 지정사업장 지정 등의 기준에 부합되기 어렵고,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신청은 항만으로 한정되어 항만 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하여 선박 수리업 등록에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선박수리업 등록서류로 추가 인정('19.1월) 	관세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 계층은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최초 고용일 기준 5년간 자격이 인정되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우므로 이를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고용기준의 자격유지는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18.11월) 	고용부
KC안전인증에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표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관리기는 KC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품목이 없어 '전기건조기'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 오해 우려로 별도품목 마련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전인증대상품목기준에서 별도품목으로 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18.12월) 	산업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시대에 따라 더 많은 취약계층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 노인인구비율 14% 이상 시군구 25%까지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상향 조정(18.12월) - 노인인구비율 14% 이상 시군구 : 선발인원의 30%까지 ('18년 대비 5% ↑) - 노인인구비율 30% 이상 시군구 : 선발인원의 35%까지(신설) 	행안부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1.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 전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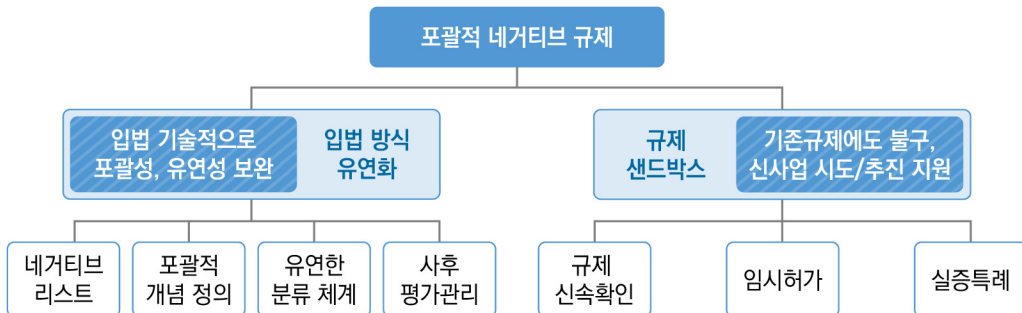
[집필자]

박유리 사무관(Tel. 044-200-2912, parkyuri@opm.go.kr)

가. 추진개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 분야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



국무조정실은 2018년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10월 31일에 2차로 65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각각의 과제 발굴 경과 및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 주요 내용

(1) 입법방식 유연화

국무조정실은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1차로 38건의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2차로 6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및 발표하였다. 전방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주체를 ‘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업 간담회 및 설명회도 더욱 활성화하였다.

-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 '17년 14회 → '18년 34회
- △소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 △지자체 지역기업 대상 과제발굴(4~6월),
- △공공기관 협의회(2~3월), 추가협조(7월) △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또한,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보다 알기 쉽게 수정·보완하여 2018년 2월 배포하였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실시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2차 개선에서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완화,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해 네거티브 전환 대상을 확대하였다.

총 65건의 과제 중 ① 포괄적 개념 정의가 9건, ② 유연한 분류체계가 9건, ③ 네거티브 리스트가 26건, ④ 사후 평가·관리가 7건, ⑤ 규제 샌드박스가 14건이다.

(가)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 9건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한다. 금번 개정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18.10월 개정)

②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가 특정제품 한 종류(XAD-2)만 허용되었으나, 이를 “흡착수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정기준 충족 시 다양한 흡착재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시장의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이 약 17~33%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제품의 경우 재고 부족 시 입고되는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으로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괄적 규정으로 관련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8.12월 개정)

(나)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 9건

①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8종으로 한정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관련 기준에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현재도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번 개정으로 인해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18.12월 개정)

②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로포장 재료로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하였으나,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타 포장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폴리머 등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 플라스틱 포장, 블록포장 등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대되며,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효과가 20~40배 가량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18.11월 개정)

(다) “예외금지·원칙허용”의 네거티브 리스트 : 26건**①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기존에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의과대학·종합병원 5년 이상 재직 전속 전문의)만이 시신유래물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는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 은행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동의 및 정기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건 하에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이 개선되고, 발병 메커니즘 및 예방·치료법 등 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19.上)

②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기존에는 일정한 인력·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풀(pool)에 등록 가능하여 IoT,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은 등록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을 허용하였다. 단, 금융질서 문란자나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하였다. 금번 개선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들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 중기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모집공고(‘18.8월 개정)

(라)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 7건**①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기존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 대상이었으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시 사후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우 처리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심사·평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신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19.上)

②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기존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별로 시설기준 목록표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여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 구입으로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목록표를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토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져 중소기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경우 인쇄기, 왁스코팅기의 의무설치 면제로 최소 1억 2천만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18.4월 개정)

(2) 규제 샌드박스

제2장 제2절 “2.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서 후술

다. 향후 추진계획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규제 관련 법령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효과해 나갈 예정이다.

2.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집필자]

한레지나 서기관(Tel. 044-200-2415, nebula27@opm.go.kr)

김정훈 사무관(Tel. 044-200-2437, hardboiled@opm.go.kr)

(1) 추진배경 및 현황

현행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어원 :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한 데서 유래

** 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현재 5법 모두 제·개정되어 ICT·산업융합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에 시행되었고, 금융혁신과 지역혁신 분야의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 국가와 비교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既 도입(11개국)·추진 중(9개국)

* 既 도입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추진 중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 핀테크 활성화 위해 '16년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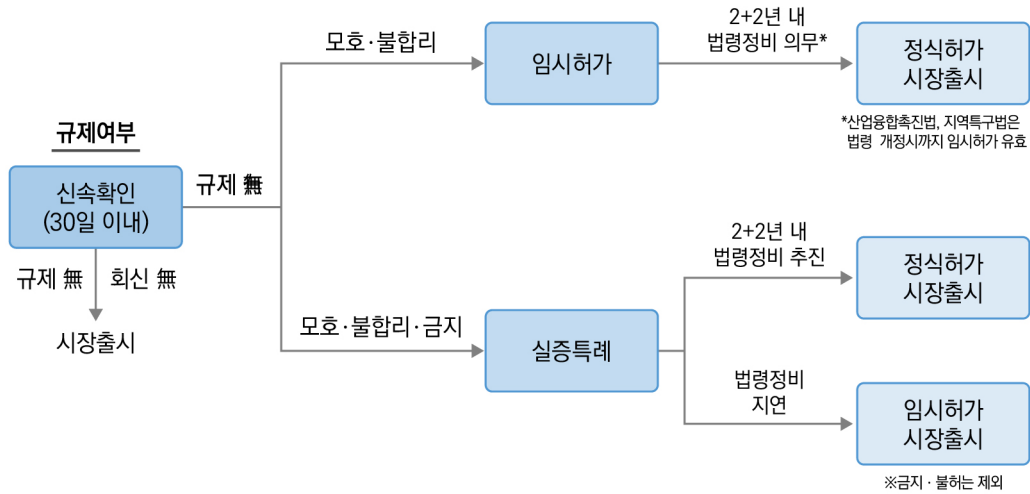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다.

(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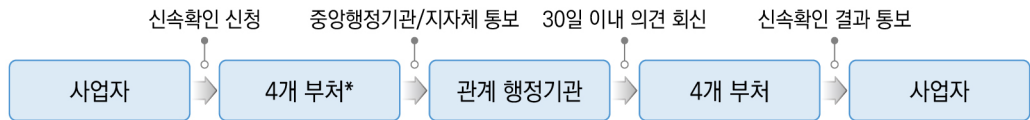
새로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융합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기 위하여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을 위한 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3중세트’ 개념도



①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 지역특구법은 사업자가 시·도에 신청 → 중기부 제출

1.1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건의 신속처리*가 신청되어 관계부처에 신속확인을 통보하여 30일 이내 의견 회신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자율 주행 배달로봇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확인 요청

② 임시 허가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시장출시(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할 수 있게 된다.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③ 실증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실증 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나)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규제 샌드박스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고 있다.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게 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3) 기대효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인프라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도 기대된다.

(나)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된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다)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진다. 규제당국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혁신 5법 세부내용 |

- 행정규제기본법 :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입법방식 유연화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
- 개별4법 : 분야의 특성에 맞게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의 개념 및 유형,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결정 절차, 유효기간 및 조건,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취소·손해배상, 사후관리 등을 규정

구분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확인·혁신금융서비스(실증특례) * 임시허가 없음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장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심의 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제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신청→관계기관장 협의를 거쳐 특례심의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장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심의 쫘 심의
유효기간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1회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부정한 방법 △ 심사 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취소 또는 시정 명령 가능 * 실증특례의 경우,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도 취소 또는 시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부정한 방법 △ 심사 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취소 또는 시정 명령 가능 △소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등 문제발생 시 서비스 중지 또는 변경조치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 의무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부과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 (부처 공동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 (부처 공동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 (부처 공동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중간·최종 보고서 등 3회 제출
법령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허가 :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의무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 착수 * 기간 만료전이라도 법령정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허가 :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착수 의무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 착수 * 기간 만료전이라도 법령정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의무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 착수 * 기간 만료전이라도 법령정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스트 중 인허가 요건 충족 확인 시 해당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심의쫘에서 필요성 인정→금융위에 법령개정 권고

(4)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날(1.17.) 이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총 20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해당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이다.

(가) ICT융합 분야(과기정통부) 사례

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 임시허가)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보유)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관련 고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 도달률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 중국 등에서 모바일메신저(텐센트社 ‘위챗’ 등)를 통해 수도·전기요금 납부 고지, 출생·혼인신고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시 대상 예시 |

순	기관명	서비스 대상	순	기관명	서비스대상
1	외교부	• 여권만료 안내	8	근로복지공단	• 취득/상실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서 등
2	국방부	• 예비군 훈련통지	9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납부 안내
3	경찰청	• 교통범칙금 고지 등	10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4	병무청	• 입영통지서	11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금 납입고지 • 건강검진안내 등
5	국세청	• 국세 납입고지서 등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금 심사관련 통지
6	지자체 (서울시 등)	• 지방세, 민방위 통지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 운행제한 과태료 고지	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 갱신 안내등
7	국민연금공단	• 연금가입안내	14	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미납요금안내

②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실증특례)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지금까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도 의료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증이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휴이노는 애플의 애플워치4(18.12월 서비스 실시)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15년)하였으나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였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하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19.3월 예정)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병·의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증특례에 의사의 진단·처방은 포함되지 않음

이번 실증으로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의사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증진이 예상되며,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나)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사례

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현대자동차, 실증특례·임시허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5개 지역은 ‘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지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설치를 희망한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❶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일반거주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❷ 3,000m³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구축이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❸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 가능하여,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 상업용 충전소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보지	입지제한	도시계획시설	국·공유지 임대
국회	설치불가 (상업지역)	지정 의무	국가 토지임대 필요
양재수소충전소	설치가능 (자연녹지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허가
탄천 물재생센터	설치가능 (자연녹지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허가
중랑 물재생센터	설치불가 (제1종일반거주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허가
현대 계동사옥	설치불가 (준주거지역)	지정 의무	-

규제특례심의회의에서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규제가 해소되는 올해 상반기 내에 지자체에서 정식허가를 주어 상업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서울시 소유 토지임에도 충전이 허용되며, 이로 인해 그간 현대차에서 연구용으로 운영해 온 양재 수소충전소에서도 실비 수준에서 수소 판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인허가 절차는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환경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하였다.

* (교육환경 보호)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구축할 경우,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로 교육환경에 무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 → 계동초등학교 등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심의 절차 필요
(문화재 보호)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해당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검토 필요

또한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의원회관 인접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 서비스(마크로젠, 실증특례)

(주)마크로젠은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유전체 분석을 활용해 15개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측정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허용항목을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 (현행 허용 검사항목)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체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되어, 총 25개 항목의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실증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의 심도깊은 논의 끝에 국민의 질병예방 및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인천경제자유 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이루어지며, 실증결과는 질병 예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추어, 바이오신시장 확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제공 예정 질환(13개)

(만성질환 :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5) 향후 추진계획

법 시행 이후 “듣고·뛰고·도우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미 접수된 19개 사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친 후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다. 추가로 대대적 사례 발굴을 통해 올해 100건 이상 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안내 및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적합과제 발굴에 주력하겠다.

또한 ‘신청-심의-실증-사업화’의 전 과정에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상담센터에서 일대일 법률·기술 자문을 실시하며,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의를 내실화할 것이다. 또한 실증특례 비용 및 책임보험을 지원하고 기존 벤처·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집필자]

최진수 사무관(Tel. 044-200-2437, huhuhu27cjs@opm.go.kr)

가. 추진배경 및 의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하 ‘규제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접근법으로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에서 최초로 제시된 규제혁신 방법이다. 그간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거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규제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핵심요소 및 기대 효과

규제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진다.

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경과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②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원('20) → 약26조원('35)으로 연평균 41%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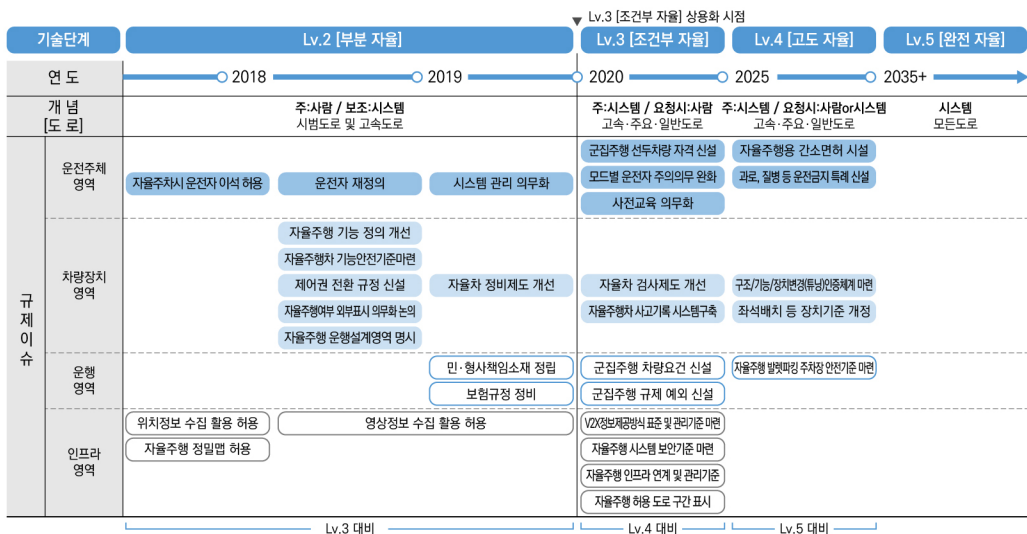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관·산·연 협의체(22개 기관)를 구성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 이상),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다.

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 내용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6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SAE], 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개선 시기별로 분류(단기/중기/장기)하여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운전 주도권(사람 → 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 → 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 → 고속구간 → 일반도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요약도 |



단기 과제('18~'20)는 자율주행차 Lv2 단계에서 Lv3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규제이슈들로서 △운전자 재정의 △기능안전 기준 마련 △민·형사책임 재정립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기 과제('21~'25)는 자율주행차 Lv3 단계에서 Lv4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규제 이슈들로서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등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 과제('26~'35a)는 자율주행차 Lv4 단계에서 Lv5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규제이슈들로서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시기별·영역별 규제이슈 주요 사례 |

시기	영역	주요 사례
단기 (15개)	운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 재정의(경찰청, 도로교통법)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정 개선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규정 개정(~'19)
	차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규정 신설(국도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 부재 개선 자율주행 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마련(~'19)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비(국도교통부·금융위원회·법무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존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 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 개선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20)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기존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에 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우려 개선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또는 관련 규정 개정
중기 (10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집주행 규제 예외 신설(경찰청, 도로교통법) 기존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출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개선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22)
장기 (5개)	운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로, 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경찰청, 도로교통법) 기존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 개선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필요(~'27)

마. 향후 계획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단기과제(~20년 완료)는 우선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여 2020년 경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하는 등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핵심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도 로드맵 작성을 추진하여 2019년도에 발표할 예정이다.

4. 혁신성장 선도사업

[집필자]

주민주 사무관(Tel. 044-200-2414, mk_j@opm.go.kr)

가. 추진배경 및 의의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등으로 성장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3%로 하락하였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된 반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에 도달할 만큼 일자리도 심각하며 분배상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17.7.2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람중심 경제」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전략을 설정하여,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양적 성장 및 결과를 중시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된 경제기조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하였다. 또한, 우리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였으며, 소득주도·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 중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를 통해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3대 전략의 하나로 집중 추진되었다.

나. 주요내용 및 추진 경과

2018년에는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R&D·자금지원 등 정부의 정책역량 결집 및 중소·벤처 혁신기업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혁신성장 규제혁신이란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과감히 혁파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혁신성장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28.) 등을 통해 수차례 혁신성장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18.1.22, 규제혁신 토론회)하고 추진하였다.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8대 분야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도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 우선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1차 혁신과제 58개를 발표하였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 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 가능

또한,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2.14.)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운영하였다. 1차 규제혁신과제 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였다.

| 혁신성장 선도산업 규제혁신 주요내용 |

①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및 분산형 발전과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 허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추진

②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교통부)

- 도시공간이 新기술의 테스트베드, 혁신창업의場이 되도록 도시성장 특성(신도시/기존도시)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조성
- ⇒ 지자체 자기망 연계분야 확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완화 등 추진

③ 드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 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드론 혁신·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
 - ⇒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드론 분류기준 개편, 드론 비행 및 테스트 공간 확대 등 추진

④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되도록 규제·제도·인프라 등 기반 마련,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주행차(Lv.3) 상용화 및 안전자율주행(Lv.4-5) 달성
 - ⇒ 자율주행차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특구 특례규정 도입, 자동차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추진

⑤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DNA 기반 구축과 융합 확산을 통해 ① 데이터 이용률·시장규모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②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③ 지능화 3대 기술 강국 도약
 -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My Data 시범사업 실시, 5G 관련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허용 등 추진

⑥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규제 혁신」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로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등 추진

⑦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
 - ⇒ 지역특구법 개정, 스마트공장 참여자격 요건 폐지 등 추진

⑧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농림축산식품부)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구현
 - ⇒ 혁신밸리 입지규제 해소,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침 개정, 농지 임대제도 개선 등 추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등 혁신성장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선도사업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혁신 과제들도 혁파하는 등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2 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 드론비행 및 테스트 공간 확대(대전·수도권 전용공역 지정 등 5곳)
- 5G 관련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허용(고시 개정, 6월)
-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허용(4개사 출시, 4월)
- 자율주행차 자동주차 시 운전자 이석 허용(도로교통법 개정, 3월)
- 스마트공장 참여자격 요건 폐지(신규 참여 104개사, 6월말 기준)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였다. 의료기기 규제혁신(7.19., 분당 서울대병원)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8.7., 서울시청), 데이터경제/개인정보 규제혁신(8.31., 판교), 입국장 면세점(9.27.)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 각각의 세부 내용은 '제2장 제1절 1. 나. 핵심규제이슈 혁파'에서 서술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관리 및 규제혁신 점검회의·현장방문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집필자]

박광훈 사무관(Tel. 044-200-2666, toneido3@korea.kr)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기업현장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 총 94건을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82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12건은 규제존치 인정)

|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처리결과(비율, 건수) |

총계	수용	대안마련	기초치	규제존치*
100%(94건)	45%(42건)	34%(32건)	8%(8건)	13%(12건)

* ① 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기간 및 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곤란(국민안전), ② 의료전문가 대상 마약류 정보전달 방법을 '전문약품' 수준으로 확대 곤란(국민생명)

특히, 올해는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2018년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한 후 정부(국조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⁵⁾ 추진단 등 관련 업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5건의 과제를 해소했다.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과제 12건 발굴, 10건을 해소했다.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한 결과, 이행이 이미 완료된 과제는 총 30건⁶⁾에 이르고 있다.

5) 정부·지자체, 소스차·부품업체, 수소 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16.8월 발족)
6) 후속조치 필요과제(기초치 8건 제외) 74건 중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하위법령 제·개정 등 법령정비 20건,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행정조치 10건 완료('18.12.13. 기준)

나. 주요 규제혁파 사례

(1)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한다.

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충전에 불편하였으나,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월)

②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8.12월 조치완료)

③ 기존 고정식 수소충전소 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⁷⁾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고시) 개정('18.10월 조치완료)

친환경차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①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과 기준 차이⁸⁾로 이중개발 부담이 있었으나,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을 추진한다.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19.12월)

②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

* 유권해석('18.11월 조치완료)

7)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부지 제외) : 고정식(약 30억원), 이동식(차량, 약10억원)

8)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 충전소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용량 운송용기 사용과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①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압축수소(기체) 운송시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저하되었으나, 수소운송용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⁹⁾을 통해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기준 제정('19.3월)

②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18.12월 조치완료)

③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 검토 추진

*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19.3월)

(2) 드론

(가) 드론비행 환경 조성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대전 지역은 드론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비행금지 구역 규제로 인해 드론 비행 테스트를 위해서는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했다. 대전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금강 일부지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19.3월)

②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개정('18.10월 조치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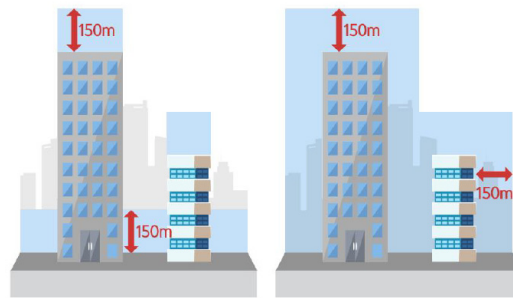
9) 최고충전압력(35 → 45Mpa) 및 내용적(150 → 360L) 상향

(나)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①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드론비행은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¹⁰⁾했으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선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11월)



■ 건축물 밀집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범위

② 초경량 교육용(250g이하, 완구용급) 드론에 대해 서울·대전 도심 등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 마련 추진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19. 3.)

(3) 기타 신산업

(가)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이 미비했으나,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18.11월 조치완료)

(나) 국가관리 자동차 DB정보 중 유종 정보공개

차종번호, 유종 등 차량등록증 정보 비공개로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이 안되었으나,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19. 3월)

10)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고층건물(150m)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다) 학교내 학습콘텐츠용 무선망 보안기준 완화

학교내 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가 높았으나, 무선인터넷을 교수·학습 목적으로 사용시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18.12월 조치완료)

(라)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가 모호하고 제공 가능 시기도 의료기기 등급별로 달라 업계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최대화하고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을 추진한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9.7월) 및 관련 고시 제정('19.4월)

(마)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개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외에 3D프린팅 사업을 별도 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야 하고 종사자 등 안전교육이 일부 중복되었다. 중복규제 완화를 위해 개별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간주,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축소 등 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19.6월)

6. 부처 발굴·개선 과제

[집필자]

김정아 서기관(Tel. 044-200-2419, wheat1224@opm.go.kr)

2018년 각 부처의 기존규제 정비는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 중 미래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대 핵심과제(1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조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 및 3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분류('18.2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4대 분야(ICT, 산업융합, 금융, 지역특구) 및 사업별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은 부처별 신산업 인허가 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 등의 신속확인을 위한 내부 운영절차·규정 마련토록 하였다.

‘신산업 R&D 및 인력관리 효율화’는 신산업 연구개발 활성화·효율화를 위해 R&D·특허 제도를 혁신하고, 신산업 인력육성을 위한 자격·직무표준 등 개발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은 데이터·네트워크·AI 등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은 크라우드펀딩,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전자금융업자 소액보험 판매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 국공유지 임대료, 신재생 공급의무제도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등)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투자 확대 지원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기타 분야별 신산업·선도사업 규제혁신’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바이오·헬스케어 등 분야별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제3절

일자리 규제혁신

제 2 장

1. 영업·입지규제 혁신

|집필자|

김동현 서기관(Tel. 044-200-2917, donghyeon@opm.go.kr)

가. 추진배경 및 경과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은 2018년도 규제혁신과 주요 분야 중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로서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는 작더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검토하였고,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하였다.

3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24건이며,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14건이었다.

구 분	정비유형	과제수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① 편의·수익시설 입지 확대	11건	24건
	②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	
생활편의업종 설립·영업 활성화	① 영업 요건 완화	9건	14건
	②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	

나. 주요 정비사례

(1) 편의·수익시설 입지 확대

(가)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 기존**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2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어 기숙사 수용률 저조
- 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학교 내 기숙사 증·개축시 추가 학생수용 가능해져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 확대

(나)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교통부)

- 기존**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개축 및 신축 불가
- 개선**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 허용
- 효과** 개발제한구역내 5개 노인요양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 가능

(2)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가)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성가족부)

- 기존**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 △법인·직장 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 개선** 40% 범위내에서 단체 및 개별숙박도 허용
- 효과** 189개 청소년수련원 이용 확대로 관광객 편의 및 시설 활용도 제고

(나)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 기존**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
- 개선** 특별공급(연간 6만여명)도 인터넷 청약 허용
- 효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신청을 위한 장시간 현장 대기 등 불편해소

(3) 영업 요건 완화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기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능
-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
- 효과** 최대 400여개(현재 600여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가조성 가능

(나)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 기존** 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하나, 허가시에는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구비 필요
- 개선** 허가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 그에 따라 시설·장비 구비
- 효과** 신설 시설경비업체별(연평균 180여개) 평균 460만원 절감 효과

(4) 행정절차 간소화

(가)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존** 동일 형태의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 개선** 식육자동판매기(커피자판기 등은 일괄신고 가능)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 효과** 판매기당 약 3일의 영업신고 소요시간·비용 절감 가능

(나)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존**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뿐만 아니라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개선** 식품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등 각종 지위승계 사례를 고려하여 신청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 삭제
- 효과**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2.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

[집필자]

이규배 사무관(Tel. 044-200-2407, ninepear@opm.go.kr)

가. 추진배경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자칫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정부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이 성장하거나 기술이 발전하는 등 사회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업이 시장진입하거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투자·고용 등 경제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노력에 비해 기업과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 존속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과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정거래법 제3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이 중 개선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09년 이후 '17년까지 총 181건의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해 왔다. 2018년에는 기업 현장의 체감 강화를 위해 시장구조 외,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까지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과제 발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각 부처에서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이 중 관계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총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개선 과제들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추진결과

(1) 시장진입 장벽 완화

기업들의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첫째, 항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허가, 신고·등록 등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 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 규정 → 면허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 * △(정성적 기준) 안전성, 과당경쟁, 이용자 편의, 재무능력 등 / △(정량적 기준)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 개선**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 삭제
- 효과** △ 건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 (단,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
- 효과**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 * '18.8월 현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9조 57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통계청)

둘째,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해 왔던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였다.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환경부)

- 기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
 - *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 개선** 민간업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술진단 업무 수행 가능토록 등록제 시행
 -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등 규정
- 효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 대상 시설 약 1,000개소

셋째, 시장환경이 변화하였거나, 신규 시장수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었던 업종·유형·방식 등을 추가로 신설·허용하였다.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사물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 개선**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 효과**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VR 이용자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 기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되었으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의무가 없어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부담이 적은 회사형태
- 개선** 설립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효과** 농업인들의 회사 선택권 확대 및 설립부담 경감

(2) 영업활동 제약 개선

시장진입 이후에도 기업이 영업 가능한 지역이나 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하였다.

첫째,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하였다.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교육부)

-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효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자체 멸균 처리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반출 처리하면서 발생 가능한 오염 우려 감소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 LPG 유통체계상 소매 공급하는 LPG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 당초 LPG 판매사업자는 용기판매만 가능했으나, LPG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형저장탱크(3톤 이하)가 용기를 대체함에 따라 소형저장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02)
- 개선** LPG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
* 향후,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또한 강화
- 효과**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대

둘째,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였다.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행정안전부)

기존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자격 제한 가능*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여자격 제한 가능

개선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 →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효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경영 활력 제고

셋째,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유망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교통부)

기존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

개선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개인형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이용공간 확대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 개인형이동수단 국내 판매량은 ('14) 3,500대 → ('15) 17,000대 → ('16) 65,0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이상에서 마련한 개선방안들은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기로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창업규제 혁신

[집필자]

김정아 서기관(Tel. 044-200-2419, wheat1224@opm.go.kr)

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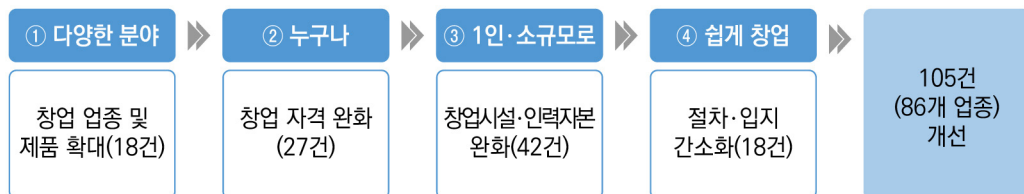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이나 국민들은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창업정책**이 재정·투자·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창업규제 혁신은 부분별·부처별로 접근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정책과 병행한 종합적 창업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창업관심 청년의 54.2%는 '14~'17년간 창업환경이 변화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식, 90.8%는 지속 확대를 요구('17.12월, 중기부·창업진흥원 창업인식 실태조사)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월,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기획재정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월, 금융위원회) 등

나. 추진방향

기존에 분야별·부분적·부처별로 접근하던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에서 창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363개 업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 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①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 27건을 완화하였다.

- ③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인력·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 ④ 18건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례

(1)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우선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였다. (13건)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 효과**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

- 기존**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 개선**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 효과**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 일본 소액·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 →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 효과**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 → 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또한 새로운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의 출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5건)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섬유·고무·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 효과**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 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특수차는 불가
- 개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 효과**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2)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였다. (27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 개선** 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 하고 ②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창업·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3) 1인·소규모 창업

우선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였다. (18건)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효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증가 전망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효과 보안감시시설 구비·운영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또한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고,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였다. (24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감면 기간·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 농지·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 개선** 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소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효과**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도교통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효과** IT기반 소규모·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4) 쉽고 간편하게 창업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였다. (18건)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효과** 상품출시·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효과**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보건복지부,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신고 허용
 - 효과** 생활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 39개, 전남 38개, 경기 34개, 충남 32개 등)

라. 향후 추진계획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4. 부처 발굴·개선 과제

집필자

김정아 서기관(Tel. 044-200-2419, wheat1224@opm.go.kr)

2018년 각 부처의 기존규제 정비는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 중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대 핵심과제(6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조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 및 3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분류('18.2월)

‘창업 저해규제 개선’은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저해하는 업종제한·연대보증·등록기준 등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요인 해소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합리화’는 산업단지 개발·입주범위 확대, 개발부담금 등 비용부담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공공부문 수행업무 민간 참여 확대’는 공공수행 진단·교육·사업 등에 대해 전문 민간기관 개방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절차 개선’은 창업·신산업·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계약 참여 확대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는 방송·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투자제도 등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물류산업 진입·해외진출 규제 완화’는 친환경 화물차 확대,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크루즈·마리나·레포츠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비자·출입국 편의 확대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는 금융·통신·서비스·사회적기업 등 업종별 진입이나 경쟁 제한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불합리한 자격 요건·제한 개선’은 각종 자격의 불합리한 실무경력·학력 요건 등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제4절

민생불편·부담 해소

제 2 장

1.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집필자|

김영조 사무관(Tel. 044-200-2450, fmd2000@korea.kr)

가. 추진 개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이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서비스 상당수는 관공서 방문이 필요하고,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TV를 활용한 영업에 대한 오프라인 기준 규제는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을 저해하고 있어 '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

분 야	개선과제
① 온라인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 (90건)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② 전자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 (11건)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③ 온라인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 (6건)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4건)

나. 주요 개선사례

(1)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가)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90건)

첫째,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65건)

| 사례 |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환자가 병원 변경이나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 특히 중증·노약자 환자 불편

개선 온라인(의료기관별)으로 본인 인증·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 하도록 하여 병원변경 및 보험급여 관련 시간소요·이동불편 해소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기존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여 신고

개선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허용('18.5.8. 시행)

* 대법원-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강남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복지서비스 증명서 온라인 발급 (보건복지부, 시스템 개선)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서비스 증명서 8종 발급은 주소지 주민 센터에서만 가능(연간 1만여건)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등

개선 8종 증명서를 온라인(복지로)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18.3.14. 시행)

둘째, 집합식으로 진행되어 온 법정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또는 실습·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23건)

| 사례 |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 구축)

기존 3만여 영양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센터(전국 13개소)에서 위생교육 이수 필요
→ 교육센터로의 이동 불편 및 영양사 공석으로 급식 안전문제 발생 우려

개선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도 허용

고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 (교육부, 시스템 구축)

- 기존** 다수 고교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 됨에 따라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은 학생들은 수업을 위한 이동에 불편
- 개선** 온라인(교실온닷)을 통해 이동없이 수업진행('18년 11개 시도 → '19년 전체)

셋째, 자격 확인 등을 위해 일부 민원은 방문처리가 필요하나 전국 어디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2건)

| 사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
-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

(나) 기관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 전기요금 조회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 260종을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 기관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분	서비스 연계	서비스 미연계
특징	• 정부24와 기관별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동일시스템처럼 이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	• 기능적 연계 없이 정부24에서 기관별 서비스를 단순 안내·링크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등)
현황	1,469종	4,556종
개선	• 미연계 서비스 중 260종을 정부24와 연계 - 단순 안내·링크 중인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 종이문서 관리방식의 전환

(가)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11건)

국민·중소기업 등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종이문서 보관의무를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사례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관세청, 원산지증빙자료보관고시 제정)

- 기존** 수출입업자는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자료를 연간 100여만건, 건당 수십~수천장의 종이로 보관 필요
 -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빙자료를 활용(수입 92%, 수출73%)함에 따라 종이서류 보관은 중소기업의 주요 비용부담·불편 사항
- 개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 허용

예산·기금 관련 집행서류의 전자적 보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존** 정부 예산 및 기금사업비 집행서류(영수증 등)를 종이매체로 보관하는 관행 지속
- 개선**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관련 지침개정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 보관 허용

(나)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17.12월 국회제출, 과방위 계류중(방송법 등 상임위 사정으로 법안심사 미착수)

| 법개정 주요내용 |

- 현행**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되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61개만으로 한정하여 열거 (포지티브 리스트)
- 개선** 전자적 전환이 불가하거나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 외에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네거티브 리스트), 전자문서 변환 후 종이문서 폐기 허용

(3)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가)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면제·완화(6건)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입지규제도 면제·완화되어 △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 사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차량 전시 없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거래를 알선함에도 660㎡ 이상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의 요건 구비 필요

개선 전시시설 및 정비시설 요건 면제(업체당 연 1억원 절감 가능)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의료기기를 영업장에 보관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중개판매만 하여도 온·습도 및 냉장·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

개선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 면제

온라인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업은 집에서 가능함에도 독립된 사무소 구비 필요

개선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나)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을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된다.(4건)

| 사례 |**온라인 쇼핑물 보험판매 확대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등록(임직원 10%이상 보험설계자격자 등)이 필요하나 온라인 상품 중개업(G마켓·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 판매 곤란

개선 타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도 해당 보험 판매 가능

온라인 구매 대행 품목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온라인 구매대행 시 253개 전기용품·생활용품은 국내 안전인증 기관 등으로부터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개선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 품목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온라인 환전업 허용 (관세청,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환전업은 영업장에서 대면거래 방식으로만 가능

개선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송금 후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수령('18.5.1. 시행)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집필자]

이규배 사무관(Tel. 044-200-2407, ninepear@opm.go.kr)

가. 추진배경

상품이나 서비스 특성, 생산방법 및 관련 공정 등에 부과하는 요건인 기술 규제는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인증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수단인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험·검사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시험·검사기관 수준이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불만·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시험·검사는 서류심사나 현장실사에서 육안을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기관들의 부실한 시험·검사 혹은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인증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경과

지난 '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무조정실·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음부즈만은 시험·검사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우선, 170개 인증제도('17년 3월 기준) 중에서 인증 적합성 판단을 위해 육안을 주로 활용하는 서류심사나 현장실사 대신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56개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부처가 법령·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시험·검사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가기술표준원 주도로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기준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시한 국제원칙(ISO/IEC 17025·17020)을 활용하였다. ISO 국제원칙은 각국의 기술규정 차이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증·시험·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시험·검사와 관련된 ISO 국제원칙은 조직·경영시스템·장비·고객서비스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30개 항목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인력·장비·조직 등이 국제원칙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음부즈만 주도로 중·소상공인이 시험·검사 과정에서 겪었던 현장애로를 조사하였다. 즉, 255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다. 추진결과

(1)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방안

(가)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를 ISO 국제원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30개 점검항목에 따라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보유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55개 기관 중 206개 기관(약 81%)은 ISO 국제원칙에 근접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6개 기관의 운영실태는 ISO 국제원칙과 차이가 없었으며, 60개 기관은 경미한 수준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 후자의 경우, 불만처리 절차가 없거나 검사결과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국내 실정상 국제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력·장비·업무 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차이가 존재하였다.

| ISO 국제원칙 (ISO 17025·17020) |

- (의의) 각국의 기술규정 차이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국제원칙들 중하나로 **시험·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직·경영 시스템·장비·고객 서비스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
- (효과) **국제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 수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

첫째, 인력과 관련하여 49개 기관 중 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장비운영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역량이 상이함에도 같은 자격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소홀하였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에 의해 부실한 성적서가 지속적으로 발급될 경우,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장비와 관련하여 49개 기관 중 25개 기관은 필요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 점검이나 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하였다. 시험·검사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제때 교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되어 기업에게 피해를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업무 공정성과 관련하여 49개 기관 중 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등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청탁이나 외압 등 내·외부 환경에 의해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어 부적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7년 5월 특정 시험·검사기관 직원들이 수입업체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험성적서와 원데이터(raw data)를 조작한 사건도 있었다.

주요 점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

인력

- A 기관 : 시험직원의 자격요건(학력·경력·기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개인별 '교육훈련이력카드' 등 교육훈련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음
- B 기관 : 검사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장비

- C 기관 : 검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검사장비(30종)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장비(8종)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지 않음
- D 기관 : 검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절차가 없음

업무 공정성

- E 기관 :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고, 검사인력이 영업과 검사업무를 같이 수행

(2) 개선방안

운영실태 점검결과, 시험·검사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력·장비·업무 공정성 부문에서 문제가 지적된 49개 기관들은 국제원칙 내용을 반영하여 부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미한 수준으로 지적된 60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제를 개선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과 관련하여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었던 39개 시험·검사기관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업무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해당 인력이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장비와 관련하여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었던 25개 시험·검사기관은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위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셋째, 업무 공정성과 관련하여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었던 35개 시험·검사기관은 조직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시험·검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을 개선·강화하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숙지토록 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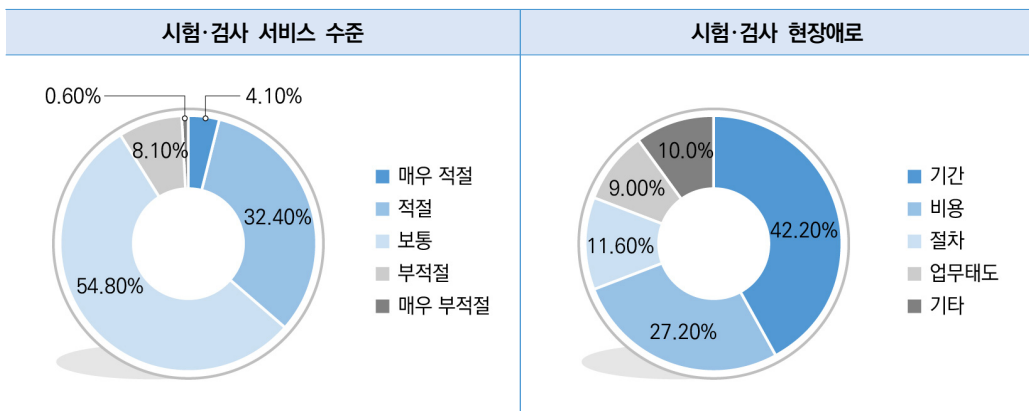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56개 인증제도 중 13개 인증제도는 부처가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이후에 시험·검사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에 13개 인증제도 소관 부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주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거나, 부정행위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라. 시험·검사 만족도 제고 방안

(1) 현장애로 조사결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서비스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조사대상의 91.3%가 적절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7%만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시험·검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하여 불편·부담을 많이 언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시험·검사 장기화(42.2%)▷높은 시험·검사 비용(27.2%)▷복잡한 절차(11.6%)▷담당자 업무태도(9.0%) 순이었다.

|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에서 밝힌 주요 현장애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수료 정보 파악 곤란

- A사 :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산출내역 및 산정방식을 알기 힘들어, 시험·검사 의뢰 시 알게된 수수료가 적정 수준인 것인지 의문 제기

지연사유 미고지

- B사 : 시험·검사 의뢰 후 기간이 지연되어 시험·검사기관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담당자가 정확한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불편 호소

불합격 사유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 C사 :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여, 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쏠 시험항목을 보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애로 제기

처리 절차 미공개

- D사 : 시험·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시험·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는 애로 제기

불친절한 업무 태도

- E사 : 시험·검사 완료시기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하거나, 완료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태도 지속

(2)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음부즈만과 함께 아래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미 개선과제를 시행 중인 기관을 제외한 평균 118개(46%) 기관을 대상으로 5개 개선과제에 대해 내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시험·검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5개 개선과제 |

구분	개선과제	개선이 필요한 기관 수	
시험검사 지연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123개	48%
정보공개 미흡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101개	40%
	• 명확한 불합격 사유 제공	101개	40%
	• 행정처리 절차 공개	113개	45%
담당자 업무태도	• 서비스 교육 강화	134개	53%

첫째, 시험·검사기간을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총 56개 정부인증제도 중 41개 제도는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시험·검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간 지연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 담당직원에게 불이익 조치(평가) 및 수수료 감면(지체상금)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시험·검사 지연사유 고지를 의무화하였다. 122개 시험·검사기관은 처리기한 경과 시에도, 지연 사유를 사전에 중·소상공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중·소상공인이 물품 생산·계약 등 경영 일정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처리기한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넷째, 101개 시험·검사기관은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하여 중·소상공인이 시험·검사를 의뢰할 때 비로소 수수료를 알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수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이다.

다섯째, 101개 시험·검사기관은 불합격 통보 시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중·소상공인은 전반적인 제품 보완·재시험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중·소상공인에게 성적서 발급 시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불합격 사유를 기업에게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113개 시험·검사기관은 세부 행정처리 절차나 관련 규정을 시험·검사기관이 비공개 하여, 중·소상공인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기관 업무 운영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할 것이다.

일곱째, 134개 시험·검사기관은 대민 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불편이 지속되어도 제때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험·검사 지연 관련 불편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부터 처리 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시 인근 지부의 인력 활용 및 업무 대행자 지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 향후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집필자]

김동현 서기관(Tel. 044-200-2917, donghyeon@op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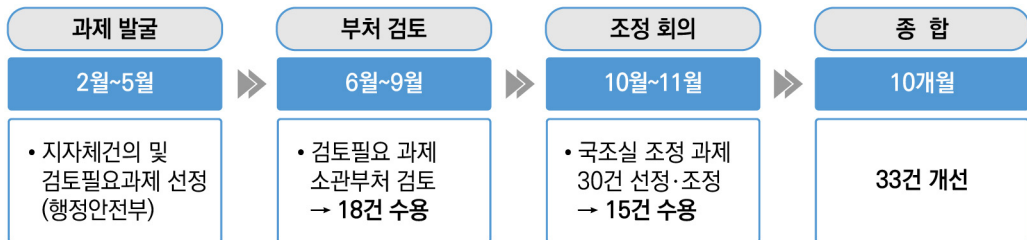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가 창업·금융·데이터 등의 테마별로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기업·지자체 등의 현장건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도 활용한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역 주민·기업으로부터 건의받은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18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특화 발전 △에너지·안전·주민불편 해소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17년)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17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특화 발전 △에너지·안전·주민불편

나. 추진경과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40회의 현장방문 및 지자체와의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선 18건의 건의가 수용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불수용한 과제 중 30건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5건의 규제개선이 추가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33건*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 중 5건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법령해석 5건,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 9건, 시행규칙 5건, 시행령 개정 8건, 법률 개정 6건

건의가 수용된 33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지역 일자리 창출 (1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공장증설 및 기업입주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등 • 소상공인 창업 저해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등 • 관광 활성화 제한규제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p>지역 균형·특화 발전(1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사업시 지방도시재생위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 각종 보호구역 개발제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등
<p>주민불편 해소 등 (1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지구 준공 후 5년 이내에도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 주민안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설치 허용 등 •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사용료 완화

다. 주요 정비사례

(1) 지역일자리 창출

(가)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 → 국토교통부)

- 기존**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 추진중.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이를 초과하여 인월농공단지 확대 불가
- 개선**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상 시군구와 기업 간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확인 시 산업단지 등의 미분양률·휴폐업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농공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남원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장 허용
- 효과**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년)에 따른 신규투자(400억원 이상) 및 신규고용 (200여명) 창출

(나) 과실주를 소규모주류 제조업 대상으로 포함(대구 → 기획재정부)

- 기존** 대구·경북에는 사과를 이용한 소규모 과실주 창업 수요가 많으나 시설기준(담금조·저장조 등)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약주·청주·맥주 등)에 과실주는 제외되어 창업비용 부담
- 개선** 소규모주류제조업이 가능한 종류로 과실주를 추가
- 효과**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의 시설비용(담금·저장조 기준) 절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시장규모 확대에도 기여

(다) 도시공원 내 청년예술가 등을 위한 프리마켓 허용(경북 → 국토교통부)

- 기존** 의성군 도시공원에는 청년예술가들이 프리마켓(flea market) 개최하여 작품을 전시·체험·판매 중. 일자리 창출과 문화축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행사·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불법
- 개선** 공원녹지법 취지·조문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창업 등에 의한 상행위를 적극 허용토록 개선
- 효과** 전국 2만2천여개(17) 도시공원을 통해 창업 및 판로확보 어려운 청년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내수창출 기여

(라) 유사성 높은 관광지 시설지구의 통합·조정(경기 → 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장흥국민관광지에 체육시설(운동·오락 시설지구)에 해당)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휴양·문화 시설지구)에 해당)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각 시설지구는 열거된 업종만 설치가 가능하여 중단
- 개선** 관광지 시설지구 중 상호 유사성 높은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 지구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
- 효과** 상이한 시설지구에 연접한 사업장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복합화된 관광시설의 설치 제약을 해소하여 관광지 개발 활성화

(2) 지역 균형·특화 발전

(가)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울산 → 국토교통부)

- 기존** 영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심사가 2단계(거버넌스 심사 → 본심사)로 분리되어 있어 준비 및 심사에 2년이 소요
- 개선** 기존의 1·2차 관문심사를 단일 회차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로 통합
- 효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 → 6개월)

(나) 상수원보호구역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상 확대(대전 → 교육부)

- 기존**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할 계획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만 가능하여 추진 중단
- 개선** 폐교활용법상 상수원보호구역내 용도 변경이 허가되는 '교육시설'에 교육적 성격을 지닌 공원·놀이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효과** 미활용 폐교재산을 놀이터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아동의 여가활용 확대

(다)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 준협의 제외대상 확대(경기 → 국방부)

-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나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 필요
- 개선** 허가 대상 건축물도 일부 용도변경 외에는 준협의 대상에서 제외
- 효과**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 기간이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라) 비영리 국제학교 법인에 세제 혜택 부여(제주 → 기획재정부)

- 기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은 출연재산과 교육사업수익에 대해 법인세·상속세 등이 면제되나 이와 유사한 제주 영어교육 도시 비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
- 개선**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 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비영리 국제학교의 교육사업 수익을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효과** 국제학교 경영부담 완화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촉진

(3) 에너지·안전·주민불편 해소

(가)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서울 → 국토교통부)

- 기존**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15년 준공) 강명초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접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 추진. 강일2 택지지구는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제한되어 계획 무산
- 개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준공일 이후 5년(신도시 10년) 이내의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
- 효과** 준공 후 5년 또는 10년 미도래한 전국 42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

(나)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축조 허용(인천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기존** 웅진군은 국방부 보유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국가 외에는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추진 보류
- 개선**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경우 국유지내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선 특례부여
- 효과** 유사시 접경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대피시설 확대

(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인하(대전 → 국토교통부)

- 기존** 대전시는 민자유치로 국공유지 자전거도로, 청사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점용·사용료 특례가 없거나 수소 충전시설·주차장 등 유사시설에 비해 과다하여 민간투자 유치 지연
- 개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위한 저렴한 도로점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마련
- 효과**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유도

(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 확대(경남 → 산림청)

- 기존**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은 폭염을 피해 하절기 저녁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이 연중 09~18시로만 고정되어 있어 주민·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저해
- 개선** 지역·계절·이용자수 등에 따라 입장시간을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확대 및 이용객 증가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라. 향후 추진계획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33건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이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해결 가능한 5건은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19년 내에 조기완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9년은 일자리·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4. 부처 발굴·개선 과제

[집필자]

김정아 서기관(Tel. 044-200-2419, wheat1224@opm.go.kr)

2018년 각 부처의 기존규제 정비는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 중 민생불편·부담 해소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대 핵심과제(147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소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 및 3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분류('18.2월)

‘주민·기업 불편 입지규제 개선’은 지역주민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지역·지역지구내 입지규제,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불편·부담 해소’는 장애인이 각종 면허·자격을 취득,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요건·절차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출입국·수출입 절차 간소화’는 수출입 확대를 위해 통관·원산지증명·관세환급 관련 규제 간소화, 외국인 체류·비자제도 현실화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온라인 행정업무 확산’은 증빙서류 발급, 인허가·복지 신청 등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민원 서식·절차 간소화’는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처리절차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축소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국민 주거·생활 불편 해소’는 주거, 교통, 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는 영업을 제한하는 인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범위 규제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차등규제 확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보험·임대료 등의 부담 완화, 조달·수주 기회 확대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인증·시험·검사제도 합리화’는 중복·불합리한 인증·시험·검사 및 의무교육 이수 제도 완화와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부담금·수수료 제도개선’은 정책지원, 과도한 국민부담 해소 등을 위해 부담금·수수료 감면·폐지 및 산정방식 조정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제 5 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 집필자

정성진 사무관(Tel. 044-200-2634, snddp@korea.kr)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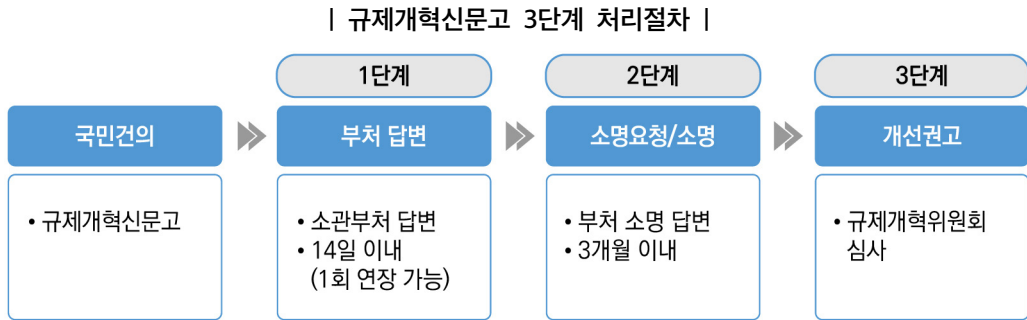
규제개혁신문고는 2014년 3월 20일부터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반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창구이다.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의가 수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3단계 검토과정)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처리 시스템의 핵심은 합리적인 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에서는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내에 담당 국·과장 실명으로 답변해야 한다. 2단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소관부처 답변의 적절성 여부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소관부처에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에서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해 그 타당성 및 관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명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1차 답변 시에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는 민간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간 자문단은 국토·농림·산업·안전·교육·복지·금융·노동·환경·법제 등 13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 답변의 타당성 등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소명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명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소명 필요성 등을 첨부하여 소관부처로 전달된다. 때문에 소명절차는 해당 규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명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소상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재인 정부 국민참여 기반 강화

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근거 법제화

2017년 새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을 통해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이 ‘국민요청’으로 강화되어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답변·소명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한 규제정비 요청제도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한 답변(14일)·소명(3개월) 기한 및 절차
- △ 처리결과 통지방법(정보통신망·우편) 등 신설
- △ 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의견제출”을 “기존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나. 범정부 접수창구 일원화 추진

종전에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국민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국민건의 접수창구의 단계적 통합일정*에 따른 2단계로 광역단체(총17개 기관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를 2018년 6월에 완료하였다.

* 단계적 통합일정 : 중앙부처(17년) → 광역단체(18년) → 기초단체(19년)

다. 홍보 및 대외평가

광역자치단체 대상 순회간담회(전북 등 13회), 중소기업·자영업 등 민생규제 현장방문(대부도간척지 등 9회)을 추진하였고, 규제신문고 소개 라디오 캠페인(1,034회, 교통방송), 포스터 제작·배포(지하철공사 등 500개 기관), 카드뉴스 제작·배포(수시)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민 참여 확대·강화 노력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18.12.14.) 하였다.

4. 2018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현황 및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18년 말 현재 총 18,223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18,223건을 검토·처리하였다.

2018년 한해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731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 2018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

규제건의	처리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대안 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 검토
1,731	1,731	122	115	4	208	1,224	58

또한, 각 부처에서 당초 답변 시에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한 19건에 대하여 각 부처에 소명조치하여 부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건의 1,731여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5.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건의 15.7% ▲기업 건의 21.9% ▲기타 건의 6.9%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어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가. 중기·소상공인 애로 해소

(1) 한옥체험업 규제 합리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 기존**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 별도 숙박업 신고(공중위생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 시 단속 및 처벌대상
- *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 지역에만 가능
→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 개선**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별도 마련토록 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한옥체험업 '등록제' 및 위생·안전 기준 도입
 - 관련제도 도입 전제로,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9.6월)
- 효과**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적정 요건을 갖춘 한옥체험시설의 안전한 이용 가능

(2)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보건복지부)

- 기존**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 → 면허가 없는 종사자의 머리감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
 -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 개선**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었던 ‘머리감기’를 이·미용사 보조 업무범위에 추가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18.10월 완료)
- 효과** 이·미용사의 보조업무로 인식되어온 업무를 현실화하여 현장애로 해소

(3)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 규정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존** 구내식당(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
 - * 요구르트형 건강음료, 헛개·홍삼 드링크, 발포 비타민 등
- 개선**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 건강기능식품법 유권해석 및 지자체에 영업신고 적용제외 안내 시행(18.10월 완료)
- 효과** 구내식당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영업신고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4) 태양광 생산전력 판매단가 차별 규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 태양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시(생산자 → 발전사) 가중치(판매단가의 50%) 적용
 - 기존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신기술)는 신속으로 간주되어 가중치 미부여
 -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해 가설준공 후, 추가로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는 등 불필요한 금전적·행정적 낭비 초래(태양광 신기술 사장 우려)
- 개선**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 동일한 전력 판매단가 가중치 부여
 -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지붕, 벽면 등 건물 외장재 자체에 설비를 장착하여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태양광전지판(모듈)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유권해석(18.8월 완료)
- 효과**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에너지 신기술 보급·확산

나. 국민 애로 해소

(1)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카메라(웹캠)' 방식도 허용 (국토교통부)

- 기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방범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허용
-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적용이 편리한 '네트워크 카메라(웹캠) 방식'은 도입이 불가
 - 현재 전국 약 100여개 단지(약 4만 세대)에 이미 설치되어 활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시설이 불법시설로 전락 우려
- 개선** 아파트 방범용 카메라로 'CCTV 방식' 이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네트워크카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18.12월 완료)
- 효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규제 완화 (환경부)

- 기존**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급대상이 지역별로 차량등록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수도권: '05.1월~, 비수도권: '13.5월~)
- * (대상)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오염물질 저배출자동차 (혜택)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 동일한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등록지역에 따라 혜택회수가 달리 적용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 현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수도권·비수도권 : '05.1월~)
-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추진('19.6월)
- 효과** 지역 간 저공해자동차 지원 대상의 형평성 해소

(3)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규정 폐지 (행정안전부)

- 기존** '18년 1월부터 여권사진 규격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은 그대로 유지(여권사진과 상이한 사진규격)
-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3.5×4.5cm)
- 개선**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여도 주민등록증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여권사진과 규격 단일화)
- *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18.12월 완료)
- 효과** 소이증 및 히잡 착용 외국인 귀화자 등의 별도사진 촬영 불편해소

(4)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요건 개선 (법무부)

- 기존** 일반 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목적의 하나로 부동산의 경우 6천만원 이상의 등기증명서항 제출 시 '공시지가' 금액만 인정
- *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부동산 등기·부동산임대차계약 등 필요
 - 공시지가가 통상 실거래가보다 30~40%정도 낮아 개인의 재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적 취득 시 장애로 작용
- 개선** 공시지가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인정하도록 개선
- * 「국적법 시행규칙」개정('18.12월 완료)
- 효과** 귀화허가 심사 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

다. 행정 불합리 해소

(1)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 확대 (농식품부)

- 기존** 농지조성 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농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의 용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경작
- 개선** 지자체 등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조성 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 범위를 확대
- 농업 관련된 용도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인정되는 용도'*
 -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 전시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18.8월 완료)
- 효과** 지역축제 등 간척지 다각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저위험 연구실 안전의무 규제 합리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존** 위험도와 관계없이 저위험 연구실(컴퓨터실습실 등)도 고위험 연구실(유해화학 실험실 등)과 동일하게 과도한 안전점검의무* 규제 적용
- *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
- 개선**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9.6월)
- 효과** 저위험 연구실 규제합리화를 통한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부담 완화

(3)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농식품부)

-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15.12.31.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지붕에 제한적 설치가 가능
- 동일한 농업진흥구역 내의 건축물이더라도 준공시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차등을 가져와 일선 현장의 애로로 작용
-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된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준공시기와 관계없이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 「농지법 시행령」개정('18.4월 완료)
- 효과** 정채수요자간 형평성 제고 및 농업인의 농업외소득 창출 기여

라.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1) '댄스스포츠' 무도시설 학원 등록 허용 (보건복지부)**

- 기존** '댄스스포츠'* 무도시설은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인 '무도학원업(근거: 체육시설법)'으로만 보아 '학원(근거: 학원법)' 등록 불허
- '무도학원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며, 주거지역 내 입지 불가 등 영업 제한
 - *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국제표준무도로서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왈츠, 탱고, 릭스텝, 포스트루트,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 개선** '댄스스포츠' 무도시설도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관련 시·도교육청 처리요령 안내('18.7월 완료)
- 효과** 댄스스포츠의 대중화와 자영업자의 창업 애로 개선

(2) 외국인 고객상담 사무원도 특정활동비자(E-7) 허용 (법무부)

- 기존** 특정활동비자는(E-7) 일정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82개 직종에 한하여 발급이 허용
- 신서비스 산업으로 유망한 다국어 콜센터 등의 경우 전문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나 E-7 발급대상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발급 불가
 - * 학력·경력: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근무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학사학위이상+1년이상 경력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 개선** 국내 외국인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특정활동비자(E-7) 직종에 국제용역 수행을 위한 '고객상담 사무원' 등 3개 직종* 추가 신설
- * 발급대상 추가 직종: 고객상담사무원, 로봇공학전문가, 산업안전위험관리자
 - * 「특정활동(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18.4월 완료)
- 효과** 안정적인 외국인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 국내 관련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지원

(3) 하천구역내 드론공원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 기존** 하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비행이 가능한 공간(일명 '드론공원') 설치근거 규정 부재
- 개선** 하천구역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간·시설 설치 근거 마련함으로써 드론공원 설치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명확화
 -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18.10월 완료)
- 효과** 드론공원 조성 활성화로 드론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

(4) 직업소개업과 식품접객업 일부업종의 겸업 허용 (고용노동부)

- 기존** 직업소개업은 인신지배, 불법고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모든 식품접객업*과의 겸업을 엄격히 금지
 -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등
- 개선**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
 - 단란,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일명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겸업을 계속하여 금지
 - *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18.10월 완료)
- 효과** 과도한 직업 선택 규제 철폐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

6. 향후 운영 계획

2019년에는 국정 3년차를 맞이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과제별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건의자와 상시 소통하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도 국민의 직접적 개별적 건의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단계적 통합일정에 따라 지난해 광역단체에 이어서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개혁신문고를 알리는 다각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회원사 및 산업단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일몰규제 정비

|집필자|

주민규 사무관(Tel. 044-200-2414, mk.j@opm.go.kr)

제
2
장

1. 규제일몰제 개요

가. 개념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유형

규제 일몰제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행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행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일몰 규제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마.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일몰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조약 등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기타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키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18년 재검토키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201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9개 부처의 858건의 재검토키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기한 도래 재검토키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

(단위 : 건)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858	25	117	96	21	617	431	186	99

* 과징금·과태료('17.11.28 법 개정으로 제외) 및 행정내부절차·기준 등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

2018년 일몰규제 심사는 '1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신산업·신기술 △일자리 △민생)에 맞춰 ① 규제 개선여부 및 ② 재검토키 기한 유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TF별 심사목표(규제 폐지·완화 30% 이상)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재검토키 규제 TF 전문가 보강 및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검토키 실익이 없거나 기한 설정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한해제를 검토하여 향후 재검토 규제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17년 대비 7명 증원 : ('17년) 15명 → ('18년) 22명

** '18.5.2(수), 규제심사관리관 및 TF 전문위원, 국조실 실무자 등 30명 참석

3. 주요 정비 사례

가.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

개선내용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폐지

기존 택배차량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변경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대효과 택배사 운영비 절감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간 형평성 제고

(2)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교육부)

개선내용 유사한 대학*과 비교 시, 기술대학에만 과도하게 적용되어 온 입학자격 요건 완화

*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의 경우 입학자격 중 근무기간 요건 없음

기존 산업체 근무 1년 6개월 이상

변경 6개월 이상

기대효과 근로자 전문성 및 학위취득의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3) 훈련교사 자격취득 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개선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경력 최소기준을 완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기존 학사·산업기사 3년, 기능사 5년, 학위·자격증 없는 자는 7년

변경 학사·산업기사 2년, 기능사 2년, 학위·자격증 없는 자는 5년

기대효과 다양한 강의인력 확보를 통해 산업환경 대응 인재 양성

(4) 협업기업* 선정 제한 업종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 개선내용** 선정이 제한되던 업종 중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삭제
- 기존** 13개 업종 협업기업 선정 제한
- 변경** 유흥 관련 업종(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을 제외하고 삭제
- 기대효과** 숙박업·부동산임대업의 협업기업 선정 및 협업을 통한 신산업 발굴

* 다른 중소·중견기업과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 개선내용** 창업 후 3년 초과 기준을 삭제
- 기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에 창업 후 3년 초과 규정
- 변경** 3년 초과 규정 삭제
- 기대효과**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촉진

*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6) 청소년자립시설관 시설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 개선내용** 위기청소년의 주거·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내 조리실·식당, 세탁·건조장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토록 개선
- 기존** 조리실·식당, 세탁·건조장, 상담·사무·숙직실 의무 설치
- 변경** 선택 가능
- 기대효과** 운영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자립시설관 확충 기여

(7)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환경부)

- 개선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제곱미터당 300원 부과) 감면대상을 국방·군사시설 외 생태계 보전이나 복원 사업까지 확대
- 기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면제
- 변경** 도시생태복원사업, 습지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추가
- 기대효과** 협력금 부과 목적과 부합하는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활성화

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1) 정보보호 관련 유사인증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 개선내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동일·유사항목의 통폐합을 통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
-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공동)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도 운영
- 변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 공동 운영
- 기대효과**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

(2)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규학위 취득 요건 완화 (해양수산부)

- 개선내용** 독학사 및 유사 학위취득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 인정
-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변경**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추가
- 기대효과** 안전관리 전문업체의 위험물취급자 구인 부담 완화

(3) 법률구조법인 등록(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

- 개선내용**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법인 명칭, 목적, 사무소 위치, 임원 성명)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삭제
-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제출토록 규정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법인 명칭, 목적, 사무소의 위치, 임원의 성명 등)은 등록내용 변경 제출서류 제외
- 기대효과** 서류 간소화에 따른 법인의 행정비용 및 부담 절감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선내용** 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에 대해 실질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존**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평가
- 신설** 무형자산에 대해 실질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
- 기대효과**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부담 경감 및 무형자산 취득 활성화

(5) 옥외광고물 중 생활형 간판의 허가·신고 수리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개선내용

생활형 간판*의 경우 영업 지속시 표시기간 자동 연장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입간판 등

기존

최초 허가·신고 이후 표시기간 경과시 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신고 필요

변경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간 자동 연장

기대효과

자영업자들의 허가·신고시 서류제출에 드는 시간비용 절감

(6)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 설치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개선내용

어린이용 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세부 기준 완화

기존

소변기 높이 20cm이상 30cm이하,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 60cm이하

변경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

기대효과

생산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창의적 시설 설치 확대

(7) 검사대상화물의 하선장소 제한 완화 (관세청)

개선내용

정밀검사대상화물의 경우 하선장소를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제한하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장소 변경없이 최초 하선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허용

기존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 장소에 하선시켜 검사 수행

변경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하선장소 변경 없이 최초 하선장소에서 수검

기대효과

하선장소 변경에 따르는 업체의 운송부담 및 비용절감

(8) 재고조사 결과 보고의무 완화 (관세청)

개선내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의 전산재고내역 및 현품재고조사 결과 보고횟수를 연 4회 → 연 1회로 경감

기존

매 분기마다(연 4회) 세관장에게 보고

변경

연 1회

기대효과

찾은 보고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인의 업무 부담 완화

(9)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개선내용**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기존** 감면대상을 공공기관의 사옥으로 한정
- 변경** 감면대상을 공공기관 보유 시설(예: 체육시설 등 부속시설)로 확대
- 기대효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지원

다.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1)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기준 제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 개선내용** 농수산물 농가 등을 배려하여 선물 가액 범위를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토록 조정
- 기존**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 5만원으로 제한
- 변경**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로 제한 완화
- 기대효과** 한우·화훼 등 농축수산물 농가의 수입 증대 기대

(2) 외부강의 상한액 제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 개선내용**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구분을 없애고,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일반 언론사 및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KBS)간 상한액을 동일하게 조정
- 기존** ①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직급별 차등으로 5급이하 및 직원의 경우 20만원으로 제한 ②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직급별 차등 적용으로 조교수이하의 경우 20만원으로 제한, 언론사간도 차등
- 변경** ①직급별 구분을 폐지하고 40만원까지로 제한 완화 ②국공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에 대한 차등규제 폐지 및 100만원까지로 제한 완화
- 기대효과** 학교 간(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사 간(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불합리한 차별 해소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치매 관련 시설기준 합리화 (보건복지부)

- 개선내용**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기준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
- △노인요양시설 : **기존** 치매전담실 2실 이내, 총 인원은 입소 정원의 60%이내
- 변경** 치매전담실 개수 및 정원 제한 삭제
- △치매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존** 1층에만 설치
- 변경**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 2층에도 설치가능
- 기대효과**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시설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 가능

(4)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신고 시 제출 서류 개선 (보건복지부)

- 개선내용**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제출 목록에서 제외
- 기존** 민원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 변경** 인가관청이 확인
- 기대효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및 시간비용 해소

(5) 폐수오염물질 측정기기현황 제출의무 삭제 (환경부)

- 개선내용** 폐수방출시설의 측정기기 현황 보관의무 삭제
- 기존** 측정기기현황 3년간 보관 또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송
- 변경** 측정기기현황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송(3년간 보관 삭제)
- 기대효과** 오염물질 측정기기사업자의 불필요한 서류보관 부담 해소

(6)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완화 (문화재청)

- 개선내용**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행위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
- 기존** 관련 서류 수기 제출
- 변경**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허용
- 기대효과** 신청인의 불필요한 제출의무 해소 및 행정편의 제고

(7) 전자통관심사 제한 완화 (관세청)

- 개선내용** 전자통관심사 적용이 제한되는 사유를 완화
- 기존** 단 1회라도 수입통관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경력이 있는 경우 전자통관심사 불가
- 변경**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시 전자통관심사 가능
- 기대효과** 과도한 불이익 규정으로 인한 업체의 통관부담 경감

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19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시스템 상 약 2,600여 건으로 '18년 대비 세 배 이상이 되는 만큼, 부처 및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심사를 추진하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폐지·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및 민생 불편·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한편, 기존 일몰규제 중 서류제출, 과태료 등 재검토 실익이 낮은 규제 정비(일몰해제)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 결과 평가 및 규제 운영성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비 추진을 통해 규제품질의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 REGULATORY REFORM BOOK



PART

3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
-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 제2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5법
제·개정 : 포괄적 네거티브
및 규제 샌드박스 근거 마련
 - 제3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추진
 -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 제5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 제7절 적극행정 지원
 - 제8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 1 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 집필자

김월중 사무관(Tel. 044-200-2431, kimwj73@opm.go.kr)

1. 입법 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에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법률에서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의무,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의무(규제 일몰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절차, 기존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규제개선 점검·평가, 규제개혁 백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 6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5년 개정 법률 제7797호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를 강화했다.

2010년 개정 법률 제9965호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2013년 개정 법률 제11935호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제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개정 법률 제13329호는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시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중소기업영향분석(평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17년 개정 법률 제15037호는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8년 개정 법률 제15609호는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97.8.22.('98.3.1.)	•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기존규제 정비△신설·강화시 규제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05.12.29.('06.6.30.)	•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존속기한 도래 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10.1.25.('10.1.25.)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3.7.16.('13.8.17.)	• △재검토행 일몰제 근거 마련
'15.5.18.('15.5.18.)	• △규제영향분석 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17.11.28.('18.3.1.)	•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18.4.17.('18.10.18.)	•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연관 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2. 2018년 개정 추진경과

'17년 12월 26일에 국회에 제출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은 '18년 3월 5일에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기존에 심의 중이던 김종석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 박찬대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가능한 쟁점(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등록제도 보완,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 연관규제 개선, 신산업 탄력적용,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선별한 후 3월 7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3월 7일에 개최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① 다수부처 연관규제에 대한 개선요청 근거 마련(김종석 의원안

원안의결), ②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정무위수정안 의결), ③ 규제개혁 신문고 근거조항 마련(정무위수정안 의결), ④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규제차등적용제 도입(정무위수정안 의결), ⑤ 등록내용 오류 시 수정 요구 등 규제등록제도 개선(정부안 원안의결), ⑥ 규제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정부안 원안의결) 등 6건을 통과시키기로 하였고, 김종석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신산업 규제탄력 적용 관련 사항은 3월 6일에 발의된 민병두 의원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정무위수정안(위원회 대안) 의결에 따라 김종석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고, 정부안 중 원안대로 합의된 2건(등록제도, 정보시스템)은 법안소위에 계류는 하되,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제도 도입 논의결과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김종석의원안·채이배의원안·정부안 비교 |

구분	김종석의원안('17.1.)	채이배의원안('17.6.)	정부안('17.12.)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차등화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정* * 3년간 규제적용면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차등화를 위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신설
등록제도 보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개위가 부처에 규제 등록 오류 수정 요구
규제개선 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선청구권 도입 및 청구대상 확대 (행정지도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정비 요청 처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지도는 대상에서 제외 *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
연관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부처 규제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정비요청 및 규제위의 정비 권고 	-	-
신산업 분야 탄력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사업자는 소관부처에 규제 해석·적용여부 등 질의, 탄력적용* 요청 * 시범사업, 규제 신설 등 	-	
회의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기록 형태 회의록 작성 의무화 	-
규제정보 시스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김종석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을 기초로 마련된 정무위 대안은 '18.3.13.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18.3.30. 본회의 의결을 거쳐 '18.4.17.에 공포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법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법 제17조 개정)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다. 연관규제에 관한 개선(법 제1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법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함

'18년 3월 6일에 민병두의원은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 김종석의원은 기존에 발의하였던 행정규제기본법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폐기됨에 따라 5월 30일에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양 법안은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을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민병두의원안은 신산업 규제의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만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한 반면, 김종석의원안은 신산업 규제 관련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12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양 법안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12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대안이 통과되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

②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9조의4 신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비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④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규제특례관련 조정역할 부여(안 제24조 제2항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원회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안 중 여야간 쟁점이 남아 있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 심사 도입은 지속적인 설명·설득을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계류 현황('18.12월말 기준) ◀

발의자 및 발의일	진행상황	주요내용
정부안('17.12.26.)	정무위 계류 중 ('18.3.5. 법안소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 규제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
박남춘의원 대표발의('16.12.13.)	정무위 계류 중 ('17.2.21. 법안소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비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의무화
박찬대의원 대표발의('16.12.28.)	정무위 계류 중 ('17.2.21. 법안소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비시 영향분석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서·규제정비 영향분석서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화
정무위 대안 * 민병두의원안과 김종석의원안(신산업 규제특례법)은 대안반영 폐기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1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규제 규정 방식 • 규제신속확인 및 신속정비, 규제특례 부여 방향제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5법 제·개정 : 포괄적 네거티브 및 규제 샌드박스 근거 마련

|집필자|

김정훈 사무관(Tel. 044-200-2437, hardboiled@opm.go.kr)

1. 추진배경 및 경과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2018년 3월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현재 5법 중 개별 4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에 시행되었다. 금융혁신법(4.1)과 지역특구법(4.17)은 4월 시행 예정이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18.12.27.)하여 2019년 중 국회 처리가 예상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제도화

(1) 개요

규제혁신 5법 중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우선허용 -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기술 서비스·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법령에 새로 규정 할 때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출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된 유연한 입법방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①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② 포괄적 개념정의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유연한 분류체계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후 평가관리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나.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규제혁신 5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다.

(1)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①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임시 허가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③ 실증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안전장치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 입법 단계에서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나가는 등 네거티브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듣고·뛰고·도우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창출한 우수·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심의-실증-사업화’의 전 과정에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하여 신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3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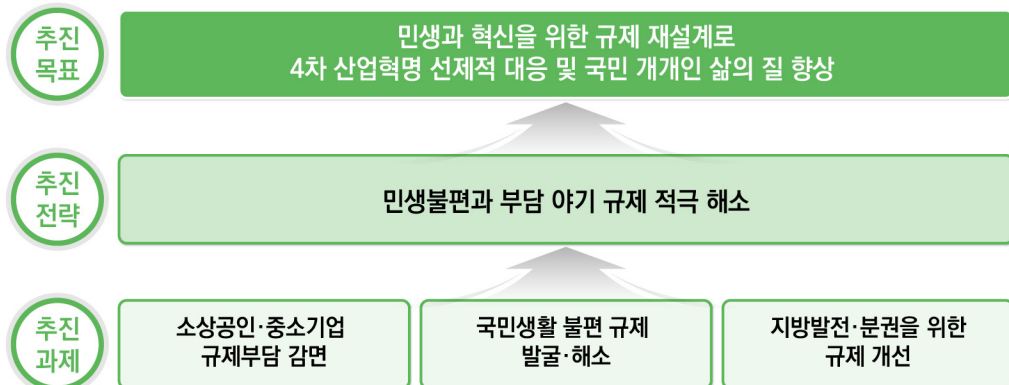
[집필자]

김월중 사무관(Tel. 044-200-2431, kimwj73@opm.go.kr)

1. 추진배경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고용 및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영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9년부터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차등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반영하고,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도 민생부담 해소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을 명시하였다. 국정과제 및 새정부 규제정책 추진방향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방안』을 마련(18.1)하여 각 부처가 규제 신설·강화 및 이에 대한 규제위 심사시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제의 원칙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명문화하고 규제영향분석(각 부처) → 중기영향평가(중기부) → 규제심사(규개위) 3단계에 걸쳐 규제 차등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 발표) 중 민생부담 해소 관련 발췌 |



2. 주요내용

가. 규제 차등적용 법적 근거 마련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정부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발의되어 있던 의원발의법안(김종석의원안)과 병합심사를 거쳐 양 법안 내용을 절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4월 17일에 공포되고, 10월 18일에 시행되었다

| 개정법안 내용 |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 차등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규제 차등화 매뉴얼(지침) 마련·배포

중기 규제 차등제도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차등 적용 방법과 정보가 부족한 각 부처 규제입안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벤처기업부·KDI·행정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중기음부즈만이 참여하는『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TF』를 '17.11월에 발족하고, TF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 기준 마련 등 중기 차등 적용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규제 차등화의 구체적 대상·유형·방법 등 기준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18.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중소기업 차등화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중기 규제 비중이 높은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후,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매뉴얼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시기에 맞춰 '18년 10월에 전 부처에 배포하였다. 중소기업 차등화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규제 차등화 필요성을 검토
- 규제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중기부의 중기영향평가를 모든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의무적으로 시행
- 규제심사과정에서 예비분석 및 차등화 검토의 적절성 심사

3. 향후계획

법 시행 후 현장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보완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차등화 제도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적용·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집필자|

신연희 사무관(Tel. 044-200-2913, syh2030@korea.kr)

제
3
장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7월~'16.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16.7월)을 제정 해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중이다.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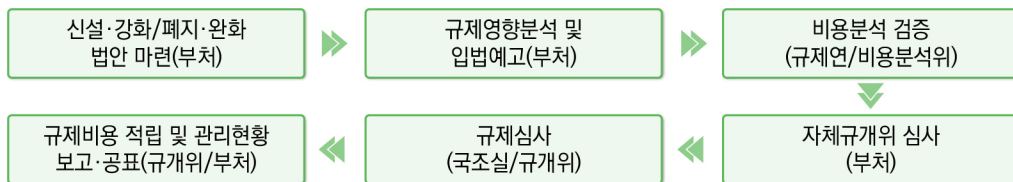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기한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는 연간 규제순비용 1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과 함께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간편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만 거치며,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은 생략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



※ 반기별로 부처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개위 보고·공표 및 정부평가 반영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의 경우는 '18년 초기까지는 제도연구실이 규제연구센터에 포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별도의 규제혁신연구실(실장)로 분리되었다. 비용분석검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검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2018년 비용검증실적을 살펴보면 KDI에서는 신설강화 규제는 83건 폐지완화 규제는 23건을 심사하였고, KIPA에서는 신설강화 규제는 207건 폐지완화 규제는 14건을 심사하였다.

| 규제연구센터 현황 |

구분	KDI 규제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0명(소장 : 김정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명(소장 : 원소연)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팀(제도연구팀, 분석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팀(비용검증팀)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는 20회에 걸쳐 40개 안건을 심사하였다.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2018년 26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84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Cost-In 규제 93건으로 506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한 반면, Cost-Out 규제 29건으로 690억 원의 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6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7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9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157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72억 원), 산업통상자원부(-69억 원), 환경부(-44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국토교통부(161억 원), 해양수산부(32억 원), 고용노동부(14억 원) 등은 증가하였다.

2016년 7월 이후 누적 순비용은 총 7,808억 원 감축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3,948억 원)와 국토교통부(-3,124억 원)가 감축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17개 부처가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331억 원), 보건복지부(49억 원) 등 7개 부처는 증가하였다.

| 2018년 규제비용관리제 기관별 운영현황 |

(단위 : 건, 백만 원 / 순비용 누계순)

부처명		Cost-In		Cost-Out		'18년 순비용	순비용 누계 ('16.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93	50,601	29	-69,056	-18,455	-780,803
1	농림축산식품부	2	7,429	1	-23,150	-15,721	-394,800
2	국토교통부	12	18,311	5	-2,186	16,125	-312,395
3	산림청	1	-	4	-2,960	-2,960	-47,69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11,323	1	-14,752	-3,429	-16,058
5	산업통상자원부	6	1,238	2	-8,180	-6,942	-15,122
6	여성가족부	-	-	-	-	0	-9,793
7	식품의약품안전처	26	8,164	9	-15,339	-7,175	-6,969
8	환경부	15	-4,262	1	-173	-4,435	-6,480
9	해양수산부	7	3,393	1	-189	3,204	-3,294
10	문화재청	-	-	-	-	0	-3,280
11	중소벤처기업부	-	-	-	-	0	-3,241
12	기획재정부	-	-	1	-4	-4	-2,288
13	관세청	1	70	1	-689	-619	-1,891
14	특허청	-	-	-	-	0	-1,886
15	공정거래위원회	2	477	1	-517	-40	-276
16	방송통신위원회	1	1,176	-	-	1,176	-53
17	경찰청	-	-	-	-	0	-
18	법무부	-	-	-	-	0	-
19	인사혁신처	-	-	-	-	0	-
20	국가보훈처	-	-	-	-	0	4
21	행정안전부	-	-	1	-810	-810	41
22	문화체육관광부	-	-	-	-	0	823
23	교육부	1	214	-	-	214	2,583
24	금융위원회	2	664	-	-	664	3,196
25	보건복지부	10	1,020	1	-107	913	4,944
26	고용노동부	1	1,384	-	-	1,384	33,124

나. 주요 사례

(1) Cost-In 주요 사례

(가) 가금류 농가에 대한 사육·허가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 기존** 소독시설 설치기준 부존재, 밀식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AI 등 가축질병 빈번히 발생
- 개선** 가금류 농가에 소독시설 설치(가금사육 등록농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금류 허가 대상자), 케이지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강화*(가금사육업 허가자)
 - * 0.05㎡ → 0.075㎡
- 효과** 가금류 농가에 CCTV 설치, 케이지 구입비용 등 67.5억원 발생
 - 시설기준 강화로 근본적인 가축질병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에 기여

(나) 인권교육 내용, 시간·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기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없음
- 개선**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효과** 교육실시에 따른 종사자의 기회비용 및 수강비로 연간 31억원 발생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종사자의 인권소양 함양을 통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

(다) 타워크레인 검사 수준 강화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기존** 타워크레인 연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기로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노후크레인에 대한 관리 부실 우려
- 개선** 10년 이상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강화*
 -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안전성 검토 및 비파괴 검사를 받도록 함
- 효과** 노후크레인에 대한 검사비용 연간 29.1억 원 증가
 - 설비안전성 제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기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기준 없음
- 개선**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계란의 세척·살균·소독이 가능한 설비와 작업시설을 갖추도록 함
- 효과** 선별포장업소 신축 또는 증설비용으로 연간 17.8억원 발생
→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달걀의 안전·위생 확보

(마) 급수관 상태감사 결과 고지 의무화 및 상태감사 기준 강화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 기존** 대형 건축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대형 건축물 입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아 수도물 품질에 대한 불신 해소에 한계
- 개선** 일반검사 및 전문검사 결과를 수도사업자와 대형 건축물 입주자 등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검사 항목의 측정기준 강화*
* 납 : 0.05 → 0.1mg/ℓ
- 효과** 급수관 검사결과 고지비용 연간 2.2억원의 비용 발생
→ 검사결과 인지로 수도물 신뢰도 제고 및 검사기준 강화로 수도물 품질 개선

(바) 사업용 화물차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신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기존**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검사 미실시
- 개선** 사업용 화물차 고령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함
* 65~70세 미만 3년 주기, 70세 이상 1년 주기
- 효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검사비용 연간 54.3억 원 발생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 및 교통안전 여건 개선

(사)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사유 확대,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기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전체 총수의 1/2 골조공사 완료 후로 분양 제한
- 개선** 공동주택 시행·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평균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간·수준에 따라 단계적 선분양 제한
- 효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선분양 제한에 따른 비용 연간 21.7억 원 증가
→ 신축 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 방지를 도모하여 입주민 피해 예방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 기존** 학제·취업구조 변화로 현장실습이 일반계고, 대학 등으로 보편화 되었는데도 재해보상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는 직업계고에 한정
- 개선**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모든 학생으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효과**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주의 보험부담금 연간 13.8억 원 증가
→ 현장실습생들의 사고 대비 안정망 강화

(자) 종편·보도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

- 기존** 방송광고 매출액의 1.0%
- 개선** 방송광고 매출액의 1.5%로 상향
- 효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분담금 연간 11.7억 원 증가 → 지상파와 종편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차) 의료기기관련 정보의 시스템 등록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기존**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등록·관리의무 없음
- 개선**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품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효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의 등록·관리 비용 연간 10.5억 원 발생
→ 의료기기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

(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을 의무화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 기존** 보장내용이 겹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고, 보험 이종납부의 부담함이 있음에도 실손보험 연계의무 부재
- 개선** 단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개인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시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
- 효과** 보험사의 시스템 개발 및 상품운영에 따른 비용 연간 10.5억 원 발생
→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이종부담 부당성을 해소

(2) Cost-Out 주요 사례

(가) 중요산업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 기존**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제한적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17.12.31.까지)
- 개선**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19.12.31.까지), 감면대상시설(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신설
- 효과** 중요산업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으로 231.5억원의 비용 감소
→ 부담금 감면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나)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공동사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기존** 한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조리장 공동 사용 가능
- 개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조리장 공동 사용 가능
- 효과** 조리장 공동사용으로 연간 83.2억원 비용 감소
→ 공동 조리장 사용 확대로 영업자 운영비용 부담 완화

(다)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존**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매출액) 2천억원, 상대회사 자산총액(매출액) 2백억원, 외국회사 포함인 경우 국내매출액 2백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
- 개선** 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매출액) 3천억원, 상대회사 자산총액(매출액) 3백억원, 외국회사 포함의 경우 국내 매출액 3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 주요 외국에 비해 신고대상 범위 넓고,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 신고대상 완화
- 효과** 기업결합 신고 비용 연간 5.1억원 절감 기대
→ 기업결합신고대상 축소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라)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확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용
- 개선**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시험운행 가능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확보 필요 지역
- 효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지정구역으로의 이동비용 4.8억 원 절감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제한 장벽해소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마)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요건 개선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 기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을 22㎡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개선**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22㎡이상) 폐지
- 효과** 연간 1.2억 원 비용 감소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바) 통신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에 대한 혜택 부재
- 개선**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에 기여한 통신사 부담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효과**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147.5억 원 절감 → 기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 유도

(사)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영업을 주택에서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기존** 영업 특성상 구매자와 직접접촉이 없고, 창고시설이 필요가 없는데도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도록 의무화
- 개선** 구매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 효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사무소 설치비용 -36.8억 원 절감
→ 영업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완화로 사업자 경영부담 해소

(아) 토목용 석재 사용을 위한 토석채취시 인력·장비기준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 기존** 풍력단지, 아파트 부지 터파기 시에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토목용 석재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토석채취사업장의 석재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이 적용
- 개선** 토목용 석재 사용시에는 일반적 토석채취사업장 장비·인력 기준 제외
- 효과** 토석채취사업자의 장비·인력 확보 비용 -27.5억 원 절감
→ 공사시 부수적인 토석 활용 제고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허용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
- 개선** 도서지역의 편의 도모와 원거리 교육에 따른 시간·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 효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교육·출장비 등 -8.1억 원 절감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편의성 제고

(차) 수입주류의 재활용 처분 허용
(관세청,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 기존** 수입주류의 폐기는 반드시 소각·매몰 처리
- 개선**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허용
- 효과** 주류수입업체의 폐기비용 -6.9억 원 절감
→ 영업비용 감소 및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호 기여

(카) 어업인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 기존** 어업인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2,000만원
- 개선** 3,000만원으로 확대
- 효과** 어업인 보증수수료 -1.9억 원 절감
→ 신용 부족한 초기 진입자의 영여자금 지원 확대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여

제5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집필자|

이용하 사무관(Tel. 044-200-2406, dufma@opm.go.kr)

제
3
장

1. 개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선해 가는 국민참여형 정보시스템으로, 규제관련 법령정보, 규제개선 건의, 정부 발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성과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의 규제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규제업무 내부 처리시스템인 규제정보화시스템(ri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의 처리현황 및 결과는 인터넷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은 ① 법령내의 규제정보 제공 ② 범정부적 규제혁신 주요과제 공개 ③ 규제심사 일정·심사결과·회의록, 규제혁신 보도자료·홍보자료,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등 공개 ④ 규제혁신 건의 및 결과 확인 등 국민의 규제혁신 정책 참여 및 소통 ⑤ 부처 규제혁신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 범정부적 규제정보 제공이며,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2. 2018년 개편 주요내용

새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에는 규제정보포털의 서비스를 개편하고, 각 부처와 규제정보를 공유·공개하는 등 정부의 규제혁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규제정보포털과 각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규제정보포털로 연결되도록 개선하고, 부처와 협업을 통해 규제 관련정보의 공유·공개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규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규제혁신과제, 홍보콘텐츠, 보도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부처별로 분류,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제공하여 동시에 공개되도록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이

법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현황 및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별 공개 기능 등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선 특, 보도자료 등 일부메뉴로만 운영해오던 모바일 규제정보포털(m.better.go.kr)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정보등록 시차가 없도록 개편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규제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 정부가 규제혁신의 역점분야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안내 및 신청메뉴를 신설하였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과 관련법령 추진현황 등을 알리고, 신청하려는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홈페이지와 연계하였다.

가. 규제혁신 뉴스와 주요메뉴 중심으로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 개편

기존의 규제정보포털이 5개의 대메뉴와 8개의 테마를 초기화면에 배치하여 새소식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규제혁신 실적과 홍보내용의 중첩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홍보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사례들은 알림마당으로 이동하고, 동영상·웹툰·인포그래픽·규제혁신톡 등으로 분산된 홍보자료 내용을 ‘규제혁신 특’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메뉴에서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새 정부 2년차에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안내 및 신청기능을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에 배치하여 국민과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 |



나. 규제정보포털 ⇄ 부처 홈페이지 규제정보 공유·공개

규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보도자료, 규제관련 법령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등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이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유되도록 하는 한편,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보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도록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용자는 부처 홈페이지나 규제정보포털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규제정보포털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이 연계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 규제포털 내 부처홈페이지 규제혁신 정보 링크 화면 |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

부처에서 추진, 관리하는 부처규제혁신 추진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종기부
국조실	방통위	인권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원안위	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부처규제혁신 사이트 바로가기](#)

- 규제혁신 과제현황
- 부처규제혁신**
- 부처별 보도자료
- 규제법령 정보
- 규제혁신 홍보자료

정부입법 규제법안

[금융위원회-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전체과제 | 제목 | |

전체: 29 건 진행중: 9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2 건 완료: 18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9	[창업 규제 혁신방안]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	2019-06-30	진행중
28	[창업 규제 혁신방안]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신용조회업 신설	2019-06-30	진행중
27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모집한도 확대	2019-06-30	진행중
26	[혁신성장 선도사업]	클라우드 활용 확대 위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	2019-01-31	완료

다. 규제혁신 과제 공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는 주제별로 메뉴를 신설하여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과제,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과제,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과제, 시장진입·영업규제혁신 과제, 창업 규제혁신방안 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과제,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 국회심의중인 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개하였다. 이용자는 해당 과제의 세부내용을 찾아보고, 필요시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은 소관부처 홈페이지에도 공유·공개 하여 이용자가 정부의 규제혁신 현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새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공개 화면 |

규제혁신과제

- 신산업규제혁파과제
-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 창업 규제 혁신방안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

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각자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
161건


진행중
39건


부분완료
6건


국회심의중
11건


완료
105건

제목 ▾

검색하기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161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 근절책 강화	2018-03-27	완료
160	수소충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 마련	2018-06-04	부분완료
159	통신판매(온라인)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2018-05-11	완료
158	첨단업종 확대 지정 건의	2018-05-11	완료
157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2018-05-11	진행중

라. 규제혁신 특 서비스 확대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례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규제전문 간행물 등 각 부처가 제작한 규제혁신 홍보콘텐츠와 콘텐츠로 제작되지 못한 규제 개선 전·후 사례를 Text 자료로 공개(규제개선 특)해 왔었다. 이를 개선하여 콘텐츠로 제작된 홍보자료와 Text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제공하도록 ‘규제개선 특’을 개선하여 규제개선의 효과나 내용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부처별 일일단위로 발생하는 규제관련 보도자료는 별도 메뉴(‘부처별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화된 서비스로 제공하였다.

| 규제혁신 특 - 부처 규제혁신 사례 홍보자료를 종합적으로 공개 |

규제혁신 특(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제목 검색하기

번호	제목	부처	게시일	조회수
5628	클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2019.01.24	39
5627	학원 및 교습소 폐원 절차 간소화	교육부	2019.01.24	157
5626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위원회	2019.01.24	23
5625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 자격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2019.01.24	44
562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인력의 자격기준 세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01.24	49
5623	KIPA뉴스레터 규제동향지(2018년 겨울호)	국무조정실	2019.01.24	117



KIPA뉴스레터 규제동향지(2018년 겨울호)
날짜 : 2019.01.24 조회 : 117

KIPA뉴스레터 규제동향지(2018년 가을호)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6 page
- 규제법령 제 개정 추진 동향 : 11 page
- 규제 단신 : 16 page
- 이슈 분석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류 규제 현황과 향후 과제 : 22 page
- 가짜뉴스, 공적 규제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 27 page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34 page
- 이슈 분석
- 미국 : 이민자 고용 관련 규정의 현대화 제안 : 45 page
- 영국 : 단계별 운전면허제도 : 50 page
- 일본 : 휴대폰 부당광고 표시 규제 강화 : 55 page

5622	소중한 내 자산 로봇이 관리해준다?	국무조정실	2019.01.24	67
------	---------------------	-------	------------	----

마. 규제 샌드박스 안내

규제 샌드박스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때 기존 규제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출시가 무산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대상 분야는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신제품(산업통상자원부),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이다.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에 ‘규제 샌드박스’ 메뉴를 신설하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개념, 기대효과, 관련법령, 정책추진현황 및 관련보도자료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직접 신청을 받는 부처 홈페이지를 안내하도록 기능을 신설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화면 |



바. 모바일 규제정보포털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규제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규제정보포털(m.better.go.kr)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그동안 규제혁신과제, 규제개선특 등 PC 버전의 일부내용만 서비스했던 모바일 규제정보포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스마트폰으로도 규제혁신 뉴스, 정책, 부처별 보도자료, 부처별 규제현황, 새정부 규제혁신 과제 현황, 도입중인 규제법령,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일정 및 규제심사 결과, 지난 20년간('98~'17)의 규제개혁백서 등을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였다.



3. 향후계획

행정규제기본법 등 변화하는 관련 법·규정 및 업무 변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업무시스템에 반영하고, 규제정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의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 집필자 |

이다은 사무관(Tel. 044-200-2429, leeda@opm.go.kr)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만 해당된다.

|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해왔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9월, 규제등록제도의 전면개편을 실시하였다. 우선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했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특히,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수요자별 관심분야에 대한 등록규제 조회가 용이하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생활규제 정보(필요한 조치 및 구비 서류, 절차,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사전 준비 → 점포 준비 → 영업시설 등 설치 → 위생 관리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사업의 등록’과 같이 절차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3. 2018년 개편내용

2018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개정(‘18.3.1. 시행)으로 인해 부처의 규제등록 승인요청 및 국무조정실의 승인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등록체계가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법령 제·개정 시, 소관 부처가 등록 대상 규제조문에 대한 규제등록카드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국무조정실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요청된 규제등록카드의 내용(규제명, 규제내용, 상·하위 법령 연계 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하였고, 국무조정실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해당 규제의 내용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며 규제 등록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제·개정 법령의 소관부처가 규제등록 승인을 요청하고 국무조정실이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각 부처가 규제등록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규제등록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규제개혁평가에 ‘규제등록카드 충실작성비율’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책임있게 규제등록 내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 7 절

적극행정 지원

| 집필자

김월중 사무관(Tel. 044-200-2431, kimwj73@opm.go.kr)

1. 추진배경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정의된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실질적인 행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기업인 등의 규제혁신 체감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식과 행태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감사원,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2. 기관별 주요 적극행정 제도 현황

’09년도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이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여러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 기관별 적극행정제도 운영현황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09년) 및 사전컨설팅제도 운영(’18.12월),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설·운영(’19.2월~)

▶(적극행정 면책)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09년 도입(감사원 훈령), ’15년 감사원법(감사원감사) 및 공공감사법(자체감사)으로 법제화
- ’18.12월 면책요건 중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요건 완화*(감사원 규칙 개정)

* (중전)△필요한 정보 충분 검토 △법정 필수 행정절차 이행 △필요한 결재 절차 이행 요구
→ (개정)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기준 완화

▶ (사전컨설팅제도) 감사원 또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 충족 추정('18.12월 도입)

○(행정안전부)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제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 '14년 경기도 최초 도입, '16년부터 전 지자체 운영 중 (「지자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규정」)

**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근속승진 선발기간 1년 단축 등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제도, 우수사례 선발·포상*, 공무원교육·홍보** 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16~), 우수기관 포상(최우수상-대통령표창)

**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16~), 중앙·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16~)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시행 중('18.8월~, 법제처)

* △ 적극적 법령해석 △ 신산업 자율보장 방안 △ 하위법령 규정 가능분야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즈만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운영,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정책 (보호·서비스 현장 등) 운영**('13~)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회부시 중소기업부즈만이 징계권자에게 징계감면 건의(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 기업민원(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중앙 15개, 지자체 243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인용재결 결과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및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제도 운영 중

*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시까지 배상 명령('17.4월 행정심판법 개정)

○(국무조정실) 적극적인 규제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규제혁신)시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 신산업 T/F 등 운영

** 국조실·법제처 합동으로 인허가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 방지를 위해 인허가·협의·신고수리 간주제 도입('16~)

3. 2018년도 주요 개선내용

가. 감사원 감사운영 개선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8.2.20.에 발표하였다. 감사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 감사 수행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을 전담·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2개과, 1개팀) 신설
 - * 감사를 수행한 사람이 면책도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 면책결정의 객관성 제고
- ② 적극행정면책 처리 프로세스 전면 개선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면책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하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여 감사결과 처리
 - 감사현장부터 감사처리 전 단계에 걸쳐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 활성화
 - 면책 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책결정 기한(신청일로부터 자문위 심의까지 30일)을 규정하고,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검토·처리단계 안내하는 한편 면책 검토사안은 면책결과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
- ③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자제
 - 4차 산업분야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 감사 자제
- ④ 감사운영협의회 구성 등 소통 강화
 - 감사원 주관으로 주요 정부부처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감사원-정부간 공식 소통채널(가칭 감사운영협의회) 마련을 검토, 감사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 또는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

감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18. 2월 감사원 내에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인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였고,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현장면책”제도도 신설·운영하였다. 또 중앙부처들과 감사원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적극행정지원협의회”를 출범하여 적극행정 지원방안 및 부처간 협의사안에 대해 논의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로 「감사원법」 제34조의3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09년에 감사원 훈령으로 도입되었고, '15년에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면책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18년 12월 13일 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감사원 감사에 대한 면책기준을 간소화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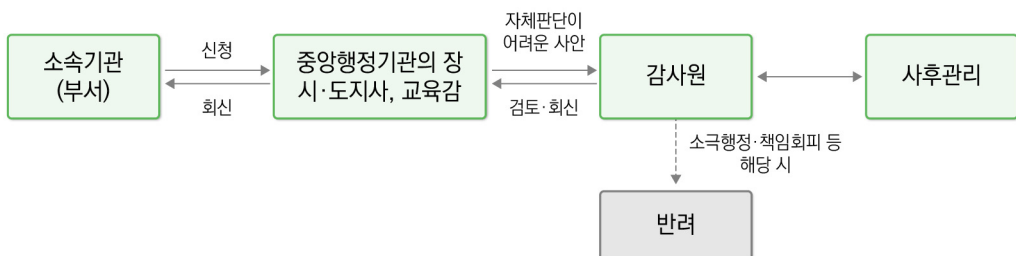
| 적극행정면책 기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개선(감사원규칙 제5조, 제6조) |

기 존	개 선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④ 필요한 결재절차를 거쳤을 것	

다.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14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제정('16.4월)되면서 전 지자체에 확산되었으며, 환경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도입·운영해 왔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는 도입이 되지 않아 효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18.12월 감사원 규칙 개정으로 감사원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체계 |



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그동안 법령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8.8.28. 국무회의 보고·확정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적극적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
- ② 선도 산업과 관련해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도록 기준을 마련
- ③ 포상금의 지급근거,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시범사업의 실시 또는 우수 사례의 보급 및 확산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무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제시

4. 향후계획

'19년도에는 기존제도를 내실화하고 추가적인 대책 발굴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고의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불이익 처분으로 소극행정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이다은 사무관(Tel. 044-200-2429, leeda@opm.go.kr)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려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정책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고, 다자 또는 양자 간 접촉을 통해 선진국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첫 평가인 2015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34개 회원국 중 상위권(분야별로 3~6위)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e-규제영향분석,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제11차 APEC-OECD GRPN(8월), 제4차 ASEAN-OECD GRPN(10월), 제19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11월) 등 규제정책 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였다.

2. 2018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가. 개요

OECD는 2018년 10월 10일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포함한 「OECD 규제정책전망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첫 평가인 2015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상위권(3~6위)으로 평가되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마다 ‘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률 및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①이해관계자 참여, ②규제영향분석, ③사후평가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해당 세 분야는 OECD가 2012년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OECD는 분야별 순위와 함께 2015년 이후 34개(일부 분야만 평가대상이 된 미국을 포함할 경우 35개국) 회원국의 주요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e-규제영향분석 도입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 내용

분 야		'18년	'15년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4위	9위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6위	15위	
규제영향분석	법률	3위	13위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4위	12위	
사후평가	법률	3위	13위	규제일몰제, 기존규제 정비 등
	하위법령	3위	14위	

(1) 이해관계자 참여

OECD는 규제 입안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4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6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가(한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규제법안 입안 시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2) 규제영향분석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안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도록 하여 규제도입 여부와 수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총평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3) 사후평가

OECD는 모든 규제가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며, 그 영향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기존규제의 적합성 검토·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3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사후평가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이며, 2015년 평가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가 미미하나 일부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는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특정 분야의 기존규제 심층검토 및 정비, △규제일몰제 실시,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국제회의의 참석

가. 제11차 APEC-OECD GRPN

제11차 APEC-OECD GRPN은 8월 12~13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개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참여 제고 방안, 국제규제협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여러 분야의 융합이 일어나는 신산업의 특성상 여러 규제기관 간의 조정이 중요하며,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규제당국은 신산업이 공공에 끼치는 피해나 기존 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투명성·참여와 관련하여, 규제당국은 공공에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디지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의견수렴을 위한 포털(regulations.gov)과 멕시코의 의견수렴과정 개선 사례가 발표되었다.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하여, OECD는 국제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모범규제관행에 따르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며, 양자 간 공식적 협정 체결, 무역협정 체결 시 규제관련 조항 포함 등으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 규제정책전망 연구결과, OECD 회원국에서도 명문화된 국제규제협력 규정이 없거나, 국제규제협력을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 국제규제협력이 미성숙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나. 제4차 ASEAN-OECD GRPN

제4차 ASEAN-OECD GRPN은 10월 9일~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주관 워크숍과 말레이시아 정부-OECD 주관 컨벤션이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동 세션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은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8년 4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실질적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법제화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추진중임을 소개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OECD 주관 컨벤션에서 한국 대표단은 모범규제관행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의 한국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몰제·규제비용총량제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다. 제19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11월 28일~29일 이틀간 열린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신기술 관련 규제, 모범관행원칙, 행동과학의 적용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10월 발표된 2018 OECD 규제정책전망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규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보 책자와 팸플릿을 배포하였다.

회원국들은 전환적 기술의 규제와 관련하여, 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기술 발전속도 및 자연독점적 요소, 사업모델 변화, 윤리적 요소, 정보보안 등을 고려한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OECD는 모범관행원칙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 OECD가 마련하는 다양한 모범관행원칙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한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법률을 재검토하는 성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평가 분야에서 모범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각 국의 공공정책에 행동과학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OECD는 정책결정자들이 행동과학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툴킷 초안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행동(Behavior), 분석(Analysis), 전략(Strategy), 개입(Intervention), 변화(Change) 등 5개 단계(BASIC 체계) 및 주목(Attention), 신념형성(Belief), 선택(Choice), 결정(Decision) 등 인간의 행동분석을 위한 4가지 검토요소(ABCD 체계)가 제시되었다.



2018 REGULATORY REFORM BOOK



PART

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제5절 농림·산림 분야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제7절 노동·환경 분야

제8절 교육·문화 분야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 1 절

개요

| 집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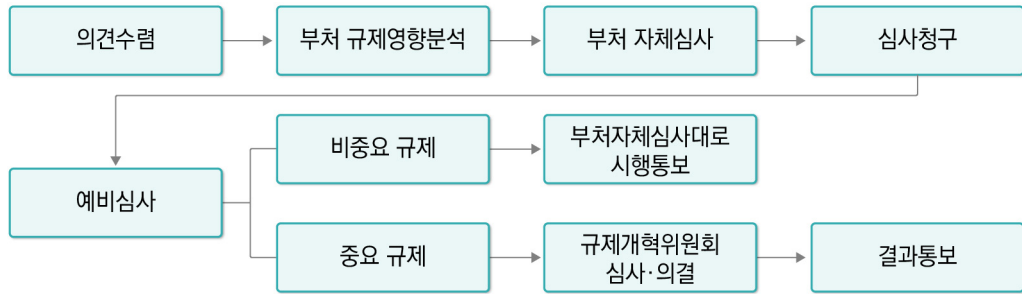
주민규 사무관(Tel. 044-200-2414, mk.j@opm.go.kr)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11조)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는 예비심사로 심사를 종결(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개위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동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2018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분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083건(중요규제 54건, 비중요규제 1,029건)을 심사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14건에 대해 부대권고를 설정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였다.

'18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8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기 획 재 정 부	6	9	8	1	0	1	0	0
금 용 위 원 회	37	92	86	6	2	3	0	1
금 용 감 독 원	15	15	15	0	0	0	0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7	18	8	10	0	2	1	7
관 세 청	6	8	8	0	0	0	0	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31	54	53	1	0	0	1	0
중 소 벤 처 기 업 부	4	10	9	1	0	0	0	1
국 토 교 통 부	97	155	150	5	0	0	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	2	0	0	0	0	0
해 양 수 산 부	52	94	93	1	0	1	0	0
농 립 축 산 식 품 부	11	23	23	0	0	0	0	0
산 림 청	11	37	34	3	0	1	0	2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8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농 촌 진 흥 청	3	3	3	0	0	0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40	37	3	0	0	0	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6	7	6	1	0	0	0	1
고 용 노 동 부	23	46	43	3	1	2	0	0
환 경 부	63	145	143	2	0	1	1	0
기 상 청	1	1	1	0	0	0	0	0
교 육 부	19	29	29	0	0	0	0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2	18	18	0	0	0	0	0
문 화 재 청	3	5	5	0	0	0	0	0
보 건 복 지 부	29	41	41	0	0	0	0	0
여 성 가 족 부	1	1	1	0	0	0	0	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61	109	107	2	0	1	0	1
외 교 부	1	1	1	0	0	0	0	0
통 일 부	2	2	2	0	0	0	0	0
국 가 보 훈 처	5	25	10	15	0	0	10	5
행 정 안 전 부	18	67	67	0	0	0	0	0
법 무 부	5	5	5	0	0	0	0	0
인 사 혁 신 처	2	2	2	0	0	0	0	0
경 찰 청	2	6	6	0	0	0	0	0
소 방 청	9	12	12	0	0	0	0	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	1	1	0	0	0	0	0
계	572	1,083	1,029	54	3	12	14	25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제 4 장

1. 기획재정부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주세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관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관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8.09.2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8	신설 5, 강화 4 (중요 1, 비중요 8)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주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출고량 기준 신설 **신설**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요건에 출고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
 - 탁주, 약주, 청주 : 300kl 미만
 - 맥주 : 3,000kl 미만

심사결과 일반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간 구분을 위해 출고량 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설되는 출고량 기준은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 근거하여 주종별로 이론상 가능한 연간 최고 출고량을 산출,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것으로, 최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량 현황을 감안할 때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님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외국환 거래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제출 **신설**

-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경우 매 분기별로 환전장부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이행보증금 예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전장부를 제출받아 검증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반 환전영업자(매 반기별 제출)에 비해 제출 주기가 다소 짧으나 (매 분기별 제출)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반 환전영업자와 달리 전산보고가 가능하여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경미하고, 원활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산정 근거 제출 주기(매 분기)와 환전장부 제출 주기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및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업무범위, 업무방식 등을 규정

구분	규제 내용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영업을 신규업종으로 도입하고, 업무범위 및 업무방식 등에 대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불 이하 거래만 허용 - (고객지원센터 운영) 고객지원센터 운영 의무화

구분	규제 내용
온라인 환전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환전영업을 신규업종으로 도입하고, 업무범위 및 업무방식 등에 대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확인) 고객에게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하여 확인하도록 규정 (거래금액) 동일자, 동일인 기준 2천불 이하 거래 허용 (소비자보호) 약관 명시, 손해배상절차 마련, (이행보증금 예탁 등) 결제대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금 예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의무 부과

심사결과 신규 도입되는 서비스업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대면 방식에 기반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이용자 보호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유사업종인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의 규제도 아님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신용공여한도 축소 **강화**

-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80%에서 50%로 축소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에서 40%로 축소

심사결과 특정 산업·기업 앞 여신집중 방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 여신지원 여력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도입은 수출입은행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의 신용공여한도가 타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관세사법 (신설 2)

심사내용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 **신설**

- 관세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과
- 관세사회가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에게는 일정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을 법상 의무가 부과되나, 관세사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관세사회 회칙에만 명시되어 있고 최근 교육 참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로,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도 관세사회가 자발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관세사회에 대한 연수규칙 제정 의무가 과도한 부담은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 **신설**

- 관세사에게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관세사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법상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관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관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유사 직종인 변리사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해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을 공개하고 있어 정보공개 의무가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님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관세법 (강화 1)

심사내용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신설 및 강화

사유	현행	개정안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시	규정 없음	사업장 폐쇄
운영인의 결격사유 발생시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 (6개월 범위 내)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한 경우	규정 없음	

심사결과

종합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보세 구역에 대한 관세법상 행정제재 수준이 특허보세구역에 비해 낮거나 미비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강화된 행정제재는 유사사례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수준이며, 신고제도를 입안한 많은 타 법에서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해서는 법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폐쇄 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심사내용**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 확대 **강화**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발주 전문공사등의 범위를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심사결과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 제한적인 규제에 해당하고, 경쟁영향평가 결과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동 규제는 진입제한규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중소·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및 낙찰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인정되고, 중소·지역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최근의 여건 및 건설공사비·물가 등 변화한 업계 여건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되, 3년 주기의 일몰조항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그리고 재검토시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 시 입찰제한 강화 **강화**

-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인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2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최소기간인 1개월에 불과하여 실효성 확보에 역부족인 점,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계획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시행규칙 내 유사 사례 및 타법 내 동일 사례와 제재수준이 비슷하여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현재 운용되는 제도에 대해 기준만을 조정하는 사안이므로 집행상 별다른 문제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금융위원회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공대희 전문위원(Tel. 044-200-2413, dhgong@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총 3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2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8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8.07.04.)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강화 5 (중요 3,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8.06.27.)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0	강화 12 (중요 2, 비중요 10)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1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8.10.05.)	원안의결 11	신설 7, 강화 4 (중요 1, 비중요 10)
(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계	-	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87	신설 39, 강화 53 (중요 6, 비중요 86)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은행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의 LTV·DTI를 감독규정에 반영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도 대출 규제비율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규제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규제는 이미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비율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 행정지도의 규정화에 따른 위규 대출금액이 4.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규제 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험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의 LTV·DTI를 감독규정에 반영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도 대출 규제비율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규제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규제는 이미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비율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 행정지도의 규정화에 따른 위규 대출금액이 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규제 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의 LTV·DTI를 감독규정에 반영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도 대출 규제비율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규제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규제는 이미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비율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 행정지도의 규정화에 따른 위규 대출금액이 1.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규제 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의 LTV·DTI를 감독규정에 반영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도 대출 규제비율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규제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규제는 이미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비율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 행정지도의 규정화에 따른 위규 대출금액이 6.6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규제 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의 LTV·DTI를 감독규정에 반영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도 대출 규제비율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규제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규제는 이미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비율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동 행정지도의 규정화에 따른 위규 대출금액이 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규제 비용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고객에 신원에 관한 사항 강화

-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

심사결과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인 대표자의 성명 수집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실지명의의 수집이 필요함. 법인 고객 확인 강화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며, 추가적인 감독 인력 및 비용도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강화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등 부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면제규정 삭제

심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는 동안 국내외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제정 당시의 면제조항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의무부과대상 금융회사와 면제대상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가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통제의무 차등화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과태료 가중·감면 근거 마련 및 위반 사유별 상한 설정

심사결과 과태료 최대 상한(1천만원) 이내에서 객관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이 없고, 해외 및 타법 사례에 비추어 부과한도도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강화**

-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①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②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③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지배구조법 체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사항을 규율하여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등 주요국도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실시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이 미미(회사당 연간 0.6백만원)하고, 금감원 내 기존 감독·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이행상황 점검이 가능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2)

심사내용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신설**

- 우리나라와 교차판매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간소한 등록절차를 거쳐 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등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참여 및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양해각서의 공통규범에는 패스포트 등록과 관련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패스포트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펀드 교차판매를 희망하는 자산운용사·펀드는 국가 간 양해각서의 공통규범인 감독당국에의 등록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패스포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펀드에 한해 감독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해외 사례 및 절차·비용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신설**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국내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감독당국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가 가능

심사결과 패스포트 펀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을 유지할 경우 국가간 양해각서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국가 간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취소 제도가 필요함.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펀드시장 통합을 위해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우리나라 및 자산운용업계 신인도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연체이자율 강화

-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12%에서 3%로 인하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심사결과 현재 은행권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 +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6~9%)’로 약 9~14% 수준(최대 15%)으로 운영 중.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주요국 연체 가산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연체 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하여 연체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KDI는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 비용이 3%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번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3%로 조정하는 것은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관리비용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신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업무기준을 마련

- ①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 및 취소(해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②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분리구매와 동시 구매시 보험계약 주요내용의 차이(보험료, 보험금 지급, 보장범위) 등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
- ③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시에도, 보험사 또는 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 서면, SNS, 온라인 클릭 등을 통해 보험가입 전에 안내하도록 의무 부과
- ④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서만 보험을 모집하거나 피보험자 단체를 구성

심사결과 현행 보험업 법령은 보험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간단보험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측면이 다소 미흡함.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단체보험 등 새로운 판매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보험인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의무를 최소화하여 마련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므로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없고,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 소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 강화

-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하여 설명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중 별도의 보험계약 가능, ②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 등을 추가

*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류 및 명칭,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심사결과 재화 또는 용역 구매절차와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밀접하게 연계된 간단손해보험의 특성상 판매자가 보험이 구매와 필수적 연계사항인 것으로 설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가입단계에서 통지의무를 설명받지 못해 위험 변경 및 증가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 등의 중요 설명의무 사항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보험회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지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데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 강화

-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기존 실손의료보험 외에 건강원장이 정하는 기타 실손보험도 포함하도록 확대

심사결과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장이 동일한 손해보험에 중복가입하여도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동 규제는 보험상품의 표준화 수준, 시스템을 통한 일괄적 중복계약 체결여부 조회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한 것이며, 보험업계에서도 수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보험회사에게는 실손의료보험에 더해 기타손해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1.3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중복조회

의무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보험료(연간 최대 48억원)가 이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5)

심사내용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 강화 **강화**

-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기존업자에게는 유예기간 3년 부여)

심사결과 진입제한성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평가에서 현행수준 유지를 권고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논의 결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제도권 이탈 및 이에 따른 음성적 추심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은 강화하되 자기자본 증가 폭을 축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강화**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대상*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인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추가(공포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

*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만 대상이며, 동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사무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173억원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가 3~4명 이내의 상근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감시인 1명을 의무고용토록 요구하는 것은 규제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논의결과 불법 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대형 대부업체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영세 매입채권추심업체에게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이에 점진적인 확대 적용을 위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대상이 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자산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확대 **강화**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심사결과 대부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적,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형 대부업체 기준인 자산규모를 20억원 하향 조정(120억원 → 100억원)하는 것은 대부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강화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체가 3개에 불과하고, 등록 의무도 6개월간 유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부업자의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축소 **강화**

- 대부업자가 만 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차주에 대출시, 대출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파악 면제
 - * 대부업자는 대출시 차주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현재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음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평가에서 청년·노년층에 대한 소액대출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면제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상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방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년·노령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 접근가능성을 제한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단계적 조정이 바람직한 바, 대부업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자 소득·재산 및 부채 확인 의무 면제 금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강화**

-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이내에서 최대 4%이내로 하향 조정

심사결과 최고금리 인하, TV광고규제('15.8월)에 따른 대부중개규모 큰 폭 증가 등 그간의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대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그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정도를 감안하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2%p 정도를 인하해야 하나 1%p 하향 조정에 그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아울러 대형 대부업체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개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어 동 규제에 따른 직접적 영향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강화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감독당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자본시장법」 상 외국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등록취소사유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만 명시되어 있어, 위의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절대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며, 타법 사례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의 보고 의무 신설

- 창업·벤처 PEF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에게 운용현황 등을 금융위원회 및 중기부에 각각 보고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창업·벤처기업 투자 전문 PEF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실효성있게 지속·발전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창업·벤처 PEF 운용현황 등이 금융위원회와 동일하게 보고될 필요가 있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창업·벤처 PEF를 설립·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미 의무화된 사항을 중기부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추가적 부담이 경미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공시 등 신설

-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보상 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심사결과

현재와 같이 다수의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정보제공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하여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기관의 고의가 없더라도 사소한 과실로 인한 공시정보 오류가 투자자 피해의 원인이 될 소지도 있는바, 펀드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하여 업계 자율로 공시 중인 펀드매니저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자율규제를 통해

공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강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유지할 경우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 발생할 소지도 있음.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중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은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 **강화**

○ 자기자본 유지요건은 매 월말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시 6개월까지만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수시(매월)로 확인하여 부실 업자를 포착·신속하게 퇴출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여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유지요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 규제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확인 기간을 1년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적자누적 등으로 인한 자본잠식 업체를 조기에 포착·퇴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 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 **강화**

○ 자기자본 유지요건은 매 월말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시 6개월까지만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향후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및 퇴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낮추고 PEF GP 등록시 자기자본 추가 보유(add-on) 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부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월간 매매명세 통지** **신설**

-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월간 매매내역 등에 더해 ① 세금·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수익률, ②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금액 등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 다만, 통지수령 거부 고객, ETF·MMF·사모펀드 투자자에게는 통지 생략 가능

심사결과 펀드 수수료·운용보수 및 세금 등 모든 비용과 이를 반영한 실질 투자수익률 등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투자자와 금융회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의 내역 및 평가금액에 대한 명세를 매월 제공하고 있어 수수료·세금 및 실질투자수익률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특별히 과도한 규제라 보기 어려우며, 통지 생략가능 투자자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데다 최근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간편하게 통지가 가능하여 추가적 부담이 경미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 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순차적 선임 방법 및 후보군 반영 기준, 이사회 인적 구성의 다양성 평가기준
- ②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가동 사유 및 자격 구체화
- ③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직원의 최소근속기간·신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방지 등

심사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선출시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 강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사항을 법령에 직접 구체화하는 대신 금융회사가 자체 내규를 통해 실정에 맞게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점,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금융투자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 **강화**

-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연간 판매규모의 25% 이내로 제한(단, MMF, 사모펀드 + 상장(지수)펀드, 경영참여형 PEF, 판매사 이동펀드, 추천펀드, 최우수등급펀드, 온라인펀드, 클린클래스 펀드는 비율 산정 시 제외)

* (현행)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50% 이내로 제한(단, MMF, 사모펀드는 비율 산정 시 제외)

심사결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 펀드 편입 제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현행 계열사 펀드 편입 한도 50%를 25%로 하향조정하나 연 5%씩 단계적으로 낮추고,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펀드를 추가하여 펀드 판매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권의 경우 계열사 위주 보험판매 제한을 위해 은행, 증권사 등이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25%률을 이미 적용하고 있어 타 업권과 비교시 특별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강화 12)

심사내용 이사회 구성 **강화**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이 일시에 도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의무화
- 이사회 구성 시 금융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의 균형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후보 추천 시 후보자가 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주주총회에 제공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의 임기만료가 특정 시점에 치우칠 경우 경영의 원활한 연속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금융회사 실정에 익숙한 선임 사외이사가 신입 사외이사를 이끌어 경영진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견제 기능이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 추천시 금융,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의 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주주총회에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무의 경우 금융회사가 특정 이사회에서 모든 사외이사를 교체하지만 않으면 준수가능하므로 규제수준이 높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의무의 경우에도 정형화된 경력 요건 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후보자가 회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명시하기만 하면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강화**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못함
-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 적용
-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

심사결과 현행법상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 이상 재직”하는 것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누적 재임기간은 제한없음. 그러나 동일인인 한 회사에서 감사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경영진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금융회사가 감사위원 임기를 1년씩 갱신시킴으로써 감사위원이 임기연장을 위해 경영진에 순응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의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사위원 선임 및 임기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는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수범 부담을 고려하여 은행, 금융지주 및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2금융권 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명확화

심사결과

임원 선임 내역의 공시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누가 선임되었는지 시장에 널리 알림으로써 시장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도 금융회사의 업무건전성을 감시하는 핵심적 직무를 수행하므로, 비록 그 직책이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경우에도 선임 사실을 공시하여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들이 이미 모든 임원의 선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직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내역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며, 동 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17.11월)」 제안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운용자산 5천억원 미만의 투자일임·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조직에 대한 통할 권한을 법상 명확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상시감사 업무를 책임지는 집행임원인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의 의무화

심사결과

내부감사 조직의 보고체계가 감사위원회 직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부감사 결과 등을 경영진에 先보고 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감사업무 담당직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고 인사권이 CEO에게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비상근인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내부감사 업무의 범위와 강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가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감사조직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조직의 규모 및 편제 등을 직접 규율하는 대신, 선언적 의무만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하며, 내부감사조직의 업무를 관할하는 상시 임원으로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미등기임원인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면 되도록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관리기준 강화

- 위험관리기준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에게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임원으로 하여금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준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투명 경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편익이 매우 크고, 규제 수단으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CEO 등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등 피규제자의 수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형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의 결격요건 조정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원자격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

형의 종류	현행 임원자격 결격기간	개정안
금융법 위반 벌금형	형집행 종료 후 5년	벌금형 선고 후 5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종료시까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후 3년
금고 이상 실형	형집행 종료 후 5년	현행과 동일

-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 금융회사의 CEO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time commitment) 등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선언적 의무 부과

심사결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자 간에 형벌의 종류에 따른 임원의 결격기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이 보다 경미한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 이에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상응하여 임원 자격 결격기간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형의 종류별 임원의 결격기간을 형의 경중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은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CEO의 금융전문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한 것도 선언적 의무에 불과하고, 외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의한 CEO 임명 사전승인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강화**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
-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 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 대규모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

심사결과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를 경영성과에 연동시킬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금융회사 임원의 장기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보수의 일정부분을 장기성과급 형태로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직무 성격에 따른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고액연봉에 부합하는 경영성과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수지급 연차보고서 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심의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독립적 보수체계 의무화는 현행 법률(§25⑥)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체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이며, 고액 성과급자 보수 공시 확대는 현행 개별보수 공시 기준과 권역별 고액 성과급자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현재보다 공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등기임원 보상계획의 주주총회 심의는 소액주주가 많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며 심의만 받도록 할 뿐 구속력이 없어 규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강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등록업과 동일하게 대주주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심사결과

동 법 적용대상 금융업 중 등록업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후보고가 원칙이나, '15.7월에 신설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보고 의무가 미비한 상황. 또한 동 법 시행령 제정('16.7월)시 상기 2개 등록업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법 제31조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대주주 변경 보고 제도 자체가 미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상기 2개 등록업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규제 일관성 등을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별도의 제약 없이 대주주 변경이 가능하고 사후보고 서식이 단순하며 보고 기한도 2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강화

- 금융회사 임추위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현재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의무화)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금융회사의 CEO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CEO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대표이사 참여를 금지하고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CEO의 이사회 내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됨. 임추위 1/3은 사내이사로 구성할 수 있어 금융회사 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조화로운 임추위 구성이 가능하며, 동 규제도 CEO의 권리는 제약되지만 주주·사외이사의 권리가 확대되고, 소규모 금융회사 수범 부담을 고려하여 은행, 금융지주 및 자산규모가 큰 2금융권 회사에만 적용되며, CEO의 임추위 참여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추천위 참여만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강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는 방식으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올 때까지 선정)
 - (개정) 최대주주 전체 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②
 - ① **최다출자자 1인 +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다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도 포함)
 - ② **주요주주 중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선임

-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심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이 되는 중범죄 기준을 신설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심사결과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제고 및 이를 통한 경영건전성 개선 등을 위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의결권 제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여타 법령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로 의결.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금융업권에서 타법 및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시간·비용·인원 투입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논의 결과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동 제도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며,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권고**

심사내용 내부통제기준 강화

- 내부통제기준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대표이사,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준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 경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편익이 매우 큰 반면, 규제 수단으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내부통제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CEO 및 준법감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등 피규제자의 수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 최대주주의 상근 임직원인 자에 더해 일반 대주주의 상근 임직원인 자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강화
- 사외이사 연임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의 사외이사 평가 수행 및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심사결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는 대주주·경영진 견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도 인정됨.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업권 및 참여연대 등에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논의 결과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동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 중 외부평가 의무화는 현재 국내에 사외이사 외부평가를 내실있게 시행할 수 있는 평가 인프라가 부재하며,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철회권고**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 **강화**

-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15.7.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기존의 미등록단말기는 법정 기한 '18.7.20일까지 교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가맹점에 계속해서 IC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 동 규제는 등록단말기 설치·이용 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단말기 교체에 대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과태료(500만원) 대비 단말기 교체비용(약 15만원)이 크지 않은 점, 그간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강화**

-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등록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함. 부가통신업자에 대해 카드 가맹점의 IC등록단말기 교체·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등록의무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등록단말기 설치·이용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법령상 의무 준수 유인을 제고하고, 부가통신업자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며, 3년간의 단말기 교체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500만원) 징수 및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기술사업의 범위 규정** **신설**

-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
- ① 원칙적으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은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허용

|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례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P2P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상담서비스, 손해사정 등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자적 방식 주거지역 관리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

- ② 신기술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

심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8.2월)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포괄식(negative)으로 변경됨. 개정 법률에서는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기술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에도 신기술금융 투·융자 대상이 아니었던 유흥·사행성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타법 사례 등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 **강화**

-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추가

심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9제1항제3호)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신용등급 하락)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동 시행령에 규정하여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는 상품광고 시 경고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데다, 동 규제는 경고문구 내용을 표준화하는 데 불과하므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 **강화**

-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
 - (현행) 선불카드 + 상품권 ≤ 100만원
 - (개선)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 100만원

심사결과 선불카드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결제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불카드 및 상품권과 성격이 동일한 점, 유사 위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구매한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음.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월 구매한도에 포함시키는 업무는 가맹점 전산코드를 전산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으로 카드회사의 부담은 크지 않으며, 상품권 및 선불카드와 같이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 소요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규제 대상 조정 **강화**

-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타 대출은 100%)

심사결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대출한도 규제 대상을 가계대출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대출인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은 형식적으로는 기업대출에 해당하나 대부업자는 동 재원을 거의 모두 가계대출로 활용한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한도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여타 대출은 100%)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가계대출 한도규제를 완화하는 점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신설**

- 대부업자가 자회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수준으로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을 의무화

심사결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직접 설립·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의무화는 자회사 등을 이용한 우회진입을 통해 대주주가 되는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이용자가 대부분 저신용·저소득자인 데다, 이들 업체의 재무건전성도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우회진입을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직·간접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요건을 대주주 지위 취득시부터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는 보기 어려운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출 광고 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 사항 규정 **신설**

- 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 중 하나인 광고 내용에 신용등급 하락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대출 이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의 업계 자율로 광고 시 포함해야할 내용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고 문구를 구체화 하는 것에 불과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심사요건 강화 **신설**

-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현재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출자지분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까지 확대

심사결과 특수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 등은 저축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권과 달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저축은행은 지분소유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바, 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법령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신설**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1조에 따른 제재기준 구체화

- **(검사원의 권한)** 자료·물건 등의 제출요구, 금고·장부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요구 등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일부정지 요구(6개월 이내), 기관경고, 기관주의
 -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재차 법규 위반시 제재 1단계 가중
- **(임원에 대한 제재)** 해임권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최근 3년 이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 주의적 경고를 받고도 재차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 1단계 가중
- **(직원에 대한 제재)** 면직, 정직(6개월 이내), 감봉, 견책, 주의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제재를 받고도 재차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 1단계 가중
-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 준용

심사결과 총 10개 검사수탁기관이 동일 위법사유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함으로써 제재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제재종류 및 사유에 비해 규제강도가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 소액공모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손해배상책임은 발행인(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회사 등이 지며, 책임 없음을 입증하면 이를 면제함

심사결과 10억원 이상 뿐만 아니라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시에도 제출하는 공시서류에 허위기재·누락이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현재 소액공모보다 발행한도가 낮은 크라우드펀딩(연 7억원)에 대해서도 공시서류에 손해배상책임(법 제117조의12)이 부과되어 있는 점, 미국의 경우에도

기회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세청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소액공모 시 모집설명서 등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신용협동조합법 (신설 1)

심사내용 조합의 타 법인(사회적기업 등) 출자근거 마련 **신설**

-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함

심사결과 종전에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농·수·산림조합법」에서도 출자의 한도를 금번 개정안과 같이 자기자본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의 경우에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출자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타 법과 규제수준이 유사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평가서 통보 **신설**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 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

*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심사결과 현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나, 동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워 투자자 보호가 다소 미흡해질 소지가 있음. 또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폐지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였는 바, 동 개정안과 같이 규정화하여 평가능력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장외파생상품 거래평가서를 투자자에게 월 1회 발송함에 있어 비용이 수반될 수 있겠으나, 그 비용이 미미(연간 1.7억원)한 데 비해 투자자 보호의 규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의 월간 매매 및 손익 내역, 잔액 등을 통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외파생상품 평가 통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히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ARS 행정지도 정비 **신설**

- ARS를 판매·운용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 방법 및 절차, 투자자에 대한 ARS 관련 정보 제공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ARS는 투자자문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와 연동이 되므로 지수산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ARS 상품에 대해 기초자산의 산출 및 투자자 정보제공 사항 등을 내부통제제도에 포함하도록 규정화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대부분의 ARS 발행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지침 등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정비 **강화**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

- ① 상환우선주와 후순위차입금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만기 5년 이상 외에 “중도 상환 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② 자본증권의 보완자본 인정 요건* 및 한도**를 신설하고, 발행 및 상환시의 신고·보고를 의무화
 - * 만기 5년 이상, 중도상환 불가, 파산 시 타 채무 우선변제 등
 - **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또는 차감제외)되는 상환우선주, 후순위차입금과 합산한 금액이 순재산액의 50% 이내
-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B)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그에 따른 운영위험을 추가 반영

심사결과 현 제도는 영업용순자본이 부채와 자본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후순위차입금, 자본증권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비율은 과다 평가되는 한계를 가짐.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자본규제 비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 시행 시 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를 통한 자금조달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4)**심사내용** 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 **신설**

- 금융회사 등은 중요지표 산출 중단에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금융거래 시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및 비상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심사결과 중요지표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 등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융회사 등이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상품 매매시 중요지표에 대해 자율적으로 설명토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목적과 해외 및 유사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설명항목이 추가되더라도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록 및 산출업무 수행 시 의무 **신설**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이를 공시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의무

심사결과 현재 자율적 규정에 따라 산출·공시되고 있는 지표의 경우 중요지표 오류 및 조작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규율할 근거가 없어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음. 금융시장의 중요도가 큰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출과정에 대한 규율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감독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거래지표 산출기관의 등록요건, 산출업무 수행 시 행위준칙 규정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기여라는 규제 목적에 부합함. 기존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업무 수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되는 비용은 크지 않은 수준(연간 145백만원)이므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 **신설**

- 지표 산출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신설

-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 산출업무, 제출업무, 사용 및 이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
- (행정처분) 금융위원회가 동법 위반 시 기관·임직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 해임요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
- (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산출기관 등록을 취소

심사결과 금융거래지표 산출기관·제출기관 및 사용기관이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규정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대부분의 금융법령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 중단 시 절차 **신설**

○ 지표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를 중지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산출·제출업무의 중지·중단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를 중지·중단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산출기관에 대해 산출업무 이관명령, 산출업무 지속 수행(최대 24개월) 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제출기관 등에 대해 제출업무 지속 수행(최대 24개월) 명령 등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현재 중요지표의 제출·산출업무는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산출여부가 제출·산출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관련 금융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요지표의 안정적 산출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제출·산출업무 중지·중단으로 금융시장 안정 등이 위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명령이 불가피함. 중요지표의 안정적 산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의 혼란 예방이라는 정책목적 하에, 관련 금융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필요시 일정기간동안 업무지속수행 등의 경과조치는 비례적 타당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외국에서도 지표산출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 산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신설 4)

심사내용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법규화 **신설**

○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로 규정

- ①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Min (신용공여 총액의 5% or 300억원*)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억원
- ②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 총액의 15%에서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심사결과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한 대출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신용공여 한도제를 운용 중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관리는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중임.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행위(일종의 권고)로 위반시 시정명령 및 제재 등이 불가능하므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법규화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저축은행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행정지도를 법규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15% 등 규제 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행정지도와 모두 동일하고, '17.12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조원으로 전체 대출 51.2조원의 4.2%에 불과하여 신용공여 한도 15%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신설**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대주주 자격요건 구체화 및 추가

현 행	개정안
① 추상적 요건 구체화 [시행령 별표1 1. 사.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 없음	[감독규정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요건 추가* [금융거래질서 요건] i)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이상, 최근 3년간 시정명령·업무 정지 이상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ii) (대주주가 금융기관 임직원)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기존 요건 이외에 다음 사항 추가] iii) 최근 5년간 <u>파산절차·회생절차의 대상</u>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iv) 최근 5년간 <u>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u> 사실이 없을 것

* 지배구조법과 통일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요건 추가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별표1~3에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내국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관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기존 대주주 심사 시 적용되는 항목을 보다 명확화 하는 것으로 기존 입법 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신용카드업, 보험업 등 타업권의 자격요건 규율 사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규화한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 **신설**

- 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자에 대한 경고문구 신설(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 관련 문구)

심사결과 대부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대출상품 광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도 이를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 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광고 시 포함해야 할 경고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의 업계 자율로 광고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고 문구를 규정으로 구체화 하는 것에 불과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신설 **신설**

- 상호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 ① 최소자본금 기준 :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40억원
- ②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기준 : 7% 이상(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일 경우 8% 이상)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규상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재무건전성 기준이 개별 감독규정에 既 반영된 은행 등 타업권의 유사 입법 사례를 토대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금번 도입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하여 본래 준수해야 하는 기존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7, 강화 4)**심사내용** 표준감사시간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신설**

- 한국공인회계사회 內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 회사 대표 5명, 회계법인 대표 5명,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4명, 금감원장 추천 1명 등 총 15명
- 표준감사시간 제·개정안 공고, 공청회 개최, 의견검토 및 반영 의무화

심사결과 외부감사 업무는 감사품질과 감사시간 간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감사품질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감사시간 확보가 긴요함. 이에 외부감사법에서 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세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으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청회 개최 등 운영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관계인 의견반영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표준감사시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구의 설치 및 구성,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한 데다 표준감사시간을 3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및 행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강화**

○ 외부감사대상 기준체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

① 외부감사대상 회사*

*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은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종전과 동일)
 (현행) 자산, 부채, 종업원 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주식회사
 (개정)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만,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 4개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는 예외)

② 외부감사대상 기준
 <주식회사>

구 분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종업원 수	매출액	
현 행	120억 이상	70억 이상 + 자산 70억 이상	300명 이상 + 자산 70억 이상	-	0
개 정	120억 미만	70억 미만	100명 미만	100억 미만	0
변동사항	-	-	200명 ↓	신 설	-

<유한회사>

구 분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종업원 수	매출액	사원 수
신 설	120억 미만	70억 미만	100명 미만	100억 미만	50명 미만

<대규모 회사>

○ 위의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대상

심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대상 요건의 현행 유지 또는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논의 결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감대상 기준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경우 외감대상 기업이 현행 대비 322개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개정의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동의**

심사내용 품질관리기준 **신설**

- 품질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과 관련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외부감사법 위임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회계법인의 준수가능성을 높이고 종전 보다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의 품질관리기준은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정을 내용 변화없이 반영한 것이며, 사전승인 의무화도 현행 회계감사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은 미미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관리기준 감리에 따른 조치 **신설**

-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의 공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
- 증선위의 공개 전 감사인 의견 청취를 의무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로서 규제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개선권고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사유* 추가
 - 코스닥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감사인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미제출한 경우

* (현행 사유)

- ① 다음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에정인 경우
- ②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
- ③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보수 계약의무 미이행 등으로 감사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 ④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
- 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으로 표명되지 않은 경우 등

심사결과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관리종목과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관리종목과 환기종목 지정취지에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 관리종목에만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환기종목도 감사인 지정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인하는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제출을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어, 의도적으로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정을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업의 부실위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등이 노출된 환기종목에 대해 관리종목과 같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자료 제출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제출을 회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신설**

- 손해배상공동기금 연간적립금 추가납입분 반환시 추가납입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현재는 포함하여 반환)

심사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위험이 커지는 만큼 공동기금 추가 적립 제도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 적립이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짐에도 동 적립금 반환 시 운용에 따른 수익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운용수익을 반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적립금 반환금액에서 운용수익이 제외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기회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추가적립금이 회계법인의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의 3%의 범위에서 부과되므로, 운용수익률(3% 내외 가정) 감안 시 회계법인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등록취소사유 **신설**

-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증선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 금융위원회는 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서를 거짓 또는 누락 기재한 경우, 흠결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이후 1년 또는 등록거부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해야 함

심사결과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감사 회계법인을 감사품질 관리 역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등록요건 및 등록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등록 취소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도 시장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법인 수시보고 의무 **신설**

○ 회계법인의 수시보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

1. 감사업무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심사결과 현재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증선위와 공인회계사회에 매년 제출하고 있으나, 1회성의 연간 내역으로는 회계법인의 중요한 경영정보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임. 회계법인의 경영상 문제는 투자자 등 감사업무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수시보고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 및 타법 사례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 범위 확대 **강화**

○ 공시前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하는 회사 범위에 현행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외에 금융회사를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회사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절차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추가비용이 없는 반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전·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시키는 관행 해소에 따른 편익은 상당할 전망이다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 **강화**

- 회계정보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에 필요한 항목을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 보완사항 |

구분	현 행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p>< 예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p>< 사후조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 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심사결과 개정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면서,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 차등화(자산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등 규제 정도도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신설**

-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

(감사인 지정 기준)

- ① 지정감사인 자격 : 상장법인 감사인, 최근 3년간 감사업무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회계법인
- ② 감사인 지정 제한 :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감사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 등

(감사인 지정 절차)

- ①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의 증선위 앞 제출의무
- ② 증선위의 통지의무 및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제출
- ③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의무
- ④ 지정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및 절차

심사결과 지정감사인은 감독당국이 지정하여 회사에 선임을 요구하는 회계법인인 만큼 감사업무의 신뢰성 및 공신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감사인 자격을 금융위원회 등록 상장법인 감사인,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필요. 다만,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거짓·누락 등으로 감사보고서의 품질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경우 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외부감사 업무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므로 지정감사인 자격 제한이 회계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없는 데 반해, 감사인 지정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보험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강화**

- △ 가계대출 규제대상을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에서 주택 보유세대로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에 LTV(40%)를 도입
- △ 규제적용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가계대출】

-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LTV = 0)
 - **1주택**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60세이상 부모 거주지근처 별거분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무주택세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조건, ② 1주택세대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非고가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금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 다만,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 및 대출한도 미적용

【임대업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도입*
- *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既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 금지*
- * 다만, 주택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심사결과 주택관련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서민·실수요자 등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보험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08년 금융위원회기 원인 중 하나였던 여신기관의 과도한 모기지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강화**

- △ 가계대출 규제대상을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에서 주택 보유세대로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에 LTV(40%)를 도입
- △ 규제적용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가계대출】

-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LTV = 0)**
 - **1주택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60세이상 부모 거주지근처 별거분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무주택세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조건, ② 1주택세대 기존주택 최장 2년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非고가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금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 다만,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 및 대출한도 미적용

【임대업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도입***
- *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既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금지***
- * 다만, 주택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심사결과 주택관련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서민·실수요자

등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보험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08년 금융위원회기 원인 중 하나였던 여신기관의 과도한 모기지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강화

- △ 가계대출 규제대상을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에서 주택 보유세대로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에 LTV(40%)를 도입
- △ 규제적용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가계대출】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LTV = 0)
- **1주택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60세이상 부모 거주지근처 별거분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무주택세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조건, ② 1주택세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非고가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금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 다만,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 및 대출한도 미적용

【임대업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도입*
- *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既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금지*
- * 다만, 주택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심사결과 주택관련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서민·실수요자 등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보험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08년 금융위원회기 원인 중 하나였던 여신기관의 과도한 모기지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강화**

- △ 가계대출 규제대상을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에서 주택 보유세대로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40%)를 도입
- △ 규제적용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가계대출】

-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LTV = 0)
 - 1주택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60세이상 부모 거주지근처 별거분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무주택세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조건, ② 1주택세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非고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금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 다만,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 및 대출한도 미적용

【임대업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도입*
- *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既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다만, 주택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심사결과 주택관련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서민·실수요자 등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보험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08년 금융위원회기 원인 중 하나였던 여신기관의 과도한 모기지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인결

(30) 은행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강화**

- △ 가계대출 규제대상을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에서 주택 보유세대로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에 LTV(40%)를 도입
- △ 규제적용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가계대출】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LTV = 0)
- 1주택 세대 :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60세이상 부모 거주지근처 별거분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신규 구입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예외허용 사유 : ① 무주택세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조건, ② 1주택세대 기존주택 최장 2년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분양 등)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非고가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우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칩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금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 2주택이상 세대 :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 DTI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 다만,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적용 및 대출한도 미적용

【임대업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도입*
- *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既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금지*
- * 다만, 주택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심사결과 주택관련 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서민·실수요자 등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보험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08년 금융위원회기 원인 중 하나였던 여신기관의 과도한 모기지대출 경쟁을 제한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통지의무 확대 및 투자적합성 테스트 도입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투자자에 통지해야 함
- 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 ②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요건이 달성(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되는 경우
- 청약 前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하려는 경우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규정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

심사결과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착을 위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만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청약 신청을 받기 전 투자자의 이해도를 테스트하고,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 또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정정 공시가 이뤄지거나 증권 발행요건이 달성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성 및 현황 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중대한 공시변경시 또는 청약률 50% 및 100% 달성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이해도를 테스트하여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청약을 허용하고 있는 등 타국에서도 기 도입·시행중인 제도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볼 여지는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정 게재 시 투자자 청약의사 재확인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에 투자의사 재확인 의무화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의 변경으로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재는 증권 발행조건 등의 변경시 투자자 확인여부 파악 과정 부재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투자자 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해당내용 확인 및 투자의사 재확인 경우에만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불가피함. 동 규제는 투자자가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요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 게재 후 재확인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중대한 공시 변경시 발행인은 중개업자를 통해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5영업일 이내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해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볼 여지는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최소 청약기간 도입 및 발행인 게재 사항 확대 **강화**

- 최소 청약기간 도입
 -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검토하고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발행인 게재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지원

심사결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발행인 게재사항 등 중요사항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청약을 받도록 하여 동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의 평가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발행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현행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자간 의견교환을 통해 발행기업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소 21일 이상의 청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약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발행 온라인 업무절차에 대한 개정으로 업무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공시정보 확대의 경우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신설**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신설
 - 보험회사 위험관리조직(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
 - 재보험의 관리를 위해 재보험 전략 수립, 문서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규정

심사결과 재보험 거래에 대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15.12월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되어 폐기된 후 재보험관리 관련 감독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각 보험사별 재보험 관리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등 한계가 나타나 국제기구 권고 수준의 감독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모범규준에서 규율하던 재보험 관리기준을 국제보험 감독자협의회(AIS)의 국제적인 권고기준(ICP)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위험관리 관리·감독 업무에 재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 및 예산 소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신설**

- 국내 손보사의 기업성보험 인수심사(underwriting)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보험에 대해 '개별 계약'별로 최소보유비율(10%)을 도입

심사결과 국내 손보사가 장기보험 영업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서 손해보험 고유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underwriting) 역량이 담보된 상황임. 적정한 재보험 활용은 필요하나, 무분별한 재보험 출재는 계약자 보호 약화 및 보험사로서 위험보장 기능 상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감독기준 도입이 필요함. 동 규제는 과다 재보험 출재 방지,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 규제강도, 예외인정 등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손보사는 최소보유비율 준수를 위해 출재수수료 수입이 감소(5.8억원)하게 되나, 출재 계약의 보유 전환으로 출재보험료(비용)가 감소(57.9억원)됨에 따라 동 규제를 통해 총 52.1억원의 편익(해외수지차

개선)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측의 무리한 출제요구 관행 등을 들어 최소보유의무비율에 관한 감독규정 신설을 적극 건의하기도 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 강화 **신설**

○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일반보험의 실무경력(3년 이상) 요건을 신설

심사결과

손보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산출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계리업무 검증·확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계리사에 별도 요건(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력)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손해보험의 상품별 특성을 모두 이해하는 선임계리사의 선임이 계리업무 검증기능 강화 및 소비자 보호라는 선임계리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현행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기존 요건(보험계리 경력 10년 이상)의 세부사항을 더욱 구체화(일반보험경력 3년 이상)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공포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의무 **신설**

-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을 의무화
 -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
 - 단체·개인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시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

심사결과

현재 실손 의료보장을 위한 단체·개인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부재로 재직중 단체보험으로 실손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노년기에 실손보험이 無보험 상태로 전락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수 보험소비자가 은퇴 후 보장 중단에 대비하여 재직중 단체보험과 별도로 개인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복보장 불가(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 보장)라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가 상존함. 이에 단체·개인보험 상품간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퇴직 후

실손보장 공백 및 재직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개인실손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해당자에 한해 無심사로 단체보험의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역선택(질병 발생 뒤 전환신청) 방지를 위해 전환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등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연계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55억원) 수준은 순이익 규모('16년: 3.5조원, '17년: 3.9조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절감효과는 연간 1,06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대비 편익이 월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및 절차 마련 **신설**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제공 기준 도입
 - 중요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등), 제공(전문업체)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내부통제 및 감독 강화
 - 금융회사 등의 자체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의 중요도 평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
 - 금융회사 등의 보고 의무, 감독당국의 자료 요구 권한 등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참고>

- 이와 병행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비중요정보만 이용 가능 → 국내소재 클라우드의 경우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 이용 가능)

심사결과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AI·빅데이터 등을 활용,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안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보안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안전 이용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조치로 평가됨. 또한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국내소재 클라우드에 한하여 이용범위 확대를 허용한 것도 보안우려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규제 준수기한 및 재검토 조항 정비 **신설**

- 현재 동 규정의 일몰 재검토기한은 2014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사항은 2017년 1월 1일 기준 매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2019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으로 통일

심사결과 재검토기한의 이중적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및 누락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 기한의 통일성 있는 정비는 합리적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재검토 기한도 통일성 있게 재정비할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강화 **강화**

-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전신송금, 카지노 등)하고,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기준을 강화

〈 현 행 〉	〈 개정안 〉
①~② : 없음 ③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 1만달러 이상 ④ 기타 : 2천만원 이상	① 전신송금* :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 카지노 :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 1만달러 이상 ④ 기타 : 1,500만원 이상

* 電信送金 :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 이와 함께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거래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변경

심사결과 최근 테러 빈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차원에서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겠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의 규제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FATF 국제기준 및 미국, EU 등은 이미 일회성 금융거래에 전신송금, 카지노 거래 등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편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37) 보험업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조회내용 및 방법 등 설명의무 추가 **강화**

- 보험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조회방법 및 사항을 설명의무에 추가
 -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조회시스템 접속방법 및 동 시스템에서 등록기간 등 기본 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신뢰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보험모집 과정에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15.7월부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모집경력시스템)을 운영중이나, 동 시스템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을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진입 차단이 주된 목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가칭 ‘e-클린보험 시스템’)하여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권유 단계에서 시스템 접속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요비용·편익 감안 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모집채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소비자 스스로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 완전판매 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 청약서 기재사항 추가 **강화**

- 보험계약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
 -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불완전판매율의 보험계약 청약서상 모집인 관련 공시 사항에 적시를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보험협회의 보험모집경력 조회시스템에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소비자도 직접 접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중이나, IT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신뢰도 관련 핵심정보인 ‘불완전판매율’의 경우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청약서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모집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치로 평가되며,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동의를 전제로 조회시스템상 수치(불완전판매율)를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감독원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공대희 전문위원(Tel. 044-200-2413, dhgong@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총 1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5	신설 4, 강화 11 (비중요 15)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현행)	$\frac{\text{신규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text{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text{연소득}} \times 100$
	* 현재는 주담대 보유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종전 주담대를 기타부채로 간주하여 연간 이자상환액만을 산정하여 DTI 산출
(변경)	$\frac{\text{신규 주담대 및 기존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text{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text{연소득}} \times 100$
	* 주담대 보유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종전 주담대가 기타부채로 간주되지 않고 연간원리금 상환액 모두를 산정하여 DTI 산출 (현행 기준과의 차이는 (모든)종전 주담대 원금상환액이 분자에 추가되어 DTI를 높임)

(부채*(분자) 산정)

*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하되, 신규 주담대는 종전 방식에 따라, 기보유 모든 주담대는 다음 방식에 따라 연간 원리금을 산출

- ① (원금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
- ②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③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④ (중도금 및 이주비*)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에는 新DTI를 적용하지 않되, 이미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이주비대출을 차주의 부채에 포함하여 新DTI 산정
** 중도금 및 이주비(2~3년)는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로 주택준공 이후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 ⑤ (이자 상환액)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1%p

新DTI 적용에 따른 주담대 원리금 상환 방식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중도금 및 이주비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 금액에서 제외

⑥ (만기제한)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소득*(분모) 산정)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적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정소득(공공기관 발급자료), 신고소득(대출신청자 제출 자료) 활용 시, 소득 차감 등 페널티 부과

- ① 소득의 안정성(Stability)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중전 1년치 소득만 확인)
 - 차주의 2년간 소득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초과 시 2개년 소득을 평균*
 -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 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 차감 반영*
 -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 (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③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신고소득 활용을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 (5천만원 한도*)
 -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
- ④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가능)
 - 금융회사가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현행	개선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심사결과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금리상승기의 가파른 대출증가세를 억제하여 자산부실화 및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담대 기보유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종전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으로, 주담대 1건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 변경*

* 규제 내용은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동일

심사결과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금리상승기의 가파른 대출증가세를 억제하여 자산부실화 및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담대 기보유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종전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으로, 주담대 1건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 변경*

* 규제 내용은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동일

심사결과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금리상승기의 가파른 대출증가세를 억제하여 자산부실화 및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담대 기보유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종전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으로, 주담대 1건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 변경*

* 규제 내용은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동일

심사결과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금리상승기의 가파른 대출증가세를 억제하여 자산부실화 및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담대 기보유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종전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으로, 주담대 1건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자본공제 예외한도 산출방식 변경 강화

- (현행) 공제항목* 중 공제예외 적용대상(3개)**의 합계액이 보통주(3개 항목 제외한 여타 공제항목 차감 후)의 15% 초과 시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

* 공제항목 : 은행이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은행 자체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예 : 자기주식,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등)

** 공제예외 적용대상 : 미래수익에 의존하고 일시적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비연결 금융회사 보통주에 대한 중요한 투자, 모기지서비스권리(동 3개 공제항목 각각이 보통주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가능)

- (개정안) 공제예외 적용대상(3개)의 합계액이 보통주(3개 항목 포함한 공제항목 차감후)의 17.65% 초과시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

심사결과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가로서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해 바젤기준을 국내규제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금번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 변경은 바젤Ⅲ 기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 감독체계와 글로벌 규제 수준 간 정합성 제고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 산출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든 은행,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BIS비율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규제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개정 **강화**

- 경영지도비율 내 순안정자금조달비율(100%이상) 및 단순기본자본비율(3%이상)을 신설하고, 준수비율 미충족시 공시의무 부과

① 순안정자금조달비율(중장기유동성비율, NSFR)

$$NSFR = \frac{\text{가용 안정자금조달 (부채 및 자본} \times \text{가중치)}}{\text{필요 안정자금조달 (자산} \times \text{가중치)}} \geq 100\%$$

- 1) 가용 안정자금조달 : 부채 및 자본항목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 2) 필요 안정자금조달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② 단순기본자본비율(레버리지비율)

$$\text{단순기본자본비율} = \frac{\text{기본자본}}{\text{총익스포저 금액}} \geq 3\%$$

- 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 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파생상품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유동화 익스포저*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을 외부등급 의존도를 축소하고 내부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으로 재무상태표 난內外 자산금액

심사결과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가로서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해 바젤기준을 국내규제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17.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평균은 116.2%로 준수기준(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 평균은 6.9%, 가장 낮은 은행도 4.4%로 준수기준(3%)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규제비율 도입 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규제 비율 도입과 산출방식 변경으로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 변경*

* 규제 내용은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동일

심사결과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금리상승기의 가파른 대출증가세를 억제하여 자산부실화 및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주담대 기보유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종전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으로, 주담대 1건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을 마련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제도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 신설 신설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시 갱신형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반영을 위한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을 제시
 - 차기 갱신시점 이후 가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보험계약의 경우 만기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음. 이에 동 규제는 갱신형 특약의 경우 제반 가정의 합리적 추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 반영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계약과 동일한 만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갱신시점별 현금흐름과 만기를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간 및 기간간 비교가능성,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21년 시행예정인 IFRS17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험회사의 편의적 운영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은행리스크관리 실태평가 계량항목 변경 **신설**

- 신용리스크 평가·관리 강화를 위한 계량지표 항목으로 '익스포저 대비 가계부문 신용리스크량 비율'을 추가

심사결과 현행 은행권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계량지표에는 가계대출 편중(규모 및 속도)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어,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여의치 않음. 이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유인을 억제하고 편중리스크를 완화하도록 가계부문 신용리스크 비율을 추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은행 포트폴리오 개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유인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평가항목 추가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변경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 **강화**

-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 ① 개인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 : (10억 이하) 4.5% → 6.0%, (10억 초과) 4.5% → 8.0%
- ② LTV 60%초과 주택담보대출 : 2.8% → 4.0%
- ③ 만기 도래·거치기간 종료시 대출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2.8 → 5.6%
- ④ 연체 신용대출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 미만) 9% → 12%,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 이상) 6% → 8%

심사결과 최근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요인 중 하나로 가계대출에 대한 느슨한 자본규제 체계가 지적됨. 이에 가계대출 잔액이 많은 보험회사에게는 RBC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되도록 가계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가계대출 증가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평균 1~4%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보험회사 RBC비율 감안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계수의 조정은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인 점,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상향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국제 자본규제 개편방향과도 일치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高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50%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확대

(현행) ① 만기 일시상환대출, ②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③ 3건 이상의 다주택자 대출
 (개정) ①~③ + LTV 60% 초과 주담대(종전까지는 일반 주담대로 35% 적용)

심사결과

현행 BIS비율 산출 기준에서는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음. 이에 60% 초과 高LTV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자기자본 추가 적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국내 은행 BIS비율의 소폭 하락이 예상되나 충분히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실생활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차주별 주담대 규모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은 고위험 주담대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및 국제 자본규제 개편 방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강화**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위험가중치를 24% → 60% 로 상향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1년 이상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 위험값을 기존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1배’에서 ‘1.5배’로 상향

심사결과

현행 순자본비율 산출 기준이 유지될 경우 증권사들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집중을 해소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부동산 관련 펀드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1년 이상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출기준(위험값 상향조정)을 변경하여 부동산 쏠림현상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7.12월말 현재 부동산 펀드 보유중인 22개 증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30%이며, 위험값 상향(24% → 60%)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순자본비율 하락폭이 41%p로 추정되어 충분히 감내가능한 수준인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강화

- (현행) 35% 또는 50% 위험가중치*를 적용

* ① 1순위 저당권 & LTV 60% 이내 & 가계 주담대 : 위험가중치 35%, ② 이 외 주택담보대출 : 위험가중치 50%

- (개정) ① LTV 비율 구간, ② 저당권 순위 ③ 상환조건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35%, 50%, 70%, 75%로 세분화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70% 또는 75%를 적용

* ① 1순위 중 LTV 60% 초과분 또는 후순위 주담대(50% → 75%), ② 대출한도의 10% 이상 상환하지 않고 연장·대환(35% 또는 50% → 70%)

심사결과 현행 BIS비율 산출 기준에서는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상존함. 이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자본적립부담 증가)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高LTV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소폭 하락하겠으나 이는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국제 자본규제 개편 방향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보험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부가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 선정 및 중복보상 관련 설명 의무화 **신설**

- 중복 계약 확인 및 보상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되는 기타손해보험계약 선정

1.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및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손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
3.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4.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5.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6.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7.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심사결과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장이 동일한 손해보험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나 중복보상은 되지 않음. '16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외에 기타손해보험도 중복 확인 및 보상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이에 동 세칙 개정안에서는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표준화 수준, 중복계약의 시스템을 통한 일괄적 조회가능 여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수용 의견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조회시스템 구축 비용은 미미(1억원)한 데 반해, 중복 확인 의무화를 통한 소비자의 절감 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연간 48억원)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재보험관리기준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의 세부 절차 및 기준 마련 **신설**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의 세부 감독기준을 마련

- ①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수립의무)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 관련하여 위험관리기본방침, 자본관리계획, 리스크 특성 및 위험감내능력 등을 고려한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운영 의무화
 - 인수한 보험위험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유 및 출재계획, 수재위험 평가 및 분석방법·절차 등 마련
 - 재보험사 선택·평가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재보험 증개사에 대한 신뢰도 확인·평가
 - 인수한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리스크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급격한 자금흐름 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 ② (재보험 정보관리) 재보험계약 관련 정보가 적시에 조회·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재보험 계약당사자 및 계약조건, 세부 합의내역 등 계약서류, 관련 근거문서의 유지·관리 의무화
- ③ (재보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재보험 거래시 관련법규 준수, 회사의 재보험 전략 부합 여부 등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심사결과 재보험 관련 국내법규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권고기준에 따라 평가해보면, 총 6개 원칙 중 3개 원칙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 거래에 대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15.12월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되어 폐기된 후 재보험관리 관련 감독규제가 사실상 부재하여 재보험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및 보험계약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또한 각 보험사별 재보험 관리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등 한계가 나타나 국제기구 권고 수준의 감독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모범규준을 국제적인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규정화하는 것으로 규제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친족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추가 강화

- 친족분리 전후 3년간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간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조치 받은 경우 5년 이내 제외결정 취소
- 친족분리 전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미(허위)제출 시 친족분리 취소

심사결과

친족분리를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금지의 면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 및 내부거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는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강화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법 개정 취지를 오인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구입요구품목 등 정보공개사항 확대 강화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정보, 특수관계인(명칭·내용·매출액 등)정보, 판매장려금 등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해외입법례 등과 부합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나 구입요구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급가격 상·하한의 중위값’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포괄적·추상적인 판매장려금 관련 ‘경제적 이득’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강화**

- 심야 영업시간대를 현행 1시~6시까지(5시간)를 0시~6까지(6시간)로 변경
- 영업손실 판단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 단축

심사결과 영업 손실과 재정적 부담여부는 편의점 사업자가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제로 원안의결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시 추가 **강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기업집단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 주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추가

심사결과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또는 은밀한 부당지원행위 방식을 위해 현행 공시 규정으로는 모든 계열회사의 상표권 사용 수수료 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내부 자료로 이미 확보된 상표권거래 현황을 공시, 기업집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 확대 **강화**

- (노무비)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 잔여대금 3%, 계약금액 5% 이상 변동 시, (경비) 잔여대금 3%, 계약금액 5% 이상 변동 시 증액 요청

심사결과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관행 해소를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조합의 개입확대 취지와 함께 최저임금에 관한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직전년도(3~10년간)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시행 후 3년마다 일몰제 적용, 최저임금 상승기간 적정성 재검토)으로 개선권고

(5)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신설 1)**심사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신설**

-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 관련 정보, 회계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심사결과 원사업자로부터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 법률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어느 하나를 배제할 경우 고시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등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자료보존 의무 강화 **강화**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에 ①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② 반환 또는 폐기방법, ③ 반환일 또는 폐기일 추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서류 중 기술자료 요구서는 7년간 보존

심사결과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필요사항을 최소한으로 강화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며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교부·보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사후적 조사·제재 방식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므로 과도한 규제라 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강화 **강화**

- 일부 고질적·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현행 과징금 2.5점은 2.6점으로, 고발 3.0점은 5.1점으로 상향

심사결과 하도급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벌점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질서유지에 필요한 규정으로 납품단가 부당 인하, 기술유용 등 대기업 원사업자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억제하여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적합성이 인정되며,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원사업자 모두에게 사전적으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사전규제)가 아니라,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통해 수급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기업결합 신고대상 확대 강화

-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여,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품·용역 판매, 연구시설·인력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장지배력 형성을 방지하고, 거대 다국적기업 등에 의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억제하여 혁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또한 현 기업결합 신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를 수정하고,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신설

- 일정한 거래 분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 및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규정 신설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제한하여 규제 준수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5)

심사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상향 강화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로 상향
- 다만, 신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하고, 종전 지주회사의 기존 자·손자회사에 대한 합병·분할 등의 조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적용 제외

심사결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주식소유 요건을 강화(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일가의 배당의 수익 등 과도한 사익편취 부작용과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규 전환·설립하는 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소·중견 지주회사 및 상장사의 주식매입 부담 우려 및 이전·유사한 입법례를 고려한 최소한의 상향 수준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 법 개정·시행(공포 후 1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일 당시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심사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보유한 순환출자 및 이에 의한 가공자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의 현행법 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며, 가공자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에 적합하도록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성이 인정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법 개정·시행(공포 후 1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 기업부담 및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규제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를 제외

심사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자금을 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이용하는 경우 경제력 집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기반이 훼손되므로 계열사 간 합병·양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산분리 준수의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수단의 적합성과 기업부담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강화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해외계열사의 주주 구성 등 ②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는 총수일가의 국내계열사 지배 및 사익편취에 대한 시장감시 관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규제가 아닌 해외계열사 주주 및 출자 현황 등의 공시를 통해 자율적인 시장 감시기능 활동을 강화하는 규제로써 기존 공시의무에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 금지 강화 **강화**

-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리점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세부 유형·기준을 규정
- ① 구입 강제행위, ②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③ 판매목표 강제행위, ④ 불이익 제공 행위, ⑤ 경영활동 간섭행위

심사결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여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기존의 사례 등을 반영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공급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성 인정.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호, 제3호를 수정하고,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관세청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비중요 8)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비가공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신설**

-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 심사절차, 발급요건 등

심사결과

현행 규정상 환적화물에만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은 실질이 동일하며, 비가공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필요성이 인정됨. 증명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절차(서류제출요구 및 검사 등)는 외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절차와 유사하여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업체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확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서류 및 절차 등도 과도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위반 과태료 구간제 가중부과 **강화**

- 적하목록의 불성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 단위와 운송장 단위의 과태료 부과방식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화물이 구분되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 3구간으로 달리 지정(해상은 50건 단위, 항공은 250건 단위) - 실무상 적용 시 해상은 누락·오류가 발생한 B/L(선하증권) 건수별로 구간금액을 정비례하여 부과하는데 비해, 항공은 누락·오류가 발생한 AWB(항공화물운송장) 건수와 관계없이 구간금액을 일정하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 단위로 부과,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단식으로 부과하고 기준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화물의 구분을 없애,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3구간을 단순화하여 통일(해상·항공 모두 150건 단위), -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상·항공 모두 동일구간 내에서 누락·오류가 발생한 B/L 또는 AWB의 건수별로 다시 하위구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적하목록 작성 위반의 총량이 많을수록 과태료 금액도 계단식으로 비례되도록 부과

심사결과

정확한 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우범화물을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하여 불법 수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새로운 부과기준은 해상-항공화물의 구분을 없애고 위반건수-과태료 금액 간 비례성을 확보하여 현행 대비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관 및 선사·항공사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규제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의 관리를 회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는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물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수준은 의무위반에 대한 예상수익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징수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서 보세구역 반입의무 준수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벌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규정을 두어 비례적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강화 1)**심사내용** 선박 유류 급유선 관리 강화 **강화**

-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 유출할 목적으로 부족 적재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급유선 등에 대한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사용금지대상을 현행 '적발된 당해 선박급유 대행업자 소유의 급유선'에서 '적발된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으로 변경

심사결과 현행 기준에 따른 사용금지 기간은 다소 짧은 편으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급유대행업자 소유가 아닌 급유선이나 유조차량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대비 늘어나는 사용금지 기간(20일)은 현재 유류의 미적재 행위에 대해 30일의 사용금지처분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이행보증금 지급신청기한의 제한 **신설**

- 온라인환전영업자가 파산·해산 등의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고객이 공시일로부터 6개월 내 이행보증금 배분을 신청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행보증금은 환전영업자가 나중에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하는 돈으로, 고객의 배분신청 가능성을 이유로 반환을 장기간 연기할 경우 영업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고객이 기한 내 이행보증금 배분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급신청 가능기한 6개월은 이행보증금 예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전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적정 기간으로 판단되며, 유사업종인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에도 이행보증금 반환 신청 시 고객의 배분신청 가능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와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와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영업시 준수할 사항을 마련

구분	규제 내용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전산설비 요건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전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전자적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환전영업 관련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된 영업시간동안 고객상담 등이 가능하고, 기기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 체계를 갖춘 고객지원센터
온라인 환전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전산설비 요건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경우와 내용 동일 • 약관 사본 교부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부과 • 약관의 제, 개정 시 해당 약관과 관련 서류를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신규 도입되는 환전서비스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 수행시 구비하여야 할 설비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대면 방식 기반 금전거래의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이용자 보호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비대면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수준 및 영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고, 유사업종인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와 규제수준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등 총 3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6)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9)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1)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정안	본위원회 (2018.12.28.)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부대권고 1 원안의결 53	신설 41, 강화 13 (중요 1, 비중요 5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신설**

○ (현행) 발전설비 → (개정 후)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포함

심사결과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의 경우 현재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 안전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 특성상 자체관리에만 의존할 경우 전력공급설비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고압가스의 경우에도 제조·저장시설 중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는 1년, 불연성가스는 2년, 그 외는 4년마다 정기검사 실시하고 있음.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기검사 비용(23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연평균 3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 확보로 인한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강화 1)

심사내용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 절차 등 **강화**

○ 한국산업표준인증(Korean industrial Standard, 이하 KS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심사 시 외주가공 공정에 대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고, 심사일 수를 최대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주가공공정에 대한 현장확인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길 경우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거나 줄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어 규제 도입의 필요성 인정. 현장확인의 의무화

및 심사일수 연장(최대 3일)은 내실 있는 KS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연장 가능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까지'로 제한하여 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방지하였음. 비용편익분석에 따르면 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균등 순비용은 1억9천만원 수준으로 도입 비용이 크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륜자전거) **강화**

- 자전거법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 안전성 요건에 맞추어 현행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최고속도, 중량) 수정 ⇒ 최고속도 25km/h, 중량 30kg

심사결과 자전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법과 안전기준에 규정된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중량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최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합법화된 것을 감안할 때, 자전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상향하면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보다 유리할 것이므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 집행가능성 충분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회계감사 **신설**

- (감사 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감사 대상)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식
- (감사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
- (보고 기한) 회계감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심사결과 감사시기와 대상 및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의무이행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 동 규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의무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 인정됨. 회계감사 여부 등은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준수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열람대상 정보 **신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정보 열람 요구에 응할시 공개대상 정보의 종류를 규정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심사결과 열람가능 정보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열람청구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인정됨. 공동주택 입주인이 관리주체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내용과 유사하여,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아님. 입점상인의 열람·복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준수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규정 제, 개정 방법 **신설**

- (제정기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 후 3개월 이내 제정
- (공고 등) 관리규정 제·개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점상인에게 개별 통지
- (개정 절차) 관리규정 개정 시 개정목적 및 현행 대비 달라지는 사항을 공고·통지하고 입점상인 2/3의 동의 획득

심사결과 대규모점포 관리규약의 제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정된 규약 내용이 입점상인들과 원활히 공유되게끔 제정기한 및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규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고절차 및 동의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됨. 동 규제는 관리규정 제·개정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규약 제·개정 시 요구되는 입점상인의 동의 비율(2/3)이 공동주택의 경우(과반수 이상)에 비해 다소 높으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임시 입점상인의 동의기준(2/3 이상)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규모점포 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신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입점상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청구·수령할 때 관리비 및 계약체결 방식 등을 구체화
- (관리비 내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9개 항목
- (사용료 대납) 입점상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사용료의 항목 구체화(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7개 항목)
- (정보공개) 관리비 및 사용료 청구시 입점상인에게 세부내역을 통보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계약체결방식)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심사결과 관리비 및 사용료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관리자의 자의적인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고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입점상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 인정. 유사사례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및 사용료의 항목을 동일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등의 수입명세 및 사용현황을 입주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계약체결방식에 대해서도 동 규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점상인의 동의권 행사방법 **신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임 동의 시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
- (동의권자 범위) 해당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 하는 자가 입점상인이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 행사, 공동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중 대표 1인을 정하여 동의권 행사
- (절차) 동의받기 1주일 전, 동의권 행사방법 및 동의기간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심사결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임요건인 입점상인의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성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은 입점상인의 영업활동 수행에 필수요소로 동의권자 범위 설정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반영함은 적절하며, 공동영업활동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표 1인을 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동의권행사방법 등을 사전 고지하는 것도 적절하며,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안도 아님. 「집합건물법」에서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구분소유자가 여럿일 경우 1인을 정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입점상인 서면 동의서 추가 제출 **강화**

-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관리자로 신고할 때 입점상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관할 지자체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수리시 '입점상인의 2/3 이상의 동의'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성 인정. 양식 내 기재사항은 입점상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성명, 사업자번호, 입점일, 매장번호, 전화번호)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을 신설 **신설**

- 특정고압가스시설 및 전기설비 사고 발생시 기기 설치자가 사고 내용을 한국 에너지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통보 절차 및 통보대상 사고의 범위 구체화
- (통보방법) 속보의 경우 전화 또는 팩스, 상보의 경우 서면
- (통보기한) 속보의 경우 즉시, 상보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0일 내
- (통보내용) 통보자의 신상명세,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및 내용, 시설현황, 인명 및 재산피해내역
- (통보대상 사고 범위) ‘검사대상기기의 동체·노통·경판·연관·수관으로부터 고온의 내용물이 유출된 사고’로 구체화

심사결과 통보 방법이나 내용 관련 규정이 모호할 경우 사고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정보가 통보에서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의무이행에 그칠 우려가 있어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 인정됨. 동 개정안의 통보기한(10일)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의 통보기한(10일~20일 내 통보)보다 다소 짧으나, 발생가능한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의 품질기준 **강화**

-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신규 법정 식별제(ACCUTRACETM S10)를 첨가

심사결과 가짜경유 판매로 최대 443원/L의 직접적인 소비자 손실이 발생하며, 연비 악화(최대 3%) 및 출력 저하(최대 1.5%) 등 차량성능 저하우려가 있음. 또한 가짜경유는 정상경유 대비 유해 배출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며, 온실가스(CO₂ 등)를 최대 4% 증가시키는 등 각종 피해 유발. 가짜경유 유통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식별제는 손쉬운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해 적발도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므로 신규 식별제 도입의 필요성 인정. 기존 식별제를 대체하여 신규 식별제만 사용할 경우 휴대용 분석장비가 없어 가짜경유 제조·판매행위의 현장에서 즉시 단속 곤란하여 병행 사용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불법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 다수의 식별제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동일 제품 반복 생산에 따른 제조검사 면제 신설 **신설**

- 열사용기자재 중 일부 기기의 경우 제조·설치 및 사용단계 등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는 바, 제조검사 면제제도 신설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구분	주요 규제 내용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 ① 검사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 ② 해당 기간 동안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제품유형에 대한 3대 이상의 제조 실적 • 인력 : 직원 중 1인 이상의 내부 검사원 지정
철회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회사유 : ① 허위사실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② 사후 관리 결과가 최종 불합격이거나, 사후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품질 관리시스템의 미이행 또는 검사기준의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 제품 회수명령 등 : 대량생산 공장등록 철회의 원인이 기 출시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간 내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 표본검사 실시, 제품 관련 정보 제출 및 확인에 응할 의무 부과, 제품에 식별번호 타각 등

심사결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반복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되는 기기 모두에 대해 설계단계-최종 검사까지의 과정을 매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70명의 검사원이 매년 약 1만대 정도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검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검사의 집중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검사대상 설비에 대해서만 동 기준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 적정성 인정되며 제조검사 면제제도 신청요건 및 철회사유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 Q8003’과 내용이 유사하며, 심사기준은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구분에 따라 KS B6750 또는 KS B6754를 준용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사업자의 사고조사 및 보완절차 **신설**

- (요건) 해당 제품의 중대사고 유발횟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정도, 해당 제품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절차)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7일 이내에 제품사고 조사 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심사결과 동 규제는 상위법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자에게 사고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한 등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사고원인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필요성 인정. 요건의 경우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사고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되며, 조사계획서 제출시한 7일은 법에서 정한 조사개시시기(7일)과 상응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시한 3개월은 국토원 산하 사고조사센터의 평균 조사기간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적정성 인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

- (지정 시 고려사항) 관련 연구개발 실적, 연구기반 확보 현황, 관련 학계 및 산업계 간 협조체계 운영여부
- (실적 제출)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지정취소요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심사결과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피규제자들이 준비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지정취소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차후 전문연구기관 지정 취소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 인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요건 등과 유사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

- (지정 시 고려사항)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정성,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여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계획 등
- (실적 제출) 지정받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지정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심사결과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할 경우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피규제자들이 준비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지정취소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차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취소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 인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요건 등과 유사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전기세탁기 최저효율기준 상향 및 등급 기준 조정 **강화**

○ 각 등급별 비율이 정규분포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세탁기의 에너지효율기준 상향

심사결과 타 기업 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 기술개발로 기기의 에너지 효율수준이 높아져, 기존 효율기준 상 1·2등급의 비율이 과도한 상황에 이른 바 조정의 필요성 인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수입업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동 효율기준을 도출해 내었고, 등급별 정규분포화 및 등급 미달 제품 10%미만 등 업계에서 충분히 용인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아래 방식에 따라 표시
-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전기용품의 경우 영문으로도 부기 가능
-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 표면에 표시를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만으로 한정

심사결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사안으로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기존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하던 제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품목을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표시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조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들은 일반적인 제품정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또한 기존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개선명령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표기사항을 미표기한 경우 개선명령 부과

심사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도입의 필요성 인정. 판매중지나 수거 등의 조치 없이 개선명령만을 부과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전안법상 안전기준체계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가장 위해도가 낮아 경미한 의무만을 부과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신설**

- (고지) ① 해당제품이 구매대행제품이라는 사실,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 ③ 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
- (구매대행 중지절차)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대행을 중지하고 결과를 국표원에 통보

심사결과

전안법 제36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소비자 안전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제품정보 고지 및 구매대행 중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 인정. 법에 열거된 것 외에 추가적인 고지사항은 없으며,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 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또한 구매대행 중지시 국표원에 구매대행 중지여부를 통보만 하면 되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위해사실 인지-구매대행 중지에 소요되는 기간 10일은 다소 짧을 수 있으나, 신속한 소비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정성 인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명령 **신설**

- (요건) ① 사망사고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유발한 제품, ② 화재 또는 폭발사고 유발 제품, ③ 3회 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한 제품, ④ 3명 이상에게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한 제품, ⑤ 해외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등

- (절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매대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긴급한 경우 先 구매대행 금지명령 後 위원회 의결도 가능.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구매대행금지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시행 가능

심사결과 구매대행 금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先 구매대행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대행 금지명령 해제 전 제품 개선방안 마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동 규제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고 반복되는 경우로만 구매대행금지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구매대행 금지여부 결정시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절차권의 보장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신설**

- 부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사유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판매중지 & 개선명령(1개월 내) • 2차 : 1차 조치 불이행 시 수거 또는 파기 (2개월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의 미표기, 허위 표기 • 표시를 임의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판매 또는 수입·진열·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개선명령(1개월 내) • 2차 : 1차 조치 불이행 시 판매중지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입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 인정. 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용품에 대해 先 판매중지를 명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선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음. 표시의무 위반의 경우도 판매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 전,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설정된 개선기간도 적정한 수준. 또한 타 안전관리대상유형(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인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신설**

-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원자재 취급과정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 가능

심사결과 원자재 안전성은 제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개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인정. 동 규제안은 이행을 권고할 뿐, 권고 불이행 시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신설**

- 구역전기사업자는 예비전력, 기동전력 등을 구비하고 비상시 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공급설비 신뢰도 유지기준	배전설비 신뢰도 유지기준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고장시 최대전력수요 공급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 및 기동전력 구비 • 이종고장시 장시간 공급중단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단독운전실시, 단시간 내 부하차단, 임시선로 긴급 연결 등의 방안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배전선로 고장시 배전간선간 연계 선로 구성 등 방안 강구 • 배전계통에 보호장치 설치 • 배전계통 운영절차서 작성 및 공개 등
산업단지 구역전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시 필수전력수요 공급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이나 기동전력 등 구비 • 공급지장 발생시 단독운전실시, 단시간 내 부하차단 등의 방안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계통에 보호장치 설치 • 배전계통 운영절차서 작성 및 공개 등

심사결과 그간 구역전기사업의 빈번한 정전사고로 인해 막대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민간사업 특성상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설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규제도입의 필요성 인정. 사업장 특성·민원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비개선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있으며, 소수의 고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구역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사업자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한 바,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재 설비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또한 인허가 및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동 규정의 시행일을 2년 후로 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구역전기사업자들과 다수의 협의를 거쳤으며, 동 고시개정으로 인해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자(2개 업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주유기 및 LPG미터에 프로그램 조작방지를 위한 보안모듈(부속서 C) 적용 확대 **강화**

- (현행) 주유기 형식승인에만 적용 → (개정안) 주유기 검정 및 LPG미터 형식승인·검정에도 적용

심사결과 '08.6월 첫 적발 이후로 불법으로 주유량을 조작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조작행태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적용대상 중 소비자 관련성이 높은 주유기 및 LPG미터로만 보안모듈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설계·출고되는 기기에만 보안모듈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미 사용중인 중고기기의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여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 또한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권고기준 OIML D31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동 규제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소비자 피해 절감효과가 더 커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공장입지기준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기준공장면적률 신설 **신설**

-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경우 10%, 나머지 장비 수리업에 대해서는 20%로 규정

심사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17.7월 시행)으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새롭게 분류된 업종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각종 인센티브(조성원가 분양, 조세혜택 등)가 제공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방지할 필요성 인정. 외부환경 노출 등에 취약하여 주로 실내에서 작업하는 수리업의 사업특성을 고려, 기준공장면적률의 최고비율인 20%를 적용하였음. 다만,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옥외 작업장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10%로 적용한 바, 적정성이 인정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5)

- 심사내용** ① 전기차 충전시스템 KC 61851-1 **신설** ② 전기차 충전시스템 KC 61851-23 **신설**
 ③ 전기차 충전시스템 KC 62196-1 **신설** ④ 전기차 충전시스템 KC 62196-2 **신설**
 ⑤ 전기차 충전시스템 KC 62196-3 **신설**

○ 특정 전기차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방식을 안전기준에 포함

안전기준	주요 내용
KC 61851-1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C 61851-23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제23부 - 직류 충전장치
KC 62196-1	(충전시스템 부속품 안전기준)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C 62196-2	(충전시스템 부속품 안전기준)제2부 - 교류 핀과 접촉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KC 62196-3	(충전시스템 부속품 안전기준)제3부 -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심사결과 현행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특정 전기차(테슬라 社)의 충전기 및 충전방식을 안전기준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 인정. 동 개정안은 피규제자가 제출한 자체 자료 및 IEC 국제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타 전기차 충전기·충전방식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충전기 및 충전방식에 대한 기술 내용 검토 및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업체 관계자 자문 및 전문가 회의를 다수 거쳐 마련한 기준으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마련 **강화**

-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풍황자원 계측결과 제출여부를 포함
- (측정기간)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 (유효지역) 공유수면의 경우 반지름 5km 이내

심사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지 선점 및 투기를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에 대한 허가심의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는

허가기준 보완 등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심의를 당분간 유보한 상태인 바, 사업이행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풍황자원측정은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실제로 풍력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구비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동 고시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가 풍향계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이행시기만을 허가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범위 확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특정 사용자에 포함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이하 ‘특정사용자’)에 대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부속시설 중 일부가 그 규모나 사용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용자에서 제외되어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확대된 특정사용자의 범위는 안전검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특정 사용자 확대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검사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 따라 대형 사고예방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성 인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법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가스용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와 경과실인 경우를 구분하고, 전반적인 처분수준을 상향
- 가스용품에 표시사항을 미표기한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제한기간 설정 (1차-10일, 2차-20일, 3차-60일, 4차-180일)

심사결과 가스용품 표시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안전기준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인정. 고의·중과실인 경우와 경과실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전조항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재처분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처분수준이 높으나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피규제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 강화

- (단전지) 과전류 충전시험 추가
- (전지) 진동시험, 충격시험 추가

심사결과 리튬이차전지는 소형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지로, 고온, 외부충격, 과충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스마트폰 리튬이차전지로 인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16)한 이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동 개정안은 리튬이온전지 안전 관련 국제표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전류충전시험을 시험항목으로 추가하고 있으나, 불량충전기 사용 등으로 인해 전지에 과전류가 유입될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을 감안, 과전류시험 기준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국의 안전인증시험기관인 UL의 안전인증기준과 비교해서도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적정성 인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다수의 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국내복귀기업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신설

- 과거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일 것

* 중소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심사결과 현재 제조업 등 업종별로 일정 수준의 수출비중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은 당장의 수출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동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현행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입주자격인 수출비중을 국내복귀기업 매출액 비중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또한 이미 복귀한 기업의 복귀 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기업이

새로 설정된 입주요건 충족하고 있는 바, 집행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비중 세부기준 마련 **신설**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심사결과 내실있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투기업 입주자격에 수출비중을 추가할 필요. 국내기업 입주요건(수출비중 : 제조업 30%이상, 지식서비스 산업 5%이상)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님. 또한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투법인의 경우에도 수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어 신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여지도 적어 적정성이 인정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신설 **신설**

- 사업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 수행을 포함, 전담조직과 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 구비

심사결과 광융합 관련 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역량있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타법상의 전담조직 지정기준 관련 내용과 비교할 때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추가 **신설**

- 냉동기·공기압축기·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신규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세부 효율관리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기준 등) 마련

심사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기압축기·냉동기 및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관리기자재에 편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할 필요. 동 신규품목 도입 시 매년 최소 39.1GWh의 전력 절감이 예상. 신규 추가 품목에 대한 효율측정방법은

KS 시험방법을 바탕으로 외국(미국·EU 등) 기준을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으로, 통상 효율관리기자재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하나, 금번 개정을 통해 신규 편입되는 3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기술영향평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감리업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강화

- 공동주택감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5일에서 건설분야와 같이 3일로 변경

*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 경력

심사결과

전기분야 감리업체 선정 시 입찰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건설분야와 일치시켜 절차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 인정.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서도 감리업자 선정 관련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 기존에 공동주택감리업자 선정업무는 지자체(시·도)에서 담당하며, 동 건은 실무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사안으로 집행가능성도 충분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전력량계 기술기준 (신설 3)

심사내용 IoT 융복합 전력량계 형식승인 기술기준 신설

- 계기장치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전력량계도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
- 구조기준, 표시사항, 오차 허용범위, 시험 방법, 판정기준 등 세부목차에 IoT 융복합 전력량계에 해당되는 기준 신설

심사결과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기준은 일본전기계량기검정소(JEMIC : Japan Electric Meters Inspection Corporation)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며, 특별히 유사 타법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고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적정성 인정.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IoT 융복합 전력량계는

기존 전력량계 형식승인기관을 통해 검증 및 관리를 수행할 예정인 바,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신설**

- 전자식 계량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신설

심사결과 불법조작 방지 및 계량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개별 계량기의 소프트웨어 관련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국제기준과 규제 수준이 유사하며,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적정성 인정. 또한 금번 개정안에 포함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기존 전력량계 형식승인기관을 통해 검증 및 관리를 수행할 예정으로,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 기술기준 **신설**

-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심사결과 전력량계의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행 기준은 교류 전력량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직류 전력량계 유통 불가능한 바, 이로 인해 직류 전력량계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교류 전력량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변환손실 등에 따른 부정확한 측정으로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동 개정안은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IEC 62053-41) 개정(안)을 준용하고 있으며, 시험항목, 검정 및 재검정 기준 등에서 現 「전력량계 기술기준」의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부분과 규제 수준이 유사하고,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전기사업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전기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준 **신설**

- (등록요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 (변경등록을 요하는 중요 사항)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심사결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바, 법에서 전기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 등록요건은 신사업 도입 초기에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변경등록을 요하는 사항 또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료관리법, 온천법 등 유사 타 법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신설**

- (전기사업자) 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11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건 추가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는 전기사업자가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
- (전기신사업자)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6건 신설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

심사결과 전기사업상 금번 추가되는 2개 조항은 당초 법에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기신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전기신사업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는 사안임. 전기사업의 처분기준은 법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기신사업의 처분기준은 사업환경이 유사한 전기사업의 경우에 준하여 설정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신사업 약관 포함사항 **신설**

- 전기신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 적용범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요금 산정기준, 수수 및 환급 관련 사항, 면책관련사항, 요금 외 수요자 비용 부담 관련 사항, 그 외 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심사결과 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신사업서비스 수요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됨.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의 신고,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타 법 사례와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히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지 않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 범위 확대 **강화**

- 안전확인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심사결과 기존의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50kW급(급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00kVA 이상의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정부의 초고속 충전기 인프라 구축 계획에 100kW 급 이상의 대용량 충전기도 포함되는 등 안전확대대상 범위 확대 필요.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IEC 국제표준에서는 200kW까지 시험범위에 포함. 또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제품 추가 **강화**

- 일부 단전지의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대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상향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가 대상

심사결과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전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개정안의 기준은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이상일 경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조와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었으며, 모든 배터리가 아니라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배터리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 보기 어려움. 동 규제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개정안 부칙 제2조)되므로 규제 준비를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도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형식승인의 대상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신규 지정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기에는 충전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포함되나, 이러한 기능에 대한 법상 검증절차가 미비.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자가 이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 가솔린·디젤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하는 주유기·LPG미터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기지정되어 있는바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량기의 시험, 검정, 검사설비기준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수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목록 총 2종(기준전력량계, 허부하발생기) 신설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시험·검정설비기준 조정
-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계량기 사용오차 허용 한도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전기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승인 및 검정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필수설비, 허용오차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기존 전력량계 관련 설비기준 중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 및 신규 설비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규정 정비의 필요성 인정. 전기차 충전기 역시 전력량계의 일종임을 감안, 동 개정안은 기존 전력량계 설비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하였고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적정성이 인정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신설**

- 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설정
-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 각 7년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 이동형의 경우 각 4년, 고정형의 경우 각 7년

심사결과 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기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경우 기존 전력량계의 검정주기와 동일(7년)하게 설정하였으며, 고정형 충전기도 유사품목인 전력량계의 검정주기와 유사하게 '7년'으로 설정되어, 과도한 수준은 아님.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고정형 충전기와 달리 진동·충격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함을 감안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보다 짧게 설정(4년)한 바,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적정성이 인정되었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신설**

- 도시가스 품질검사 항목에 오일을 추가, 허용기준은 50mg/kg이하로 설정

* 오일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만 적용

심사결과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품질고시가 적시에 개정될 필요. 개정안의 오일성분 허용기준(~50mg/kg)은 독일 DIN 규격의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충전소 시설기준에 따른 정상적 운영시 용이하게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음. 17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개 CNG 충전소를 대상으로 오일전이 발생여부를 시범 조사한 결과 동 개정안의 오일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3년 주기의 일몰규정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허용기준치를 조정할 예정인 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규제특례로 인한 손해배상방안이 미흡할 경우의 추가조치 **신설**

- 사업자가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이 미흡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아래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가능
- 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② 책임보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 또는 ③ 제3자에 대한 준비금 적립

심사결과 동 규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의 배상내용 등이 불충분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함. 개정안에 기재된 추가적 조치(보증보험가입, 공탁, 준비금 적립)들은 지급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규제샌드박스를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규제샌드박스 평가 필수 요소로 구성하였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 또는 공제금액기준 **강화**

-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상한액 상향
- 사망사고의 경우: 8천만원 → 1억5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재산 피해의 경우 : 1억 → 10억원

심사결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손해배상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타법에서는 통상 피해자 사망시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10억원 범위내에서 실손해액을 배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배상하고 있는 바 특별히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신설**

- 특고압 전선로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전자계/소음 및 진동/일조장해 기준을 마련
- (전자계 기준)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μT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음·진동 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 (일조장해 기준) 동지(冬至)기준으로 9시~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일조 확보 가능할 것

심사결과 전자계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되어 **중요규제로 의결함**. 특고압 전선로 설치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지면서 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격화하고 있어 특고압 전선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전선로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특고압 전선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전기환경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당 기준은 국제기준 및 타법령 상의 기준·판례상의 기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정한 바 적정성도 인정되어 **원안동의**. 추가로 특고압 전선로로부터 나오는 전자파의 장기적·누적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자속밀도 규정의 표현방식(산식 대신 고정된 수치로 기재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을 **부대권고**하였음.

2.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자]

김효진 사무관(Tel. 044-200-2441, kimhyo9@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 중 10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경제분과위 (2018.11.12.)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10	신설 7, 강화 3 (중요 1, 비중요 9)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등록취소 **신설**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의무 규정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자격기준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투자행위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투자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취소 가능

심사결과

현행법상 중기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는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매칭대상이 되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는 등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들을 ‘등록’하게 하여 개별투자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필요. 한편 미국에서도 ‘공인투자자’ 등을 지정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등록취소의 요건 역시 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취소요건과 유사하고, 전문개인투자자들의 이점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등 **강화**

-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을 추가*

* 등록이 취소된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 말소 전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던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사유를 통보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면직·해임된 임원으로서 면직·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으로 하는 경우 등록불가

심사결과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7년부터 정부에 의해 등록제를 시행, 현재 등록된 법인과 종사자수가 많지 않아 임원의 인지도에 의지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부적격한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의 재진입을 제한해야할 필요. 타법사례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한 등록 제한요건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한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투자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신설**

- 창업투자회사의 내부자(임직원·대리인) 및 주요주주, 감독권자, 내부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알게된 자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불가

심사결과 창업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도입할 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기·중기 육성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성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은 적정하며, 상장법인 투자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손실보전 등의 행위 금지 **신설**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출자자에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출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 벤처투자조합(펀드) 결성시 출자자(LP)가 우세한 협상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에 우선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이 높아지고 참여 부담이 높아져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손실보전을 금지할 필요.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투자의 성과와 손실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손실 우선충당 규정과 유사함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심사결과 현재 암호화 자산 거래가 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투기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로감·박탈감 등의 사회적 손실보다 매매 및 중개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금번 개정안은 암호화 자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임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의 대한 타당성을 주기적(3년)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조항을 마련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도 해당업종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의 요건 **강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의 요건’을 변경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 변리사 • 기술사 또는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상장법인의 설립자 또는 상장시 대표이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상경계열 석사학위 취득자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 이공계열 학사 이상 취득자로 연구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취득자로 검사기관대상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투자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경영 또는 기술개발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심사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를 주업무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학력 위주로 전문인력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 중심으로 전문인력 요건을 개편할 필요. 현재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출자자인 모태펀드, 산업은행 등은 출자시 핵심운용인력을 요구하며 그 요건으로 대부분 ‘투자경력 3년 이상’ 또는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경력 3~6년’을 요구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외결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신설**

-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단체규모별 회원사 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소상공인단체’로 인정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이견이 있고 경쟁영향평가 결과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나 '18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부분 만료되어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규제의 시급성이 인정되며, 단체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특성 및 현행 단체 내 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 기준이 결정된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대기업 등의 사업참여 승인 기준 **신설**

-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려는 업종·품목이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 할 수 있도록 승인 가능

* ①해당 업종·품목으로 성장해 온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생계형 소상공인의 재화와 용역 공급으로는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우 ③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기업등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필요한 경우 ⑤그 밖에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이후 산업구조를 생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 적용시 대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악화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어 예외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인정.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특별히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별도로 지정·고시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외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으며,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하에서도 유사한 기준아래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해온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신설**

- 대기업 등이 모법을 위반하여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은 6개월 범위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심사결과 시정명령은 공표·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인 바,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으면 대기업 등이 정부의 시정명령 등 조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6개월 범위’의 기간은 사업에 대한 철수·축소 등 원상회복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대한 매각·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다 긴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어 한차례의 연장 기간을 두고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업 등의 영업범위 제한 권고 **신설**

-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 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 가능

- * ①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대기업 등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시설·용역·사업장 및 판매촉진활동 등의 대상·규모·방법 등으로 인해 관련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종의 지정·고시가 있었음에도 대기업 등의 시설·판매촉진활동 규모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 확장 없이도 당초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어,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유사제도로 현재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대기업 등 간 조정에 의하여 대기업 등의 생산을 축소하는 ‘사업조정제도’가 시행중이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시에도 이미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사업의 철수 및 축소 등을 권고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제
4
장

1. 국토교통부

|집필자|

김동주 사무관(Tel. 044-200-2423, gkrry11@opm.go.kr)

김연주 사무관(Tel. 044-200-2424, ju7784@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9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5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고, 15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7)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6.)	부대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4)
(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1.)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7)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8)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07.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5)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6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7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7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4)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5)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 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6)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7) 표준자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9.)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79)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7)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90)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6) 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7)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부대권고 1 원안의결 154	신설 99, 강화 56 (중요 5, 비중요 150)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분양광고 항목 확대 **신설**

- △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방법, △ 청약신청금 납부 금액, 방법 및 환불시기, △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 등을 분양광고 등에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분양사업자는 기존에도 분양광고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 따라 해당 광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바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신설**

- (인터넷 청약 의무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분양사업자는 인터넷을 활용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함
- (청약률 공개) 위 오피스텔의 '청약접수 대행기관'이 해당 오피스텔의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오피스텔 현장청약에 따른 국민(청약자)의 불편과 업무상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청약률을 공개할 필요성 인정되며, 오피스텔 일부에 대한 제한적 규제 채택, 유사입법례, 피규제집단의 비용부담 측면을 감안, 본 개정안은 규제 수준은 적정함을 고려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양계약서 포함사항 확대 **신설**

-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에 임시관리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분양사업자의 임시관리규약 미작성 또는 부실한 규약 작성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정된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분양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한도인 500만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하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실·최초 위반자와 고의·상습 위반자의 처분 정도를 달리한 바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폐기대상 건설기계장치 확대 **신설**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 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건설기계의 부품 중 재활용할 수 없는 부품에 내압용기 및 에어백모듈을 추가함

심사결과 폐기대상 건설기계의 부품 중 재활용 시 위험성이 높거나 재활용이 적절치 않은 부품에 대한 재활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혹은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 인정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중고 내압용기 및 에어백 모듈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감안, 본 규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단해체 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등 지정 **신설**

- 건설기계의 장치 중 해체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 주요 장치의 구체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심사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건설기계의 주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사용·운행·양도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바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고, 선별적 규제방식 적용, 규제의 적용예외 사유 규정,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작결함 건설기계 제작·수입자의 통지의무 강화 **강화**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 등이 제작결함을 발견한 경우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토록 함

심사결과 결함의 발생 사실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기계 소유자가 결함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자가 결함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기계를 통상적으로 사용·운행할 경우 소유자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중대한 안전상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하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를 감안, 본 개정안의 규제 수준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강화 1)**심사내용** 항공화물보안신고서 제출 강화 **강화**

-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운송의뢰하는 경우도 매번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ICAO 규정에도 항공화물 보안검색 면제조항이 없고, 해외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운영되는 사례가 없으며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역할이 정립되어 자체 보안검색·통제 실시로 인한 수수료 절감을 통해, 향후 상용화주 지정·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용화주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3)**심사내용** 위험물질 운송차량 기준 및 단말장치 장착·운영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1만L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5천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연성가스(6천kg 이상), 독성가스(2천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등(1만kg 이상)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운송차량 최대적재량)로 규정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장착·운영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기 장착(안전센터 모니터링)으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예방 및 신속한 방재·대응(유관기관 공유·협력)을 통해 인명보호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말기 장착 대상차량(최대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질에 따라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거쳐 설정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시행 초기에 피규제자가 단말기 장착(대당 243천원, 38억원) 및 통신비용(연간 66천원)을 일부 부담하지만, 향후 국가재난망 활용('20)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21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피규제자가 순응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신설**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송계획정보(운전자 성명·연락처, 위험물질명·용량·최대적재량, 운송시간·경로 등)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와 2차 피해(토양·수질 등 환경오염)로 이어지는 만큼, 운송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찰과 유사시 신속한 방재활동이 중요하므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 운송계획정보의 입력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1회 일정량 초과)시 운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말장치 개선 및 운행중지 **신설**

- 단말장치 장착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이행토록 하고, 차량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에 운행중지표지를 부착 후 이를 훼손·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심사결과 단말장치의 장착 및 기준미달 장치에 대한 개선과 불이행시 운행중지 절차 등은 행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말장치 개선이행 기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운행중지표지 부착 등 기준이 일반적인 수준 정도임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항공보안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안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이상 500만원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 행정처분의 객관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의 범위 내 (5백만원 이하)에서 정하고 있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공동운수협정 서류 제출 **강화**

-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운송사업자 간 자체계약만으로 체결하고 있는 공동운수협정에 대해 관할관청(시·도 및 시·군·구)에서의 현황 파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협정 체결 후 협정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도의 인가 또는 수리 사항이 아닌, 협정서류를 사후(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강화**

- 행정처분의 위반차수별 가중기준에 부합하게 과징금 부과금액(10만원~1,080만원)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차수별 가중 비율에 따라 과징금의 차수별 금액 가중

심사결과 과징금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반차수별 가중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가중하고자 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용 여객차량은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만큼,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사항 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차등·가중 필요하며 행정처분 차수별 가중 비율에 맞춰 과징금의 차수별 금액을 가중한 것으로 타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휴식시간 보장 준수 의무 위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심사결과

사업용 여객버스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보장과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및 행정처분의 객관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법의 범위 내(1천만원, 5백만원)에서 정하고 있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 운임·요금 신고** **신설**

-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대상에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를 추가

심사결과

콜밴 운임은 화주와 운전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자율운임으로써, 신고운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운송수단과 같이 운임·요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신고·수리토록 개선할 필요성 및 같은 법의 구난형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을 신고제로, 타 운송수단의 경우도 신고 또는 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중대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강화

위반사항		현행	개정안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 인원이 사망한 경우	10명 이상	감차 조치(2대)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5명~9명	감차 조치(1대)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3명~4명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10명 이상	감차 조치(1대)	감차 조치(2대)
	5명~9명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3명~4명	위반차량 운행정지(15일)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심사결과 최근 5년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27천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사망 1,043명, 부상 43,239명)가 발생하였으며, 연 평균 5천5백건, 209명 사망, 8천6백명이 부상을 입고 있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중대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의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대한 취소 등 **신설**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위반행위	처 분 기 준
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대행자격 획득	교육·훈련 대행 취소 (당연취소)
②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교육·훈련 대행 취소 (임의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 또는 개선 명령
③ 기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행기관이 지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대행기관의 인적·물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해 교육의 질 제고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적정하며, 본 규제사무는 대행기관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기관에 이미 부여된 의무의 이행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부담 혹은 관련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 준수 가능성 높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고의무 대상 확대 **신설**

- 현행 법문언상 건설기술용역업자(업체)에게만 부과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가 건설기술자에게도 있음을 명확히 함

심사결과 본 규제사무는 건설기술용역업무 부실수행에 대한 벌칙(개정안 §87의2) 신설과 관련해 개정 벌칙규정과 명확히 연관되는 의무규정을 본칙에 별도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17.2, 부패영향평가)으로, 벌칙 신설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것 외에 실질상 국민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도감독 **신설**

-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계획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등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

심사결과

실질적 내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개선조치를 통해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동 공제조합은 기존 감독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경영개선조치 등에 응하고 있어 본 개정안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 준수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 확대 **신설**

- 건설기술자가 아래의 의무위반 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미제출, △ 거짓 제출, △ 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 건설기술용역: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 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의미

심사결과

건설기술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시 일정기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업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본 규제는 감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안전성 강화, 건설사업의 품질 제고, 예산 낭비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감안, 필요성 인정되나, 유사 사안에 대해 다수 법령은 업체 외 개인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시에도 위반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처분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유사입법례 및 입법취지 감안 시 보고서 부실제출(내용누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개인)의 고의·중과실 및 경과실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토록 **부대권고**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신설**

- 행정처분의 기준신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① 무자격자나 소속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품질검사를 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 6천만원은 법정 최고수준 (법 §31 ②, §32 ①)	
②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③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상한인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실·최초 위반자와 고의·상습 위반자의 처분 정도를 달리한 바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검사기준 등 강화 **강화**

-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누출 정의, 최대 충전횟수, 압력시험 합격조건과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설계단계 검사항목(밸브 또는 안전장치의 화염시험)을 규정

구분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액화석유가스(LPG) 내압용기
	누출 정의	최대 충전횟수	환경시험(압력) 합격조건	설계단계 검사항목
개정 사항	(현행) 균열 또는 결함에 의한 유출을 말하며, 내용적 기준 0.25mℓ (ℓ · h)를 초과한 것	(신설) 설계수명(단위: 년)의 75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행) 시험하는 동안 용기는 누출되거나 파열되지 않아야 함 (개정) 파열시험의 파열 압력이 충전압력의 1.8배 이상이어야 함	(신설) 밸브 또는 안전장치 설계 변경 시 검사 항목에 '화염 시험' 추가
	(개정) 균열 또는 결함에 의한 누출을 말하며, 단 Type4의			

구분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액화석유가스(LPG) 내압용기
	누출 정의	최대 충전횟수	환경시험(압력) 합격조건	설계단계 검사항목
	투과성능시험을 만족하는 투과는 누출로 보지 않음			

심사결과 자동차용 내압용기 소재 특성에 맞게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미국 국가표준, ANSI)과 조화를 위한, 용기 누출 및 최대충전횟수와 압력시험 합격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영향분석 결과 타당하며 국제기준 조화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철도안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신고의무 **신설**

- 신고해야 하는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를 구체적(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10m이상 건설기계 사용 및 인공구조물 설치,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조·저장 또는 전시 행위)으로 규정

심사결과 선로 주변 굴착에 따른 철도시설 손상 등을 예방하고, 건설기계 및 인공구조물의 전도·붕괴와 위험물 등의 폭발·화재에 따른 노면전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와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물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설치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이며,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축구조기술사와의 의무 협력 **신설**

- 현행 건축구조기술사와의 의무 협력대상(3개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되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①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허가시(이하, ‘허가시’) 제출한 구조도 등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② 내력벽·기둥·바닥·보 등(이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허가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구조부의 철거·보강 공사 시 공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경우 해당 공법 등의 안전성을 관련 전문가가 면밀하게 검토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 인정되고, 현행규정도 주요 구조부의 철거·보강 공사 시 공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제가 기존 제도에 비추어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구조기술사 의무협력 제도를 활용하여 그 항목만을 추가 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의 습득 및 적용 등에 따른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모든 구조보강 공사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피규제집단의 규제 부담 완화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항공기 기술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중 보통류 비행기의 인증분류 **신설**

- 소형비행기 인증분류 : 보통·실용·곡기·커뮤터를 ‘보통류’로 통합
- 분류별 기준을 중량 등에 따라 획일적 적용에서 승객 좌석수에 따른 인증수준(수준 1~4)과 속도에 따른 성능수준(저속, 고속)으로 적용

심사결과 인증분류 기준을 중량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승객좌석 수에 따른 인증수준과 속도에 따른 성능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비행기 제작사가 제작사양에 따라 차등화된 인증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증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하는 점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형비행기 기술기준에 따른 수락가능한 적합성 인증방법 **신설**

- 소형비행기 적합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산업표준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심사결과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인증 시 국제기준(미국 연방항공청 기준 등)과 동일하게 산업표준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신청자가 다양한 입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기준(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화시키는 점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심사내용**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주기 **강화**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 주기를 매월로 규정

심사결과

사업용 버스는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며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잘못된 운행습관 등을 교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운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수종사자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교통안전법 시행령 (강화 1)**심사내용**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화 **강화**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사업용 버스는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며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잘못된 운행습관 등을 교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운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에서도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을 제출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심사내용** 특별공급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강화**

-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특별공급 역시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함

심사결과

현재, 모든 특별공급의 입주자 모집은 현장 청약(방문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본주택 등에서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 중이며, 특별공급의 특성상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으로 대기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련 대책 마련 필요함.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 업무를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체가 현장 청약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위 사용수수료 부과에 따른 비용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과의 지속적 협의로 수수료 조정안을 도출한 바 피규제집단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별공급시 예비입주자 선정 의무화 **신설**

-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순번 포함) 선정

심사결과 인터넷 청약 시스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적격 당첨자분 및 미계약분을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보완책 필요하며, 일반공급 시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하는 예비입주자의 비율을 40%로 정한 유사 입법례를 감안, 본 규제의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 중복당첨 제한 **강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과 당첨된 주택 중 선택하여 계약 체결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 추첨에 참여 불가

심사결과 본 규칙은 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민영주택은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여 중복당첨을 제한, 실수요자에 대한 균형 있는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 **강화**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는 자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당첨)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 국내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 부동산 투자과열 등 국지적 과열 양상은 실수요자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청약 과열을 안정화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수요를 차단하며, 주택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모든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한정적·선별적으로 규제하였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유사 사례를 감안, 본 개정안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분양용지 내 임대주택 공급 허용 대상 축소 **강화**

- 분양주택건설용지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모든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축소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5·10년 공공임대 등으로 구분되며, 민간임대보다 비교적 긴 임대기간·시세보다 낮은 임대료가 특징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비하여 장기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분양주택용지 내 임대주택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민간 임대주택(의무임대 4년)의 공급만 제한하는 선별적규제를 통해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법적 운영은 최소화한 대안으로서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강화 1)

- (19) 규제사무 내용과 동일함

(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첨단안전장치설치대상확대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차로이탈 경고장치 · 비상자동 제동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 •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 * 제외대상 : 4축이상 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특수 작업형 특수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차(경형승합차 제외) •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 * 제외대상 : 피견인 자동차, 덤프형 화물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심사결과

승차정원이 많은 승합차와 중량이 무거운 화물·특수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UN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차에 한해 적용하고, 자동차 구조나 운행여건을 고려해 장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연간 3,887억원의 설치비용이 추정되나, 사고감소에 따른 보상비용 1,404억원 및 직·간접적인 사회적비용 절감 등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조등 닦이기 설치 **신설**

○ 주변환빔의 광속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 전조등닦이기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고광속 광원의 전조등에 먼지·이물질이 묻을 경우 산란이 심하게 발생되어 마주오는 차량에 눈부심을 일으켜 사고위험이 크므로, 이물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전조등닦이기 설치가 필요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성 및 사고감소 등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강화**

○ 모든 자동차(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중 1개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차(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2종 모두 설치)

심사결과

후진 중 교통사고는 전방 고속주행 시에 비해 저속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만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여부에 따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전 차종으로 설치 확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과 인지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만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 운송 및 승·하차 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 및 캐나다는 후방카메라 설치(단일)를 의무화 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신설**

○ 저소음자동차에 대해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

심사결과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는 주행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저소음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량 등화장치 등의 설치·성능기준 등 조화 **강화**

○ 이륜차 주행빔·변환빔의 작동조건 보완, 13.2V 광도기준 신설 및 자동차 주행빔·변환빔의 13.2V 광도기준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산업 발전과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동차 무역 통상마찰 해소 등의 필요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신설**

- 전문교육기관의 위규 시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하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상세 규정

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1호	지정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	
가.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나.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중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감항성이 없는 항공기를 훈련용 항공기로 운항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2)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훈련용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라.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3.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가. 지정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나. 지정된 훈련용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다.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비한 경우		업무정지 5일
라.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5호	업무정지 10일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	55
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80일
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0일
다.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20일
라.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90일
마.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60일
바.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사.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아.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 경우		업무정지 20일
자.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5일
차.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90일
카.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60일
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30일
파.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20일
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10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7.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8.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8호	지정 취소

비고

위 표의 제6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정기준 위반 또는 부실한 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생 피해와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항공안전법, 미국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입주자격 **신설**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입주자가 포함된 세대의 세대 구성원만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가 불가능하며, 해당 주택을 전대하거나 거주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보육수요가 많고,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가정어린이집 공급 특례를 신설. 따라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더라도 공공성 훼손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택지의 전매제한 강화 **신설**

- 현행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 전매금지 기간을 모든 주택용지로 확대(공동주택, 단독주택)하여 모든 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이사·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심사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단독주택용지의 전매현황, 청약경쟁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전매차익 수요의 집중에 따른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국민 등의 우려가 큰 바 관련 대책 마련 필요하며,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감안,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잔금 납부 전’까지만 전매를 제한한 본 개정안은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강화 **신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중대사고 등으로 1명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콜밴의 호객행위 지시 금지,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한국어 및 외국어) 명칭 표시 의무 추가

심사결과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평균) 분석결과, 화물차 사고건수는 전체의 14.3%인데 비해 사망자수는 전체의 28.8%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의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 부과 필요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 강화 **신설**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금지 의무 추가

심사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집중도와 주의력 저하로 사고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지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 수준)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위험성이 큰 만큼, 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의 사용·시청을 금지하도록 의무 부과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제49조)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표시·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신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 주기를 매월로 규정

위반 행위·내용	운송사업자 행정처분(별표 2)		운송가맹사업 행정처분(별표 6)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고 또는 합의된 운임·요금이 아닌 부당 운임·요금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위반차량운행정지 30일
부당한 운임·요금의 환급을 요구 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20일 	위반차량운행정지 30일	위반차량운행정지 60일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의 비정상 작동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속도제한장치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운행기록계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속도제한장치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운행기록계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고장·사고차량 소유·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 사업전부 정지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전부 정지 20일 2차 : 사업전부 정지 40일 3차 : 사업전부 정지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 사업전부 정지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전부 정지 20일 2차 : 사업전부 정지 40일 3차 : 사업전부 정지 60일

위반 행위·내용	운송사업자 행정처분(별표 2)		운송가맹사업 행정처분(별표 6)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위반차량운행정지 60일	〈신설〉	위반차량운행정지 60일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사업일부정지 10일	〈신설〉	사업일부정지 10일
호객행위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지시한 경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30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30일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한국어 및 외국어로 된 '화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신설〉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위반 행위·내용	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 처분(별표 3의2)	
	현 행	개정안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2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자격정지 50일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4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 자격취소 *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 사망자 2명 이상 : 자격취소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자격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설〉	자격취소

심사결과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이용자의 불편·피해 해소 및 운송사업자·종사자 의무사항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보호를 위하여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의무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불법행위 및 준수사항 미 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처분기준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별공급 대상기준 강화 **신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9억 초과 주택 중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심사결과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으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 규제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본 규제로 인해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되고, 가점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대됨.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 우선 배정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사회적·정책적 배려라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등

(2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 연료사용 승합차 연료장치 기준 **신설**

-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의 시험조건 중 어느 하나로 시험하였을 때 연료장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
- (별표 11의 6)

시험조건	연료장치 기준
1. 완성차의 전복시험 2.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3. 완성차의 수학적 해석에 의한 전복시험	연료장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 단, 충전구 및 충전용 배관 제외)가 지면 또는 차체 (최대 변형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함한다)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심사결과 천연·수소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4.5톤초과 승합차의 전복 시 차체 변형으로 인해 연료장치가 지면이나 차체와 부딪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가지 전복시험조건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입법과정에서 피규제자와 협의를 통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연료장치 기준 정도를 정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사전검토 결과 기술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특별공급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하던 것을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간 전매제한

심사결과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 강화의 필요성 인정되고, 본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규제 차등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신설 **신설**

조 항	주 요 내 용
제6조	초소형자동차 차량총중량 제한 기준
제15조	초소형자동차 주제동장치 구조와 제동능력 기준
제32조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기준
제38조(별표35)	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별표36)	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별표37)	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별표38)	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8조의4(별표39)	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39조(별표40)	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0조(별표41)	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1조(별표42)	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2조(별표43)	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조 항	주 요 내 용
제43조(별표44)	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4조(별표45)	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4조의2(별표46)	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제45조(별표47)	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 기준
제49조(별표48)	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
제49조(별표49)	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
제50조(별표50)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
제51조	초소형자동차의 창뒤키 구조 및 작동주기 기준
제90조(별표51)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
제104조	초소형자동차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 구조 및 강도 기준
제109조	초소형자동차의 창뒤키장치 성능기준
별표33	초소형자동차 제원의 허용차 기준 마련

심사결과 초소형자동차가 국내에 출시·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소형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는 것과 맞추어, 우리나라 주행여건과 차량 구조·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신설·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초소형자동차의 특성 및 주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럽(EU)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화시켜 별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적용이 불필요한 분야는 면제하였으며 국내 교통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관련업계와의 충분히 협의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 마련 **신설**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내 구동축전지, 가스용기 등의 기준 마련

심사결과 안전한 수소연료전기 지게차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해당 지게차 내 세부 부품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현행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도로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도로점용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강화**

-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입로 및 출입로 등의 경우에 보행시설물(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주차장법에 따른 경보장치 등)과 도로안전시설(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시선유도시설, 노면요철포장,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향후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시 안전시설 설치 필요여부 판단에 의해 설치장소와 시설규모가 정해지므로 설치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사고예방을 통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절감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업무정지, 운전업무정지, 운전승인취소)을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신설·규정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공항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차량 등을 운전 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 가. 미승인 운전자가 차량 등을 운전 또는 사용한 경우 나. 운전자격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40일 운전승인취소명령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3.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 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4.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제한속도 10km/h 미만초과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나. 제한속도 10km/h 이상초과 다. 추월 금지 위반 다.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앞을 가로지르거나 항공기 밑으로 운항 하는 행위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8일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가.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한 경우 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6.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 또는 음주를 하거나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환각제 등을 복용한 경우 나. 음주 또는 환각제 등을 복용 후 운전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운전승인취소명령
8.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나. 일시정지선 미준수 또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 주·정차를 한 경우 다. 차량·장비 등을 견인 시 공항운영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보호구역 내에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전 또는 장비를 사용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1일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2일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4일 1차 위반 : 업무정지 2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4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8일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마. 차량·장비, 항공기 소유자가 공항 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장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바. 항공기 및 차량 등을 소유한 자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급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항공기 및 차량 등에 사용하는 연료의 누유 시 지체 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누유 제거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항공기·차량·사람·장비 간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만,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는 제외		
1)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 전치 2주 미만		업무정지 3일
나) 전치 2주 이상 4주 미만		업무정지 5일
다) 전치 4주 이상 3개월 미만		업무정지 7일
라) 전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업무정지 10일
마) 전치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업무정지 14일
바) 9개월 이상 1년 미만		업무정지 20일
사) 전치 1년 이상		업무정지 30일
아) 사망자 발생 시		업무정지 1년
2) 차량, 시설 및 항공기 등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 500만원 미만		업무정지 3일
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업무정지 5일
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업무정지 7일
라)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업무정지 10일
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업무정지 15일
바) 1억원 이상		업무정지 20일

비고

1. 처분의 구분

- 가. 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항공기정비, 항공기취급업(급유, 하역업, 지상조업을 말한다) 및 항공 관련 업무 등 해당 종사자의 고유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운전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운전업무 종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운전승인 취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승인을 취소한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결과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업무수행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행정처분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자격증명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항공안전법 43조)하고 있는 입법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공항시설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신설**

-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말 것
- 일시정지선 준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이외의 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말 것
- 차량·장비 등을 견인 시 공항운영자가 정한 방법을 따를 것
- 보호구역 내에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또는 장비를 사용 중인 경우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 차량·장비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
- 항공기 및 차량 등을 소유한 자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급유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및 차량 등에 사용하는 연료의 누유 시 지체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신고하고 누유 제거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항공기·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 것. 다만,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는 제외

심사결과 공항시설 보호구역(지상) 내의 항공관련업무 수행 중 사소한 안전문제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에 공항 내 차량·장비 통제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각 국가에서도 공항별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마련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에 최소 2명(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각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중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 ① 기술사, ② 기사자격자로서 관련 업무 10년 이상, ③ 산업기사 자격자로서 관련 업무 13년 이상)

심사결과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는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현장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해야하나, 설계도서의 제출 유무 등 법적 요건 위주의 검토에 그치며,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기술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한 만큼 해당 센터 내 배치인력을 설계·구조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법령상 업무영역을 감안했을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단지 밖의 토지 등 편입면적 기준 마련 **신설**

-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심사결과 재건축사업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무분별하게 편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편입면적 제한 필요하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대지면적을 20% 이내로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별도의 변경인가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 본 편입면적의 기준도 주택단지의 20% 미만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마.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바.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상 국토교통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 또는 검정기관의 위반행위 시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비교 시 강화된 수준이나, 개별 차량의 검사업무(인증된 부품·장치 등 차량에 대한 사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대행자와 비교할 때, 대체부품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많은 수량의 부품이 지속적으로 차량에 공급되는 만큼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인증업무가 중요한 만큼 보다 엄격한 처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복합지원시설의 설치허용 범위 **신설**

- (복합지원시설의 설치허용 범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임차인의 경제 및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주택단지 등에 건설되는 만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범위 제한 필요하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도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복리시설'의 범위에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있는 타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최초임대료 산정기준 **신설**

- (최초임대료) 임대사업자 등이 최초임대료 산정 시 주변 임대료 시세의 약 95%(주거지원대상자는 85%)로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단기민간임대주택 등과는 달리 용적률 완화 등 별도의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적은 공적지원을 받는 제도인바, 그 중간 수준에서 규제수준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임대주택 관련 '공적지원 및 임대료 규제' 현황 |

주택유형	장·단기 민간임대	공공지원임대	5·10년 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민간·공공 구분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없음	시세 95%	시세 90%	시세 60~80%	시세 60~80%	시세 30%
공적 지원	小 → 大					
	기금지원, 세제혜택	기금지원, 세제혜택 공공택지 (감정가격) 건축규제 완화	기금지원, 공공택지 (조성원가 60~100%) 건축규제 완화	재정 30% 기금융자 40% 공공택지 (조성원가 60~80%) 건축규제 완화	재정 85% 공공택지 (조성원가 60%) 건축규제 완화	

(3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특별공급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기산점 변경) **강화**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 후 ‘최초의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변경

심사결과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 전에 전매하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매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마련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조작·변경시 처벌 규정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자동차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차량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기계·기구의 부정한 조작·변경 등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처분기준을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기계·기구의 조작·변경 등은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격한 처분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동 처분기준 내 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조작·변경시 처벌 규정 **신설**

-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 처분 내용

위반내용	관계 법령	처분내용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제동장치·등화장치 점검과 배출가스·소음 측정 등 24개 항목에 대해 검사기기 및 계측기 등을 이용해 검사하는 만큼, 기계·기구 기준 값의 적합성과 측정값의 올바른 적용이 중요한바 기계·기구의 조작·변경 등은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로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격한 처분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동 처분기준 내 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자동차등록령 (강화 1)

심사내용 튜닝에 따른 차종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 **강화**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신청대상에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차종' 정보를 근거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만큼 차종정보의 현행화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가 튜닝을 통해 차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차종 변경은 중요사항으로 현행 변경등록 신청 의무사항 항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청 즉시 처리되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의 보고 **신설**

-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주행모드가 추가되거나 작동속도 범위가 증가되는 경우, 구조·장치의 수량이 감소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
-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누적 주행거리,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의 해제 정보, 보험가입 정보 / 연 2회(6.30, 12.31 이내)
-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사고 일시·장소, 피해정도 등, 운행정보 저장자료, 사고기록 장치가 장착된 경우 해당 저장정보 / 사고발생 후 2주일 이내(사고발생 사실은 1일 이내에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보고)

심사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보 및 교통사고 정보를 파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보고대상 및 기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검사 수준 강화 **신설**

- 제작일로부터 1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 받는 경우 주요부위*에 대해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함

* 권상장치 감속기 기어 및 축, 텐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클라이밍 또는 텔라스코픽 장치의 각 부분(각 부품 역할 및 검사필요 이유는 [붙임 참조])

- 제작일로부터 15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장 설치 전에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함

* 비파괴검사: 부재(배관, 강재 등) 간 접합을 위한 용접 후, 초음파(Ultrasonic), 방사선(Radiographic), 자성(Magnetic) 등을 이용해 용접 부위 내·외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검사수준을 강화하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식에 비례하여 결함확률이 높아지므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해외 유사입법례, 규제 차등화 여부 등을 감안했을 때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력 제출 의무화 **신설**

-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점검 내력을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정비이력 등을 제출토록 하여 검사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정비·보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항만법」에서 항만시설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보수기록, 사고기록 및 자체점검기록을 작성·관리토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이 타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수단을 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갑문본체, 갑문구동장치, 취수·배수설비, 다목적 크레인 등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신설**

-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토록 함

* 조종실 외부의 마스트 혹은 선화장치(텐테이블)에 설치 예정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설치·해체 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이 설치·해체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 유사입법례 및 비례원칙 등을 감안,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영상기록 제출요청에 대한 수인의무 부과 **신설**

-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을 때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토록 요청받은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설치·해체 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이 설치·해체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 유사입법례 및 비례원칙 등을 감안,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 하자 무상수리 계획의 통지 **신설**

- 통지대상 하자 : 제작 등 및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자
- 통지해야 할 사항 : 무상수리 대상, 하자내용, 하자원인 및 수리방법, 무상수리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
- 통지기한 :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부터 10일 이내

심사결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 및 무상수리 계획 통보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지대상을 무상수리 보증기간 내의 ‘제작 및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로 한정하였고, 통지내용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안전운행과 무상수리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매매중사원 교육 실시 **신설**

-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자 8시간 이상,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 발급자 4시간 이상, 교육은 연합회에서 수행
-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회계관리 및 전산처리, 고객응대 예절

심사결과 자동차매매 종사원의 자질 및 역량을 향상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매매종사원 교육대상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신규 종사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4~8시간 등으로 다양)하고 있는 것에 보수교육(2년 주기, 4시간)을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의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및 기준 **강화**

- (관측범위) 자동차 전·후 각 20m 거리 기준으로, 높이는 전면 0.5~7m, 후면 0.5~3m와 좌우 각각 11.5m의 범위 내에서 관측 시 가리는 부분이 없을 것
- (추가부착) 가림이 발생하는 경우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설치하거나 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할 것
- (부착위치) 지면에서 1.2m이내로 정중앙 부착 원칙, 곤란한 경우는 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
- (부착각도) 위쪽방향으로 30°, 지면방향으로 5°이내일 것
- (편평도)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반경 3m이상으로 하고, 꺾이는 부위가 없을 것

심사결과 단속카메라 등을 회피하여 과속·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번호판 부착위치 및 관측범위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관리함으로써 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작·시판 중인 자동차 구조(번호판 부착위치)가 이번 개정되는 관측범위와 부착위치 및 각도 등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번호판 가림으로 인하여 번호판을 추가 설치(1개)할 경우에도 단가 3,800원으로 비용이 미미하여 피규제자 부담이 크지 않으며 유럽(EU)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신설**

-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자격) 특정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규정
 - (학력) 학력 인정범위 및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를 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의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대부분 준용한 바 본 규제의 수준이 타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본 개정안〉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종목	배점	자격종목	배점
자격	기술사	40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30	기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능사	15
	기타	10	기타	10
학력	학력사항	배 점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기타(비전공)	10	
경력	산식: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N은 경력의 총합을 365로 나눈 값		산식: $(\log N / \log 40) \times 100 \times 0.4$ *N은 경력의 총합을 365로 나눈 값	

심사내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신설**

- 구체적인 공간정보기술자 등급산정 기준 마련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의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대부분 준용한 바 본 규제의 수준이 타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상동)

심사내용 공간정보기술자 증명서 내 제재사항 기재 **신설**

- 증명서 발급 시 해당 공간정보기술자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로부터 3년간,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하도록 하고, 표기범위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정함

심사결과 증명서 발급 시 해당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여부 등을 기재함으로써 부자격자의 사업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제재사항은 3년,

부실벌점은 2년간 표기토록 하여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등화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강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구분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변경)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심사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방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위 보증서의 미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 대여업체의 사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한 형태의 대금지급 보증수단인 ‘하도금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같은 법에서 본 개정안과 동일한 규제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관련 행정처분 수준 비교 |

구분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기계 대여대금(개정안)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하도금 대금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50)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 **신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 예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상 연구·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3. 운송·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

심사결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인력기준을 조정(등급별 2인 이상 → 1인 이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의 비행안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전문분야이며 업무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항공교통·항공운항·비행장운영·비행절차 분야 연구·조사 전문가와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 실무경력자 등의 인력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며 항공기 비행안전 여부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3인 이상)으로 판단되어 항공안전 확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와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감리원 감점기준 강화 **강화**

- 퇴사로 인해 교체된 감리원이 1년 이내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 부여

심사결과 입찰시장 내 질서유지 및 입찰 참가자 간 공정 경쟁 도모를 위해 감리자 교체 기준을 강화하여 '퇴사 후 재입사' 등의 편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퇴사 감리원이 동일회사에 재입사 했을 때 해당 감리원의 입찰 참여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참여는 허용하되 일부 감점하는 것으로 과도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사 감리원이 '동일회사'에 재입사 했을 때만 감점을 하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업선택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기준 **신설**

- 사업시행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최초임대료 산정 시 조성원가 수준으로 완화받은 토지가격을 고려하도록 함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임대료 산출 방법

- 최초임대료(1년치): (①표준임대시세-②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전월세 전환율)
- ① 표준임대시세: (주변)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구분	일반대상자	주거지원대상자(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공급대상 계수	0.95 이하	0.85 이하

- ②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시세 × 임대보증금 요율(사업자가 정함)

심사결과 택지조성비용의 감소로 주택건설 총사업비가 절감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최초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과도한 차익이 발생하면서 본 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완화받은 토지가격만큼 일률적으로 최초임대료를 낮추도록 강제하지 않고, 위 가격을 고려해 최초임대료를 산출하도록 선연적으로 규정한 만큼 민간의 규제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차량 확대 **강화**

- 마을버스를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치해야 할 교통편의시설의 종류(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 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를 지정

심사결과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을버스 노선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마을버스 등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인권위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마을버스 등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11.5)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농어촌·시외버스와 동일하게 설치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작은 소형버스 경우도 휠체어를 꺼내기 위한 공간을 1개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세대구분형 주택 반영의 최소기준 마련 **강화**

- 세대구분형 주택 반영 최소기준(전체 세대 수의 5% 이상)을 제시하고, 반영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항 목		1급	2급	3급	4급
수평분리계획 (5점)	공간계획	25%이상	20~25%	15~20%	5%이상*~15%
	(2점)	2점	1.5점	1점	0.5점
	설비계획	25%이상	20~25%	15~20%	5%이상~15%
	(3점)	3점	2.5점	2점	1점

심사결과 장수명 주택의 수리 용이성 부분 평가 시 점수획득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수의 세대구분형 주택을 적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적용비율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불합리 개선 필요하며, 피규제집단의 대상범위, 기존의 세대구분형 주택 적용 현황, 대체 선택지 존재 등의 측면을 감안,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신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
 - (산출기준) 비용의 성격에 맞게 직·간접공사비 모두에 반영하되, 적용대상항목을 구분·제시하여 중복계상 방지

심사결과 기존의 모호했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환경관리비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발주자-시공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관리비를 간접비 혹은 직접비에만 반영할 경우 시공사에게 불합리한 부담 전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제정안과 같이 직·간접비 모두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강화**

-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 (현행) 1,000세대 이상 → (변경)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심사결과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주택품질의 향상 및 입주자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연평균 공급단지의 50% 이내로 한정되며,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모두 공개’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사업주체 등의 부담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 바 규제 수준 적정하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각 세대당 약 9,400원(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분양가 대비 미미한 수준인 반면, 주택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입주자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강화

- 건설업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낙찰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 등 기존 대책의 수립·이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 수는 선진국 대비 2~3배 수준이며,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1.5%)이 건설업에서 발생 중인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일부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전체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 비중, 순공사비 삭감에 대한 추가대책 예정,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강화

- 선분양 제한 대상 영업정지의 사유 확대 및 영업정지 기간별 제재 차등화
 - (현행) 「주택법 시행령」(시행주체) 상 영업정지 3개 사유 → (변경) 「주택법 시행령」(시행주체)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공사) 상 영업정지 23개 사유
-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준 마련
 -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는 2년 간(6개월 단위 업데이트) 단계적 선분양 제한

심사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부실시공은 건설작업자 및 일반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사전방문의 경우 사용승인(준공) 시점에 임박(1~2개월 전)해 진행되므로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이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입주하는 실정을

개선할 필요. 영업정지의 경우 부실시공과 관련성이 큰 일부 사유만을 선분양 제한 사유로 선정하여 본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제재를 받는 업체의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적정성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비용부담 주체인 입주자의 관점에서 분양가의 일부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측면보다 부실시공 예방, 시공품질 사전확인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우수 부동산사업자 인증기준 마련 **신설**

- (인증기준) 5개 심사항목, 17개 세부심사항목으로 평가하여 ① 심사항목별 총점의 40% 이상 & ② 전체 총점의 70% 이상 득점한 경우 우수 부동산사업자로 인증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개요 |

심사항목	주요 세부심사항목
① 운영계획(20)	향후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실행계획 평가(정성)
② 전문성/법준수(20)	전문인력 보유/법령 위반 및 체납여부 점검(정량)
③ 안정성/신뢰성(20)	종사기간, 연대보증, 시스템 개발·활용 등(정량)
④ 우수성/참신성(20)	서비스 제공실적, 종합서비스의 우수/참신성(정성)
⑤ 소비자 보호(20)	소비자보호방안 마련(정성), 사업자 담보능력(정량)

심사결과 심사항목 선정의 적절성,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 사전 검증, 피규제집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규제차등화 여부 등을 감안,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기준 **신설**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 허용

심사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 유도를 위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공급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적재량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증차를 방지하고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신규허가 시 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1.5톤 이하에

대해서만 신규공급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화물업계 공동 합의 및 국회상임위 협의를 거친 사항인 점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신설**

- 사업용 화물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주기,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검사)
- 다만,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 검사 대체 가능

심사결과 증가추세에 있는 화물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12년 231건 → '16년 381건)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중교통인 버스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기 도입(여객규칙 '14.12개정, '16.1시행)하였으며 택시도 도입 예정(여객규칙 '18.2개정, '19.2시행)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재화물 낙하·이탈 방지 기준 **신설**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재화물 낙하방지 기준 및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덮개·포장 및 고장장치 등 기준 규정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적재물 고정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재물 낙하사고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적재물 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럽, 일본 등 적재화물에 대한 고정방법을 규정한 해외 유사입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심사결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보호를 위하여 사업용 차량 운송 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 의무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과 「도로교통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설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신설

-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의 세부기준 마련
 - (위반종류) 건설업자의 직접 위반행위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간접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직접위반 시 엄격 처벌
 - (위반정도) 금품·향응의 가액을 기준으로 4개 구간(입찰참가 제한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재 수준을 차등화

| 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제공에 따른 세부 제재기준(안) |

위반 행위	건설업자가 금품 등 제공 (직접 위반행위)	용역업체가 금품 등 제공 (간접 위반행위)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위반 정도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20%	2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1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0%	1년
	500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5%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종류(직접 및 간접) 및 정도(금품·향응 가액)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여 규제를 차등화함으로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해당 시·도 내 입찰참가 제한되더라도 타 시·도 입찰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국내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 선정 입찰건수를 감안, 본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 제한의 최소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신설

- (교육 대상) 운전, 관제, 승무·역무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 (교육 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 (교육 내용) 철도안전규정,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위기대응,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심사결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 및 시간, 내용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운행지연 방지 등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비교시 교육시간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철도안전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교육시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개조승인 및 개조신고 신청 **신설**

-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명시
- 개조신고만으로 가능한 철도차량의 개조사항을 명시하고 제출서류 및 기한 명시

심사결과 운행중인 철도차량의 개조사항을 전문기관에서 확인함으로써 개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철도차량기준에 맞지 아니한 개조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운행 중인 운송수단의 개조시에 승인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한 항공, 자동차, 선박 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운행제한 처분기준 **신설**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38조의2 제2항을 위반 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 차량을 개조 하여 운행하는 경우	법 제38조의3 제1항제1호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1개월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2개월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4개월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6개월
2) 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철도 차량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 제1항제2호	시정명령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1개월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2개월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4개월

심사결과 철도차량 개조승인 등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반횟수별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철도와 같이 장시간 탑승, 숙박을 제공하는 대규모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개조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개조승인 없이 운행시 운행증명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공안전법」등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허가취소 등의 기준 **강화**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차량 또는 경영 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친환경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0.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법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0.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차.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 제1항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심사결과 적재화물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 고정 의무를 준수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적재물 고정 의무

위반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친환경 화물차 경우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스타트업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경영의 위탁금지를 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동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재수단이 없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허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신규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운송사업 허가 조건 위반 시 처분규정과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사업의 개선명령 대상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개선명령 할 수 있는 사항 명시

심사결과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하는 온라인 매매의 경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최소화 및 행정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명령 사항 명시 필요성이 있으며 이용자 피해예방 및 거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온라인 매매정보제공자가 기존법령 하에서 적용받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보다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제공정보 **신설**

- 매매대상 자동차의 사진 및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 명시

심사결과 이용자 보호 및 거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구매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결정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내·외관 사진 및 자동차 이력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기존 법령 하에서 적용받던 정보 제공 의무 사항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 사항 **신설**

- (등록기준) 서버 관련 기준(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을 규정하고 불만접수 창구 및 이용약관 마련 의무화
-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상호·서비스 명칭, 주소·전화번호, 홈페이지 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명시

심사결과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상호, 홈페이지 도메인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관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상거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호스트서버 용량 및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이용약관 마련 등을 의무화한 사항이며 변경등록 사항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 필요한 사항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4항제2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4항제3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라. 법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 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4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법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4항제5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심사결과 차량매매는 일반 쇼핑물과는 달리 매매가가 소액이 아니며, 온라인 거래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오프라인 매매보다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의 취소·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기존법령 하에서 적용받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는 축소하되, 동일한 위반행위(거짓등록, 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분기준을 규정함바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항공업무수행자 근무환경 개선대책 **신설**

-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기업체) 대표에 대하여 공항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 방지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의무화

심사결과 공항운영자가 작성하여 항공업무수행자가 소속된 기관에 나누어 주어야할 매뉴얼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업무 수행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항공청의 민간항공안전관리메뉴얼 (Civil Aviation Program 642 Airside Safety Management)에도 공항 내 모든 기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장비, 부상 없는 업무 시스템, 복지정책 등 종사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신설 6)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기준 **신설**

- ‘장비’의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시험’과 장비를 ‘제작·수입하는 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성능인증 품질시스템 평가’ 각각이 모두 적합할 경우 인증 부여

심사결과 항공보안장비 자체의 제품성능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제작·수입하는 자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성능인증 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기 제작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형식증명을 통해 ‘항공기’

자체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제작증명을 통해 ‘항공기 제작사’의 능력을 동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역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를 운영할 때 ‘제조사’의 품질경영 시스템(ISO9001)을 우선 검증한 후 ‘제품 자체’의 시험평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신청 **신설**

-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키트), 장비의 구조·운영방법·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보유시설·보유 기술 인력 현황의 증명서류 등)를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항공보안법」(’17.10.24. 공포, ’18.10.25 시행)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바 관련 규정 마련할 필요성 인정되며 제작·수입사의 능력 및 장비의 성능평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규제수준 적절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 절차 **신설**

-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성능평가시험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하며, 시험 전·후에 시험계획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제출(시험기관 → 인증기관)토록 함

심사결과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최종 인증서 발급기관)인 만큼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성능평가시험의 적합성을 시험실시 전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기관의 ‘시험계획서’ 및 ‘성능평가시험 결과서’의 제출이 시험기관의 평가 자율성 혹은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성능평가시험의 결과를 고의로 거짓조작(6호)한 경우는 그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2차 위반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내용연수 현황 기록관리 **신설**

- 성능인증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인증·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 및 관리토록 함

심사결과 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를 의도하는 자가 위 자료를 토대로 보안검색을 회피·무력화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 높으며 미국 교통보안청(TSA) 역시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

(TSL)의 자격요건으로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 성능인증 자료 등의 보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성능인증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료를 단순히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규제집단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기준 **신설**

- (보안)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기술인력) 타 시험기관 내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2명, 평가 및 연구 경력 3년 이상 2명,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자 1명
- (시설) 항온·항습 능력을 갖춘 것, 실험실 보유, 화학물질 보관 및 처리시설 보유
- (장비) 각 항공보안장비별 시험용 시료 등

심사결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테러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미국 교통보안청 사례를 참고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법인 등으로 시험기관을 한정하는 것이며 시험기관의 주요 업무가 시험, 실험, 평가 등인 만큼 시험·평가업무 전문가, 실험실, 시험용 시료 등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형식증명 전문검사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등 지정요건에 비해 본 개정안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

위반행위 또는 사유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당연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당연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20일)	지정취소
5.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조치	시정조치	지정취소
6.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90일)	지정 취소	

심사결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사유(6개 항목)는 모두 상위법에서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수준을 1년 이내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최대 120일(최소 30일)로 규정한 만큼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능평가지험의 미실시 및 성능평가지험 실시기준 위반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최초·과실 위반자 및 고의·상습 위반자 간 규제를 차등화한 점과 시험기관 지정 후 지정기준 미충족하게 된 경우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2차에 걸쳐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피규제집단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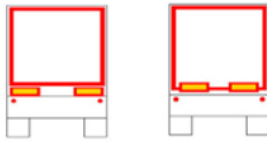

심사내용 화물·특수차 가변축 설치기준 강화 **강화**

-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축중 초과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차축이 하강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 축중 10톤 또는 제원표상의 허용 축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심사결과 허용 축중을 초과했음에도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축을 조작하여 들어 올린 상태로 운행하고 단속 시에만 차축을 하강 조작함에 따라 과적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고려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가변축 설치기준 강화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예방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이미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로 유럽의 형식승인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용편익 분석결과 피규제대상은 9,354대로 가변축 설치비용이 대당 약 80만원 입을 고려시 본 규제신설로 인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발생하나 가변축 장착으로 인한 도로 보수비용 감소 비용은 연간 약 422.3억 원이며 교통사고 감소 등 직·간접인 편익을 고려시 비용보다 편익 발생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특수차 반사띠 설치기준 **신설**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옆면과 뒷면에 반사띠 설치를 의무화(0.75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는 앞면에 설치 가능)

형태	뒷면	옆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면 : 백색 • 뒷면 : 적색 또는 황색 • 옆면 : 황색 또는 백색 		 <p>최소 전체길이의 70%이상</p>

심사결과 화물차는 다른 차종에 비하여 야간시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타 차량의 인지시간이 늦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바 반사띠 부착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후속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 차량의 저속 주행이나 주·정차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통사고 감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기술 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였고 국제기준((UN-R, UN-GTR)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하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반사띠 설치대상 차량은 5,460대로 반사띠 설치비용은 대당 30만원 정도로 본 규제신설에 따라 연간 약 11.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반사띠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비용 연간 2.8억 원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륜차 제동장치 설치기준 강화 **강화**

-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kW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

심사결과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급제동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국제기준의 ABS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ABS 설치 의무화하고 있고 '20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신규·제작하는 이륜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편익 분석결과 이륜차 제동장치 설치대상 차량은 35,124대로 설치비용은 대당 25만원 정도이므로 본 규제신설로 인해 연간 약 62.7억 원 비용이 발생하나 이륜차 사고 감소로 인한 편익 연간 7.6억 원 등 직·간접적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전원전기장치 및 정면·측면 충돌시험 기준 조정 **강화**

○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현행안	개정안
제91조(연료장치) 제4항 [별표 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 대상 : 승용자동차 및 4.5톤 이하 승합차 • 충돌속도 - 50km/h 측면충돌 - 48.3km/h 고정벽정면충돌, - 48.3km/h 후방추돌 • 평가항목 -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제91조(연료장치) 제4항 [별표 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① 승용자동차 • 충돌속도 - 56km/h 부분정면충돌(신설) - 50km/h 측면충돌 - 50km/h 고정벽정면충돌(강화) - 48.3km/h 후방추돌 • 평가항목: 현행과 동일 ② 4.5톤 이하 승합차 • 충돌속도 및 평가항목 : 현행과 동일

○ 충돌시의 승객보호 기준

현행안	개정안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별표 14]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 고정벽정면충돌 - 대상 : 승용자동차 - 충돌속도 : 48.3km/h - 평가항목 : 인체상해 <신설>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별표 14] 충돌시의 승객보호 기준 • 고정벽정면충돌 - 대상 : 승용자동차 - 충돌속도 : 50km/h(강화) - 평가항목 : 인체상해, 문열림, 인화성액체연료 장치 안전성, 조향장치 변위 • 부분정면충돌 - 대상 : 승용자동차 - 충돌속도 : 56km/h - 평가항목 : 인체상해, 문열림, 인화성액체연료 장치 안전성, 조향장치 변위

○ 측면충돌시의 승객보호 기준

현행안	개정안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별표 14의2]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 측면충돌 - 대상 : 승용자동차 - 충돌속도 : 50km/h - 평가항목 : 인체상해, 문열림, 인화성액체연료 장치 안전성 <신설>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별표 14의2]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 측면충돌 (현행과 동일) • 기동측면충돌 - 대상: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3.5톤 이하) - 충돌속도: 32km/h - 평가항목: 인체상해, 문열림, 인화성액체연료 장치 안전성

심사결과 현행 법령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비한 승객보호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충돌시험조건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의 차체 안전성을 증가시켜 차량 내 탑승객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과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UN/ECE 충돌안전 전문가회의 결과를 반영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주택관리업자 참가자격 제한 강화 **강화**

- (기존)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원이 해당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 → (변경)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

심사결과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관리비 및 업체선정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입찰비리 근절과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역할 필요.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 과도한 규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사유 신설 **신설**

- 특정 공동주택을 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공동주택 내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을 평가위원에서 제외

심사결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이라는 지위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원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는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내 용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그 역할 및 권한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원으로서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큼. 관리사무소장의 일반적인 평가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 속한 주택관리업체와 관련된 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닌바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찰공고 방법 추가 **신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고

심사결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제·개정 시 누락된 입찰 공고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찰내용을 공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과 공개의무화** **강화**

- 적격심사 평가표를 보관토록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공개요청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

심사결과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적격심사표를 보관·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평가표 공개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 정도 외에 피규제집단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평가표 공개에 따라 입주자 의혹해소 및 투명성 제고 등 기대효과는 크다고 판단되고, 행정적 부담 역시 이미 적격심사제 운영회의록의 보관·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표만 추가로 보관·공개하는 것인 바 추가비용은 경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등 설치기준 강화** **신설**

- 온실, 육묘·종묘배양장에 관한 설치기준 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온실, 육묘·종묘배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1가구당 1개 시설, 각각 500㎡ 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입법 불비 상황을 악용한 일부 농업인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육묘재배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편법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같은 법에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면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 중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은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축사(500㎡, 수도관), 작물 재배사(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300㎡), 농업용 창고(150㎡), 농막(20㎡) 등

심사내용 자연휴양림·수목원 내 일반음식점 등의 연면적 제한 **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반면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 내 휴게·일반음식점은 각 1개소 이내, 개소당 200㎡당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감안,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하자재발통보가 이루어진 하자관련 자료제출 **강화**

- 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는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제출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의 주행·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구조 및 장치에 발생하는 하자로 하자 재발 통보된 경우 정부에서도 하자에 대한 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환·환불 중재 시 자동차 무상수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중대한 하자의 재발 통보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작결함 조기경보제(17.7도입)에 따라 제작자 등은 무상점검, 수리 내용 및 정비업자와 교류한 기술정보자료를 제출 중으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제출 시 중대한 하자 관련 자료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규제신설로 인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국내 및 국제항공사업의 면허요건 **강화**

- 항공운송사업 면허 요건에 인력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노선별 취항계획의 타당성 명시

심사결과 인력 및 운수권 확보 여부 사전 검증을 통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운영 안정화, 운항 정시성 확보를 통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신규 면허 신청 시 노선 및 인력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면허기준에 명문화함으로써 기준 충족 여부 검증 절차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현재는 면허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이를 면허기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으며, 미국 등 외국사례와 해운법과 비교 시 적절한 수준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무구조 개선명령 기간 단축 **강화**

-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자본잠식 경영 시 정비 부실, 안전투자 축소, 무리한 운항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조기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효성 부족한 바 1/2 이상 자본잠식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가 조기에 사업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 방치로 항공사가 파산하는 경우 항공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조기에 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면허발급 이후 항공사 재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면허 정지·변경·취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바 국제기준에도 부합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4) 항공사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강화**

-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능력 검증을 위한 검토대상 기간 1년 확대(운항 개시 예정일부터 2년간 운영비 등 예상비용 충당 가능 여부 평가 → 3년간)
- 항공기 보유대수 상향(3대 → 5대, 사업계획서 상의 항공기 도입계획으로 평가)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신청 사업자의 건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조정한 바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재무능력 평가대상 기간은 1년 확대하였으나, 비용 충당 방법을 기존 '영업수입'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완화하여 영업외수입도 포함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무능력 평가부담이 완화되었으며 항공기 보유대수는 항공사 운영 및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단 확장이 필요하므로 상향된 기준의 준수 가능성이 높으며 면허심사 시 항공기의 실물 도입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상 도입계획을 평가하도록 명문화하여, 면허심사 기간 중 불필요한 리스료 지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5)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 **신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 범위 규정

동일성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튜닝	각 장치에 대한 불법 튜닝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용도변경	렌트 및 영업용 이력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리스 이력은 제외	
자기진단 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위치센서(TPS), 산소센서, 크랭크위치센서, 흡기온도센서
	변속기	인히비터스위치,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실린더블럭	실린더 블럭 및 그 내부 부품
	커먼레일직분사 엔진 (CRDI)	커먼레일, 고압연료라인, EGR밸브, 연료압력조절밸브 ※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원인이 되어 위 부품이 고장 난 경우와, 위 부품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엔진오일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엔진오일 및 냉각수와 관계없는 부품은 제외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클러치판 제외), 추진축 및 베어링,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 ※ 4WD(선택 4륜구동), AWD(상시 4륜구동)는 기본 구동축에 한하여 보증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 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유 제외)
	수동변속기 (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변속기 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가 원인이 되어 위 부품이 고장 난 경우와, 위 부품의 고장이 원인이 되어 변속기 오일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브레이크압력센서	
전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시동모터, 윈도우모터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기화기(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계이지센서 ※ 위 부품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연료가 누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	

외판부위	후드, 프론트헨더, 도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흡집, 요철, 손상 및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
주요골격부위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기타	성능점검 기관별 성능점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심사결과 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된 바,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점검오류 증명이 가능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항목으로 정비함으로써 책임보험제 운영시 발생 예상되는 분쟁 방지하고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보험가입을 통해 책임짐으로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의 실효성 향상하기 위한 필요성과 보증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점검오류 증명이 가능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성능점검 보증범위 제정을 위해 성능점검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 및 ‘성능점검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하여 보증범위를 정한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6)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신설 2)

심사내용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기준 **신설**

-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기준 명시

심사결과 철도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으로 역명부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성 및 인접성, 건전성 등 확보 필요가 있는 바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익권자가 자율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며 역명과 함께 표기되는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기준을 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또한,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기준을 규정하되 수익권자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행정적절차를 간소화 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역명부기 사용현황 제출 **신설**

- 수익권자의 역명부기 사용 현황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역명부기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 공공성 저해로 인한 사회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역명부기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관련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민원발생 시 조속한 대응으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할 필요성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따른 규제 비용은 경미한 반면, 사용 현황 제출을 통해 역명 부기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속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대상 확대 **신설**

-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대상 확대
 - (현행) 대형감정평가법인 → (변경) 전체 감정평가법인

심사결과 모든 감정평가법인에 정당한 평가를 통해 능력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토록 함으로서 성과 및 보상 간 연결성을 제고하여 공시의뢰제도의 합리성 제고 기대되며, 가격공시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한 중소형법인 등의 경우 본 평가를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우수업체의 경우 규제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대형법인과 달리 중소형법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경영시스템’ 부문은 제외하고, ‘가격공시’ 부문만 평가토록 하여 중소형법인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강화**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기초·매 5층·지방 슬래브 철근 배치 등 건축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변경)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하고, 촬영 시기를 추가**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방 슬래브 철근배치 시

(변경)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전이기둥·전이보 철근배치 시 추가

심사결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에 대해 시공단계별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사후적으로 부실시공 등의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작업이 높은 기술력 혹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시공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계전문기술자 의무협력 대상 확대 **강화**

<설계분야>

- (현행) 설계자(건축사)가 6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변경) 3~5층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감리분야>

- (현행) 공사감리자(건축사)는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감리 시 단독으로 구조안전 확인업무를 수행 → (변경)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감리할 때 구조 안전 확인 부분은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상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 감리의 경우 구조설계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점을 감안, 건축구조기술사 이외에 건축구조 분야 특·고급기술자도 협력 가능 기술자에 포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건축주·건축사 등의 사익 침해보다 건축물 구조확인 강화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 제고,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 등 공익이 월등히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확대 및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제고하였는바,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9) 유료도로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유소명 또는 해소대책수립 의무사항 **신설**

-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유 소명 또는 해소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위법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 민자사업시행자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하회 시 사유소명):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기자본 비율(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5%,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적용 중)

-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율 기준 명시(상회 시 사유소명)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연 24% 적용 중), 주무관청과 합의 없이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
-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통여건 변화: 협약 체결시 예상되지 않은 다른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변화된 경우

심사결과 민자도로는 건설 및 운영에 민간자본이 투입되거나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국가에서 건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바, 국민편익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민자도로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건전화 등 규제 신설에 따라 달성되는 편익이 침해되는 사업자의 이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해 현재도 민자 도로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후순위 이자율은 대부분의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정하는 범위(연 24% 상한)에서 자금 조달 중으로, 규제 도입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의 부담도 크지 않고 교통여건 변화도 경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등 다수 법령에서 심의·허가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심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과도하지 않으며 또한,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변경 사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확대 **강화**

- (현행) 주택면적, GB해제 비율, 분양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상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50% 이상 GB해제 & 85㎡ 이하	공공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3년	3년	-
			85~100%	4년	4년	1년
			70~85%	5년	5년	2년
			70% 미만	6년	6년	3년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공공분양 외 주택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대상지역)	1년	-
		85~100%			1년	-
		70~85%			2년	-
		70% 미만			3년	-
그외 주택	공공택지		3년	1년	-	
	민간택지		3년	6개월	-	

→ (변경) 주택면적, GB해제 비율, 분양주체 등에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공공, 민간분양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기준을 강화

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Ⅰ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3년	-
		85~100%	4년	4년	1년
		70~85%	6년	6년	3년
		70% 미만	8년	8년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
		85~100%	3년	2년	-
		70~85%	3년	3년	-
		70% 미만	4년	4년	-

*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심사결과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국지적 부동산 과열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며, 전매제한기간의 확대 정도가 쏠 유형에서 2년 이하로 피규제집단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설정근거가 합리적인바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인결

(81) 교통안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신설**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 대상자에게 안전담당자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제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토록 규정

심사결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자에게 교통안전담당자 입·퇴사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신고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리체계 강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제 또는 해제시 30일 이내에 다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여 안전업무 수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시가스법 등 안전관련 법령의 유사 업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통시설관리자 등에게 교통안전담당자 변경사항 신고의무 및 대체인력 지정기한을 규정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설**

- 신규·보수교육 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신청
- 신규(6개월 이내) 및 보수(매 2년마다 1회) 교육기간 명시

심사결과 교통시설관리자, 운수업체 등의 자체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17.12.26.)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육도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도로운송법」 및 「화물자동차 운송법」에 따라 운행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신규 및 보수교육(2년 1회)은 물론, 안전관련 행정처분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분석 결과 교육안전담당자에 대한 신규교육비는 20만원, 보수교육비는 10만원으로 2,861개 교육대상업체에 연간비용 4.97억원이 예상되나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연간 176.1억원)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혼합형 환기설비에 대한 시험조건(ks) 마련 **신설**

- 혼합형 환기설비에 설치된 열회수환기장치도 결로방지를 위한 시험조건을 만족토록 함
 -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프리히터 설치 이외에도 시험조건(KS)을 도입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결로시험 조건 |

분류		실내조건		실외조건		운전 상태	시험 시간
		건구온도(°C)	습구온도(°C)	건구온도(°C)	습구온도(°C)		
시험 조건	하계 (냉방)	27.0±0.3	19.0±0.3	35.0±0.3	24.0±0.3	운전	2시간
	동계 (난방)	25.0±0.3	13.9±0.3	-15.0±0.3	-	운전	2시간
평가기준		시험품 내측에 결로수의 적하와 실내측 본체 외표면의 결로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 발생이 없어야함					

*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라 결로시험을 실시하여 위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심사결과 열회수환기장치 사용에 따른 결로를 방지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고, 기존에 프리히터 설치를 통해서만 결로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에 따라 방식에 상관없이 결로시험 조건만 만족하면 의무이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확대 **강화**

-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예외 대상에서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제외

심사결과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제작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도 안전장치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새롭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화물·특수차의 경우 차체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가 있고 신규제작 자동차의 경우 장착의무 제외대상을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축소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장착의무 대상자를 동일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비용분석 결과 새롭게 장착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 89,395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은 대당 50만원 수준으로 약 447억원의 비용 발생하나 차량별 설치비용의 80%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인 바, 차량별 실부담액은 10만원 정도로 연간비용 10.77억원 소요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제한기간 **신설**

- 강력범죄자의 운전업무가 제한되는 업종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으로 규정(택배업에 해당)
- 범죄의 종류에 따라 2년~20년까지 종사 제한기간 설정

각호	법 죄 내 용	제한기간
제1호	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 등 (미수범 포함)	20년
제2호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상습 강도 절도, 강도 상해등 재범자, 보복 범죄자, 마약사범	20년
제3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	6년
제4호	마약 매매·알선·소유자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소유자 등,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등, 미성년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이와 관련된 미수범	20년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관련 장소, 운반 제공자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 원료의 식물재배 및 종자 등 소유자, 대마초 종자(종자껍질) 소지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법한 처방전 발급자, 향정신성의약품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등, 이와 관련된 미수범	10년
제6호	마약 취급관련 신고 위반, 마약류 취급관련 보고 위반, 대마관련 보고 위반, 사고 마약류 처리 위반, 마약류 저장 위반, 마약류 판매 위반 등	15년
제7호	마약취급 허가증 대여·양도, 마약류 양도, 수입마약 부정판매, 제조마약 부정판매, 마약류처방전 미보존, 이와 관련된 마약취급자 등, 이와 관련된 미수범	6년
제8호	제7호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자, 이와 관련된 미수범	9년
제9호	마약원료물질 수출입 미허가자, 마약원료물질 거래기록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허가증 양도자·취급자, 대마 취급허가증 양도자·취급자, 마약처방전 거짓기재, 치료 보호기관 이탈자, 중독검사 거부·방해자 등, 이와 관련된 미수범	4년
제10호	제9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자, 이와 관련된 미수범	6년
제11호	마약취급자의 거짓 폐업신고, 마약류 취급자 보고위반, 대마재배자의 보고위반, 마약류의 폐기처리 위반자, 마약류 광고 위반자, 마약류 저장 위반자 등	2년
제12호	성매매, 강도강간, 강도강간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20년
제13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년

심사결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산업의 발달로 택배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는 택배 업무의 특성상 소비자의 범죄 노출 위험성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인,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업의 종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에 한해 강력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였으며 강력범죄자의 종사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택시 운송사업 종사자격 제한)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서.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타. 법 제1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심사결과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5톤 초과 화물차 등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지속 단속하였으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불법운행 차량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차의 경우 타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관리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1차 위반사항 처분 후 1년 안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2차, 3차 처분이 행해지는 것으로 규제순응도 제고 가능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금조달계획서 내 신고사항 확대 **강화**

- 자금조달 계획서 내 신고항목 추가(별지 수정)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변경내용 |

기존	개선
(자기자금) ① 예금, ② 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 보증금 승계, ⑤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① 예금, ② 주식채권, ③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④ 현금 ⑤ 증여·상속, ⑥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사채, ③ 기타	(차입금 등) ① 대출액, ② 임대보증금, ③ 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 기타 차입금

심사결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탈루, 엇다운 계약 등의 조사에 활용되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출 방법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서식 개정을 통해 신고항목만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강화**

- (제7조 제1항) 70㎡ 이하 소형주택도 에너지 절감률 60% 이상(패시브하우스 수준)을 달성토록 함

| 주택의 면적별 에너지절감률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
에너지 절감률	70㎡초과	60퍼센트 이상
	60~70㎡	55퍼센트 이상
	60㎡이하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상 (면적에 관계없이)

- (제7조 제2항) 70㎡ 이하 소형주택도 에너지 절감률 60% 이상이 달성되도록 시방기준을 강화
 -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 효율, 조명 등의 기준을 일부 지역에 한해 일부 강화함

Ⅰ 기존 설계기준 강화내용 Ⅰ

(단위 : 평균열관류율, W/m²K)

구 분		현행				개선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창의 단열 [별표 1]	외기 직접면한 창	0.9	1.0	1.2	1.6	0.9	0.9	1.0	1.5	
	외기 간접면한 창	1.3	1.5	1.7	2.0	1.2	1.5	1.7	1.7	
벽체 단열 [별표 2]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15	0.17	0.22	0.29	0.15	0.17	0.22	0.25
		외기에 간접면함	0.21	0.24	0.31	0.41	0.21	0.24	0.31	0.35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면함	0.15		0.18	0.25	0.15		0.18	0.25
		외기에 간접면함	0.21		0.26	0.35	0.21		0.26	0.35
	최하층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면함	0.15	0.17	0.22	0.29	0.15	0.17	0.22	0.29
		외기에 간접면함	0.21	0.24	0.31	0.41	0.21	0.24	0.31	0.41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열원설비	개별난방 보일러 효율	91%				92%			
세대 내 강재문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1.4			
		외기에 간접면함	1.8				1.8			
	거실 내 방화문	1.4				1.4				
발코니 외측창	세대내 발코니 외측창	2.4				2.4				
창의 기밀	외기 직접 면한 창	KS F2292 1등급				KS F2292 1등급				
조명	세대 내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포함)	조명밀도 10W/m ² 이하				조명밀도 8W/m² 이하 또는 전면 LED				

심사결과 사업자는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나 분양가 상승으로 회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은 지속적인 건물 유지비(관리비) 감소로 상쇄돼 사익 침해가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로 인해 피규제집단에 대해 약 14억의 연간균등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국민들에게 연간 약 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 적정성 인정되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초기단계의 낮은 수준(약 128kWh/m²/y)으로서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7)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고시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강화**

- 중형저상버스 세부기준 신설(전체길이, 차실전장 높이, 출입문 폭)
-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일부 강화(휠체어 탑승공간 기준 신설, 휠체어 고정장치 규정 구체화)

항 목		주요내용	
		저상버스	중형저상버스
차량 크기	• 전체길이	• 9,000mm 이상	• 7,000mm 이상, 9,000mm 미만
	• 저상면 높이	• (현행과 같음)	
	• 차실 전장높이	• (현행과 같음)	• 1,900mm 이상
	• 출입문 유효폭	• (현행과 같음)	• 900mm 이상 (휠체어 출입문)
교통약자편의시설	• 경사판 (Sliding Ramp)	• (현행과 같음)	
	• 차체 경사장치 (kneeling system)	• (현행과 같음)	
	• 휠체어 탑승공간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공간을 최소 2곳(중형은 1곳) 이상 제공할 것 이때 탑승공간 내 휠체어는 앞보기로 장착가능할 것 •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고, 최소 750mm×1,300mm×1,400 mm을 가지는 수평면(±4.5°)일 것 • 휠체어 탑승공간의 설치는 [별표 2]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에 만족할 것	
	• 휠체어 고정장치	• 휠체어 고정장치는 휠체어 탑승공간에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도록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휠체어 고정장치 및 후방지지대는 [별표 2]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에 만족할 것	
	• 좌석 팔걸이	• (현행과 같음)	
	• 정차 벨	• (현행과 같음)	
	• 행선지 표시	• (현행과 같음)	
출입문		• (현행과 같음)	
수소연료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등 안전장치		•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에 따름	

심사결과 교통소외지역인 농어촌·마을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중형 저상버스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휠체어 탑승공간 기준은 수동 휠체어표준(KS P 6113:2018) 및 전동 휠체어 표준(KS P 6114:2014)에서 정한 휠체어 권장치수 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휠체어가 탑승 가능하며 저상버스 도입시 일반버스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개정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은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안전기준 **신설**

-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 기준(750mm×1,300mm× 1,400mm)
-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 기준 및 강도기준
- 표준휠체어 규격 등의 정의

심사결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휠체어 탑승공간과 휠체어 고정장치의 세부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개정안의 저상버스 표준 휠체어의 규격 및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의 경우 KS규격과 유사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비용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증가분을 포함한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일반버스 도입비용과의 차액 지원)하여 규제 준수도 제고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강화**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 기준 상향
 - (현행) 2.3m 이상 → (변경) 2.7m 이상

* 단, 각 주택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 마련

- ①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심의 결과, 단지 내·외 도로 등을 통해 각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에서 조합 등이 2.3m 이상으로 결정 시
- ③ 복층구조 지하주차장은 지상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특정 층에서 단지 내 각 동 출입구에 접근 가능 시 해당 층만 2.7m 층고 적용

심사결과 지상공원형 아파트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차량이 단지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단지 지상에서는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 인정되며,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비사업 조합 등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별도 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차등화하였고, 사업자는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나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 가능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주택 소유자 등의 정의 **강화**

- (현행) 청약 당첨(조합원 관리처분 포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기간 산정 → (변경)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함으로써 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된 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기간 산정 시 반영

심사결과 분양권 등의 소유자의 청약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 단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무주택자보다 차순위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자모집공고 내 지하주차장 층고정보 표시 의무화 **강화**

- 입주자 모집공고 시 지하 주차장 차로 높이도 명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입주민(혹은 청약 신청자) 등이 해당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할 필요성 인정되고, 건설회사 또는 입주민 등의 실질적 권리의무 변동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법행위 등에 따른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절차 **신설**

- (현행) 사업주체는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임의공급 가능(재당첨제한, 당첨자 명단관리 규정만 적용 → (변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은 사업주체가 매분기말 일괄 취득

심사결과 사업주체가 취득한 분양권을 최초의 주택공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공급토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주체 및 일반 청약 신청자 등에게 별도의 권리의무 변동은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계약취소 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으로 소수인 경우까지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 및 규제를 모두 적용 시 비효율 야기우려를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임의 공급토록 규제를 차등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전공급 관련 업무의 이행 의무화 **강화**

- (현행) 사업주체가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분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사전 관심고객 등록을 받아 주택을 공급 → (변경) 사업주체가 미계약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전산)을 활용토록 함

심사결과 미계약분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되 사업주체의 임의적 공급에 따른 줄세우기, 불법적 웃돈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필요하며, 사업주체가 기존에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부작용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사업주체가 기존에 구축된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주체의 개별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공급계약서 내 의무기재사항 추가 **강화**

- 사업주체 및 주택을 공급받는 자 간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 ① 해당 주택 단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②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자로서 서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분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토록 함

심사결과 청약 당첨자 등이 주택 공급제도와 관련한 기준 및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토록 하여 본인의 손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만 하는 것으로서 규제부담의 정도가 미미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0)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신설 3)

심사내용 개조합치성 검사 신청 및 자료 제출 **신설**

- 개조합치성 검사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규정하고, 검사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명시

심사결과 개조승인 검사 관련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하여 철도운영자의 업무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료제출 기한, 검사기관의 개조작업 입회, 합치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 등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을 명시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조형식시험 신청 및 완료보고 **신설**

- 개조형식시험을 통한 개조기술기준 적합여부 입증의무 및 개조형식시험의 구성 및 방법, 개조형식시험 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

심사결과 개조승인 검사 관련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하여 철도운영자의 업무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조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대상을 개조하는 전체 철도차량이 아닌 대표편성으로 한정하여 규제 부담 완화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조 완료 보고 **신설**

-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개조 완료 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

심사결과 개조승인 검사 관련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하여 철도운영자의 업무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차량의 개조가 대표편성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개조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기준 마련 **신설**

- (공시기준) 최근 3년간 안전투자 소요·실적 및 향후 3년간 소요를 포함하고 투자 재원(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자부담 등) 구분
- (공시항목) 안전투자를 차량 교체, 시설 개량, 안전설비 설치, 안전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비 등으로 구분
- (공시방법)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심사결과 철도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공시기준, 항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분야 투자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통합공시제도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또한, 투자공시기준 및 항목 등을 철도운영자가 기존에 수행중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여 규제신설로 추가되는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단축 **강화**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0세 미만자는 10년마다 50세 이상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철도는 대규모 이용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사고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한바, 운전·관제업무 등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인적과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항공안전법」에서도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 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65~70세는 3년 주기, 70세 이상 1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연구센터 비용검증 결과 적성검사 비용은 5만원, 10년간 적성검사 대상은 45,221명으로 22.6백만원이 소요되고 적성검사로 인한 기회비용[1인당 30,580원(시간당 급여, 총19.4백만원)]을 포함시 연간균등 순비용은 46.3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철도사고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 사고예방에 따른 편익산출은 곤란하나 태백선 충돌사고의 경우의 직접 재산피해액이 42억원 이상인바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운용기준 **신설**

- 탑승자 및 제3자 안전을 위해 설계·제작 및 지상 성능점검을 통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시험비행 허가
- 전문가 심의를 위한 위험도평가 및 시험비행 제한기준 마련
- 시험비행 장소·순차적 비행절차(지상 → 저고도 → 공중) 등 차등적용 기준 마련

심사결과

기존 항공기 분류체계에 의한 시험비행 허가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의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설계·제작 상태만 확인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행지역 및 방식 등을 제한하여 시험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규정된 8종의 초경량 비행장치와 다른 형태로 개발되는 비행장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을 적용하고 위험도가 적은 시험비행일수록 인구밀집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비행을 허가하는 등 비행장치의 성능 및 비행의 안전도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하였으며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에 대해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시험비행을 허가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사례와 비교시 적정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아파트(500세대 이상),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 중 → (변경) 기준에 권장적용 대상이었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등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함

심사결과

대다수의 여성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등의 범죄 취약성, 여성의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적용될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심사 시 규제 수준의 적정성 판단 가능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궤도시설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신설**

- (계획수립) 사업자는 시험운행 실시전에 시험운행의 절차 등이 포함된 시험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시험운행) 40시간 이상 실시
- (안전관리) 시험운행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 통제, 시험기기·장비의 점검 등의 업무 부여
- (결과제출·검토) 시험운행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가능
-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법에서 궤도사업자 등에게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전용궤도 (변경)승인시 준공검사 전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시험운행 관련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하여 궤도사업자 및 운영자의 업무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운행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궤도시설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등 유사입법례 및 중국(40시간 이상 시험운행)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신설**

- (교육과정·대상 등) 안전관리책임자, 점검·정비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시 및 매 6개월마다 일정시간 교육 실시

Ⅰ 궤도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의 과정·대상·시간 등 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가. 정기교육	안전관리책임자		매반기 4시간 이상	강의 및 실습
	궤도운송종사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매반기 4시간 이상	
		궤도차량의 운전자	매반기 4시간 이상	
		이용객 탑승 보조자	매반기 2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안전관리책임자		8시간 이상	강의 및 실습
	궤도운송종사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8시간 이상	
		궤도차량의 운전자	8시간 이상	
		이용객 탑승 보조자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안전관리책임자, 점검·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궤도운송법령,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등의 내용 교육
- 이용객 탑승 보조자를 대상으로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내용 교육

심사결과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대상·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분야 및 책임의 한계에 따라 궤도운송 분야 법령, 시설 점검·정비요령, 사고예방 대책, 응급조치 등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전교육비용은 1개소당 1,746천원, 10년간 21.1억원으로 연간비용은 2.04억원으로 예상되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물질적 피해예방 등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 강화 **강화**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등록증을 지체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함

심사결과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前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이에 따른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기존 세입자에게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6) 철도차량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방법 및 절차 **신설**

-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을 위한 14개 차종의 기술기준에 대해 국제기준 환경변화 반영 및 운행고장 방지를 위한 안전요구조건 신설

- (주회로차단기 방수기준) 주회로차단기 단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제기준(IEC 60529)에 따른 방수기준 신설(대상기준 : 고속차량 등 10종)
 - * TSI(유럽연합 기술사양서)도 주회로차단기의 방수기준으로 IEC 60529 적용
- (도시철도차량 화재진압설비)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운전실에서 제어 가능한 화재진압설비 설치
 - * 대상기준 : 도시차량 7종 / 고속차량 및 일반차량(객차 등 5종)은 기적용
- (축전지 안전기준) 리튬 축전지의 폭발·발화·파열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설계요구조건 및 안전성 검증 기준 신설
 - * 대상기준 : 고속차량, 도시차량(전동차, 트램) 등 3종 / 타 차종은 기 규정
- (비상안전설비 표준화) 화재 등 비상시 안전을 위해 '비상통신장치', '출입문 개방장치'의 설치위치 및 사용설명 명판 표준화
 - * 대상기준 : 고속차량, 객차, 도시차량(전동차) 등 3종 / 타 차종은 기 규정
- (공기역학적 특성) 차량 통과시 선로주변·승강장의 대기속도 및 선로주변의 압력변화에 대한 안전성 입증 TSI 개정사항 반영
 - * 대상기준 : 고속차량, 도시차량(전동차, 노면전차) 등 3종 / 타 차종은 기 규정

심사결과 대규모 운송수단인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확보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과 조화하고, 안전기술개발 사항을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 및 철도기술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17년에 마련된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일치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내용으로 분석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7)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관리자에게 그 위반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최초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가중처분 및 경감기준(1/2범위) 등 규정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업무정지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라호에 따라 가중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업무정지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정지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철도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 ^① 을 위반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법 제30조제1항 ^② 에 따른 긴급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30조제2항 ^③ 또는 제6항 ^④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법 제31조제1항 ^⑥ ·제2항 ^⑥ 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32조제1항 ^⑦ 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32조제2항 ^⑧ 또는 제4항 ^⑨ 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심사결과 철도는 탑승인원이 최대 천명에 가까운 대량수송 수단이며 높은 속도로 인해 사고 및 운행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유지 관리의무 불이행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철도안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 유사한 수준으로 철도시설 유지관리체계 마련 용역을 통해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한바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집필자]

이지영 사무관(Tel. 044-200-2423, jjyy00@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총 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예비심사 (2018.11.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민간기관의 특별공급 신청기준 강화 **강화**

-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특별공급 신청가능 시기를 착공한 날 또는 이전 설치한 날(업무 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일) 중 이른 날로 함

심사결과

실제 행복도시 내에 착공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고, 특별공급의 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강화 없이 단순히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규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민간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 **신설**

- 기업·연구기관·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소속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특별공급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부적격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민간기관 소속의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대상자 현황(명단)을 민간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해양수산부

| 집필자

김효진 사무관(Tel. 044-200-2441, kimhyo9@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5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4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였으며, 9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5) 해운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0)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5)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22)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4)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8.06.0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7)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16.)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해역이용협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4)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항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5)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0)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1)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2) 어선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93	신설 61, 강화 33 (중요 1, 비중요 9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토지매각 이익 환수 **신설**

- 장관이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토지매도명령을 했을 때, 매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함

심사결과 토지매도명령을 받은 자가 이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토지 회수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 현행 「항만법」 제63조의2에서도 실시계획에 어긋나는 조성토지의 임의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해당 사업을 시행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수하는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적 절연의무 **신설**

- 인화성액체류 하역시 유탕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 간 전기적 절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현행법상 규정된 ‘전기적 연속’방식에 비해 정전기 방지효과가 확실한 ‘전기적 절연’ 방식을 도입하여 하역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및 화재발생을 방지할 필요. 동 규정은 국제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상응하며, 현재 전용 터미널 대다수가 이미 절연플랜지를 이용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강사의 자격요건 **신설**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규정

*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자, 5년 이상의 경력자, 관련 학과 강사경력, 그 외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 '16.6월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교육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강의 수준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사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되어 이를 반영한 것. 다양한 승선경력을 보유한 선원을 지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인 만큼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선원 교육 교원의 자격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시간 **신설**

- 안전관리책임자의 필수 이수 교육시간을 1년에 14시간으로 규정

심사결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여객선 안전 환경(해상상황, 사고위험요소, 법규 개정 등)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교육시간을 배정할 필요. 유사사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특별히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7)

심사내용 개괄탐사의 신고 **신설**

- 개괄탐사를 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개괄탐사계획을 신고한 자는 국제해저기구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고, 통보가 기록되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후 탐사 진행 가능

심사결과 심해저 개괄탐사에 대한 신고절차는 국제법상의 의무규정으로 요구되고 있고, 관련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여 심해저 환경 훼손시 재정적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개괄탐사는 상업적 용도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설정 없이 심해저자원을 찾는 것임을 감안하여, 개괄탐사에 대해 허가가 아닌 '신고' 규정으로 행위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 것으로 적정한

규제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국제법상 절차를 국내법에 동일한 수준으로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심해저 사업의 허가, 허가취소 **신설**

- 심해저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 (허가기간은 15년이며,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 취소가 가능

심사결과 국제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탐사 및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제 도입이 필요. 허가신청과정을 통해 국제계약 단계 이전에 일종의 사전점검을 거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국가는 재정적 국가책임 부담을 방지하는 관리제도 확보 가능하므로 적정성 인정. 또한 허가 조건 등은 UN 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저기구 관련 규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증서 발급 절차 **신설**

- 심해저 사업 허가 후 발급되는 보증서 수령 후 24개월 내에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보증서는 심해저개발 사업자가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국가 명의로 보증함을 나타내는 증서로, 피보증인의 사업이행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는 것은 필수적임. 사업신청서 제출 후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단계로 진입하는데 통상적으로 1~2년이 소요되므로 계약체결기한(24개월)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국제해저기구의 심의절차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중국, 통가 등 외국에서도 심해저자원 탐사자의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심해저사업자 권리 이전 등 제한 **신설**

- 심해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이전 또는 승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증서 발급국은 계약자의 심해저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위해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서 발급 후 심해저사업자가 사업권을 외국인 등에게로 이전할 경우 향후 보증서의 효력 및 국가책임소재 등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보증인의 권리 이전을 보증국의 실효적 통제범위에 있는 국민으로 제한할 필요.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에도 심해저자원개발의 권리의무 이전 대상을 자국민(또는 자국회사)으로 한정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상조치의 수행 **신설**

- 심해저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

* 즉각적 경보 발송,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제해저기구에게 즉각 보고, 인명·재산·해양환경에 대한 손해를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

심사결과 동 규정은 대규모 해양환경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보고 의무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며, 중국 등 외국의 유사입법례와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과도한 규제도 아님.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보고 및 서류제출 **신설**

- 해양수산부 장관이 심해저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심해저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법협약 보증국으로서 책임 완수를 위해 관리방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UN 해양법협약과 국제해저기구의 탐사규칙에 따른 보증국의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치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심해저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서류제출 및 행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심해저사업자가 심해저법 제11조 제4항의 서면보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가는 보증국으로서 피보증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보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수단을 통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상대적으로 고의성이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덜한 ‘서면보고의 해태’에 대해 별칙 대신 금전적 제재로 갈음하는 것으로, UN 해양법협약 등에서는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제법 준수와 계약 이행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사사례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국내법 제정을 통해 지시사항을 비준수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해운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지원기관 지정요건 **신설**

- 「해운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해운산업 전문 지원기관 지정 요건 중 ‘전문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기관 또는 업체 15개사 이상 확보, 지원기관 업무관련 실적 보유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체화*
 - * 해운거래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장비

심사결과 15개사 요건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원기관이 제공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전용공간과 전산장비만을 규정하고 있어 필수적인 사항만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됨. 유사사례로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도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보유 또는 이에 상시 접속 가능한 전산장비를 요구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원기관 지정신청 **신설**

-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 관련 서류,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심사결과 업무관련 실적자료,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동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의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하며, 사업계획서, 정관, 등기부등본 사본은 해당 기관이 해운산업 지원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한 자료에 해당됨. 유사사례로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신청인에게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서, 실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현황 제출 **신설**

- 지원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수행 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지원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의 실적·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출범위·목적이 일치하므로 적정성 인정되며, 제출할 자료는 이미 수행한 사업실적 및 운영현황을 정리하는 것일 뿐, 새로운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안도 아님. 유사사례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관에게 ‘중 보유현황, 시설 및 인력현황, 관련 사업 수행현황, 홍보·교육실적 등’을 매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금연 해수욕장 흡연행위 과태료 변경 강화

- 금연구역에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현행)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규정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동일한 금연구역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을 두고 있어,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적용법규 논란과 처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할 필요성 인정.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맞추어 해수욕장 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해수욕장 준수사항의 조례제정권 추가 신설

-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위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조례로 정한 행위’를 추가

심사결과 현행법상 해수욕장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이용 준수사항 제정권이 없어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이용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양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개정안은 어느 해수욕장에서든 금지할 필요가 있는 필수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항은 개별 관리주체의 판단에 맡겨 자율성을 보장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선박안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항만건설작업선 선박검사 **신설**

-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도록 함

* 현행법상 '07.11.4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법에 규정된 각종 선박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음

심사결과 '07.11.4 이전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의 경우 법 적용대상 선박보다 더 노후화되고 사고 발생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신규 적용 대상은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작업용 부선 332척 중 '07.11.4 이전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279척으로, 규제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비해 피규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검사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향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선박과 다른 검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조정 **강화**

-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하는 지구별 수협을 현행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여성인 지구별 수협에서 20% 이상이 여성인 지구별 수협으로 확대

심사결과 현재 수협 내 여성 조합원 비율(32.1%)에 비해 여성이사 비율(10.4%)이 현저히 낮아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된 상황, 할당제 적용 비율을 보다 확대할 필요.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어업인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며, 동 규제 도입 시 지구별 수협 여성임원의 수가 현행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최소 38명의 여성 임원 증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의 임기 **강화**

- 현행 수협법상 비상임 조합장은 1년, 상임 조합장은 2년에 한해 연임 가능하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1년, 상임 조합장의 경우 2년 중임 가능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소수에 의한 조합장 지위 독점은 부정부패 및 선거과정에서의 과열 발생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조합장 직위가 종신직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또한 동 규정은 수협중앙회장의 장관 면담(17.6)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촌계에 대한 감사 정례화 **신설**

- 매 2년마다 어촌계의 업무집행상황 및 회계에 대해 지구별수협 조합장이 1회 이상 감사 실시

* (예외) 지구별수협 구역 내 어촌계의 수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가능

심사결과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의 수익금 분배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외부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농협 및 수협중앙회가 지구별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2년 주기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지구별 수협의 경우 구역 내 어촌계 수가 많아 2년마다의 정기감사가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 예외규정을 두어 감사시기를 조정(3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기준 **신설**

- '07.11.4 이전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동 고시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선박시설기준(선체외판, 기관설비, 통신설비 등)을 준수할 의무 부과

* 다만, '07.11.4 이전 건조되었다고 하더라도 '07.11.4 이후 외국에서 수입된 항만건설작업선의 경우에는 일반선박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심사결과 오래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기존 선박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 동 제정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필요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기술규제영향분석 결과 적정성이 인정 되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건설장비기준 준수 의무 **신설**

-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는 동 고시 제21조부터 39조까지 규정된 시설기준(안정도 및 강도, 재료 및 구조 등)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오래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기존 선박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 동 제정안의 항만건설장비

기준은 현행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과 유사하며, 일부 조항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규제영향분석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등 제한 **신설**

- 주꾸미,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

품목	포획금지기간
주꾸미	5.11~8.31 (시·도지사가 4.1~9.30까지의 기간 중 123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함)
대문어	3.1~3.31 (강원도, 경상북도에 한정)
참문어	강원도, 경상북도는 3.1~3.31, 경상남도는 5.1~5.31
발문어	3.1~3.31 (강원도, 경상북도에 한정)

심사결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및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정부개입은 필수적이며, 자율적인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포획금지기간의 설정 및 운영이 필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에서도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업금지기간의 설정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한 바 있음. 적용대상 어종은 최근 어획량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정한 것이며 적용기간 역시 어종의 산란기, 낚시 성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인 의견도 조정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해양시설 변경신고 사유 명확화 **강화**

- 해양시설 변경신고사유에 ‘대표자 및 사업장 명칭 변경’을 추가

심사결과 대표자 및 사업장 명칭 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에 대해 신고의무자-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규제 아니며, 추가되는 사유들은 해양시설 최초 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들로, 변경검인을 받기 위해 새로운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유사사례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사유 **강화**

○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해양시설의 주요 설비, 시설구조 도면 및 주요배관 장치의 배치도면이 변경될 경우 변경검인 필요

심사결과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검인을 통해 오염비상계획서 기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면 신속한 오염사고 초동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열거된 변경검인 사항들은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로, 유사사례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해관리계획서의 변경허가 사유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심사내용**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사유 **신설**

○ 선박의 주요 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획서 변경검인 필요

심사결과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검인을 통해 오염비상계획서 기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면 신속한 오염사고 초동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열거된 변경검인 사항들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강화**

○ 목포항, 제주항, 동해·목호항을 방제선 배치해역에 추가

심사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방제선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에 비해 해양오염피해 감소 및 방제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더 커 규제 강화의 필요성 인정되며 신규 지정되는 방제선의 의무배치 해역은 항만의 해양오염사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위험항만과 중위험항만으로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인 대한석유협회 및 한국선주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견 없음을 확인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① 배출량 100만리터 초과부분의 부담금 75% 감면	감면규정 삭제
방제분담금	① 선박의 소유자가 연간 10회 입항분에 해당하는 분담금 선납 시 10회 초과 입항분에 대한 분담금 100% 감면 ②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수리목적으로 입항 또는 통과하는 경우 80% 감면 ③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경우에 부과되는 분담금 100% 감면 ④ 한국전력공사의 비상용 기름에 대한 분담금 75% 감면	

심사결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해 줄 경우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제분담금의 경우 감면규정은 방제분담금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부담금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할 필요. 동 규정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이며, 감면규정 폐지로 인한 선주 및 정유사의 추가 부담보다 해양오염사고 피해가 감소하는 등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므로 적정성 인정됨. 또한 감면조항 중 일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면실적이 전혀 없어, 감면조항이 삭제되어도 피규제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은 선박직원(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이어야 하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은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보유자이거나 오염물질 이송 및 배송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이어야 함

심사결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어, 부재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및 경력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경우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은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유사업종인 위험물산업기사 대리인의 자격요건 관련 규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제분담금 납부 가산금 기준 **신설**

- 방제분담금 미납 또는 연체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0.1%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심사결과 방제분담금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소요되어 납부가 지연될 경우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가산금 규정이 필요. 유사사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체금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제선 방제장비 배치기준 **강화**

- 방제선에 기름회수능력의 1.6배 이상 저장가능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 회수유 저장장치는 방제선에서 3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곳에 분산 배치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방제선 내에 기름회수능력의 60% 이상 저장가능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심사결과 방제선의 원활한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회수유 저장장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 동 규정의 회수유 저장장치 기준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적정규모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제선회수유 저장장치 규모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1일 작업시 시간당 기름회수능력의 1.6배 규모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심사내용** 정밀검사 대상 추가 **신설**

- 식용 수산생물에 이식용 수산생물이 5% 이상 혼재된 경우 정밀검사 실시

심사결과 외래질병의 전파를 막아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할 필요. 일본, 대만 등주요 수산물 교역국가들이 수입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자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기존 행정지시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유사사례인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에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수입금지 식물로 의심되는 경우 매 건 정밀검사 실시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어선법 시행령 (신설 2)**심사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및 재설치 조치기한 **신설**

- 연근해 어선의 1항차가 통상 7~14일인 점을 감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후 수리 및 재설치 조치기한을 15일로 규정

심사결과 연간 약 2,000건 발생 하고 있는 어선 사고 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송장치의 고장·분실 시 15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임. 15일 이내의 수리·재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고장 신고 이후 다음 운항 시기까지 어선위치발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현재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관련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이 불필요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행업무의 취소 및 정지 **신설**

- 어선검사업무 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 업무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 정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어선 검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처벌규정의 필요성 인정. 유사사례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에서도 선박 검사 대행업무기관이 부정한 선박 검사를 하는 경우 6개월 내 업무정지 및 취소를 규정, 적절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인의 반대의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신설 2)**심사내용** 선박수리업 등록 기준 **신설**

- 선박수리업 등록 대상을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수리업자로 규정

심사결과 용역의 품질이 보증될 경우 선박수리업자들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외국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수리용역을 제공받을 유인이 커질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등록대상이 관세법상 항만에서 외국선박 등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되는 정도의 수리를 진행하는 선박수리업자이며, 경미한 수리를 하는 영세업자들은 제외되므로 적절한 수준임. 관세법상 이미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으로 등록하려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신설**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등록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바,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내에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행정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장비 등으로 인한 유류 관련 폭발·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항만운송사업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였고, 유사사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영업정지 혹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됨. 한편 동 규정으로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항만별로 사업계획을 신고하던 것을 타 지역에 장비 추가가 있더라도 등록된 항만에서의 변경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규제자 반발도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어선법 시행규칙 (신설 2)**심사내용**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신설**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부정한 형식승인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효력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선용품이 생산될 경우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의 필요성 인정됨. 유사사례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도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취소에 대해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어선용품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하던 것을 「어선법」 및 하위 법령으로 분리하려 규정한 것이어서 어선용품 업체나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①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기관, ② 어선검사의 대행업무기관, ③ 어선과 어선설비를 제조·정비하는 지정사업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어선 제조·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선용품·설비의 품질향상 및 어선안전 확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도 형식승인기관, 지정사업장, 대행업무 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6개월 이내 효력정지 혹은 지정·대행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어선 관련 기관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하던 것을 「어선법」 및 하위 법령으로 분리하려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민간투자자 범위 지정 **신설**

○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자의 요건 규정

-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 2. 신탁업자
-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4. 민관합동법인
-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 6.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 8.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심사결과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투자자 적격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상당부분의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투자받도록 계획된 신항만건설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정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유사사례로 「항만법 시행령」에서 유사한 수준의 민간투자자 지정 요건을 규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예선업의 등록에 대한 제한 가능 **신설**

○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선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에 대한 제한 등을 2년 범위 내에 실시 가능하며, 제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심사결과 해당 규정은 예선업 등록제 도입 이후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여 예선업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예선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 다만 경쟁영향평가 결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바, 해양수산부에서는 등록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였고, 중소기업 영향평가 결과 중기 예선업체의 진입 불가를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예선 수급 계획에 예선업 등록 제한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해양수산부에서 수정안을 수용함으로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비스 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 **신설**

- 예선지원 서비스 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예선 공모시 감점을 부여하고, 예선 노후화 등에 따른 대체예선 변경등록 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예선 시장은 항만별 등록 등으로 사용자의 선택권이 크지 않고 구조조정도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평가와 이에 따른 사후조치 필요. 특히 예선의 수급 계획에 따른 등록 제한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정된 공급자에 의해 예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선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유사사례로 「해운법」에서도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불이익 조치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예선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 ‘다른 예선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제1호)와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지원을 약속’(제2호) 및 ‘예선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부정하게 작성’(제3호)한 경우 예선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예선사용자의 이익보호 필요성 인정. 다만 경쟁영향평가 결과 당초 제3호의 ‘중앙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사용료를 미준수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원천 차단할 우려로 ‘삭제’ 의견 제출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을 수용, 사용시간을 허위기재하는 등 ‘예선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부정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로 사유를 변경하였음. 이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임시승선자의 범위 **강화**

- 현행 선박의 정원 외 임시승선자 중 ‘선박회사의 소속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을 ‘해당 선박의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 소속직원’과 ‘해당 선박 수리 작업원’으로 제한하고, ‘나잡어업을 위해 승선하는자’는 삭제

심사결과 임시승선자는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임시로 탑승하는 인원으로,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탑승할 필요. 규정이 남용될 시 유료 여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여객과 달리 신원확인 절차도 미비하여 사고 시 문제 발생 가능하므로 해당 선박 운행에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함.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장·선원 또는 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기타의 자 및 제1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하는 모두 여객으로 규정하는 등 임시로 승선하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요건 내용 변경신고 **신설**

-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요건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 선체 두께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 측정장비, 인력, 자체 업무규정 등

심사결과 선박소유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무자격자에게 선체두께측정을 의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 선체두께측정업체 보유 측정장비, 인력 등 지정요건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당초 지정받은 요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을 알리는 것은 등록 및 허가제도 등에서 채택하는 보편적 절차로 「해양환경관리법」, 「철도안전법」 등에서도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객 임시증원 대상 제외 **강화**

- 현행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또는 지자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 임시 증원 대상이 되었으나,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심사결과 여객선의 각종 설비는 당초 승선예정 여객수를 기준으로 설계·건조되므로 임시여객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할 필요.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증원사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특별수송기간은 명절 및 휴가철 등 매년 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특별행사는 지역적·임시적 성격이 강하여 여객 증원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강화**

- 가리비(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참가리비)의 이식승인 대상 크기를 조정(각장 5cm이하 → 각장 2cm이하)하고, 이식승인 대상 품종에 범가자미, 새꼬막, 뱀장어·민물장어를 추가

심사결과 매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에서 결정된 승인대상 품목 및 크기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려는 것으로, 이식승인 기준 조정을 통해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승인대상 품목의 경우 현행기준으로는 중금속 등의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아 크기를 조정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된 품목은 국내 양식용 종자 확보가 어려워 기준을 마련하여 이식승인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예선의 공동배정에 대한 규약 작성 및 제출 **신설**

- 예선업자는 공동배정을 할 경우 규약(참여 업체, 배정 방식, 거래 조건, 공동서비스의 시점 및 종점 등)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 제출하고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함
- 다만 공동배정 사업자의 예항력이 해당 항만 전체 예항력의 50%를 넘을 경우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심사결과 예선의 공동배정은 예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간 협의를 인정 하는 공급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 배정 절차 등의 규정은 필요. 다만 경쟁영향평가 결과 공동배정 업체의 참여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선주의 선택권 악화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착화가 우려되므로, '공동배정 대상 참여업체의 점유율을 제한'하고, '참여업체의 단독배정을 허용'하여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의견 제출. 이에 해양수산부는 의견을 수용하여 단서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원안의 공동배정 규약 준수 의무를 삭제하여 필요에 따라 공동배정 시행 항만에서도 업체별로 자유계약에 의한 단독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산적액체위험물, 포장위험물, 선박급유작업 등 해당분야의 실무교육을 3년마다 이수

심사결과

현재 항만 내에서 취급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 금번에 의무화되는 실무 교육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위험물 관리에 중점(해양오염물질의 특성, 항만 위험물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 내 안전점검 방법 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과정과 별도로 ‘포장위험물’과 ‘선박급유’에 관한 과정을 추가하여, 실제로 항만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유사사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3년)과 「화학물질관리법」(2년)에서 유사한 의무교육 실시 주기를 규정하였으며, 과정 당 교육시간도 8~16시간 으로 유사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물 하역 안전장비 설치기준 **신설**

-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차단밸브’로 규정하고,
- ‘선박접안속도계’와 ‘자동경보시스템’은 선석마다, ‘자동차단밸브’는 송유관로 마다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14.6월 이후에 개장된 돌핀 계류시설에는 안전장비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전에 개장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없어 항만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 인정. 해당 규정은 사고 발생시 재산·인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5만톤 이상의 선박의 접안시설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총 35개소를 운영하는 14개 업체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은 1,425백만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고에 의한 피해액은 272억원으로 추정(최근 5년, 오염피해액 제외) 되므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신설 2)

심사내용 수산물 재고량 보고 **신설**

-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분기 10개 어종에 대한 재고량을 유선, 메일 또는 FAX로 제출

심사결과

냉동·냉장 형태로 보관되는 수산물 재고량은 향후 수산물 유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수산물의 가격

급등락 방지 및 어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에 한정하여 향후 냉동·냉장 재고량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산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적정성을 갖춘. 농산물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재고물량 파악 실시 중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물 재고량 확인 등 **신설**

-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

심사결과 현행법상으로는 수산물 재고량을 허위로 제출하여도 신뢰성을 제고할 수단이 없고 수산물의 상태·보관기간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장 확인·서류 등 열람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하여 수산업 관측의 신뢰성·정확성을 높일 필요. 1차적으로 재고량 제출자료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요소이므로, 타법령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기준 **신설**

-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 실시

심사결과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물의 질병 검출 및 치료, 양식장 내 수산물 복약지도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유지와 국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수산질병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고 환경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인정. 또한 '04년부터 시행된 면허제도로 수산질병관리사는 전국적으로 한정된 인력(670명)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전문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가 과도하지 않음. 유사법령인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신설**

- 뱀장어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로 정하여 위판장 외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행위 금지 (양식을 위한 종묘용 뱀장어는 제외)

심사결과 이해관계인 반대 의견이 제출되고 경쟁영향평가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가격교란 여부, 직거래 허용여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본회의계속심사 의결**(17.12.22)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18.4.2)를 반영하여 직거래를 전면 허용한 후 **재심사**. 대부분의 뱀장어(99%)가 장외거래되어 거래 정보가 부족하고 소수 중간상에 의한 가격 후려치기, 대금 정산 지연 등 행태 지속되어 뱀장어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의무위판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규제로 가격교란이 해소될 지는 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불분명하여 규제 지속여부 재검토를 위해 일몰 설정(2년)할 것으로 **개선권고함**. 부대권고로 일몰 재검토시 뱀장어 가격 정보 등 의무위판제 운영결과 제출할 것으로 의결.

(27)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신설**

- 시설장비의 제조검사·설치검사를 받거나 시설장비의 이동, 구조변경으로 수시검사를 받는 경우에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재도 시설장비 검사 시 관리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병행하여 부두 설계하중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항만의 운영세칙상 부두 설계하중 준수 의무 규정이 존재할 뿐 시설장비 검사시 검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책임소재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 유럽·일본 등에서도 크레인 등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기준(설계하중 포함)·검사규정 등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현재 개별 항만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부령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추가 집행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항만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에 “보강공사” 추가 **강화**

-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중 보강공사도 공고대상 사업에 추가

심사결과 국가에 귀속되는 30억 이상의 공사는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는 공고대상이 되지 않아, 향후 시설의 부실화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우려가 있어 투명한 공고 절차로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공사 시행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 공고대상 사업이 되면 사업자간 공개경쟁 후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시설장비 범위에 “탑승교” 추가 **강화**

○ 탑승교 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시설장비* 목록에 추가

* 설치 및 철거 시 신고의무(제24조), 매년 1회 이상의 자체점검(제25조), 검사(제26조) 등

심사결과 크루즈 탑승교는 최근에 도입('17년)된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시설장비 목록에 포함되면 다른 크레인, 캐리어 등 항만하역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가 부여되며 유사 시설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이자 제외 사유를 “과실”로 변경 **강화**

○ 현행 항만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준공확인이 지연,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 사업비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 요건을 ‘과실’로 변경함

심사결과 공사 지연 시 사업자의 과실에 중대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사후적으로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워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업 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대성 인정 여부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필요. 국가로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은 민간의 공사시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이익임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이르러야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원인자 부담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한 바, 과도하지 않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신설 4, 강화 2)**심사내용** 분노의 배출물 승인 및 승인절차 **신설**

- 분노오염방지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이 동 규칙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분노를 해역에 배출하려는 경우 분노의 배출물 승인을 받도록 함
- 배출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동 규칙(안) [별표5의2]의 계산 기준에 적합한 배출물 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결과 분노는 대표적인 해양 폐기물로 마쇄·소독 등 처리 없이 무한정 배출될 경우 해양 수질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배출 선박은 단속이 어려운 반면 배출로 피해는 주변 어업인 등이 입게 되므로 배출물 승인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 배출물 산정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으로부터 처리되지 아니한 분노의 배출물 기준’을 준용하여 규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대상 추가 **강화**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개조·건조 하는 선박 중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계산을 하여야 하는 선박에 LNG운반선, 크루즈 여객선 추가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준수해야하는 선박에 로로화물선, 로로여객선, LNG운반선, 크루즈 여객선을 추가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IMO의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준수하고 해상환경 보호에 기여할 필요.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상 계산·허용값 준수 대상 선박의 종류와 계산방법이 동일하며, 육상 교통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추가 **강화**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세부사항 기재의무 추가(선박 정보, 연료사용량, 정보 보고 절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직접 측정에 관한 사항 등)함
- 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심사결과

국제기구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소모량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국내법상 주요 정보 수집의 제도화가 필요. 기재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의결한 ‘선박연료유 소모량 데이터수집시스템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성을 갖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도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효율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비용 등을 측정·표시 하도록 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예비검사 신설 **신설**

-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예비검사* 대상으로 신설

*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예비검사의 대상이 되어 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심사결과

기준에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17.1),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장치가 사용되어 황산화물에 의한 해상환경 오염이 우려됨.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한 ‘배기가스정화장치

지침'에서도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검사형태로 형식승인 혹은 예비검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조선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의무설치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 검사대행기간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비치 의무 신설

심사결과 유조선이 복원성을 상실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선박이 자율적으로 복원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국제해사기구(IMO)가 의결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비치 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신설**

- 유성찌꺼기 탱크와 선저폐수계통·선저폐수저장탱크·유수분리기와 연결부 제한
- 유성찌꺼기 탱크 배출관은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하고 선외 직접연결 불가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유성찌꺼기가 선저폐수와 함께 배출되거나 선외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성찌꺼기 탱크 배관규정'을 개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선저폐수와 함께 배출되거나 직접 선외로 배출되어 해양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불법 유성찌꺼기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도입 필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절대보전, 준보전 등 무인도서에서의 허가 취소 등 **신설**

-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외적 허가를 받은 경우(1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2호),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호) 제재처분이 가능
- 1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하며, 2호의 경우 정지·변경명령을 하거나 허가취소함

심사결과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무인도서이므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및 생태 훼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 인정. 부정한 허가 등 최소한의 제재처분 요건을 마련하였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정지·변경 명령,

허가취소로 차등화하여 규제의 적정성 확보. 유사사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허가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식염의 원산지 표시 **신설**

- 본래 김치류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하던 것에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추가하고,
- 식염을 사용하는 절임류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신설하여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 및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

심사결과 김치류 및 절임류 등 가공 과정에서 식염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식품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단에 필수적으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식염이 국산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품질 식염 등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 현재 국내산 식염 생산량에 비해 외국산 식염의 수입량이 큰 상황에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피규제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식염을 소량으로 사용하여 김치류 등을 반찬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공품업체 및 유통·판매업체 등 식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정성을 갖추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바다골재 채취시 관련 조사 체계화 **강화**

- 바다골재 채취허가 등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통사항 항목 중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에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골재채취계획과의 관련성 제시, 영향저감대책 제시)하고,
- 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지형 및 지질·해양퇴적물·부유생태계와 저서생태계·어류 및 수산자원 분야별 바다골재채취 조사 항목을 체계화

심사결과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부유사 확산, 율류수 방류 등으로 해양 생태계 오염 및 어업권 교란의 우려가 있어, 해역이용협의서에서 관련 조사를 위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골재 채취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완화하고, 관련 주민·어업인들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방지 및 골재 채취업자들의 제조사 부담 경감할 필요. 동 규정안으로 사실상 허가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선진국에서도 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양 환경이 과도하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존량 확인 등을 거친 후 골재채취 가능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등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사업지역 내에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어업권 내 조업어장이 있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어업인 대표 등과 사전 협의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심사결과 바다골재 채취시 발생하는 부유사 확산, 월류수 방류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은 사업 지역내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하여 바다골재 채취로 인하여 어업권에 변화가 생기는 어업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바다골재 채취허가 등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대상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사례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는 평가 대상지역 주민 외의 이해관계자까지 의견 수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바다골재 채취시 관련 조사 체계화 **강화**

- 바다골재 채취허가 등을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통사항 항목 중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에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골재채취계획과의 관련성 제시, 영향저감대책 제시)하고,
- * 일정규모 이상 골재채취에 대해 해역이용협의에 비해 강화된 영향평가 시행
- 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지형 및 지질·해양퇴적물·부유생태계와 저서생태계·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산업·보호종 및 보호구역 분야별 바다골재채취 조사 항목을 체계화

심사결과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부유사 확산, 월류수 방류 등으로 해양 생태계 오염 및 어업권 교란의 우려가 있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서 관련 조사를 위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바다골재 채취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완화하고, 관련 주민·어업인들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방지 및 골재

채취업자들의 재조사 부담 경감할 필요. 사실상 허가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양 환경이 과도하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존량 확인 등을 거친 후 골재채취 가능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등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시설 및 운영기준 **신설**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자는 아래와 같은 시설 및 운영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시설기준) 위판장(온도유지 구조, 바닥, 천정 등), 용수 및 얼음(용수배관, 제빙기 등), 폐기물 및 폐수관리(집하장, 폐수처리시설 등), 화장실 등 위생시설(환기장치, 바닥소독조 등)
- (운영기준) 위판장(관계자 외 출입제한 등), 용수 및 얼음(용수 수질기준 등), 폐기물 및 폐수(정기 소독 등), 작업자 및 작업환경(흡연, 쓰레기투기, 음식물 섭취행위 금지 등)

심사결과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총 114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출하되는 장소로 특히 연근해어업 수산물의 87%이상(81만 톤)이 집결되어(*16) 소비지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생관리기준 없이 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자발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본적인 온도관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는 바, 개설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위생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처벌 규정 없이 규범적으로 산지위판장 개설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일본의 경우 동 기준안과 유사한 「우량위생품질관리시장 인정조건과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준 16가지 항목 50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므로, 특별히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항만법 (신설 3)

심사내용 입주계약의 해지 등 **신설**

- 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에 부정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시 해당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토지나 건축물·시설 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심사결과 제1종 항만배후단지는 특정 기업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부정한 입주계약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자의 입주 기회를 박탈할 뿐 만 아니라 물동량 창출·고용량 증가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 지정 목표 실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명확한 계약해지 및 신속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주계약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또한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시설을 임차하는 등 특혜의 대상이 되므로,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 이용에 대한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 등 사전고지 의무 **신설**

- 입주기업체 등이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하려는 경우 양수인에게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심사결과 제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입주자격 등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양수받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관리청의 권리·의무 이전 자격 **신설**

- 화주, 항만운송사업자, 해상여객운송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관리청의 권리·의무를 이전 받을 수 있음

심사결과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는 본래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항만개발을 민간투자 유치의 목적으로 민간이 대행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설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권리·의무를 처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에 항만공사 사업에 혼란이 발생하고 공익사업을 이용한 사업자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항만 토지·시설 등의 실수요자가 권리·의무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규제의 필요성 인정. 항만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 중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자인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신설**

- 시운전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선회성능 시운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운항성능 시운전, 전속·후진·급정지 등 기관성능 시운전, 비상조타 시운전 등을 금지함

심사결과 통항 밀집 연안을 시운전금지해역으로 지정하면서 금지되는 시운전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충돌사고 방지라는 당초 정책 목적이 달성가능하며, 피규제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주변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고 충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시운전만 금지하고 구명정 진수 시험, 닛 시험 등 시운전은 허용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갖추었고, 유사사례로 「항공안전법」에서도 항공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중 특정행위의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해사안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시운전 금지해역의 범위 **신설**

- 울산, 부산, 여수, 목포, 제주, 군산 해역 내 일정 범위(각 해역 내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에서부터 7~20마일 이내)에서 길이 100m이상 선박의 시운전을 금지함

심사결과 시운전은 선박의 기능을 시험하는 운전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고속·저속 운항, 급선회 등 일반적인 선박 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통항이 밀집된 연안에서 시행될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주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물류 통행 등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연안 바깥 해역에서 안전한 시운전을 유도할 필요. 해당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항만별 교통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범위만큼 설정하였고, '09년 이후 시운전 사고 발생 해역의 위치를 참조하여 7건 중 6건이 발생한 범위까지 포괄하도록 세부 조정하여 적정성을 갖추었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공동취수·집수시설에 대한 관로 규모제한 강화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반음식점 등의 공동취수·집수시설의 관로 규모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

* 단독 사용 : 끌어들이는 경우와 내보내는 경우 각각 지름 100mm 이하로 설치

2인 이상 5인 미만 사용 : 끌어들이는 경우 지름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이하로 설치

5인 이상 사용 : 끌어들이는 경우 지름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로 설치

심사결과 동 규정은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에서 관로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은 본래 허가의 대상이었던 것을 특정업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어서 지역별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적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일반적인 활어 도·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이 관로 100mm 이하의 크기로 공유수면 내 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해당 관로 규모 제한 규정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 및 직무 교육 신설 강화

-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해기사를 대상으로 4일간 기초교육 시행
-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해기사를 대상으로 4일간 직무교육 시행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 상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승무를 원활히 하고, 극지해역의 보호에 기여할 규제의 필요. 해당 규정은 기초교육과 다르게 선박의 총 책임자인 선장과 선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1등 항해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교육 대상을 차등화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명태의 연중포획금지 **신설**

- 명태의 포획을 연중 금지하며, 조사·연구 및 자원회복사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심사결과 현재 명태는 생태계의 균형 상실로 어미고기 확보 및 어린고기 보호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자원고갈 상태에 있어,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포획 금지조치가 필요. 또한 명태는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총 3만 톤 이상 소비하는 주요 어종인 점을 감안, 향후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자원보호가 필요함. 동 규제의 도입으로 어업인들의 명태 포획이 금지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현재 어획량(1톤 미만)도 대부분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미미할 것.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에서도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구역 등 설정을 권고하고 있고 이해관계인 이견도 제출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신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 기관으로 기타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기관을 인정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유한(책임)회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심사결과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운용사의 경우 구성원이 출자한 자본만큼 책임을 지므로 조합의 책임있는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이들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농식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액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의 기준이 필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인정기관을 규정하여 실제 관련 분야에서 투자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경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바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강화**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한 액 및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선내급식비는 제외), 숙박비·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액을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함

심사결과 선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하면서 산입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될 수 있고 선원의 권익보호 및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할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 금번에 추가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승선자 명부 내 비상연락망 의무 기입 **강화**

- 승선자명부 작성 항목에 ‘비상연락처(직계가족 등 휴대전화)’ 추가

심사결과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비상연락처 추가 기입을 통해 신속한 사고경위 파악 및 가족통보 등으로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필요. 타법사례로 내항여객선의 경우 별도로 승선인 명부에 비상연락처 기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여객선과 달리 낚시어선업자는 별도의 사업자 면허 없이 신고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승선하게 할 수 있어 승선인 명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관리선 제외 **강화**

- 현행법상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낚시어선업의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결과 관리선은 본래 어업권자 등의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자가 낚시어선과 관리선을 동시에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으로 신고를 허용해왔던 바, 낚시어선 포화에 따라 관리선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낚시어선의 확충 등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필요.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진입이 제한되더라도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여전히 낚시어선으로 신고가능하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결과도 이견없음으로 접수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기준 **강화**

-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기준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추가 ①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풍속 12m/s 또는 유의파고 2.0m 이상인 경우 ③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인 경우. 단, 레이더 등 야간항법장치를 갖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심사결과 낚시어업은 기상에 사람이 직접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여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탑승하는 일반 어선과 달리 낚시어선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탑승할 가능성이 높아 출항 제한 요건의 강화가 필요. 동 규정은 어선 출항 제한 요건(풍랑·폭풍·태풍 주의보 및 경보)을 중심으로 낚시의 특성에 따라 기상 요건을 추가 하였으며, 특히 낚시어선이 취약한 풍랑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예상될 때 예비특보 없이도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야간 출항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장비를 갖추어 시야를 확보한 낚시어선의 출항은 허용하면서 규제의 적정성을 갖추었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낚시어선의 안전설비 강화 **강화**

- (인명·구명 설비) 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최대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및 선실에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의무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레이더 구비 및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최대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화
- (그 밖의 설비)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구비

심사결과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신속한 탈출과 구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를 명문화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설비 기준의 강화로 인해 피규제대상인 낚시어선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총 1,392백만 원으로 추정되나, 낚시어선 사고의 예방으로 감소하는 인명피해 손해배상금 등 연간 9,128백만 원 편익 발생 추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도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도선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 **신설**

- (자격)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동 시행규칙상 신체검사 기준([별표1])에 적합할 것
- (인원) 도선구별로 면허된 도선사 수의 100의 10 이상, 100분의 20이하 범위에서 지정하되, 최소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심사결과 금번에 신설되는 국가필수도선사는 비상사태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각 항만 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격한 국가필수도선사가 적정한 인원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필요. 도선사가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는 경우 정년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는 혜택이 있으며, 자격요건은 비상사태에도 징계사유 등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 규제가 과도하지 않음. 도선사는 비상사태시 타 도선구에서 대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 10%이상 지정하도록 하되 정부의 과도한 통제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이내에 지정하도록 하여 적정성을 갖추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장애물의 제거 등 **신설**

- (제거요구)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구조물 등이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 가능
- (직접제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 가능

심사결과 한국형 e-Nav 구축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설치가 필수이며, 원활한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사고 위험 감소,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 육지-해상 간 정보격차해소 등에 기여할 필요. 1차적으로 장애물의 제거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제거를 하여도 사전 통지 절차와 사후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 등의 공익

실현을 위해 소유자·점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님. 유사사례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서도 통신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강화**

- 긴가지해송(Myriopathes lata), 망해송(Antipathes dubia), 빗자루해송(Antipathes densa) 및 실해송(Cirripathes anguina)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함

심사결과

금번에 지정되는 해송류 4종은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은 생물이며, 제주도 해역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 서식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도 필요한 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 미국(멸종위기종법), 호주(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존법), 일본(멸종우려야생동식물 종보존에 관한 법률) 등 선진국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신설**

- 기존에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 중 ‘가공시설’을 준용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으로 신설

* ‘나노필터여과법’ 및 ‘증발농축법’ 만 새로운 기술로 추가됨

심사결과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은 201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았음이 지적되어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려는 바, 시설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기존에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공설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후 새로운 기술만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해당기준은 위생 및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처리수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음. 유사사례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의 일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 **신설**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처리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함

심사결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제조하는 처리수의 수질검사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현행법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경우 원수의 취수과정 없이 처리수가공만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신설**

- 시·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허가하면서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심사결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해양심층수 가공·저장·배수 등의 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조건의 도입으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사례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경우 동 규제와 동일하게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개발업은 면허 심사과정에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처리수 제조를 허가하면서 해양환경 및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강화 2)

심사내용 양식장 HACCP 등록 신청 적용대상 확대 **강화**

- 기존에 양식장 HACCP 적용대상은 육상해수양식장 및 육상내수면양식장 중 어류양식장이었으나, 모든 육상해수양식장 및 육상내수면양식장으로 확대함

심사결과 양식장 HACCP제도는 생산·출하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어업인들의 수요가 있는 양식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검증된 품질의 수산물의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양식장 HACCP제도는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성을 갖춘. 유사사례로 식품 및 축산물 HACCP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식장 HACCP 위생관리기준 강화 **강화**

- (양식장관리) 사육수조에 약품투약일자 등을 표기하고, 사료창고 및 사료제조실 바닥에 최적물이 쌓이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설치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게 관리하며, 사료 제조시에는 전용 도구 및 설비를 사용하도록 함
- (약품/사료/용수관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할 때는 구매 기록 및 처방전 등을 보관하도록 함
- (입식/출하관리) 양식수산물의 입식 종자 구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시험을 매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심사결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도 가축사육농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식품의 HACCP 위생관리기준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라벨링 및 사료 저장 시설의 엄격한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음. 또한 금번에 강화되는 위생관리기준은 시설개선사항이 아니라 관리사항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비용소모가 크지 않으며, 양식장 HACCP 위생관리강화로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어선설비기준 (강화 2)

심사내용 부분폐형 및 전폐형 구명정 외부색 기준 **강화**

- 부분폐형 및 전폐형 구명정의 외부색을 ‘대단히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에서 ‘국제오렌지색이나 선명한 주황색, 또는 해상에서 탐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일 것’으로 변경

심사결과 구명정은 비상사태 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므로 보다 식별이 가능한 색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고, 최근 국제구명설비코드가 개정되어 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설비의 색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 국제구명설비코드에 따라 구명정의 색깔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어선 외 선박의 구명설비에 적용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구명정의 외부색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명조끼 강화

-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부력·복원성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대상자 9명 중 5명은 점프 및 낙하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마네킹으로 대체 가능
 - * 단 유아용에 대해서는 점프 및 낙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구명조끼가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국제구명설비코상 구명조끼의 기준이 개정되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 국제구명설비코드의 구명조끼 관련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어선 외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구명조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강화 1)**심사내용**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 강화

-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사우력정 산식에 사용되는 풍압계수를 1.71(15m/s)에서 2.74(19m/s)로 상향

심사결과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유사하게 연해에서 다수의 인원을 승선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낚시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여객선과 유사하게 복원성 기준을 상향하여 비상사태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 기술영향평가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여객선·화물선 등 타 선박에는 낚시어선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동 기준안은 일본의 여객선과 유사한 수준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5절

농림·산림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집필자]

이진용 사무관(Tel. 044-200-2421, jeand@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축산법 시행령 등 총 1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한식진흥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23	신설 4, 강화 19 (비중요 2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축산법 시행령 (강화 4)

심사내용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강화

- 소규모 가금류 사육(10㎡미만)도 가축사육업 등록

심사결과 최근 AI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10㎡미만)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부족 등으로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등록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강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후 사육시설이 기준에 미충족하게 된 경우 허가취소

심사결과 현행, 축산업 중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의 허가기준에는 업종별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를 득한 후 이에 미충족하게 된 경우 당연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업의 경우 가축사육 최소요건인 '사육시설'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후 적합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도 가축사육업(허가)을 영위하는 맹점이 있어 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이 허가기준에 미충족하게 된 경우를 당연 허가를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육시설이 가축사육업의 기본 시설임을 고려 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강화

- 축산업 허가기준
 - ① (종계장·종오리장)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 ② (종계·종오리장 및 닭·오리 사육시설) 출입구·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③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 축산업 등록기준
 - ① (가축사육업) 농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심사결과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대응을 위하여 사육환경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여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수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및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심사결과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산닭 유통이 빈번함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및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타법의 처분기준과 비교시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축산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축산업 등록의 대상 강화

-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추가하면서 관상용 조류(15종)와 함께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현재 기러기, 관상용 조류는 AI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으나 축산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방역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추가하고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관상용 조류 또는 기러기 사육업에 대해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가축의 인공수정은 가축인공수정사 및 수의사만 할 수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축 인공수정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수의사 행정처분기준과 비교 시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고 1년간 보존

심사결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 입식·출하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차단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어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 거래내역을 기록·비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법 및 해외사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강화 2)**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 살충제, 구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판매시 거래내역 기록 보관 의무 부여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시 용법용량 등의 내용에 대해 투약 지도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는 인체, 동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거래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약품 등 판매 시 사용안내를 위한 투약지도 규정도 미비하여 동물용 의약외품 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3개)에 대해 판매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투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및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판매기록을 전부하지 않거나 판매기록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판매기록 사항을 일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때 경고 또는 업무정지
- 투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심사결과 동물용의약외품 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3개)에 대해 판매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투약지도를 이행토록 함에 따라 그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입법사례와 비교 시 유사한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강화 3)**심사내용** 영업 등록 및 허가 신청서류 **강화**

- (사업계획서)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자 제출
- (폐업처리계획서)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영업자 제출

심사결과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종 대두에 따라 영업자가 업종 특성에 맞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업 시 동물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폐업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으로 타 입법사례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 판매·수입업 사육·관리 인력 추가
 - * (현행) 개·고양이 100마리당 1명 이상 → (개정) 50마리당 1명 이상
- 생산업 시설 요건 및 사육·관리 인력추가
 - * 분만실 구비 / 개 운동공간 설치, 소규모생산의 경우 소음방지설비 설치
 - * (현행) 개·고양이 100마리당 1명 이상 → (개정) 75마리당(12개월령 이상) 1명 이상
- 신규 업종(4종) 시설·인력기준 신설
 - *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구비 / 20마리당 1명

- * (위탁관리)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휴식실 구비, 녹화장치 / 20마리당 1명
- * (미용업)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 구비 / (미용차량) 욕조, 급·배수 시설 및 냉·온수 설비 등 구비
- * (운송업) 사무실 구비 / (차량) 냉·난방시설 등 구비

심사결과 현행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동물생산업 등 영업자 시설·인력기준 등은 동물복지를 감안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해 관리기준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업종별 시설·인력기준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기존 업종(생산업) 준수사항(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백신접종 및 위생관리 등) 추가
- 신규 업종 준수사항 신설
 - * (전시업) 개·고양이 전시는 6개월령 이상, 정기적 예방접종·구충, 연 1회 검진, 하루 10시간 이내 전시 등
 - * (위탁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건강 위해시 소유주 통보 및 병원진료, 녹 화영상 보관(30일)

심사결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영업별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육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5) 동물보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과태료 가중처벌 기간 상향 : (현행) 1년 → (개정) 2년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① 동물을 유기한 경우
 - * (현행) (1차) 30만원, (2차) 50, (3차이상) 100
 - * (개정) (1차) 100만원, (2차) 200, (3차이상) 300
 - ② 반려동물 판매(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 규정 위반
 - * (현행) (1차) 10만원, (2차) 20, (3차이상) 40
 - * (개정) (1차) 50만원, (2차) 100, (3차이상) 200
 - ③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현행) (1차) 0만원, (2차) 20, (3차이상) 40
 - * (개정) (1차) 5만원, (2차) 20, (3차이상) 40

심사결과 최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족 등에 따른 관리소홀로 동물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 입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규정

심사결과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러시아의 몽골 인접 지역까지 발생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보유

* 5년 이상 경력자 2명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과 3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심사결과 현재 농식품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만 가능하나 '01년과 '12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가 각각 도입되면서 LLC 형태의 투자 운용사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농식품 펀드(농식품 투자조합)의 결성 주체에 LLC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한식진흥법 (신설 1)

심사내용 우수 한식당 지정 취소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심사결과 한류의 영향과 정부의 지속적인 한식 홍보정책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식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한식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진흥법이 마련된 바,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한식당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사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강화 2)

심사내용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 강화 **강화**

- 친환경농식품 인증사업자의 인증신청 금지조건(2개) 추가
 - ①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 초과·검출로 인증 취소된 자
 - ②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자

심사결과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일부 친환경인증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 농식품과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식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금지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향상 필요 및 유사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친환경농식품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범위 확대 **강화**

-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만을 하도록 하던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진열하는 것까지 부정행위에 포함

심사결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 이를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진열하는 것까지 부정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 제도의 건전한 운영 필요 및 유사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아 원안의결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사항 도입 **신설**

- (사육공간)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조성 등
- (관리) 전염병 전파·악화 방지 및 심각한 상해로 인한 고통완화를 위한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 적합한 음식 및 깨끗한 물 공급 등

심사결과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공간·규모, 급이·급수제공, 청결관리 의무, 개체 위생 및 질병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관리 의무사항 및 동물관련 영업자(동물판매업, 미용업 등)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기준 등을 준용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강화 **강화**

-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 농약(99종) 및 동물용의약품(194종)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금지

심사결과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동물의 관리 및 사육시설·환경 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생산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적절한 물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하고 모든 축산농가가 기 이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1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3)

심사내용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강화**

- 유기식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갱신 포함)의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 2년에 1회, 3시간 이상(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심사결과 '17.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등 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기준 위반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안전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입법례 고려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강화**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 (유기양봉제품)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잔류허용기준의 1/3 초과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 (취급자)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자가 유기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 등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된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심사결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강화**

-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갱신 포함)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 2년에 1회, 3시간 이상(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심사결과 '17.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등 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기준 위반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안전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입법례 고려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집필자]

이진용 사무관(Tel. 044-200-2421, jeand@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총 1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2.)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4)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8.10.2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8.10.2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9	신설 10 (중요 1, 비중요 9)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6	신설 30, 강화 7 (중요 3, 비중요 34)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신설**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영업정지 12개월, (3차)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영업정지 12개월, (4차) 등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1차) 등록취소
-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 (1차) 영업정지 12개월, (2차) 등록취소

심사결과 수목진료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병원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세부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입법사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에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신설**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취소
- 지정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3차) 지정취소
-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미개설 및 1년이상 미운영
 - *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취소
-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 운영
 - *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법령 준수 및 적절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여 유사한 입법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 **신설**

- (시설)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사무실
- (장비) 해부 및 광학현미경(2식), 균배양시설(1식), 엽록소 측정기(1식) 등
- (인력) 전임교수요원 및 전임관리자 각 1명 이상

심사결과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시설·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여 수강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나무의사 등 자격취소 및 정지 **신설**

-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및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 (1차) 자격정지 36개월, (2차) 자격취소

** (1차) 자격정지 2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12개월, (4차) 자격취소나무 병원

심사결과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의 법령 준수 및 적절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성이 있으며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 시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내용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설**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규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후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4년이상 종사
- ② 수목진료 계통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
- ③ 수목진료 계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1년이상 종사
- ④ 수목진료 계통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산림·농업분야 특성화고교 졸업 또는 산림(조경)기능사 취득 후, 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
- ⑤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
- ⑥ 「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경·식물·수목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

심사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격취득과 관련된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자연휴양림 시설 내 설치가능 시설의 기준 강화 **강화**

-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 1개소 이내 설치

심사결과 현행 자연휴양림내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소의 경우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각각 1개소씩 운영토록 제한 중이나 동 조문 상 휴게·일반음식점의 개소를 직접 제한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휴게·일반 음식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당초 입법 취지와 그간의 법령 운영과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설치할 수 있는 휴게·일반 음식점 수를 각각 1개소로 명확히 적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휴양림의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안전관리 사항관련 이행실적 보고요구 수인의무 **신설**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사항에 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심사결과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지정구역 내 산림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사고발생 시 조치방안 등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휴양림을 보다 안전한 휴양공간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고려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 등 **신설**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검사인력, 자본금, 검사장비 등) 규정

심사결과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 등을 검사하거나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기준, 검사항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격 종류(1종, 2종)별 세부 검사항목 및 기준을 규정하여 응시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심사결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사 자격을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자격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등급평가 된 불량목재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신설**

-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 검사공장의 지정·인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적절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운영 및 적법한 규격의 목재제품 유통을 위하여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목구조기술자 및 산림 기술자에 적용하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산림기술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강화**

- 제재목과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에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별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종별(제1종, 제2종) 검사 장비 달리 명시

심사결과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한 자체 검사공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체검사공장 운영을 위한 검사 장비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한 자체검사공장의 검사항목별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등 편익이 상당함을 고려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강화**

-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1개월, (3회) 영업정지 3개월

심사결과 불법목재 교역 제한제도 도입에 따라 목재생산업자에게 합법 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법상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강화

○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하게 운영 되었을 경우 처벌 및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심사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 및 불법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림기술자에 적용하던 기준을 준용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산림조합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 해당 조합을 포함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금융기관

심사결과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자격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중 채무 연체자의 경우 해당 조합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하는 경우는 임원 선임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 연체자의 범위를 해당조합 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 상황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농협 및 수협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금지 신설

○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競業)금지 대상 사업으로 조합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명시

*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조경공사사업과 조경식재공사사업, 목재생산업,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 등 15개 사업

심사결과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 적용의 혼선에 따라 조합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농협 및 수협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신설**

-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 평균경사도의 측정,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등

심사결과

토석채취허가 검토에 필수적인 사항인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에 대한 표고·평균 경사도·입목축적 조사서 작성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 운영 관행의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사항을 준용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 및 허가 신청인의 신뢰보호가 가능한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산지관리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조건·기준 **강화**

-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설치 시 현장점검계획 수립·반영

심사결과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는 설치면적이 작고 공사기간이 짧아 복구비 예치보다 현장점검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강화**

- 송전시설 복구준공사일로부터 3년간의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심사결과

송전시설은 산정상부에 점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재해위험이 높으므로 복구비 예치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여 복구비 예치의무를 폐지하고 송전시설 복구준공사일로부터 3년간의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하는 것으로 유사사례(풍력발전시설 3년간 현장점검계획 수립) 고려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추가 **강화**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송전시설 및 궤도시설 포함

심사결과

송전시설과 궤도시설은 대부분 산 정상부에 설치하고 점적으로 시설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산지내 입지가능 여부를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송전시설과 궤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 설정 **신설**

-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

심사결과 산지일시사용 기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25~30년으로 설정 필요)이 있어 중요규제로 의결, 본회의에서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함에 따라 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연장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일부 발생하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또는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산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 시 과도한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8)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 신설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신설**

- 현재 산지전용 대상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심사결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이견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 및 산사태 우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안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9) 산림기술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면제 등의 기준 **신설**

-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 규정

* 종류(기본 및 전문 교육), 이수시간(35시간 이상), 교과목(이론 및 실기과목), 교육방법(사이버 교육, 분할교육 등)

심사결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산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술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및 가중·감경 기준

심사결과 산림기술자 자격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이중 취업 등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선량한 자격소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사업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12에 규정된 내용을 이관·정비하였으며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 별 등록 취소(말소) 및 영업 정지(3·6개월) 등 행정처분 기준 및 감경 기준 등 설정

심사결과 산림사업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부정 등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시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실측정대상 산림사업 및 부실측정·벌점부과 기준 **신설**

- 벌점 적용 대상(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벌점 측정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산림사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용역업자 및 시행업자, 기술자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설분야와 달리 벌점의 감경·소멸 규정을 두는 등 산림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자의 안전점검교육 이수 **신설**

- 산림사업현장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산림기술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및 이수 시간(35시간 이상) 규정

심사결과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책임기술자 교육훈련 기준을 준용하되 안전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10) 산림기술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0)

심사내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기준 **신설**

- 지정대상 기관·단체의 종류, 기술인력, 시설 등 3개 분야 기준
 - * 국·공립 산림분야 연구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등 8개 대상
 - * 자격(산림기술사), 학력(산림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경력(산림관련분야 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명이상 확보
 - *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심사결과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 기관 종류 및 기술인력,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산림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항 **신설**

- 교육시설 지정 후 1년 이내에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

심사결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운영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

- 종합·전문기관별 강의실·실습림 규모, 전임강사 수 등

구분	강의실(㎡)	실습림(㎡)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00,000	3	3
전문교육기관	100	-	2	2

심사결과 산림기술자 교육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신설**

-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분류하고 기술자 별로 취득자격 또는 실무경력 연수 등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구분
- 기술종류별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각 등급별 자격요건 규정

심사결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림 경영·산림 공학·녹지 조경으로 산림 기술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산림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수준으로 엔지니어링 산업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신설**

- 종합 및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구분하고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사무실) 기준 및 업무범위 설정

심사결과

산림기술 용역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등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체계적·종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실 및 장비의 기준은 제외하는 등 산림기술용역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한 바,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신설**

- 설계·감리 실시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 확대와 산림사업의 설계·시행 분리 신설,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분리

심사결과

산림사업의 설계업자와 시행업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대해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동일인의 설계-시공 금지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종전과 동일하게 산림사업의 시행-감리 분리만 명시하도록 하고 차후 법률에 설계-시공 분리 관련 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규정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산림기술자등의 산림사업 현장 배치 **신설**

-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조사·설계·시행·감리)별 산림기술자 배치

심사결과 산림사업 단계를 조사, 설계, 시행 및 감리로 구분하고 각각 사업규모에 따라 산림 기술자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산림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범위 및 기준

* (수립 범위) 30,000㎡ 이상의 벌채사업, 산지복구공사,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 (수립 기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

심사결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정 면적 이상, 특정 종류의 산림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대부분 준용함에 따라 규제수준에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수행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신설**

○ 산림사업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고급 이상의 산림기술자로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심사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특급기술자에 한정된 것에 반해 본 개정안은 고급 이상 기술자까지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실시 시기 및 방법** **신설**

○ (실시방법) 산림사업 작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교육에는 당일 작업의 시행방법, 시행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행순서 등을 포함하고, 안전교육 후에는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 (실시시기) 산림사업 작업 당일 사업 착수 전에 실시

심사결과 당일 작업의 시행방법, 시행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행순서 등은 작업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고 안전교육은 작업 당일 작업의 착수 직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신설**

- 산림청장이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
-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산림청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현행 법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변경신청 및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사항을 행정규칙(예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등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촌진흥청

[집필자]

이진용 사무관(Tel. 044-200-2421, jeand@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보통비료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 **강화**

-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니켈·크롬·티탄) 최대 함유량 축소

유해성분	현 행			개 정 (가용성규산 함유율 25%인 경우)
	(기준)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환산) 가용성규산 함유율 25%인 경우		
니켈(Ni)	0.012 %	0.3 %	3,000mg/kg	100mg/kg
크롬(Cr)	0.12 %	3 %	30,000mg/kg	800mg/kg
티탄(Ti)	0.06 %	1.5 %	15,000mg/kg	6,000mg/kg

심사결과

현행,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은 타 비료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 위해 및 토양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유해성분 함유량이 상대표시(%)로 되어 있어 계산방식도 복잡해 규산질비료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기준을 낮추고 유해성분 함유량을 알기 쉽게 절대량(mg/kg)으로 표시하려는 것으로 해외 적용기준 및 국내 유통제품의 함량 수준 고려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에 의한 의결

(2)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 요령 (강화 1)

심사내용 농약 판매관리인의 농약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및 시간 설정 **강화**

- 농약 판매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6시간) 명시

심사결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자기 감독식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협 등에서 위탁·수행하던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 교육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17)됨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를 고려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에 의한 의결

(3)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농약가격 표시방법 **신설**

-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 표시방법 등을 규정

심사결과 현재 동일한 농약 제품도 지역 또는 판매처별로 판매 가격 표시방법이 상이하여 농업인의 혼동 및 불신을 초래하고 가격표시 방법 등 위반 시에도 시정권고(1차) 등 제재 수준이 미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약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약관리법으로 이관하면서 새로이 ‘농약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의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판매가격을 개별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등 타법사례와 비교 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6 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필자]

설민아 사무관(Tel. 044-200-2420, sma1215@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2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0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8.04.19.)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8.05.18.)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6)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8)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전자서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5)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0	신설 28, 강화 12 (중요 3, 비중요 37)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UHD 방송 수신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기준 **신설**

- 레벨조정기 및 IF(intermediate frequency, 중간주파수)형 기술기준

심사결과 현재 UHD 방송 시청을 위한 신호처리가 개발 중에 있어 상용화되기 전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신호처리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임시 신호처리를 통한 방송시청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 추출비율 **강화**

- (현행) 검사대상의 10% × 표본검사 불합격률 → (개정) 검사대상의 10% × 표본검사 불합격률별 적용비율

표본검사 평균 불합격률	~ 3 %	~ 6 %	~ 9 %	~ 12 %	~ 15 %
적용 비율	10 %	20 %	30 %	40 %	50 %

심사결과 검사 불합격에 따른 타 통신에 대한 혼·간섭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및 재검사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이 확대되어 사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무선국부실 운영이 줄어들어 통신품질 제고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 기기급 인터넷 전송속도의 향상, 전화선 이용 인터넷 서비스 기술의 상한 주파수 확장, 10기가급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상응하는 기준 마련

심사결과 급변하는 ICT 기술을 반영하고자 ITU-T와 IEEE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초고속 기가급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산업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강화**

-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현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만 65세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요금 감면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원안에 동의

(5)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2)

심사내용 보편요금제 도입 **신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 제공량은 일반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50~70% 범위 내, 이용요금은 보편서비스 제공량에 해당 서비스의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을 곱한 금액의 1~2배 범위 내에서 결정

심사결과 규제비용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전파 등 공적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의 특성 및 통신비 절감에 대한 사회적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안에 동의

심사내용 보편요금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신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편요금제 신고 의무

등 관련 사항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입법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에 동의

(6)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강화 2)

심사내용 공동구축 협의 절차 개선, 정보 공유, 전담기관 업무확대 **강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설비 확대 **강화**

-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자가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공동 구축 참여 여부에 대한 통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정보 공유 의무 부여 및 전담기관의 업무에 협의 이행 여부 점검·관리를 추가
- 공동구축 협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연면적을 현행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고 협의 대상설비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을 추가

심사결과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 제도는 통신사가 관로·맨홀 등의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구축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나 협의 절차의 복잡성,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사의 5G망 구축 시 투자비 절감을 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 구축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내용 및 전문기관의 이용대가 산정자료 검증 **신설**

- 의무제공사업자(KT)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비 관련 정보에 광케이블 구축 정보 등을 추가
- 전문기관이 이용대가 산정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의 제공·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자료·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절적인 수단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무제공 대상 설비 및 범위 확대 **강화**

-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간의 광케이블은 의무제공 대상 설비에 포함

심사결과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 지원과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의 5G망 구축 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무제공 대상 설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 입법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구축 미참여 사업자의 설비이용대가 상향 **강화**

- 공동구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후 설비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설비의 이용대가를 현행 50%에서 100%의 범위에서 가중

심사결과 의무제공 사업자인 KT 이외 기업(SK, LGU+ 등)이 공동 구축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설비이용료(임대료)만 지불하고 既 구축한 설비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비 이용 대가를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간 협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축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이면서도 이용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다는 점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대상설비 범위 확대 **강화**

-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대상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등을 추가

심사결과 5G 등 통신망 조기구축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시설물 내의 일정 공간을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가로등 등을 의무제공대상 설비에 추가하면서 이통사가 상호 협정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동 고시 제41조 및 제42조)하고 있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 사업자 (강화 1)**심사내용**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추가 **강화**

- 인입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 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추가 지정(현행 KT에서 SK브로드밴드, SKT, LGU+까지 확대)

심사결과 가입자망의 최말단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은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설비를 새로 구축하기 어렵고 다른 구간과는 달리 우회경로 구성이 불가능하며,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인입관로 등을 임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해 인입구간의 설비 제공을 의무화하여 망 구축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강화**

- 무선표지설비(ELT)의 전파형식을 국제표준(ICAO Annex 10 Volume III)에 따라 현행 G1B에서 G1B 또는 G1D로 변경
-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조건을 국제표준(RTCA DO-362)에 부합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국제표준과 상이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및 안전한 운항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 표준을 준용함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 현행 아날로그 선상통신국 채널 외에 디지털 방식의 채널을 추가하고, 450-470MHz 주파수 대역에서 선상통신국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를 현행 6개에서 40개로 확대한 전파규칙을 반영

심사결과 선상통신국의 주파수 부족과 전파 혼·간섭 문제를 해결하여 해상에서 선박사고 시 인명 구조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디지털 방식의 무선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비율 및 한도 **신설**

- 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청구금액) 50% 감면(최대 1.1만원 한도)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의 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 요금감면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으로 국민생활비를 절감하고 요금감면 수준에 대하여 통신3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전자서명법 (신설 1)

심사내용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기관 관리 **신설**

-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신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 인정기관은 평가결과를 확인, 신청인에게 준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
- 평가 및 인정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심사결과 평가·인정기관의 투명한 업무수행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내 GS인증, KS인증, ISMS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평가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법한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조항은 타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우편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우편물의 이용제한 기준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등에 의한 재난 발생 지역, 기상 특보 발령 지역 등에 우편물 이용을 제한

심사결과 우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 공공이익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납 우편요금 등에 대한 연체료 가산 **강화**

- 우편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의 3%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2%를 추가 가산금으로 부과

심사결과 우편요금 등의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가 가산금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고 징수대상기간도 60개월로 한정하는 등 체납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유사 입법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교육실적 제출 및 점검 후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의무 **신설**

- 초·중·고등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실시

심사결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8.2.21.)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실적 제출, 교육실시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특별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신설**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준 **신설**

- 현행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기준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기준을 추가
-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

심사결과 기존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접근성 품질인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등 설정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 및 활용이 보장될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도입 **신설**

- 영상정보처리기는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심사결과 개인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 최초 사용 시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 후 동작하도록 의무화하여 비밀번호 노출에 의한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기준 **신설**

- 기존의 유선방송케이블망을 사용하여 1기가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기의 안전한 이용에 필수적인 사용주파수, 전송방식, 전력 밀도, 신호전력을 규정

심사결과 유선방송가입자를 대상으로 케이블망을 통해 1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케이블사업자의 경쟁력강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표준인 ITU-T G9964를 준용하여 기존의 유선방송케이블 네트워크로 1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설 3)

심사내용 비핵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기준 **신설**

비핵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방법 **신설**

소형 장비보호시설 방호성능 측정방법 **신설**

- 방사성 방호 성능기준의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고 전도성 방호성능기준을 신설
-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의 방호성능 측정에 비핵 고출력 전자파를 포함하도록 측정방법을 신설
- 소형 장비 보호시설에 대한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신설

심사결과 비핵 고출력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주요시설 및 주요 정보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방호시설 구축 시 적용되는 방호성능 기준에 대해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 현행 4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28 GHz, 3.5 GHz 대역의 5G 이동통신용 기지국과 이동국(단말기) 등의 기술기준을 추가

심사결과 국내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받아야 출시할 수 있어 5G 기지국과 단말기가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하여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5G 국제표준(ITU, 3GPP)을 반영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강화 1)

심사내용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재하도급 일부 허용 및 관리감독 강화 **강화**

-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상향하여 국가기관 등이 하도급제한 준수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하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도급 제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국내 대부분의 하도급 거래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 일정부분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거래 상대방이 제공해야 하는 구매자정보 내용 및 절차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결제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 정보 내용과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구매자정보 제공요청서에 대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심사결과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제3자 결제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결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구매자 정보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익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신설 2)

심사내용 5G 무선설비 공동사용 무선국 설치기준 **신설**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신설**

- 건물 및 지면에 설치하는 공동사용 무선국의 설치기준과 건물옥상 및 벽체에 설치하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중 공통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5G에 적용 가능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자연경관 및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시 전파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01조에 따라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행자의 자격 또는 경력 기준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의 자격 등 중에서 하나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

심사결과 사고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자 자격 기준을 정한 것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부재(여행·질병 등) 빈도가 높지 않고 실제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의 단기간 직무를 대행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 1610 MHz~1618.25 MHz 주파수대역의 통신방식에 현행 복신방식에 단신방식을 추가하고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기준을 마련

- 현행 1627.0 MHz~1652.1 MHz 주파수대역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일치하도록 1626.5 MHz~1660.5 MHz으로 확대하고, 전파형식에 단일채널 데이터 통신을 위한 G1D를 추가
- 위성 단말기의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 1618.25 MHz~1626.5 MHz 주파수대역의 점유 주파수대역폭 종류를 확대

심사결과 다양한 통신방식의 위성휴대통신용 단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음성통화 위주의 위성전화 서비스에서 위치정보 서비스, 고속 데이터 통신 등 다양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위성휴대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위성휴대통신 사업자의 기술기준 수요를 반영, 전파간섭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주파수대역의 기술기준을 최소한으로 정비하여 통신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전자파적합성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강화**

-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9 kHz 부터 30 MHz 까지 방사성 방해 기준의 측정 단위 수정 : 전기장의 세기(dBμV/m) → 자기장의 세기(dBμA/m)
- 전자파 허용 기준 개정 : 36.3 - 2.5 dBμA/m → 69 - 3 dBμA/m

심사결과 10W 초과 대용량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없어서 국내 제조사들이 해당 제품을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표준(CISPR 14-1, 32)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력용 제어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태양광 전력변환기 및 보호 계전기 기준

심사결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력용 제어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함은 물론 기기의 오동작·성능저하를 방지할 것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활용이 가능하여 한 번의 시험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비용이 절약되고 내수 및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통합국선단자함 설치기준 **신설**

- 국선단자함 내부에 절연보조장치와 통풍구, 격벽 등을 설치하고 설비상호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국선단자함의 크기는 0.56㎡ 이상일 것 등 통합국선단자함 설치기준 마련

심사결과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집중구내통신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종합유선 방송 설비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와 설치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통신설비와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안정적 수용과 설비 간 간섭 없는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통합국선단자함 1개 설치 시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모두 설치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신설 1)

심사내용 스마트우편함의 기준 **신설**

- 최소 규격 설정, 비대면 배달 가능한 전자적 개폐 장치 부착,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 또는 월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

심사결과 현행 우편함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스마트우편함의 규격·구조·재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우편물 분실·훼손, 배달원 사칭 범죄,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부재 시 우편물 수취 등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 입법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인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인정 기준 및 이수기준 **신설**

- 당해 연도 예방교육 이수기준 미충족 및 실시 결과 미제출·허위제출의 경우 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봄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이수기준은 당해 연도에 일정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육인원을 합산하였을 때 이수율이 70%(대학은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인 유사 사례 등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정보통신 진흥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책임보험의 기준 등 **신설**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해 1억5천만원, 재물 10억원 등 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규정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 등의 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심사결과 규제특례로 허용된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사고 유형별 보험금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화재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제차등화 방안을 마련한 점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통신위원회

[집필자]

설민아 사무관(Tel. 044-200-2420, sma1215@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방송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8.10.0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6)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	신설 5, 강화 2 (중요 1, 비중요 6)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2)

심사내용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업자 규모를 고려한 규제 차등화를 마련하고 유사 입법례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 **신설**

-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리콜 발생에 따른 위약금 조치, 사은품, 경품 처리방안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판매 및 철회 과정에서 조치해야할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과 피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홈페이지 게시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신설**

-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홈쇼핑 사업자는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결정사항의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자에게 통지
- 게시기간은 7일, 게시장소는 자사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하고, 크기는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6분의 1이상

심사결과 방송법에서 위임한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한 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은 제재처분 경중에 관계없이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규개위 심사결과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권고한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강화 1)

심사내용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상향 **강화**

- 종편·보도PP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심사결과 종편·보도PP의 매체영향력 및 경영상황이 개선된바, 경영상황 호전에 따라 징수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IPTV와 동일하게 광고매출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징수율이 1.45~4.3% 수준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고려 시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점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휴업’ 승인·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정지 3개월(1차위반),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2차위반)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폐업’ 승인·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 취소 또는 사업폐지

심사결과 사업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위치정보법(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제재처분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휴업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 감안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방송분쟁 직권조정제도 도입 **신설**

-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 개시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방송 유지·재개 명령 기간(최대 60일) 이후까지 분쟁이 장기화되어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당사자 간 조속한 협상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원안에 동의**

(6) 방송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순수외주제작의무 부과 **강화**

- 현행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

심사결과

방송매출 등에 있어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종편PP와 지상파 간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종편PP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과점 해소, 방송의 다양성 구현 및 독립제작사를 통한 방송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고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로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방송을 시청하는 등 시청자 편익이 증대되며, 구체적 편성비율은 향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35%이내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로 확정될 것으로 실제 종편의 '13년~'17년 순수외주제작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본 규제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사업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7절

노동·환경 분야

제
4
장

1. 고용노동부

|집필자|

정세환 사무관(Tel. 044-200-2447, jungsh814@mail.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총 2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를 하였고, 4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본위원회 (2018.05.25.)	철회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
(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본위원회 (2018.07.1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1	신설 7, 강화 6 (중요 2, 비중요 11)
(13)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3	신설 22, 강화 24 (중요 3, 비중요 4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기준 **신설**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업무를 하는 자(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신호체계 부실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신호수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준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 타워크레인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연간 8시간 이상 실시)을 늘리고, 교육내용(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관련 사항, 신호수의 역할 및 책임 등)을 규정

심사결과 공사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준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의 특성, 안전조치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한 안전관련 서면을 발급하고, 설치·해체작업 전에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의무 강화

심사결과 효율적 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의무의 확대 개념으로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는 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는 자는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방지장치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다수 산업현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장치들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교육 강화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수료 후 5년 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설치·해체작업 시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자격요건과 비교 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확대된 교육 시간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재교육 이수 의무 **신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시 자격 재취득을 위해 재교육 이수 필요

심사결과 설치·해체작업 시의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안전조치 준수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격 재취득 요건이 신규 취득 요건과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강화**

- 1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과 함께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정비하고, 라돈에 대한 노출기준을 세계공미터 당 600벵크렐(600Bq/m³)로 설정

심사결과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 노출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강화**

-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제외되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임금 등 남녀노동자간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전사업장에 적용

심사결과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평등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타 교육·배차·승진·퇴직·해고 등 인사 상 고용평등 확보라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확대 **신설**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대상기업에 추가

심사결과 민간부문의 유리천장 현상 완화 및 양질의 여 성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규제 도입 필요성 인정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까지만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문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신설**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심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신설**

- 사업주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제도 등과 관련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신설

심사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제고·고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규제자에 대한 비용 발생이 거의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간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 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지정

심사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주의 위탁교육 편의를 위해 기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에 대한 비용 발생이 거의 없으며,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기준 **신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할 의무

심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시간 편성 및 교육강사의 교육이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에 대한 비용발생이 거의 없고, 타 입법례와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이므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교육 의무 **강화**

- 신규·기존 유료직업 소개 사업자와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의무 강화
- (신규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
- (기존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 의무
- (유료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관계 성립 후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 의무

심사결과 구직자 보호 강화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유사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와 비교 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록제 전환 및 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 직업 정보제공 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업 정보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비치토록 규정

심사결과 경쟁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타법에도 거짓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이미 존재하고, 현행 법 규정상으로도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 정보제공 사업의 등록제 전환 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우려가 크고,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아 **철회권고** 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심사내용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의무 **신설**

- 구인자의 신청으로 모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 계약을 근거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응시자는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모집대행 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에 대한 비용 발생이 거의 없고, 구직자가 요청 시 서류 공개이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허가 등의 취소 기준 **강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 사업, 직업 정보제공 사업, 근로자공급 사업을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 받은 경우 해당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당연 취소토록 규정

심사결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신고·등록·허가를 당연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중개사무소의 인허가는 당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신설**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방재기사와 환경위해관리기사 추가

심사결과 국가에서 직접 자격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발생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보호라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신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 등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신설 7, 강화 6)

심사내용 산업안전 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근거규정 마련

심사결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고, 골프장 캐디, 화물트럭 기사, 음식점 배달 대행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필요하며, 영국, 독일에서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신설**

-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심사결과 산업재해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이 행위자로서 처벌받고 대표자는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적용 범위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소상공인, 소기업은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무교육 이수 대상기관 확대 **강화**

- 기존 직무교육 이수 대상기관에 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 기관을 추가

심사결과 현재 안전검사 기관 등이 기관 자체적으로 검사원에게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검사원의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고, 타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인력에 대한 교육 등)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그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와 구별하여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그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민주노총, 한국노동안전연구소, 노동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작업중지권 부여 권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강화**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작업을 도급금지 작업으로 개정하고,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의 작업은 도급의 인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하며, 도급승인 작업의 하도급 금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원청 사업자의 직접관리 등을 위해 현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도급금지 대상 중 불가피한 경우는 도급을 허용하고, 그 외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 승인 후 도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심사내용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규정

심사결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도급’ 등으로 규정되어 그 범위가 협소하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 바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규정

심사결과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 해외 유사 입법사례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발주자 의무부여 등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공사 도급인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신설**

○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

심사결과 가맹본부가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도 가맹본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가맹사업법(제5조4항) 상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중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 않고,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가맹본부가 영업점에서의 근로조건 등에 동의한 경우 건강·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로 작업 시마다 근로자를 모집하여 작업을 수행하므로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독일 등 해외 유사 입법사례와 이해관계인 이견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검사 기관에 대한 평가 **신설**

○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심사결과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 시키고, 사업장에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등 의무 **신설** **강화**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MSDS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MSDS 기재항목을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으로 변경하며, MSDS 기재 대상에서 제외된 구성 성분에 대하여는 그 명칭 및 함유량 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MSDS 작성시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사각지대 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주체 확대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승인 시 인정기간을 연장(3년 → 5년)하고 R&D용 화학물질을 간편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심사내용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 의무 **강화**

○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의무 부여

심사결과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만을 추가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강진단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잠수작업시 안전보건 조치기준 개선 **강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1일·1주 최장 잠수시간에 대한 기준 및 잠수 작업자의 수면 상승 시 부상 속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

심사결과 잠수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잠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개선을 통한 재해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인터넷 원격교육의 교육시간 제한 **강화**

-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정기·직무교육 시간 중 인터넷 교육 시간을 제한

심사결과 인터넷을 통한 편법교육, 대리수강 근절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정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 확대 **강화**

- 산업재해보상법(제123조)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에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확대

심사결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독일,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조정 **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고,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에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전고지토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적절한 안전관리비 비용 확보를 통한 안전시설 투자 확대 및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관리 예산을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집행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또는 우려) 시 사후조치 **신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또는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

심사결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을 예방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부상·질병을 예방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

심사결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을 예방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정과제(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관계부처 합동)에도 포함되는 등 정부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 **신설**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을 할 수 있는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장비기준 및 자격취득·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시간을 규정

심사결과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본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면허·교육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 등 **강화**

-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 교육 내실화를 통한 건설업 재해예방 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신설 2)**심사내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 **신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의 80%, 기업이 50%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명단공표의 사전예고 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08년부터 16차례 명단공표를 실시 중이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 및 제외 기준 **신설**

-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및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유도가 되도록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명단공표 제외기준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기관·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강화**

- 직업성 암 발병의 유해물질별 노출수준(노출기간·노출량 등)을 구체화하고, 유해물질과 질병의 연관성이 밝혀진 질병명을 새롭게 추가

심사결과 산재노동자의 직업성 암 입증부담 경감 및 질병판단의 정확성과 산재인정에 대한 노·사 신뢰성 제고를 통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도 사회보장법에서 직업성암 목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최소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

심사결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규모공사장안전점검강화대책('17.8.17,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사업주의 정보제공 **강화**

- 작업환경 측정 前 예비조사 시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공정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관련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

심사결과 근로자 참여권 확대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통한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로 인한 비용발생이 없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커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 기관에 대해 위반 횟수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석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석면안전관리개선대책('17.9.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환경부

[집필자]

김기출 서기관(Tel. 044-200-2443, kmakkc@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총 6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4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1건은 부대권고 하였으며, 14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7.02.0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9.)	원안의결 8	신설 2, 강화 6 (비중요 8)
(6)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0)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수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25) 고흡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위해우려종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0)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3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자연공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36)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3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4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8.11.23.)	부대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50)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4)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환경영향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6) 신고대상 고분자 화합물질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를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8)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하수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원안의결 143	신설 71, 강화 74 (중요 2, 비중요 143)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운행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 정밀검사(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 10%, 정기검사(정밀검사 지역 외) 20%
- (개정) 정밀검사 10% → 8%, 정기검사 20% → 10%로 강화

심사결과 운행 경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필요하고, '16.9월 이후 신규 경유차는 Euro6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으로 DPF(매연저감장치)가 모두 부착되어 있어 강화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DPF 정상 작동 시 매연배출이 0~4% 수준이고 노후화를 감안하여 각각 10% 및 8%로 설정하여 과도한 부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유럽, 일본 및 미국 일부 주에서 무부하검사를 실시하고 프랑스, 독일 등에서 '12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연간규제비용(자동차 정비비용)이 연간 77억원이 발생하나 매연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행 이륜차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 **강화**

- (현행) 대형이륜차(260cc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 (개정)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로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심사결과 중·소형 이륜차의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높아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Euro4('17.4.1. 이후 제작)를 적용한 신규 생산 중·소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기준도 대형 이륜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준수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륜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독일, 대만 등에서도 50cc 이상 운행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검사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18억원이 발생하나 CO 및 HC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대상 추가 **강화**

- 「동물원수족관법」에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검사 대상으로 추가

심사결과 ‘동물원수족관법’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사육시설 기준(사육면적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도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관리대상에 추가된 시설 대부분이 既 운영되는 시설이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어 첨예한 이견 대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기준 강화 **강화**

- 살아있는 생물의 포획이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역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중인 곳에서 포획에 해당되지 않아야 수입·반입 허가

심사결과 ‘잔인한 포획’, ‘지역개체군 감소’ 등의 허가기준 포함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동물복지 강화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설 내용 중 ‘잔인한 방식’에 대한 예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개선권고**하였고,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작살, 덫 등 일정시간 고통을 주는 포획도구를 이요한 포획, 시각·청각 등 신경자극성 방법을 이용하거나 떼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포획 등 살아있는 생물의 포획과정에서 잔인한 방식이 이용되는 경우’로 수정

(3) 자연공원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시설 신설 **신설**

-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산 정상부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시설

심사결과 매년 음주행위로 인한 공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행위 제한이 필요하고, 충분히 수인 가능하다는 점, 대피소 등에는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등 단속 가능성도 높아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음주에 대해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신설**

-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5만원(1차) → 10만원(2차) → 20만원(3차)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공원 내 일부장소에서의 음주행위 금지의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국내의 유사입법례의 과태료 부과수준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강화 1)**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18.4.19. 시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등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 **강화**
- 유해성 정보자료의 미(거짓)작성 또는 수탁자에게 미제공시 :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이상 1,000만원
- 중요사항 변경후 자료 미(거짓)작성 또는 수탁자에게 미제공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 유해성 정보자료의 미게시(미비치)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심사결과 모법에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적절한 행정집행력 확보가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한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6)

심사내용 침출수·가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침출수·가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은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고 매립 처분할 수 있는 '예외적 매립시설'에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 축소 **강화**

- (현행)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는 인정되는 폐기물은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가능

- (개정) 유해성이 우려되는 광재류, 도자기 조각을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가능한 폐기물에서 제외

심사결과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은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처리토록 하여야 하나, 처리대상에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처분토록 할 필요가 있고, 무기성오니와 도자기 조각을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 중인 사례가 없는 점, 현행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인 소각재 등도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일본·EU 등에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추가 **강화**

- (현행)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신고한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등 경우 변경신고
-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경우에는 신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폐기물을 추가(1일 평균 300kg 이상)로 배출하는 경우 및 매립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굴착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심사결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 필요가 있고, 순환인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폐기물 관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에 따른 추가부담이 크지 않고, 석탄재 등 폐기물배출자가 자가매립시설에서 처분된 폐기물을 재굴착 뒤 시험·분석을 거쳐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비용 (연간규제비용 약 140만원) 대비 굴착 후 재활용을 통해 감면받는 폐기물처분 부담액이 연간 2억원으로 편익이 훨씬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신설**

- 작성대상 :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 작성자 : ① 하나의 폐기물 종류만으로 분리·배출 시 - 스스로 작성
②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거나, 두가지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 - 전문기관에 위탁 작성
- (작성내용) 폐기물의 포장형태 및 수량, 유해특성, 성분정보, 성상변화 및 특이사항 등

심사결과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 미비와 폐기물 취급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의 유해성 관리가 필요하고,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폐기물배출자가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보 작성에 따른 비용(연간 8억원)이 발생하나 유해폐기물 적정관리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성 정보자료의 재작성 의무 **신설**

- 사용원료 변경으로 작성대상 사업장폐기물 종류 변경 시
- 생산·배출공정 변경으로 폐기물 종류 또는 성상 변경 시 등

심사결과 작성내용 중 중요사항 변경 시 유해성 정보 재작성에 연간 0.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폐기물유해성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인체 및 환경피해 최소화 등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신고 의무 **강화**

- 현행 상호·대표자 변경, 임시차량 증차 등의 경우 변경신고 → 기술능력 변경시를 변경신고사유에 추가

심사결과 변경신고사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술인력 변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변경허가 대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여 피규제자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비용 경감, 국내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 추가 **강화**

- (현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 없음)
- (개정) 폐기물 분석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분석결과서를 받고도 반복적인 재분석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감사원 지적사항),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을 분석한 후 이를 의뢰한 폐기물배출사업장에 결과를 기송부하고 있어 큰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중간)복토시 복토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 (개정) 예외적 매립시설에 일일(중간)복토시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 이용

심사결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복토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예외적 매립시설의 일일·중간 복토는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일본, 미국 등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성 정보자료 미게시(비치)시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경고(1차), 영업정지 1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 영업정지 6개월(4차)

심사결과 관련 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적절한 행정집행력 확보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 신설 **강화**

- (현행)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정상 작동 및 고장 여부,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 감시를 위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의무 부착 및 진단기준 준수
- (개정) 경유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2017년 9월 1일 이후 신규 인증 받은 자동차와 2018년 9월 1일 이후 출고된 모든 경유차에 대해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진단기준 강화

심사결과 제작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 방법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 판단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는 한-EU FTA에 따라 한국과 EU가 동등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진단기준도 EU와 동일하고, 추가 장치 설치에 따른 부담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어린이집 확대 강화

- 적용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 모든 어린이집

심사결과 석면피해에 민감한 어린이의 주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확대가 필요하고, 유사시설인 학교 및 유치원이 이미 조사대상인 점,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축물 석면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점, 석면조사비용(약 48억원, 어린이집 당 약 40만원) 및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비용(연간 12억원) 발생이 예상되나, 영유아의 석면 노출 예방을 통한 건강보호의 사회적 편익이 460억원에 달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도입 신설

-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최초 교육만 이수
- (개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최초 교육 후 2년 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추가

심사결과 6개월마다 건축물 조사·평가·조치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 대부분의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과도하지 않으며, 미국 등에서 매년 재교육 등 보수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보수교육 및 신규교육 강화에 따른 추가 교육비 및 기회비용 등 규제비용이 연간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면건축물 적정 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련 변경신고 신설 신설

- 감리용역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 감리인 또는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심사결과 법률에서 변경신고의 구체적 대상 규정을 위임하였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감리인 지정 취지 고려 시 감리주체(감리인·감리원)을 지속 관리함이 타당하며, 국내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수도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수도용 자재·제품의 기준 부적합 등 법령 위반 시 해당 제품의 수거 권고·명령을 하고, 현장조사 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목록 규정 **신설**

- (제조업자) 제조설비 및 원부자재 관리 현황, 제조 장소, 위생안전기준인증 현황, 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 (수입업자) 위생안전기준인증 현황, 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 (판매업자) 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 (공통) 수거 등 조치결과 및 결과보고서 현장확인

심사결과 현장조사 시 제출자료 목록을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 혼선 방지 및 법률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하수도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제출자료 준비 부담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대상 항목 추가 및 기준 설정 **강화**

- 카드뮴, 수은, 셀레늄, 납 등에 대한 기준 → 니켈 기준 추가(0.007mg/L 이하)

심사결과 니켈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연구용역 결과 검출빈도·검출수준이 높아 수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니켈을 위생안전기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도 니켈을 위해우려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한 교육(저수조 청소업자 등 재교육) **강화**

- (현행) 청소업자에게 최초 1회 교육의무 부여
- (개정) 청소업자는 최초 1회 교육 이후 5년마다 재교육 수강

심사결과 다량 사용시설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관련 법령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으며, 보수교육비용 및 기회비용으로 인한 규제비용(연간 약 19억원)이 발생되나, 저수조 청소 품질 제고에 따른 국민 건강 편익이 기대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수도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주민고지 및 수도사업자 보고 의무화 **강화**

- (현행)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공지 의무 없음
- (개정) 해당 건물 거주민과 수도사업자에 알려야 하며, 검사 시 납 기준치를 0.05mg/ℓ에서 0.01mg/ℓ로 변경(시료채취는 종전 6시간 정체에서 바로 채취로 변경)

심사결과 건물 거주민 또는 이용자에게 검사결과를 공지하여 수도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먹는물관리법의 납 기준도 0.01mg/ℓ인 점을 고려 시 과도한 규제는 아니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공지를 위한 규제비용(연간 2.2억원)이 발생하나,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수도물 품질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검사항목 강화에 따른 수도물 품질개선 등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사항 확대 **강화**

- (현행)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 (개정) 청소감독자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실시

심사결과 저수조 청소품질 유지와 관련성이 높은 청소감독자 변경 시 신고토록 하여 지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방시설공사법 등 타 법에서도 업무담당자 등이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1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정기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인증신청 반려 **강화**

- 검사 신청 후 검사절차(공장검사 등)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음으로 보는 단서 신설

심사결과 현행 정기검사 신청만으로도 인증을 유효하게 간주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신청만 하고, 실제 검사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제재 근거 미흡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수도물 공급의 핵심 제품인 수도용 자재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원활한 정기검사를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법적 의무인 정기검사를 적정 수행 시 규제부담이 없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안전인증정보 표시 **신설**

○ 수도용 자재·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시 인증마크·번호 등 인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심사결과 미인증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 방지를 통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고, 인증받은 제품의 유통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쇼핑협회와 상하수도협회간 협약이 이루어진 점, 타법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기업 대상 수시 검사 시 요구자료 **강화**

○ 수도용 자재·제품의 수시검사 시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재고 현황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심사결과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제품의 지속적인 적정 품질 유지 확인을 위해 수시검사 제도의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개정내용)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인 고체발전(100MW이상), 시멘트(소성시설), 원유정제(가열시설), 제철(소결시설)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강화

심사결과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요인이 평상시 50~70%, 고농도시 20~40%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비용(연간 210억원)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상호 조율이 되고, 주요 선진국의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및 성능검사 실시 **강화**

- (형식인증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에게 최초 제작시 대기밸브,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기준 적합 여부 검사 의무 부여
 - (대기밸브 개방압력검사)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 여부 검사 : 정압 0.6kPa~1.5kPa, 부압 1.5kPa~3.0kPa
 - (회수밸브 회수효율검사) 유증기 회수율은 90% 이상

구 분	항목	검사 방법
대기밸브	1. 규격검사	서류검사
	2. 외관검사	육안검사
	3. 접합부 규격검사	시험검사
	4. 개방압력검사	시험검사
	5. 표시검사	서류검사
회수밸브 및 커플링	1. 규격검사	서류검사
	2. 외관검사	육안검사
	3. 접합부 규격검사	시험검사
	4. 커플링 규격검사	시험검사
	5. 회수효율검사	시험검사
	6. 표시검사	서류검사

- (성능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에게 판매 전에 형식인증에 적합한 회수설비의 성능 확인검사 의무 부여(무작위 선별 검사)

구 분	시험 항목		검사 방법
대기밸브	개방압력 검사	1. 정압시험	시험검사
		2. 부압시험	시험검사
회수밸브	회수효율 검사	1.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시험검사
		2. 내압시험	시험검사
		3. 회수율시험	시험검사
커플링	1. 커플링 규격검사	시험검사	

심사결과 주유소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근접한 환경오염원으로, 유증기회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이 필요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강화**

-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토양정화 명령을 받게 된 시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
- (개정: 사전등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시설로 확대

심사결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우려기준 초과 토양오염 발생시, 조사주체에 관계없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등 이미 토양을 오염시킨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수용되어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시기 및 수질측정 항목 및 주기 변경 **강화**

- (현행) 오염관측정 설치시기: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측정항목: 해당 오염물질(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측정주기: 반기 1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개정) 오염관측정 설치시기: 정밀조사 완료이전,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측정항목: 해당 오염물질 및 지하수위, 수온, PH, 전기전도도(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측정주기: 분기 또는 반기 1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심사결과 관측정 설치시기를 토양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조사 완료 전으로 앞당겨 신속한 수질오염 파악이 가능해지고, 토양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측정 설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점, 측정주기와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기실시되는 수질측정주기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기타 의견도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신설**

- (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최초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연장(1회 한정)
-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최초 1년 이내 + 6개월 이내 연장(1회 한정)
-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지하수 오염 방지’라는 법률 취지 달성을 위한 세부절차 보완을 통해 피규제자의 이행도를 제고하고, 환경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기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 및 관련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법령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시 사전승인 **신설**

- (현행: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 대상)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허용 용도에 한하여 수출시 환경부에 사전승인
- (개정: 미나마타협약 등재물질 추가) 스톡홀름협약 물질에 적용하던 수출 사전승인 대상에 미나마타협약 물질 중 수은을 추가

심사결과 조속한 국내제도 정비를 통한 미나마타협약 비준으로 당사국지위를 확보하고 ‘수은’의 근절과 무분별한 국내 유입 방지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적·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수은이 갖는 위해성을 고려 시, 협약당사국간 수은의 수출입 사전동의를 통한 규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시 과도하지 않으며, 미나마타협약 당사국 모두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수용되어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배출자의 대행입력요청서 작성제출의무 구성 **신설**

-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 요청시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돼지분뇨 처리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입력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IT환경에 익숙치 않은 배출자를 대신한 운반자 등의 자료 입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배출자가 사전에 자료 입력 대행자를 지정하여 상호 책임성 있는 자료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최초 제출 후에는 대행자 변경 시에만 제출하면 되고, 복수의 대행자 지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도하는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제한물질 추가 지정(1개물질) 강화

-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하 'MOCA')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건축용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심사결과 MOCA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유독물질 영업허가만 득하면 용도 제한없이 취급이 가능하고, 특히 건축용 방수바닥재로 사용 시 MOCA 잔류량 노출(공기 흡입)로 인한 높은 폐암 발생 위험성으로 인해 동 용도로의 사용 규제가 필요하고, 현재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어 있고, MOCA 제조사, 사용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이견이 조율된 점, EU 및 일본 등에서도 MOCA 함유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연간 2.4억원)이 발생하나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신설

- (개정) 제조·수입량 톤수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세분화*

* 10~100톤: '27.12.31, 1~10톤: '30.12.31

심사결과 기존화학물질 등록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법률에서 위입한 연간 100톤 미만 등록대상물질이 차지하는 비중(물질 개수 66%, 제조·수입업체 숫자 77%)이 큰 점을 고려하여 '30년 범위 내 세부 등록유예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위해성이 크고 제조·수입량으로 많아 국민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을 先등록(짧은 유예기간), 제조·수입량이 적은 물질을 後 등록(긴 유예기간) 하는 것이 적정하고, 규제비용(연간 5.85억원)이 발생하나 중소기업은 먼저 등록한 대기업과 협의하여 대기업의 기등록 자료 활용을 통해 부담 경감이 기대되고, EU REACH에서도 유통량·위해성에 따라 최대 11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신설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사항 중 제조·수입량 톤수범위, 위해성 분류·표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업체별 등록유예기간의 확인, 국내 유통되는 물질의 유해성 및 소비자 노출여부 사전 파악을 통한 철저한 등록 관리를 위해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신고내용 중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다수의 타법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EU REACH에서도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 등록예정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내 총 제조·수입량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기준 **신설**

-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기준 연간 1톤 미만이고,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0톤 초과 시
- (신규화학물질) 개별업체기준 연간 0.1톤 미만이고,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톤 초과 시

심사결과 현재의 개별사업자별 제조·수입량 기준 관리는 위해우려가 큰 소량의 화학물질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인 유통량이 일정 수준 초과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점(양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 → 개별업체 기준 0.1톤 미만이고 국가 전체 유통량이 1톤 초과시 등록), 국내 전체 유통량 초과에 따른 등록대상 물질이 많지 않고(6종), 등록비용을 물질별로 최소 11명 이상이 분담하여 부담이 경감되는 점, 중기영향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제조·수입량이 미량(신규화학물질 10kg 미만, 기존화학물질 100kg 미만)인 기업이 등록 시 제출서류 중 부담이 큰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제출을 생략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미등록 화학물질 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등록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에 함유된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일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제공대상이 되는 혼합물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 마련 필요 **신설**

- 현행과 동일하게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제공
- 등록유예기간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심사결과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및 이에 함유된 혼합물 정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유해성·위해성이 인정되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전이라도 사용상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해화학물질이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기준 이상’(영 별표 1의4) 함유는 유해성·위해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하위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EU REACH 등 해외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정보제공 관련 규제비용(연간 2.87억원)이 발생하나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1회에 한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부여 **신설**

- (신고·변경신고 대상) ① 제조·수입자명, 소재지·연락처, ②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입된 자가 등록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의 상호·연락처(변경신고는 수입자가 추가·삭제되는 경우에 한함)

심사결과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매년 6월30일까지 전년도 물질용도, 제조·판매량 등을 보고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1회에 한해 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를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보고제도에 비해 대상물질 및 피규제자 범위, 제출 횟수 등이 완화되어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 유사법령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변경신고 방법 등 **강화**

- (현행)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시 변경신고
- (개정) 선입된 자의 수입자 추가·변경 시 변경신고사유에 추가

심사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유통량 등의 엄격한 관리라는 법률 취지상 수입자를 추가·삭제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선입된 자가 수입자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거짓등록 등 문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 **신설**

-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영업비밀 보호를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외에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 물질) 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해화학물질과 CMR 물질은 인체 유해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이 곤란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인정물질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 시 미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 점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규제비용(연간 146백만원)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류의 기록·보존 **강화**

- (현행) 화학물질 등록, 등록면제확인 등을 신청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
- (개정) 수송분리중간체는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관리대장을 기록·보관

심사결과 중소기업 등 업체의 등록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분리중간체의 물질 등록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대신, 동 물질이 이송·사용·소멸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됨으로써 인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관리 수단으로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 등록서류 간소화에 따른 등록부담 감경효과와 비교 시, 업체의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6)**심사내용** 살생물의 승인 등 **신설**

- (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차등화(10년, 7년, 5년)
-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승인받은 살생물의 동등성이 인정되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
- (승인유예기간) 기존살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차등화(10년, 8년, 5년, 3년)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된 살생물물질도 주기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국민안전을 담보하도록 차등화된 승인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 법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연간규제비용(106백만원)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받도록 할 경우 사업자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 승인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살생물제품 유형별로 유효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제조·수입량 및 유·위해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규제비용(연간 1.96억원)이 크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신설

-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차등화
-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제형, 유·위해성, 효과·효능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은 고위해성 살생물물질로 제조된 살생물제품의 용도 및 사용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당 제품의 승인유효기간 부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점, 유효기간을 유·위해성을 기준으로 최대 10년 범위내 차등화 한 점 고려 시 적정하다는 판단이며, 규제비용(연간 1억원 내외)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되었고, ‘제품유사성 인정기준’은 기존인 살생물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보다 간소한 승인절차 적용으로 규제부담이 적다는 점, 살생물제품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제형, 유·위해성, 효과·효능은 일반적인 유사성 판단으로 적정하다는 점, 해외사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수용되는 등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사유 신설

- (살생물물질) △유·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명칭, △제조시설 소재지 등
- (살생물제품) △유·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살생물물질·유해화학물질·중점관리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

심사결과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제도를 통한 안전성 재확인을 통해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승인이 아닌 변경신고로 차등화 한 점,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신설**

-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유사성 기준으로,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외국정부를 통해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심사결과 국외에서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국내 승인기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국가간 통상이슈 유발 예방을 위해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마련 필요성, 국내기준 적용 가능제품과 불가능제품 모두에 대해 유사성 충족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신설**

- 새로운 위해성 발견에 따른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의 조치권고 시 통보하는 세부 사항 규정
- 조치권고 사항을 수용한 경우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제출

심사결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에 대한 조치권고 및 조치명령 제도는 불법제품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하고, 조치권고 및 조치명령을 문서로 하여 규제준수 및 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는 점,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신설**

-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으로, △(시설) 시험·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를 각 1대 이상, △(인력) 기술책임자 2명 이상, 시험기술자 5명 이상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평가 등 시험·검사기관의 적절한 업무수행 여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에서 시험·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술인력 요건이 필요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지정도 적절한 검사기능 수행 담보를 위해 필요하며,

동 시행령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6)

심사내용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 **신설**

-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효기간을 별도 7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심사결과 국민건강에 위해성이 큰 물질에 승인 유효기간을 짧게 부여하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시마다 재승인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물질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공 필요성, 국내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신설**

- (안전용기 및 포장)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없을 것, 내용물에 의해 쉽게 손상되거나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변형되지 않을 것,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 (제조·보관시설) 작업시설, 시험실, 보관시설 등 제조자 준수기준,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실 등 수입업자의 준수기준 규정

심사결과 국민건강 위해 예방을 위해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안전한 취급·보관을 위한 제조·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동 기준이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 제조·보관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과도하지 않다는 점,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표시 및 광고의 기준 **신설**

-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표시 기준
-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용 금지된 표시·광고 문구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표시기준, 광고 시 금지 표현 등 광고·표시 기준으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이 사업자에 일부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얻는 국민건강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신설**

- 새로운 위해성 발견에 따른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 조치권고의 절차
- 위법행위 확인에 따른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의 절차

심사결과 사업자가 살생물제품 등의 위해성 인지 시 세부 이행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엄정한 이행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권고 및 조치명령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위해성 있는 살생물제품 등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과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신설**

-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평가, 필요 시 수시평가 실시
- 법률을 위반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1년·3개월·1개월, 경고 등) 세부기준

심사결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에서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EU 등에서도 유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입·검사·수거 실시사유 **신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건강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출입·검사 관련 화평법 등 타 법의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제시된 사유가 타당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영세업체 대상 기술인력 전문교육과정 신설 **신설**

-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같음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기술인력은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가 겪는 기술인력 층원 애로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기존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 자격증, 실무경력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교육과정 이수 시 기존 사업장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완화되는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10년간 38.72억원)보다 규제편익(10년간 4,381.23억원)이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요건으로 기술인력 선임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퇴사 시 신규 선임, 변경 등에 대한 신고제도 부재
- (개정) 기술인력 변경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사유에 추가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인력의 공백 최소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변경신고 관련 비용이 미미한 반면 국민건강 보호 등 사회적편익이 훨씬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수도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강화**

- (현행) 수도법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관련 조항 규정
- (개정) 수도법시행규칙의 검사기관지정 관련 규정을 수도법으로 상향하고 검사기관 변경지정, 지정취소 등 관련 규정 마련

심사결과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어,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관리상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3년마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은 시험·검사기관 관련 타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고의·중대과실로 거짓 성적서 발급,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미달 등은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 신설**

- 기술진단 보고서의 거짓·부실작성 금지, 다른 기술진단 보고서 복제 금지, 사용하는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충실한 기술진단과 이에 따른 적정한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진단 수행자에게 거짓·부실한 결과보고서 작성 금지 등 의무 부여가 필요하고, 동 사항은 기술진단 수행자가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높은 사항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신설**

-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 결과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도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결과 보완 요구

심사결과 내실있는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결과보고서 평가를 위한 필요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 요구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내실있는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며, 타법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화학물질관리법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화학물질확인신고 및 대리인 선임 등 **신설**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현행 화학물질확인명세서에 소성분내역서 및 유해위험 정보를 첨부·신고하고 5년마다 갱신하면서 주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하도록 화학물질확인제도를 변경하며, 국외제조자는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 대리인 선임 가능

심사결과 현행 사전 확인명세서 자진 제출제도는 성분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유통·취급과정에서 제품명이 변경되는 경우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신고제로 전환을 통해 화학물질 신고 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사후 유통단계 추적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필요성과,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된 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임 또는 해임 시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며, 신고제 전환에 따른 행정서류 제출부담이 크지 않아 규제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제공 **신설**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는 화학물질을 판매·양도할 때 하위사용자에게 화학물질 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및 유해위험정보 등을 제공하고, 변경 시 변경내용을 알리도록 함

심사결과 화학물질(제품)의 생산자 및 하위사용자 모두 정확한 유해위험정보와 안전취급정보 제공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화학물질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위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하여 유해물질 함유정보, 유해성 분류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점에서 적정하고,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도급 변경신고 **신설**

- 수급업체, 도급내용·기간 등 도·수급계약상 중요사항이 변경 시 현황파악 등을 위해 도급신고내용을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도급신고 후 수급인이 법령이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신고를 규정하는 것은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신고내용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타 법에서도 일반적이며, 수급자의 화학물질 취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규제부담이 미미한 점과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강화

-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영업정기 기간에 영업행위, 운반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

심사결과 추가된 사유 모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 행정처분기준 설정을 통한 법령 준수 독려가 가능해지고, 타 법에서도 법률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강화

- (현행) 고지방법이 직접전달방식으로 제한적
- (개정) 위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분야를 지역사회에 고지할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

심사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위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 내용 고지의 핵심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임을 감안, 온라인 고지 의무화와 기존 방법 중 하나를 추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 고지는 낮은 비용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고, 해외사례 비교 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및 검사 강화

- (현행) 현행 출입·검사 대상에는 유해화학물질 非영업자로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사업장이 누락됨
-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전문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추가된 출입·검사 대상자들은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응계획 등 피해 최소화 조치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국외제조사에 의해 선임된 자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유해성 정보 전달 등 사고예방 관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자 및 작성 대행 전문기관은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하수찌꺼기를 소각으로 처리하는 시설 지정
- 하수찌꺼기 소각처리시설에서 보조연료로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행연료제품으로 한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구비한 시설에 한해 사용을 허용

심사결과 2018.4월 발생한 폐비닐 수거 중단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폐비닐재활용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설치·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슬러지 소각에 필요한 보조연료로 SRF를 사용 시 기존 LNG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고, 환경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위해우려종 추가(28종) 지정 **강화**

- (현행: 생물 127종 관리) 국내 유입 시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27종의 수입·반입 관리
- (개정: 생물 155종(28종 추가) 관리) 멕시코양진이(Carpodacus mexicanus), 유럽황어(Squalius cephalus) 등 28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입·반입 등 관리 대상 생물종 범위 확대

심사결과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수입·반입을 방지하여 외래생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리대상 외래종을 매우 폭넓게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신설**

- 냉매회수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냉매회수업 등록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장비 기준을 적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업계 현실(1인 사업자가 50% 이상)을 고려한 인력기준 완화(2인 → 1인) 요청을 수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냉매회수 장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존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신설**

-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기존 공기조화기 외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정의 및 규모 등 관리범위 설정
- (냉매관리기준) 냉매누출여부 등 점검, 회수업 등록기준에 준하는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자가회수 또는 냉매회수업 등록업체에 위탁, 폐냉매는 적정 처리업체 인계하여 처리 등
- (냉매관리기록부) 냉매사용기기 현황, 냉매 회수·처리현황 등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온라인(냉매정보관리전산망) 또는 직접 제출, 제출한 기록부는 3년간 보관(온라인 제출 시 면제)

심사결과 법률에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에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기기로 확대하고, 위임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법령 해석·적용 시 혼선을 막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냉매사용기기 관리범위를 설정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과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에게 냉매 처리 시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일정 설비를 갖춘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연간 14억원)이 발생하나 지구온난화 피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고려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냉매회수업자 준수사항 **신설**

-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 발급하고 매반기 결과표를 제출 또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냉매의 무단 누출방지 등 관리를 위해 냉매기기 소유자가 작성·제출하는 냉매관리 기록부 외에 냉매 회수 위탁을 받은 회수업자의 기술인력이 냉매회수결과표를 직접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냉매 회수량 및 누출량 등 냉매 회수·처리의 핵심이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제출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교육 **신설**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종류 및 기준, 신규교육 면제요건 및 교육이수 결과 보고 등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은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습득 기회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적정하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기술인력 교육을 위한 규제비용(연간 82백만원)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냉매회수기준 **강화**

- (현행) 냉매회수 시 회수구 압력 기준 규정
- (개정) 냉매회수 시 안전유지기준을 신설, 냉매 누출점검을 강화하고, 냉매회수용기 보관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냉매의 안전한 회수·처리 및 공기 중 누출 방지를 위해 냉매사용기기 사용자 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작업 전, 회수작업 중, 작업 후 용기 보관 등 단계별 준수기준을 마련하는 건으로 냉매의 대기 중 누출 방지 및 작업자 안전 담보를 위해 적정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세부규정 **신설**

- (등록취소) ① 거짓·부정 등록, ② 영업정지 중 냉매 회수, ③ 등록 결격사유 해당, ④ 등록증 대여, ⑤ 2년 이내 영업 개시 않거나 2년 이상 휴업 2차 위반
- (경고) 2년 이내 영업 개시 않거나 2년 이상 휴업 2차 위반
- (업무정지) ① 등록기준 미충족, ② 고의·중대과실로 냉매 대기 방출

심사결과 법률이 정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취소 사유별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건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화 2)

심사내용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 조치사항 강화

- (현행) 산단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재
- (개정) 산단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에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심사결과 산업단지나 공장 개발·설치·증설시 사업계획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역주민과 소통 부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 및 갈등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과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완화·제거하여 산업단지 및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 시 동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국내외 유사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강화

-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추가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

심사결과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강화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하고 다수 타법에서도 유사한 위원 제척사유를 두고 있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강화 강화

- (미세먼지 PM_{10}) 일반시설($150\mu\text{g}/\text{m}^3 \rightarrow 100\mu\text{g}/\text{m}^3$), 민감계층 이용시설($100\mu\text{g}/\text{m}^3 \rightarrow 75\mu\text{g}/\text{m}^3$)의 기준 강화
- (미세먼지 $PM_{2.5}$) 일반시설 기준 신설($50\mu\text{g}/\text{m}^3$), 민감계층 이용시설 기준 강화($70\mu\text{g}/\text{m}^3$ 권고기준 $\rightarrow 35\mu\text{g}/\text{m}^3$ 유지기준)
 - (폼알데하이드) 민감계층 이용시설 기준 강화($100\mu\text{g}/\text{m}^3 \rightarrow 80\mu\text{g}/\text{m}^3$)

심사결과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PM_{10} : 일반시설 $150 \rightarrow 100\mu\text{g}/\text{m}^3$, 민감시설 $100 \rightarrow 75\mu\text{g}/\text{m}^3$)과 민감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기준(권고기준 $70 \rightarrow$ 유지기준 $35\mu\text{g}/\text{m}^3$) 초과시설에 대한

'16년 자가측정 결과 검토 결과, 기준 초과시설율이 3.7%로 높지 않고, 초미세먼지 (PM_{2.5} : 50 μ g/m³)의 초과율을 확인한 결과, 기준초과율이 4.6% 수준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연간 규제비용(10.79억원)이 발생하나 국민건강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강화 **강화**

- 신축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라돈 권고기준 강화 : 200Bq/m³ → 148Bq/m³(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 중 라돈의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간의 실내 라돈 측정결과 강화되는 라돈 기준을 초과하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1993년 이후 준공된 전국 아파트 대상 '공동주택 라돈 분포조사'를 보면 강화 기준(148Bq/m³)을 초과하는 비율이 1.6% 등)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해외기준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의뢰받은 업무의 재의뢰 금지
- 타당한 사유 없이 업무 의뢰 거부 또는 업무처리 지연 금지
- 서류 기록·보존,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실적보고 의무 부여
- 분석장비 관리 의무 부여

심사결과 시험기관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사항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기관으로 지정 결격사유, 적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중요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을 시험하는 시험기관이 거짓확인, 업무정지기간 중 확인을 하거나 확인요청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환경영향평가법 (신설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신설**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라는 공적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자격 취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유사행위 재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부정행위가 행해진 시험의 무효화 및 재시험 응시 제한기간 3년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신설**

- 협의기준 변경,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 시, 원형보전 또는 제외지역을 5% 이상 변경 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등

심사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사업자·지자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협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협의기준의 변경,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 또는 부지면적의 30% 이상, 원형보전지 5% 이상 등은 변경 협의사유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신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주민 의견수렴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견 재수렴 청구요건 및 기간으로 '주민 30명'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 ‘공청회 개최요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타법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는 등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 **신설**

-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평가 시,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재평가제도가 법률에서 마련된 점을 고려,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재평가기관을 결정하고, 재평가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수용성 및 이행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토양오염물질 추가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마련 **강화**

- (현행)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21종
- (개정) 1,2-디클로로에탄이 토양오염물질로 추가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 기준을 추가 설정

심사결과 1,2-디클로로에탄은 발암가능물질로 독성 및 위해성이 높고 토양오염물질 후보항목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어 동 물질에 대한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자연공원법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공원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강화**

- 용도지구 세분화(4 → 5개,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 허용되는 행위기준으로 ‘학술적·과학적 조사·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 불가피한 행위’ 등

심사결과 현행법상 최상위 보호가 필요한 지구임에도 다양한 공원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자연공원 훼손 우려가 크고, 이미 자연·생태계적 가치가 높아 출입금지지역(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보존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 전통사찰, 원주민

거주지역 등은 특별보존지구 지정기준인 ‘원시성’에 부합되지 않아 지정 지구에서 원천 제외하는 등 규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연공원 내 금지행위 강화 **강화**

-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추가(해중식물 훼손행위, 지정된 장소 외 수영·잠수 등 금지)
- 금지행위에 ‘불법행위 모집’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를 신설

심사결과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관련 해양형 공원에서의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방지가 필요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의 유발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원사업 규정 **강화**

-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국립공원사업 및 관리할 수 있는 공원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재에도 비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국립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세부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문 부재를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민지원사업 건축물 양도 시 공원관리청 동의 **신설**

- 주민지원사업(국비지원)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양도 시 공원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주민공동건축물이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운영을 통해 공원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점,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양도나 제한물권 설정 시 공원관리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연공원 내에서 미허가행위, 금지행위로 공원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부과 **강화**

- 자연공원 내에서 미허가행위, 금지행위로 공원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부과 근거 규정

심사결과 적법한 사용·점용자에게만 부여하던 원상회복의무를, 미허가 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훼손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공원 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점에서 타당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집행 대상 확대 **강화**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연자원의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타법의 대집행 관련 규정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우수 기술·제품 등의 검증·평가기준 신설 **신설**

-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안전성, 공급의 안정성

심사결과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물시장에 우수 기술 및 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육성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수제품 등의 검증·평가 기준이 필요하고(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 물 산업 관련 우수 기술·제품의 검증·평가 기준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외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다이옥신 배출시설 개선명령 부과기준 설정 및 총 개선기간 단축 **신설**

-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경미한 경우 개선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경미한 경우의 기준 신설 등
- (개선명령 부과기준) △개선 소요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개선기간 단축) 당초 1년에서 4개월로 축소

심사결과 법률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1회차 기준 위반 시 사용중지명령(단,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을 하도록 강화되어, ‘경미한 위반’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배출허용기준 30% 이하 초과’

사업장은 일부 사업장(8.6%)에 적용되는 수준이고 검출한계를 고려한 현장적용가능성 및 업종·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점, '개선기간 60일 미만'은 위반 사업장의 주요 초과원인을 분석하여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를 산정하여 설정한 점을 고려 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5)

심사내용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보일러시설의 최소사용량 기준 강화 **강화**

- 200kg/시간 → 1톤/시간

심사결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기준 상향을 통해 '신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장치 부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적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200kg 이상 기존 1톤 미만 사용시설'은 기존 수도권 소재 시간당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00kg 이상 1톤 미만 시설과 동일한 굴뚝자동측정장치 부착의무를 부여하고, 소규모시설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유예('20.7.1. → '24.6.30.)한 점을 고려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소기업영향평가 의견(시행시기를 '24.6.30.까지 유예)을 수용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변경허가 사유 확대 **강화**

- 사용연료 변경 또는 추가(바이오고형연료 → 일반고형연료),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30% 이상 증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변경 추가

심사결과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변경사항'이 법률의 위임사항이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접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용연료 변경, 사용량 급증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외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변경검사 대상 확대 **강화**

- 변경허가 대상시설을 변경검사 대상에 추가

심사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목적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라는 점에서 고형연료 변경 또는 추가, 사용량 30% 이상 증가 등 변경허가 사유는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변경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연간 7.7백만원으로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보관시설, 약취관리 등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제품 보관시설 : 바닥 포장, 지붕과 벽면을 가진 보관창고, 용량 2일분 이상

약취관리 : 사용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하게 약취 관리

폐기물 보관시설 : 제조시설의 폐기물 보관용량은 10일분 이상

심사결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소각시설로 인식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규제비용(연간 231백만원)이 크지 않은 점, 타법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형연료제품 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강화**

- (SRF 보관방법·기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 구조(3면 구조), 옥외 보관시 포장
- (운반차량 관리 강화) SRF 제품정보 표시(제품종류, 제조시설명 등), 운반차량은 밀폐 또는 덮개 설치
- (다이옥신 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측정 후 초과 시 지자체 통보 →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계없이 측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심사결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에 제품정보를 표시하고 약취예방을 위해 운반차량 밀폐 또는 덮개 설치, 다이옥신 측정결과 통보 의무화에 따른 규제비용(연간 27백만원, 밀폐 또는 덮개 설치는 既 시행중으로 비용발생 없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4)

심사내용 품질관리인 정기교육 신설 **강화**

-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품질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의 주기를 규정(신규 → 최초 1회 / 정기 → 3년마다 1회)

심사결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신규교육 실시 및 매 3년마다 정기교육 실시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불합격신청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설정 **강화**

-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이 측정·분석능력 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 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능력미달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자체 능력 보완기간 부여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2회 연속 불합격한 경우 3개월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도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 **강화**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이러스검사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과 장비의 목록에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요건 추가

심사결과 시험기관 본연의 업무인 정확한 시험결과 도출을 위해 분석시료 오염방지를 위한 실험실간 격리,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최소 인력기준 및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준수 의무 강화 **강화**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처리기간에 대한 규정 부재 → 45일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현행 정수기 품질검사는 절차상 정수기 성능검사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 내 처리를 위해서는 성능검사기관에서 45일 내 처리해야 하고, 현재 정수성능 검사업무에 통상 4~6주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강화 2)**심사내용** 배출금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 **강화**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 추가
- 업계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18.12월) 1년 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

심사결과 연간 규제순비용이 2,394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그에 따른 편익이 비용의 24배 수준으로 높고*, 시행시기 유예 및 배출부과금의 단계적 강화 등 규제의 수용성 제고조치가 적절히 마련된 점, 이해관계자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점과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이 필수적이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 배출부과금 대신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설치·운영을 위한 10년간 규제비용이 1조 8,045억원 임에 반해, 국민건강 보호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43조 3,604억원으로 편익이 훨씬 크게 나타남

심사내용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강화**

- 확정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 값에 20%를 가산하도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고, 이에 20%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또는 방지시설) 최대 용량 ×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추산한 값에 20% 가산

심사결과 사업장의 확정배출량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현지조사(측정)를 통해 당시 배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감사원 지적사항)감안 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의 20% 가산규정은 유지하되, 확정 배출량을 ‘현지조사(측정)’에서 자료 미제출시의 확정배출량(이론적 최대배출량 추산)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측정결과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배출량 산정 시 황산화물 뿐만 아니라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전체에 대해 배출계수를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강화**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물질(영 제23조, 먼지, 황산화물) 중 황산화물은 배출계수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영 별표9, 규칙 별표 10)해 왔으나, 먼지는 배출계수를 통한 배출량 산정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결과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배출량 산정 시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전체에 대해 배출계수를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결과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시 황산화물에만 배출계수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결과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계수 활용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대기법시행령에서 기본부과금 산정 시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배출계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물질을 확대한 점을 고려 시 필요성이 인정되고,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및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배출계수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등 **신설**

-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16시간)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구체화
- 준수사항 구체화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장외영향평가서 부실·거짓작성 판단기준 마련

심사결과 旣 지정 전문기관에 신규 등록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성 평가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정기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도 기술인력에 대해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 **신설**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해당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
-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대행계약 당사자와 업무의 계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결과 및 통지사실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

심사결과 처분을 받더라도 기체결 계약업무는 지속 수행이 가능한 점, 처분 사실 및 내용 통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시 1개월의 기간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에 따른 평가서 작성 위탁사업자와 업무의 계속 여부 등 합의내용을 '5년간 기록·보관'하는 건은 동법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해당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보관(법 제50조제1항), 화학물질 관련 각종 관리대장의 보관기관이 5년인 점을 고려 시 기록 보관에 따른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실시** **신설**

-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현장조사 실시
- 그 밖에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심사결과 위해관리계획서 내용과 현장의 일치 여부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근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 **신설**

-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행여부 점검(2년 이내 최초 점검, 4년마다 정기점검 등)
-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 시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등의 개선을 요청(미이행 시 행정처분), 이행점검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

심사결과 개정 법률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정기 점검을 직접 규정하고, 사업장 운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최초점검을 설정한 점, 영국도 3년마다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유사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인력요건 강화** **강화**

- 지원인력 10명당 필수인력 1명 확보 의무

심사결과 2015년 제도 시행 이래 최근 3년간 전문기관의 인력구성을 보면, 필수인력 1인당 지원인력 4.2명으로 현행 인력구성과 비교할 때 전문기관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수준으로 무리가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 시에 대한 각 위반사항별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타법의 행정처분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폐기물 매립시설 등의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침출수 수위 등을 점검·보고하도록 의무 부여

-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유량 및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보존 의무 **신설**
- 침출수 측정 결과(분기 1회) 및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매 5년)를 30일 이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 부여 **신설**

심사결과 침출수 유량 및 수위 측정은 관련규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에 의거 기부여된 사항이며, 측정결과 기록·보존의무가 피규제자의 이행가능성 및 수용성 면에서 과도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측정결과 및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과 운영·사용종료된 매립시설의 모니터링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 의무 **신설**

- 법률이 규정한 측정대행계약 사실 통보 의무

심사결과 감독기관에 계약내용 통보를 통한 부실 측정분석 및 성적서 조작 예방을 위한 핵심적 사항은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가 반영된 계약내용인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별 분석수수료 단가’ 등을 통보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 측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정도관리평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률(제18조의2제3항)의 세부 처분기준 : (1차)영업정지 6개월, (2차)등록취소

심사결과 현행 법령상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 시 재신청은 부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가능하고, 재신청 검토에 90일이 소요(시행규칙 제17조의4항)되는 점을 고려 시 영업정지 6개월은 최소한의 기간이며, 정도관리 평가에서 1회차에 이어 2회차 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 시, 측정능력 미흡업체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 개정 및 침출수 전량위탁처리시설의 전담관리자 인건비 추가 **강화**

심사결과 적정수준 이행보증금 수준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치고 현장적용성을 감안하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3년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점,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우리나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비용에 대하여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지하수를 사용한 수도물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강화**

- 지하수를 사용한 수도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신설

심사결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먹는물 관리를 위해 우라늄 항목을 추가한 것이 과도하지 않고, 우라늄의 수질 함유기준을 미국, WHO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7)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8.11.29 시행)으로 대기 중 냉매 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냉매회수기기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냉매회수업 등록제 이행 지원을 위해, 고압가스인 냉매의 안전회수에 필요한 구조기준과 성능기준 설정

심사결과 냉매회수기기 제작(수입)사 및 판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일본·ISO 보다 완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 또는 수정수용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1회용품 사용억제 강화 **강화**

- 현행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은 사용억제(사용 금지)로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 규제 제외대상인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165㎡~3,000㎡)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은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제공 금지

심사결과 대체품(재사용종량제 봉투, 빈박스) 사용, 비닐봉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슈퍼마켓 일회용봉투 사용중지에 따른 소비자 유인효과 감소 우려가 적은 점, 제과점의 경우 판매제품이 증폭되는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이미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매출 감소 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전지류 재활용 방법 및 처리기준 강화 **강화**

- 폐전지류 재활용기준(잔재물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중금속의 선정 및 적정 농도기준)으로 수은, 카드뮴, 납에 대해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용출기준 적용

* (용출기준) 수은 0.005mg/L, 카드뮴 0.3mg/L, 납 3mg/L

- 폐기물분석기관의 용출시험(분기별 1회 이상) 및 시험결과서 3년간 보관 의무

심사결과 관리대상 중금속을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1차전지 및 2차전지의 안전기준관리대상과 동일하게 ‘수은, 카드뮴, 납’을 선정한 점, 대상 중금속의 농도기준이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 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재활용 소규모 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폐지 **강화**

- ‘사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90퍼센트 이상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삭제

심사결과 1회용품은 적정처리가 어렵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월)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저감’ 목표를 설정할 만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1회용품 사용량 및 회수량·재활용량의 객관적 증빙 어려움으로 인해 삭제되는 예외사유로 1회용품 사용억제 면제를 받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될 만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 강화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제출 **강화**

- (현행) 면제의 기준이 되는 업체별 재활용률 산정 시 모든 품목의 재활용률을 통합 산정하고, 출고량(재활용률의 분모)에서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제외
- (변경) 면제의 기준이 되는 업체별 재활용률 산정 시 품목별로 구분 산정하고, 재활용 대상인 출고량에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도 포함

심사결과 폐기물배출금 부과 시 품목별로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법률 취지(제12조제3항)를 고려 시, 플라스틱제품 재활용율을 생산품목별로 산정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로 만든 제품을 재활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활용 감면제도’가 손쉬운 부담금 면제수단으로의 전략을 방지하는 적절한 제도보완 조치이며, 재활용이행계획서를 1월에 제출받아 계획에 맞는 재활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토록 함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확대 **강화**

- 현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세탁소 비닐, 에어캡,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필름, 우산용비닐 등 플라스틱 봉지·봉투 등 5종을 EPR 대상으로 전환
- 포장재의 EPR 대상 판단기준인 ‘제품’의 범위 변경 : ‘최종단계의 제품’ → ‘폐기물로 발생하게 되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심사결과 연간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연간 100억원 초과)에 부합하고, ‘비닐류 5종의 EPR 대상 전환’ 및 ‘기업 간 거래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EPR 대상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음

- 폐기물 처리과정이 동일함에도 비닐류 5종에 대해 EPR분담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활용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것이 '18.4월 재활용업체의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 원인이 된 점,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 기업 간 거래제품의 포장재의 경우 최종단계에서는 폐기물로 처리되므로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되 하위사용자가 재사용했음을 증빙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하되,

- 향후 EPR체계(EPR분담금 부담 주체 등) 및 제도 운영(지원금 배분, 재사용 환급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부대권고**

(50)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의 대상 규정 **신설**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高위험도인 취급시설이면서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내 법 위반사항으로 고발조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타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또는 방제설비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의 5배 이상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시 피해규모가 큰 사고대비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장이 현장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최근 3년내 법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법률(제41조)에서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이력자'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연구개발기간, 제조·수입예정량 등 변경시 변경사실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14일 이내에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 **신설**

심사결과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제조·수입자(104천건)로 적용하지 않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및 표면처리된 물질 등 변경사항 확인 및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단순 작성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 시 과도하지 않다는 점, 신고 내용 변경 등록·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 **강화**

-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소각시설이 각각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시설 중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

심사결과 2007년 법률 제정 당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간소한 등록제를 통해 폐자동차재활용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2014년 이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한 채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보완 필요성이 있고, 기존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입법미비상태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자동차폐차업자에 폐가스류 회수설비 설치 의무 부여 **강화**

-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의 설치주체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서 자동차 폐차업자로 변경

심사결과 폐자동차에서 폐가스류 회수·보관 주체가 자동차폐차업자이므로, 회수·보관 주체로 하여금 회수기 및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이 일원화된 관리에 부합한다는 점,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 구입비용 등 연간규제비용(29.23백만원)이 미미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수용 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제41조의2, '18.11.29. 시행)으로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환경부가 정기점검 하도록 신설하면서 고시에 위임한 점검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 **신설**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시 2년 이내 최초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이행점검 시기 결정(1년~4년), 시정조치 등 개선 요청 등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평가주기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3년마다 안전보고서(Safety Report)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영국 사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정수용 하는 등 적정하게 검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4) 냉매회수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규정 **신설**

- 비영리법인, 최근 3년 이내 냉매회수 교육사업 운영,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출 것

심사결과 자격요건이 냉매회수인력 교육에 적정하게 설정되었고, 규제비용(연간 56.21백만원)이 크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5) 환경영향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승인 등 **신설**

-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 검토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 등인 경우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적정성 여부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

심사결과 재대행계약 승인 대상으로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해당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 초과'는 유사법령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대상(제9조) 기준을 준용하되, 환경영향평가 재대행계약의 규모별 비율을 감안하여 1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동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승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재대행계약 근절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 담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당 재대행계약의 '재대행율 8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의 제출서류 기준을 준용한 점, 이해관계인 의견을 적정하게 수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6)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신설 1)**심사내용**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신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면제를 받았으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고분자화합물질 신고 의무

심사결과 유해성심사 면제로 등록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 및 유·위해성에 대한 감시·관리를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위법범위, 국민 건강 위해 가능성 차단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분자화합물질 등을 신규화학물질로 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도의 유해성 심사 없이 신고서 제출을 통한 신고 의무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화학물질 등록의무보다 완화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를 (강화 1)**심사내용**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 목표를 변경 **강화**

- 폐비닐(72.9% → 90%), 폐형광등(60.8% → 95%)

심사결과 생산자에게 생산량 중 일정량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활용 의무율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소진되어 재활용품 수거 중단 및 적체대란, 폐형광등 수는 노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므로 비닐포장재와 폐형광등의 재활용 의무율 인상이 필요하고, 비닐포장재는 최근 3년간의 재활용실적을 반영하여 의무율을 현실화하였고 폐형광등은 LED 교체수요에 따른 일시적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의무율을 상향하되, 향후 형광등 수요 감소에 따른 폐형광등 발생량 급감 등 여건 변화 시 적정 수준으로 의무율을 조정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1)**심사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수시점검 **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마련한 평가서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오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영향범위 및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는 전문기관의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평가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하수도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배수설비 폐쇄 등 신고의무 **신설**

○ 건물주 등이 배수설비를 폐쇄·사용중지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

심사결과

배수설비 폐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단체장)에 신고토록 하여, 배수설비 방치에 따른 하수의 지하수 유입, 도로 동공 발생 등 하수도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등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신고사유로 ‘배수설비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사용 중지 배수설비의 재사용’ ‘배수설비 구조 변경’ 규정은 일반적인 설비의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신고사유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하수도 보고·검사 대상 추가 **강화**

○ 환경오염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추가

심사결과

공공하수도는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로, 동 시설에 대한 진단(기술진단전문기관) 및 운영(관리대행업자)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도점검 및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하수도 점용 후 원상회복 의무 **신설**

○ 공공하수도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유로 허가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허가받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

심사결과

허가받지 않은 점용, 점용허가기간 만료 및 점용허가 취소 등 불법 점용상태 지속 시,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에 중요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선량한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시설물 관련 법령에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등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3)

심사내용 환경오염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강화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3차년도 시행업종인 석유정제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 또는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관리 기준

심사결과

기존의 매체별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의 복잡화, 또 다른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 떠돌이 현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으로 오염물질의 총체적 감축을 위해 오염물질 전체적인 관점의 통합환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종별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론적 수준의 기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 강화

- 통합환경관리제도 3차년도 시행업종의 배출 오염물질의 측정·조사기준 규정

심사결과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공정 중 직접 배출되어 TMS 등 장비로 측정할 수 없는 오염물질 관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감안하여 매체 통합적인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계에서 채택·수용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내용을 적용한 원론적 수준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오염물질 최대 배출기준 강화

- 통합관리제도 3차년도 시행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규정

심사결과

사업장별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최대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최대배출기준 이하 배출농도 중 적정 노력으로 준수 가능한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환경관리가 필요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술과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 자료를 토대로 최적가용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최대배출기준 24개 항목 중 19개는 '20년 시행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완화된 수준이고 5개 항목은 강화된 수준이나,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최대농도를 바탕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 시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확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규제 적용 배출시설 대상에 도서발전소(1.5MW 이상 발전소), 흡수식 냉난방기, 전통식숯가마, 동물장묘시설 추가

심사결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30% 미세먼지 저감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필요하고, 도심지 대형빌딩(흡수식 냉난방기기), 인구밀집지역 입지시설(전통식 숯가마, 동물장묘시설), 도서지역 대규모 발전시설(대규모 발전시설임에도 도서 위치를 이유로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도 관리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기존 시설과 비교 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오염물질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8종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심사결과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연간 100억원 이상)에 부합하나,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저비용의 설비 설치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현재 배출되고 있는 수준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규정 신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운행제한차량에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특수 공용목적 수행 자동차 등을 제외하되 시·도 조례에서 구체적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운행 제한대상 확대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령에서 운행제한 차량과 제외차량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을 시·도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긴급자동차·장애인자동차·외교업무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업무의 긴급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외하고, 전기·하이브리드·태양광·연료전지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낮은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자료제출 및 출입조사 대상 사업장 범위 **신설**

- 미세먼지 배출원 및 배출실태 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대상기관으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사업자 또는 사업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규정

심사결과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대상기관은 미세먼지 배출량 및 배출실태 등 자료를 가진 기관들로서, 동 기관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대상기관들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기관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및 배출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 점과 공무원의 출입·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 검사계획서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심사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신설**

-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시·도지사가 발효하는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 지정

심사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저감 외에 대안이 없고,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시설에 가동률 조정 등 조치가 불가피하고, 미세먼지 발생 예상시점에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차질은 비상저감조치기간 외 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인증취소 **신설**

-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 대상, 등급, 표시방법과 인증 취소사유 규정

심사결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률에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의 제작·수입을 금지하고 성능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성능인증 등급제를 통해 왜곡된 미세먼지 측정값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성능인증 시험결과에 따른 성능등급제를 통해 국민들이 높은 등급의 측정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잘못된 측정자료의 유통을 막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능인증을 통해 부여받은 인증등급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간이측정기는 해당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3. 기상청

집필자

집필자 : 임진숙 사무관(Tel. 044-200-2442, rimc11@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총 1개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 신설 **신설**

항목	세부내용
교육대상	①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담당자 ②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교통, 산림, 해양, 항공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기관 방재업무 담당자
교육시간	①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1~3일 ②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1~2일
교육비용	① 교육훈련비 무료 ②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 지급

심사결과 기상법령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적절한 예방·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하며, 일반교육 및 특화교육 각 과정 대상자에 대한 교과편성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제 8 절

교육·문화 분야

1. 교육부

[집필자]

이호진 사무관(Tel. 044-200-2425, hj1002@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총 1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9건에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6.29.)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9	신설 27, 강화 2 (비중요 29)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국립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 과태료의 상한액만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 결정 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 설정할 필요성 인정.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 과태료의 상한액만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 결정 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인정.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외국학교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기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15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정함

심사결과

법률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처분에 대한 재량 우려를 방지할 필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한도인

500만원 이내에서 정하였으며, 감경기준 등 고려 시 적정성도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보험업법 시행령」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교사 안에서의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강화 **강화**

- 초미세먼지 기준 (PM_{2.5}) 50 $\mu\text{g}/\text{m}^3$ (6시간 기준) 또는 35 $\mu\text{g}/\text{m}^3$ (24시간 기준) 추가
-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시 학교장이 기준 준수여부 확인

심사결과 발암성 물질인 초미세먼지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환경정책기본법」상 PM_{2.5}의 환경기준(35 $\mu\text{g}/\text{m}^3$)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활동이 많은 주간시간대 6시간 기준은 다소 완화하여 설정한 점(50 $\mu\text{g}/\text{m}^3$)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도 인정됨. WHO, 미국, 독일 등에서 설정한 PM_{2.5}에 대한 권고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점검 및 조치로 인해 연간 2억원의 비용소요가 예상되나 신속하게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정함

심사결과 법률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처분에 대한 재량 우려를 방지할 필요. 위임 한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등 고려 시 적정성도 인정됨.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교육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1회 위반 시 4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처분에 대한 재량 우려를 방지할 필요. 위임 한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등 고려 시 적정성도 인정됨.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세부기준 설정,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심사결과 법률에는 과태료의 상한액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 설정할 필요. 위임 한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등 고려 시 적정성도 인정됨.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하는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

심사결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처분에 대한 재량 우려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명칭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타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인 점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하는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

심사결과 법률에는 과태료의 상한액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 법률에 규정된 위임 한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 등 고려 시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특별전형 선발비율 명시 **신설**

- (현행) 별도규정 없음 → (개정)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7이상

심사결과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법조인 진출방법이 법전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입학율 일정 수준 보장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17년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평균비율이 6.57% 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은 10%,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생은 20% 미만으로 기회균형선발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 동 개정안의 적정성도 인정되고 법전원 측의 별도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 **신설**

- (현행) 공정성 확보방안, 입학전형자료 종류, 특별전형 기준 등
- (개정)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심사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발 시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미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중이고 동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추가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전원 측의 별도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관리 근거 규정 마련 신설

- (현행)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설정 시 별도 절차 미비
- (개정) 입학정원 설정 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수도권 총량제한을 적용받는 대학원 대학의 학생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대학도 국·공립학교 및 수도권 총량규제를 적용받는 학교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신설

- 원격대학 외 대학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심사결과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설비, 이수 학점 범위 등을 설정할 필요. 사이버 대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하고자 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또한, 정책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반대학에서 원격 수업 운영 시 이수가능 학점범위를 20% 이내로 하도록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과정 제공방식 해외진출 기준 마련 신설

-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하며 교육과정의 1/4이상을 국내대학 교원이 수업해야함

심사결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 의학·치의학·한의학 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시에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하지 않음 동법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이상은 국내대학에서 이수토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교원의 강의 비율을 규정,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사립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설정 **신설**

- (특수관계법인) ① 특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받은 법인 ② 대학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법인

*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으로 임기만료 5년 이내인 자, 대학교육기관장으로 퇴직 5년 이내인 자, 법인 전·현직 임원이나 교육기관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적립금 투자 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로 특수관계법인을 규정함에 따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유사입법사례인 「법인세법」, 「국세기본법」과도 유사한 수준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구성) ①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운용 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자 ② 대학에서 금융 관련 분야를 연구·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경제·경영·금융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운영) 회의일시, 의결사항, 발언요지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사학비리 근절 및 사학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됨. 「국가재정법」 등에서도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근무기관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선임·위촉하도록 하였고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의결사항, 발언내용 등이 포함된 소관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토록 하는 유사입법례도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진로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신설**

-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함

심사결과 진로전담교사를 시험 등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사 중 부전공 연수(재교육)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양성하고 관련 연수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확보 가능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에서 별도 이견도 없었던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신설 2)

심사내용 외부감사 시 자료 작성·확인·제출의무 **신설**

- (수감기관) 차입금, 적립금 등 ‘중요한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은 동 정보의 적정성 감사
- (외부감사인) △ 재무제표 상 중대·명백한 위법사실 인지 시 내부감사인에게 즉시 서면통보 △ 재무제표외의 교비회계 세입·세출 전반의 적정성, 수익계약이 국가계약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감사증명서 및 재무제표의 확인사항을 결산서 심의·의결 이사회 전까지 수감기관에 제출

심사결과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 및 회계감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시 확인사항을 추가할 필요. 수감기관이 중요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외부감사인이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 감사인에 서면통보하도록 한 점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유효한 수단이며 회계감사에 대해 일반적 기준을 설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감 사학기관의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 및 보고의무 **신설**

- 수감 사학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결산관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감사인 확보가 가능하며 유사입법례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계약학과 설치요건 **신설**

-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학과와 산업체등의 업무연관성을 검토하여야하며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

-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 부담
- 권역별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되, 복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필요경비의 50% 이상 지원 시 권역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

심사결과 계약학과의 무분별한 설치 및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학과와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검토 및 전담직원을 배치할 필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권역별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권역제한 완화 예외사유 등을 정하여 정책유연성을 확보한 점도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학과 입학자격 **신설**

- (채용조건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재교육형)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한 자로 하고,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입학 허용

심사결과 입학자격을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여건에 맞는 입학자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채용조건형의 경우 맞춤형 인력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며 재교육형의 경우 직원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학진학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요건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점 또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학과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 **신설**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에 대해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 학칙으로 규정하되, 출석수업 비중은 학점기준 50% 이상으로 편성
원격수업	원격수업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총수의 20% 이내로 하되, 사이버 대학은 예외인정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 출결관리 및 평가시스템 보완 등
이동수업	제작 후 3년 경과 콘텐츠는 수정 여부 평가 실시, 수정·보완 등 조치
	시설기준 및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본교와 동등한 수준 교육 제공, 최대 2년 이내, 동일 광역행정권 또는 직선거리 50km 등

심사결과 이동수업의 부실한 학사운영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원격수업의 품질관리 및 출석 수업과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 계약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학사관리와 수업운영을 인정하면서도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

- (기능) 계약학과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 심의·조정
- (구성)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심사결과 계약학과 운영의 일관성 확보, 부정적 운영 방지를 위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학사일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과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구성원 외에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의 구성비율을 1/3이상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점도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학과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산업교육기관의 세액공제 및 훈련비 고지 의무 **신설**

구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체와 상호협약하여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여야 함
	확정된 필요경비에 대해 산업체와 학생부담금을 각각 책정하고, 산업체와 학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산업체는 직원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으로 납부금지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장은 산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체 부담금이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여야 함

심사결과 교육기관의 일방적인 필요경비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액수를 정하고, 학생에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체와 학생에게 별도로 경비를 청구할 필요성은 인정됨. 계약학과가 산업체 수요로 설치·운영 되므로 협의 및 청구절차가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세액공제나 훈련비 환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하는 것 역시 큰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학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신설**

- 산학연협력법 제8조 및 동 고시의 규정 위반 행위별 산업교육기관, 산업체 등에 대한 계약학과 신규설치 제한 횟수 규정

심사결과 계약학과 운영 관련 법령 준수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할 필요성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인 「고등교육법 시행령」과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교육환경평가 대상항목별 평가기준 **신설**

- 평가 대상 ‘주변 유해환경’ 항목의 위험시설(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가급적 입지 제한 시설)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경주장 등 추가

심사결과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용지 인근 300미터 이내에는 가급적 도박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통학로 위치, 학교와의 인접거리 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강화**

- (현행)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표시
- (개정) △ 총비용은 자격응시비용,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 발급비, 각종 수수료 등 명칭·항목·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임을 명확히 함 △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자격’ 또는 ‘등록자격’ 여부 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표시·광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비용의 상세내역과 자격종류에 대해 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미미한 반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성도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교육부장관의 폐쇄대학 불법취득 학점학위 취소근거 마련 **신설**

- 학교의 장이 학교 폐쇄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학교 폐쇄로 인해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고, 학교에 대한 감독관청이면서 고등교육법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집필자]

김효선 사무관(Tel. 044-200-0445, khs1661@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18	신설 9, 강화 9 (비중요 18)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신설**

- 국가기술자격, 공공디자인 관련학과 졸업 등의 학위 자격과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

심사결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민이 수혜자로 동 사업의 품질향상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공공디자인 발주청, 수행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경력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학력별로 경력 년수를 차등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라도 관련 과목을 일정 기준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두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시행령)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신설**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대상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등을 규정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규정이 필요하며, 해외(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인증 대상이 동법 규정의 대상과 유사하므로 적정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 (시행령)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신설**
 - 인증기준으로 시설 및 서비스,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규정
- (시행규칙)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신설**
 - 인증 관련 심사분야, 항목 및 배점비율, 통과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 신청시 혼란을 막고, 인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갖추었고, 국외 관광인증제도(뉴질랜드, 프랑스, 홍콩 등)의 인증 기준 및 국내 유사 입법례의 기관 지정 또는 인증 시의 요구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신설 1)**심사내용**

- 카지노 전산실 설치기준 및 전산설비 위탁관리 허용에 따른 보안대책 **신설**
 - (설치기준) 잠금장치 설치 및 출입관리 기록부 작성 보관,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이중바다방식·자동제어 항온항습장치 설치 등
 - (보안대책) 카지노 전산시설 정보처리 설비의 위탁 관리 시 위탁계약 보고의무 및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근거 마련

심사결과

국내 9개 카지노 업체중 과반수 이상이 전산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산실의 설치기준은 現 카지노 업체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고, 전산시설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산설비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정한 점,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도 전산시설 기준 및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규정이 거의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강화 1)**심사내용**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시설 등 **강화**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 시 이수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의무준수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인력 등 교육환경 조성, △실태조사 협조 등을 규정

심사결과 교육관련 시설 및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 시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교육시설에 고등교육,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기관으로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을 대부분 포괄하여 규정한 점,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 및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 확보도 고려한 점, 유사입법례인 직업안정법에서도 경력요건을 완화하면서 자격요건을 신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 취소하도록 함

심사결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별법에 의한 영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정지’ 처분은 제외하였는 바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강화**

- 총량매출제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산정 시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은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초과분의 100%를 감액하여 산정

심사결과 국내 높은 유병률로 인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매출 총량제는 필요하며,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매출 총량 미준수 업종의 총량을 감소시켜 구조적 모순점(기존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량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기술료 징수 기준 **강화**

- 문화산업 지원 대상인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
 - (문화 기술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출연금의 5% 한도로 매출액의 5%, 그 외의 경우 15% 한도로 매출액의 10%

심사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적정하고,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하여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 바 과도하지 않으며, 기존 기술료 징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규로 적용해오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신설**

- 인력·설비 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 증권 발행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
 - (인력·설비) 문화산업 관련 경력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 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출 것
 - (증권발행방식)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 방법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를 통해 발행

심사결과 문화 콘텐츠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 설비, 통신수당 등의 기본적 요건을 규정한 점, 유사사례인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동일하게 규정한 점, 별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용 및 법인세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공연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재해 예방 조치 **신설**

- 피난 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 안내도의 위치, 피난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

심사결과 공연장은 수천명이 관람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피난 안내 의무화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예방이 필요하며, 대다수의 대규모 공연장은 기존에도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영세한 소공연장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조항 준수를 유도할 예정임 점, 유사입법례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공연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재해대처 계획 신고 시기 **강화**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대처 계획 신고 시기 조정
 - 최초신고 : (현행) 공연개시 7일 전 → (변경) 공연개시 14일 전
 - 변경신고 : (현행) 공연개시 3일 전 → (변경) 공연개시 7일 전

심사결과 신고와 공연개시일까지의 기간을 확보하여 재해대처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과 재해대처 계획 신고 이후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완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공연 관리자의 규제로 인한 부담보다는 공연장 안전 확보로 인한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인 지역축제의 계획서 제출기간과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게임 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

- 서류 확인 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게임 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정함

심사결과 게임 제공업은 영상물 제공이 주된 목적인 업종으로 물리적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므로, 영상물과 구동장치가 혼합 운영되는 기구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서류 확인 검사 대상 기구를 게임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완성기능 검사 대상의 유기사설·기구(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에 따라 게임물 제공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게임물과 유기기구의 분류를 달리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답승형 기구를 모두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로 분류할 경우 게임 제공업보다 강화된 안전검사의 규제부담이 있는 바, 기존에도 안전 위험이 낮아 서류확인 검사 대상으로 구분된 유기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게임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게임 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 **강화**

- 게임 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에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외

심사결과 싱글로케이션*은 허가·등록 없이 일반 음식점,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장소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행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행성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하여, 게임 제공업에서 제외 가능한 게임물의 기준을 사행성 우려(기술심의 대상) 여부로 규정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다목에 따라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 **강화**

- (야영장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제출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

심사결과 전기, 지하수 시설이 설치된 관광사업체가 많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검사 서류를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가스, 전기, 지하수 시설 이용 시 검사를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서류 제출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광사업(야영장업)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출

심사결과 기 등록된 야영장이 가스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가스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안전 확인을 마치고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서류제출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인터넷(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할 수 있어 서류 제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 **신설**

-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심사결과

야영장에서는 전기, 모닥불, 휴대용가스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어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이 잦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필요하나 사고에 따른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보상 보험 관련 규정이 없어 가입률이 낮은 바 강제 규정이 필요함. 또한, 유사시 피해자 보상 관련 야영장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되고, 기존 사업자의 보험가입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규제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액의 수준도 야영장의 성격과 유사한 다중이용업소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영장 사업자의 화재예방 기준 등 **강화**

- (화재예방기준) 소화기 별도 보관함 수납,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 야영용 천막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 사용, 시설 간 이격거리 준수, 화목난로 설치 및 사용 금지
- (전기·가스사용기준) 야영용 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한 연1회 정기점검 시행
-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관리요원 안전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연1회 이상 이수 의무(신규 등록자는 등록 신청 이전에 이수)
- (위생기준) 먹는 물 사용 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 시행 의무

심사결과

야외에서 천막으로 야영장을 만들고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하는 야영장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안전기준 강화 세부사항 모두 야영장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예산 지원 및 경과조치 기간을 통해 기존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청

[집필자]

김효선 사무관(Tel. 044-200-0445, khs1661@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3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 기능자가 문화재 수리 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 위반시 :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심사결과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 성실작성 의무는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입법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행정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은 국제기준에서도 강조되므로 행정처분을 통해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적정하고,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해당 의무 준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기준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에게 부과한 타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수리 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을 취득,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감경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 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종합문화재 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위반 시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심사결과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여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 보고서 미제출 및 하도급 사실의 거짓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피규제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조달 계약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뇌물 제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인 바 부정청탁 시 감경기준 적용 제외는 과도하지 않고,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은 국제기준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통해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 구체화 **강화**

- (기존)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추가) 인공증식·인공복제, 자연생태계에 방사, 위치추적기 부착, 혈액기타 조직의 채취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료 채취 행위 등

심사결과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화 하여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비용 소요도 없고, 5년의 규제 재검토 일몰이 설정되어 있어 지속적 모니터링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기념물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 기한 **신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 통관 후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통관 후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천연기념물 확인 및 추후 행정절차 안내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가 가능하고,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모든 수준의 종·개체군·생태계의 서식지 이동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종 수입 반입 신고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적인 물품의 수출·수입, 반송의 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제출기간에 따라 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심사내용**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강화**

-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 조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지원 불가

심사결과 전승자에게 의무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수교육 지원을 중단하여 전승자의 책임의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범위 내에서 전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중단하므로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지 않으며, 유네스코 협약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전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지원, 관리·감독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9 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집필자

이효진 사무관(Tel. 044-200-2425, hj1002@opm.go.kr)
 강주연 주무관(Tel. 044-200-2399, kang@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약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총 2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1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1	신설 28, 강화 13 (비중요 41)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약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 의약품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도록 한 품목에 부실피질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품목을 추가
- 의약품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1회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축소

심사결과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제조·판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의 품목·분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모두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해서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해당여부 심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

심사결과 약사·한약사의 중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정신장애, 마약류중독 약사 등에 대해 면허취소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약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임상시험 모집 공고 시 관련 정보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으로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인 100만원 이내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기준 신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교육의 내용, 시간 및 방법을 정함

공공단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 유관단체
예방교육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주요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예방교육 시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예방교육 대상기관·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례인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인 공공단체의 범위와 일치하고 교육 내용 역시 관련법령, 사례, 신고방법으로 교육취지에 부합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또는 보건지소,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가능
- 지정취소기준 중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함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정산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

- 전담의료기관이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외에 신체검사 및 검진, 정신검사 및 검진을 하도록 함

심사결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담의료기관 제도를 내실화하고, 피해야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경비를 정산 받은 경우 취소함이 당연하며 유사입법례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신설**

-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함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사업장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위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
정당한 편의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의 이용안내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이를 제공하여야 할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대다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편의 제공 내용도 관광지·관광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정보, 보조인력 이용 안내 등 비용부담이 적은 정보 서비스 제공 위주이므로 규제 수준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로 세분화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확대

심사결과 기존 행정처분 산정기준이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는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간 편차를 줄임으로써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하고, 행정집행의 수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노인복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인권교육 대상시설 **신설**

- 인권교육 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로 정함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심사결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예방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점, 종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하여 대상기관을 현실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유사입법례인 정신건강복지법 및 노숙인복지법에서도 대상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신설**

-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 (부가통신사업자 중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자는 제외)

심사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의무는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으로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IP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점은 적정함.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실종아동의 가입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되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감염병 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등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기존 행정처분 산정기준이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는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간 편차를 줄임으로써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하고, 행정집행의 수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의료급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로 세분화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확대

심사결과 기존 행정처분 산정기준이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는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간 편차를 줄임으로써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하고, 행정집행의 수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인권교육 내용, 시간·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

- (교육내용)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인권 제고를 위한 전반적 사항
- (시간·방법) 연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 (지정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심사결과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실시기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교육 내용에 관련 법령, 사례,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육취지에 부합하며, 대면교육과 온라인강의 등 여러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도 최소화함. 교육시간이나 지정기준 역시 「정신건강복지법」, 「노숙인복지법」의 인권교육시간 및 지정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신설**

- 인권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심사결과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필요. 유사사례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교육기관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거래명세서 미발급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위반 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 장례식장 영업자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4개월, 5차 6개월

심사결과 장사시설 영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법의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의 금연구역 지정 면적기준 **신설**

- '18.7.1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심사결과 일부 면적 이상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영업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전면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거에도 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지정 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연구역 전면 시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모자보건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산후조리업자의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공표사항 **신설**

- (공표내용) ① 「모자보건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②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③ 위반내용 ④ 행정처분의 내용·처분일, 처분기간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 (공표방법·절차) 6개월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심사결과 국민의 알권리 및 제재적 성격을 가진 공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함.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법령과 공표내용이나 방법이 유사한 수준이고, 위법행위의 적발 즉시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 기간 내 조치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업자를 공표대상으로 하므로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 노숙인 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

심사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과다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기준은 피규제자인 노숙인 복지시설 협회가 요청한 사안으로 노숙인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준수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간호·간병 병동 내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여부 점검 **신설**

- 비상연락장치의 정상가동여부를 매일 점검하도록 함

심사결과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서비스의 특성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경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명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 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16) 의료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신설**

- 의료광고 심의대상 광고매체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추가함

심사결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며, 특성상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므로 영향력 및 파급력이 큰 소셜 미디어를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하여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대상 소셜 미디어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집행가능성 및 유사사례 고려 시 동 규제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소비자 단체 범위 및 조직기준 **신설**

- (소비자단체 범위) 조직 기준을 충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
- (조직 기준) 전산장비와 사무실,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을 둘 것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심의 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범위와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심의업무를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판단되며 현행 운영 현황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광고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내용 및 절차 **신설**

-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규정
- (절차)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를 규정

심사결과 의료광고 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위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인권교육 대상시설 **신설**

-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시설로 지정

심사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홀로계신 어르신에 대한 학대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유사사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인권교육 내용, 시간·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

- (교육내용) 수급자 인권 관련 법령·제도, 인권 침해 사례, 학대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인권 제고를 위한 전반적 사항
- (시간·방법) 연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 (지정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 인권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3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심사결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실시기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에 관련법령, 사례,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육취지에 부합하며 대면교육과 온라인강의 등 여러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도 최소화함. 교육시간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기준·처분기준 역시 「노인복지법」의 인권교육시간 및 지정기준 등 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신설**

- 법인설립허가취소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범위를 정함
- ① 대표이사
- ② 감사 (공익법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자는 제외)
- ③ 법인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한 이사회에서 해당 행위에 찬성한 이사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책임자이고, 감사 역시 불법·부당한 사항을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법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법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찬성한 이사 역시 설립허가 취소에 책임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의사결의에 의해 처리할 수 없어 숙고 후 표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농수산물투자조합법」 등에서도 조합 등록 취소에 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신설**

- (현행)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최소 주 1회 이상 방문근무)
- (개정) 상근의사도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이수·평가, 3년마다 보수교육(연장 시에만) 등의 의무부과

심사결과 비전공자를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 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대신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고용비용이 감소하여 오히려 피규제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강화**

- 특수의료장비 (MRI, CT)의 품질관리검사기준을 상향 조정

심사결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준은 8년 전 검사기준으로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저품질 장비가 걸러지지 않고 계속 사용됨으로써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재촬영에 따른 의료비 상승·환자 피폭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 피규제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최근의 촬영경향, 의료기술 및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 수준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탈락률이 급증하지 않는 점, 총점 60점 이상이 합격기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은 적정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신설 **신설**

- 레지오넬라 감염예방을 위해 목욕장업자를 대상으로 설비기준 및 수질관리기준을 정함

규제대상	현행	개정안
순환여과식 욕조 사용 시 소독기 설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 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존 또는 자외선살균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치하여야 함
순환여과식 욕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청결 및 수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통해 실시 •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를 매주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다만, 욕조수를 교체한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을 기록), 기록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순환여과 방식으로 욕조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온천수를 사용하는 등 염소소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오존살균 또는 자외선 살균 방법으로 소독 실시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청결 및 수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청소 하여야 함

심사결과 목욕탕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률이 높고,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주요 감염경로에 해당하므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염된 물을 계속 여과하여 사용하는 순환 여과식 욕조에서 레지오넬라균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독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동 개정안은 목욕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으로 물을 교체하거나, 직수식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자의 소독부담은 감소하는 점, 선진국의 경우 동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온수욕조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욕장 욕조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강화 **신설**

- (유리잔류염소농도) 0.2~0.4 mg/L 범위 내
- (레지오넬라균) 1,000 CFU/L 이하 검출

심사결과 물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순환 여과식 욕조의 특성상 레지오넬라균 증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독효과 담보를 위한 염소농도 기준 및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기준과 국내 유사사례(수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신설 **신설**

-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신설

규제대상	현행	개정안
청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객실·욕실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수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수 수질 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는 별표2의 1. 수질기준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숙박업소에서 변기를 청소한 수세미로 물컵을 세척하는 등 부적절하게 위생관리를 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숙박업소에서도 레지오넬라균 검출률이 높은 수준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인정됨. 청소도구의 용도별 구분 사용은 당연하게 준수되어야했던 사안으로 업체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질기준 역시 숙박업 현실에 맞게 원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었던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신설**

- 숙박업자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심사결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적정 수준의 처분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점, 기존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인 점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강화**

- 장기요양기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 추가

현행	개정안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의 현 기관 근속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소방·안전점검 결과 등 다음 각 목의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가. 소방안전점검, 가스점검, 전기설비점검결과 나. 소방대피훈련 실시실적 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여부 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심사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용자가 많아 소방점검결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 안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며 종사자의 경험 및 전문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근속연수도 정보공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임. 유사사례로 어린이집의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6종 장비 마련 의무화

* 시력표, 포롭터와 유니트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렌즈정점굴절력계

심사결과 면허제로 운영되는 안경업소에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적정한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시력검사 및 도수측정을 위한 최소 장비만을 규정하여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미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사 보수교육 면제범위 축소 **강화**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기사를 보수교육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하고, 유예사유 해소시 유예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심사결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써, 휴직 전에 이수한 교육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기술 습득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평생교육의 일환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의사 등 다른 의료 인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각 중앙회의장이 위촉
- 위원은 의료기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기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의 등에 관해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중앙회의장이 위촉하되,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는 소속 의료기사의 품위손상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요구,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자격정지 처분요구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외는 정관으로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 **신설**

- 보조공학사 응시요건으로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조공학사 기초와 보조공학사 응용·실기 과목 각각 3과목씩 총합 10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

심사결과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시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추야 하는 민간자격 보다 응시요건이 완화된 점,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수과목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신설**

- 국가자격으로 ‘보조공학사’를 도입하는 한편,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보조기기 상담, 정보제공 및 생산·수리 등 서비스의 유지와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가 필요함. 또한 본 개정안이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하다 볼 수 없으며 기존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인 의지·보조기 기사와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신설**

- 보수교육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심사결과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공학사 자격 전문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실태 등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대하여도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실시 중인 점 고려 시, 동 규제의 적정성 인정됨. 또한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유사사례 역시 보수교육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받지 않은 경우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자격정지 3개월

심사결과 자격정지 세부기준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인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에 대한 처분기준과도 동일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검진기관 평가주기 개선 및 수시평가 근거 마련 **강화**

- 정기평가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 실시

심사결과 정기평가 실시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거나 필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수시평가 근거가 없어, 평가 결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3년이라는 정기평가 주기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검진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 검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
 - *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지정취소
- 평가결과가 연속적으로 미흡 또는 교육미이수 등급인 경우 행정처분
 - * (최초) 경고 (연속 2회)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지정취소

심사결과 일부 검진기관의 고의적 평가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복적 평가결과 미흡 또는 필수교육 미이수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하는 등 평가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처분기준 역시 상위법 위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치매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력,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 신청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받거나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할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치매안심병원이 전문적인 치매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또한 지정취소기준을 마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성 역시 인정됨. 사업 참여 여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준 역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성가족부

[집필자]

강주연 주무관(Tel. 044-200-2399, kang@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 신고 **신설**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자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제출자료) 변경신고서 및 교육훈련시설 소재지·명칭·교육정원·교육훈련시설의 장 변경의결서,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소재지 변경시 변경시설의 평면도, 시설·재산의 사용·처분계획서,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피규제자의 신고의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필자

이효진 사무관(Tel. 044-200-2425, hj1002@opm.go.kr)

강주연 주무관(Tel. 044-200-2399, kang@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총 6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0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본위원회 (2018.02.09.)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9)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2.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2.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05.)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1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예비심사 (2018.03.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8.03.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9)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0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0)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8.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2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2) 의리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7.2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 물질 등 검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43)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의리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2018.12.0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6)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07.)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5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1) 의리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2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08	신설 46, 강화 63 (중요 2, 비중요 107)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위생용품 지정 **신설**

- 팬티라이너 및 멀티슈용 건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른 입법사항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용품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위생을 확보할 필요성 인정되며,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정부 대책에 부합하고 유사 품목은 이미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목제조 보고 대상 지정 **신설**

- 세척제, 행균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멀티슈를 품목보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 보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허가·신고 등을 받은 모든 대상에게 제조·가공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타법에 비해서도 규제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규정

심사결과 업무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출규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생용품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및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모범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위생용품수입업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보유하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 가능
 -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용품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되, 직접 소비자에게 위생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창고 미설치 가능

심사결과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에 대해서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과 같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기준을 영업에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으로 한정하고,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는 예외 규정을 두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용품수입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 위생용품수입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신설
 - 수입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위생용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운반·보관하거나 판매 불가
 - 수입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 입수 또는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심사결과 위생용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위생용품 수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 등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용품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신설**

○ 위생용품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규정

심사결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위생용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준은 위반 횟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 집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강화 1)**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심사결과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는 위해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위반의 고의성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하지 않음. 또한 「약사법」, 「화장품법」에서도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벌칙과 별개로 처분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강화 1)**심사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강화**

○ 포장지 면적이 50cm² 이하인 경우에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업체에서 표시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대신 QR코드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표시방법을 강화할 필요. 포장지 인쇄를 위한 동판 교체비용으로 품목당 10만원이 소요되나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QR코드 표시가능한 포장지 면적기준을 50cm²로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2)

심사내용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 강화

- 유지의 산화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항목인 산가 및 과산화물가 기준 신설

심사결과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산가, 과산화물가의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산화된 유지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및 미국 약전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인정됨. 또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어유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규격 강화

-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납과 카드뮴의 기준 설정(납 1mg/kg, 카드뮴 0.3mg/kg)

심사결과

납과 카드뮴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에게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이고,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외에는 납과 카드뮴의 혼입을 막을 방법이 없음. 오염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기준(안)에 적합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납, 카드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식육가공품 식육함량 표시방법 신설 강화

-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육함량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간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함량 계산방법이 어려워 이해관계자(한국육가공협회)의 건의로 동 표시방법이 마련된 점, 포장지 소진을 위해 유통기간도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 **강화**

-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농장별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토록 함

심사결과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화는 전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대한양계협회)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현행기준으로는 부적합 달걀 추적이 어려움이 있고 장기 보관된 달걀이 신선란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의 경우 현재도 난각인쇄기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함**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4)

심사내용 중금속 규격 **강화**

대상	중금속 기준	세부기준
들깨	납 기준 신설	0.3mg/kg 이하
사과, 귤, 장과류	납 기준 강화	0.2mg/kg 이하 → 0.1mg/kg 이하
도라지, 더덕	납 기준 강화 카드뮴 기준 강화	2.0mg/kg 이하 → 0.2mg/kg 이하 0.2mg/kg 이하 → 0.1mg/kg 이하
오징어	납 기준 강화	2.0mg/kg 이하 → 1.0mg/kg 이하
갑각류	납 기준 강화	1.0mg/kg 이하 → 0.5mg/kg 이하
미역(미역귀* 제외) * 미역줄기 아래쪽에 형성되는 생식기관	납 기준 신설 카드뮴 기준 신설	0.5mg/kg 이하 0.1mg/kg 이하

심사결과 '16년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일부 농·수산물의 납, 카드뮴 노출량이 높게 평가되어 국민의 중금속 노출 저감을 위해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기준치를 설정하였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치를 조정된 것으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강화**

- 수산물의 히스타민 기준(200mg/kg 이하) 적용 어류에 방어 추가

심사결과 히스타민은 단백질 함유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므로 기준 설정 외에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방지할 방안이 없음. 방어를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쉬운 붉은 살 어종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동 기준은 방어 극단 섭취량에 따른 히스타민 노출량을 계산 한 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기준이 이미 설정된 타 어종과 동일한 점도 고려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어 3종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강화**

○ 미혹점상어, 비악상어, 장완홍상어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심사결과 미혹점상어 등 어류 3종은 현재 기술로는 양식이 불가하며, 국제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임. 따라서, 식품원료에서 삭제하여 생산·수입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필요. 국내에 품목제조보고 이력이 없어 기존 생산·수입 관계자가 없고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녹타딘 등 11종의 경우 사용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의 기준은 「농약관리법」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고,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강화 3)

심사내용 의약외품 품목의 용법·용량 작성 **강화**

○ 의약외품중 6개 살충성분(피메트린, 프탈트린, 피레트린엑스, 트랜스플루트린, 디페노트린, 알레트린)이 함유된 에어로솔제의 용법·용량은 자동분사방식으로 기재 불가

심사결과 의약외품 위해성 재평가 결과, 자동분사방식으로 사용하는 살충제의 경우 비환기상태 흡입으로 인한 잠재적 위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방법을 제한하여 인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잠재적 위해성이 확인된 6개 성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의 시험방법 심사기준 강화**

○ 모기기피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메틸유게놀의 함량은 10ppm 초과 불가

심사결과 메틸유게놀 위해평가 결과, 10ppm을 초과할 경우 발암 유발 등 인체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허가·신고된 모기기피제에 함유된 메틸유게놀의 함량은 10ppm 이하로 확인되므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허가제한성분 추가 지정 강화**

○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시트로넬라유 2.02mg/cm² 이하 함유 패치형 제제 및 밴드 또는 패치에 점적하여 사용하는 시트로넬라유 70% 이하 함유 액제를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추가 지정

심사결과 모기기피제 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지정하여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의약품으로 제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효성이 미확보되는 범위만을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국내 허가제품중 시트로넬라유 함유제품은 없어 동 규제로 인한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모기기피제 표준제조기준 강화**

○ 모기기피제의 표준제조기준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실제 소비자 사용행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 목적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강화

* 현행 처분기준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표시사항 위·변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 또는 생산농장별 고유번호 미표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심사결과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이 1차 위반 시 경고에 불과하여 의무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현행 대비 강화할 필요. 산란일 또는 생산농장별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위·변조의 경우 위반의 고의성에 비추어 더 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변조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원료알보관실·선별실·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냉장실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 달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장 중 달걀 위생·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식용란 처리·포장시설 중 부패·변질 및 교차오염 발생이 쉬운 일부 시설로만 제한하였으며 축산물 관련 타 영업 역시 개별 특성에 따라 변경 시 허가받아야 하는 시설을 정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식용란선별포장업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징금)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연간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 (과태료)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운용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900만원

심사결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신설할 필요. 과징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에 따라 달리 부과하여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여 과도하지 않음. 과태료 역시 모법에서 정한 한도(1천만원) 내에서 정하였으며,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운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위반의 상대적 경중에 따라 달리 정한 점, 집유업·축산물 가공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한 점 고려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제한 **신설**

-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에 분말처리된 수술용·진료용 장갑을 추가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

심사결과 해외에서 분말처리된 수술용·진료용 장갑의 위해성 정보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사항 변경 **강화**

- 품목신고를 완료한 제품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실시

심사결과 당초 신고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제품의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를 정부의 검토절차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현행 규정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7, 강화 2)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위생관리기준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작성·운영토록 함

* 수시로 손·장갑 등 세척·소독, 식용 부적합란이나 폐기처리 대상인 식용란은 별도 구분 관리 등

심사결과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과정에서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의 영업장에 적합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할 필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걀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위생기준이며, 기존 유사영업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관리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고, 위생관리기준 준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모든 영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의무 적용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 출하 시 거래명세서 발급 **신설**

- 식용란 생산자는 수집판매업자에게 산란일, 세척종류·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사육방법, 산란주령 등 생산정보를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심사결과

세척종류·냉장보관 여부 및 사육환경 등 생산관련 정보는 달걀의 신선도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며, 생산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집판매업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산란일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과도하지 않고 거래 관련 문제 발생 시 원인 조사에 사용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정함

심사결과

영업자에게 축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을 알리고 위생관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축산물 관련 대부분의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원격교육을 받은 경우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그 해의 정기교육은 생략하도록 하는 등 피규제 집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 점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기준 **신설**

- 위치 및 구조, 작업장 및 설비,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운반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정함

건물 (위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용란의 선별포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 (구조)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출입구)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되거나, 교차오염 등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가 가능한 구조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설비) 검란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 처리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식용란 운반장비(지게차 등), 난각 표면 및 포장 인쇄장비 • (구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함 • (냉방시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 • (방기) 220룩스 이상이어야 하나,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식용란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곳은 제외 • 외부 오염물질이나 해충, 빗물 등 유입 차단 • 부적합 식용란을 폐기하는 전용 폐기용기 설치
식용란취급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냉장 필요시) 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급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구비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하여야 함
창고 등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 • 창고 바닥에는 양탄자 설치 금지
운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포장 완료된 식용란을 직접 운반 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갖추어야 함 • (냉장 필요시)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에 온도계 설치

심사결과 동 규제는 작업장, 창고 등 계란의 선별·포장에 필요한 기본시설 기준이고, 세부사항 역시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의 거리 및 적정 온도 유지, 내수처리, 세척·소독 등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연간 17억 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식용란 위생·안전 강화 등 사회적 편익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 선별포장업소

형태로 운영 중인 84개소 중 70개소는 이미 시설기준을 충족한 점, 준비기간을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신설**

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준수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선별·포장 의뢰서는 2년간 보관 • 부적합란 폐기 시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기에 담아 처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 영업장 외 장소에서 선별·포장·보관 금지 • 직접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 • 기계·기구류는 수시로 세척·소독 • 정당한 이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할 수 없음 •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하고 2년간 보관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 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

심사결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 동 개정안의 내용은 식용란의 직사광선 노출금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준수 등으로 영업 특성 고려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보기 어려우며 유사영업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검사실 설치 및 식용란 구분유통판매 **신설**

- 식용란 성분규격을 직접 검사할 경우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용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그 식용란은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처리된 것이어야 함

심사결과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실 기준은 기존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 중 검사실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모든 축산물 가공업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과도하지 않음. 상위법에서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 구분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시중 유통되는 모든 달걀이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통한 선별·검란 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도입취지 상 바람직하나, 달걀 공급 부족 등 거래질서 혼란이 예상되어 가정소비용 달걀로 한정된 점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농장의 인증취소 기준 **강화**

-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고 잔류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등)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축산물 HACCP 인증은 축산물 제조·가공 등 전 과정에서 항생제, 살충제, 농약 등의 위해요소 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고 잔류예방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등 규제안은 과도하지 않고 현행 인증취소 기준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영업자의 준수사항(안 별표 12 제3호의2)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 직사광선 노출 금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식용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검란·선별·세척·건조·보관·운반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보관) •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포장·보관 금지 •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3 제2호) 준수 • 식용란의 선별·처리·포장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 •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 거부 및 지연처리 금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자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 1차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영업정지 3개월 + 해당제품 폐기

심사결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영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타 축산물 영업과의 처분양형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달리한 점도 적절함.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이나 위반행위가 '식육'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바로 잡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을 표시·광고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강화**

- (현행)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 외의 상장을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 (개정) 민간 수상내역도 표시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을 표시·광고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가능하도록 처분기준 강화

영업의 종류	현행	개정안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1차 경고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심사결과 사실과 다른 수상 내역을 표시·광고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키는 행위를 막을 필요. 동 개정안은 민간수상내역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 표시·광고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현행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관련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신설**

- 일회용 행주·타월 위생용품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심사결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행주·타월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성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타법에서 관리하던 유사품목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신설**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인력·시설·설비요건 등 지정요건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필수 입법사항으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여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및 위생용품 시험·검사에 대한 품질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력·시설·설비 등의 기준 및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 신설

구 분	현행	개 정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지정받은 사항 외의 업무를 지정받은 것으로 표시한 경우	없음	시정명령	시험·검사업무 정지 7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5일	지정취소
시험·검사 소요 기간 및 적정 시험·검사 건수를 준수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시험·검사업무 정지 7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5일	지정취소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없음	시험·검사업무 정지 15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개월	시험·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시료 보관방법을 위반한 경우	없음	시험·검사업무 정지 15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개월	시험·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품, 시약 및 배지를 사용한 경우	없음	시험·검사업무 정지 7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5일	시험·검사업무 정지 1개월	지정취소

심사결과 법률이 위임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여,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잘못된 시험·검사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인정되며,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식용란의 자가검사 대상자 **신설**

○ 자가검사의무 대상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중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로 규정함

심사결과 식용란 자가검사의무는 모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임에 따라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 인정됨. 식용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최종판매자인 수집판매업자를 식용란의 자가검사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경우에도 자가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의무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제한적 허용 **강화**

- (현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벌크(30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 가능
- (개정) 선별포장장에서 포장된 식용란 및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된 수입란의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만 재포장·판매를 허용

심사결과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포장이 완료된 식용란을 재포장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다만, 소비자의 다양한 포장요구 및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이익과 안전한 식용란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ACCP을 획득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한해 선별포장장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포장한 식용란을 재포장·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의 자가검사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 **신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자가검사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검사 미실시	검사항목 전부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검사항목 50퍼센트 이상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검사항목 50퍼센트 미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검사 기록서 미보관 (2년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부적합 축산물 유통·판매		영업소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검사결과 위반사항 미보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심사결과 식용란 자가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마련될 필요. 축산물 관련 타 영업 역시 자가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존재하고, 직접 생산하지 않는 수집 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식품등의 표시기준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공통표시기준 강화

- 주표시면에 조리사진이나 그림 삽입 시 ‘조리에’ 등의 안내 문구 표시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대상에 ‘젓’을 추가
- 식품첨가물 주의사항 표시대상 항목에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추가
- 100% 표시를 하는 경우,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를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방지를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할 필요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해 업체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별표시기준 신설

- 인삼의 사용부위(뿌리, 열매, 잎 등)를 표시하도록 함
- 메주의 대두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인삼 뿌리이외의 부위를 사용하더라도 인삼으로 표시 가능하여 소비자가 뿌리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이에 사용부위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또한, 메주에 대해 함량 규격이나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대두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시기준이 없으므로 메주에 대두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표시 변경을 위해 포장지 변경이 필요하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위생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신청 절차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장소 및 시설,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지정·변경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신설**

- 위생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등 조치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지정 위생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요구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수입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 신설 **신설**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와 ‘외화획득용’ 및 ‘연구·조사용’ 수입 위생용품을 유통관리 대상으로 신규 지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의거 유통관리 대상 제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잠재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위생용품 표시기준 **신설**

- 위생용품 공통표시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일회용 행주·타월에 대한 개별 표시기준 신설

심사결과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상위법 및 타법 적용사항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신설 규제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동물실험 시설 또는 공급자 지정 등의 취소 **강화**

-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 3차 등록 취소로 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 상위법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함으로써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2)

심사내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강화**

- 이사디 등 농약 4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경우 독성 및 잔류성, 섭취량 평가 등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 동 개정안의 잔류허용기준은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금속 기준 신설 **강화**

-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끓는 물에 삶는 등 무기비소 저감공정 의무화함
- 쌀, 톳, 모자반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무기비소 기준 신설

대상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0.1mg/kg 이하(쌀, 톳, 모자반 사용식품에 한함)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	0.1mg/kg 이하(쌀, 톳, 모자반 사용식품에 한함)
기타식품	1mg/kg 이하(쌀, 톳, 모자반 사용식품에 한함)

심사결과 발암물질인 무기비소 오염도와 노출량이 높은 톳, 모자반,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저감공정 및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할 필요. 동 기준은 무기비소의 오염도와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률 5%이하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먹는물 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먹는 물 및 지하수의 비소 기준을 0.01mg/L, 하천은 0.05mg/L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자가품질검사 검사기준 마련 강화

- (검사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산란일 기준)
- (검사항목) 항생제 2종 (퀴놀론계, 설파제), 농약 5종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심사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임에 따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검사항목의 경우 최근 3년간 식용란에서 검출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검사항목이며 관련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적절한 수준. 검사주기 역시 축산물 관련 다른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주기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음. 또한 행정기관이 수거검사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직접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것으로 같음하여 피규제집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식품 확대 강화

- (현행)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면적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자*
 -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 (개정) 임신·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제조·가공업자 추가

* 시행일 ('16년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상 : '19.12.1.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12.1.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1.12.1.
/ 1억원 미만 및 '17년 이후로 영업등록한 자 : '22.12.1.

심사결과 취약계층의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유사 식품인 영유아식 및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이력추적관리등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는 점, 영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의 적정성도 인정됨. 아울러,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신설**

- (현행)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 외의 상장을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영업의 종류	현행	개정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개정) 민간 수상내역도 표시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을 표시·광고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가능하도록 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사실과 다른 수상 내역을 표시·광고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키는 행위를 막을 필요. 동 개정안은 민간수상내역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 표시·광고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을 표시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도 적절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 추가 **강화**

-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향정·한외마약의 용기 등에 전성분, 유효성분·보존제 분량, 전문의약품 표시,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
- 품목허가를 받지 않는 마약·향정 성분의 표준품·시약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품목코드 추가 기재

심사결과

마약류 용기 등에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기재사항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의사·약사·환자 등에게 마약류 취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진위검사 대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신설**

- (검사대상) 원재료의 진위여부 및 다른 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을 백수오, 한속단으로 정함
- (검사기관) 제조업자가 직접 자체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하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함
- (검사시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

심사결과 고가인 백수오 등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원재료를 위조할 가능성이 높고, 농산물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재료를 과학적 시험방법에 따라 검증하도록 할 필요. 육안 구분이 어렵거나 혼입가능성이 높아 진위검사가 필요한 원재료(백수오, 한속단)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용된 원재료를 업체가 증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불가피성도 인정됨. 또한 원재료 공급업체가 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정하고 한속단의 경우에는 관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점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2)

심사내용 합성향료 허용물질 **강화**

- (총칙조항 삭제) 총칙 중 CODEX, FEMA, IOF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성향료를 인정하는 조항 삭제
- (지정취소) 등재 목록에 있는 합성향료 물질 중 안전성 논란이 있는 페릴알데히드 등 20종 지정 취소

심사결과 국민건강상 안전성 우려가 존재하는 물질은 제외하고 등재목록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 EU,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고유의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제협회에서 통용되는 향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지정 취소된 20종 중 19종은 국내 사용실적이 없으며 1종은 대체가능한 유사향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업계 관계자들도 총칙조항 삭제에 동의한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5품목 사용기준 **강화**

품목명	대상 식품	세부기준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과자, 빵 및 이의 제조용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 g/kg 이하
실리코알루미늄산나트륨	가공소금	1.0 g/kg 이하
	기타음료	0.4 g/kg 이하
	식물성크림	0.6 g/kg 이하
	기타코코아가공품	0.5 g/kg 이하
	복합조미식품	1.0 g/kg 이하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과자, 빵 및 이의 제조용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 g/kg 이하
황산알루미늄암모늄	과자, 빵 및 이의 제조용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 g/kg 이하
	망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밥에 한함), 서류가공품(고구마에 한함), 과·채 가공품	0.1 g/kg 이하
	면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기타 수산물 가공품, 전분가공품	0.2 g/kg 이하
	절임식품	0.5 g/kg 이하
	과자, 빵 및 이의 제조용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 g/kg 이하
황산알루미늄칼륨	망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밥에 한함), 서류가공품(고구마에 한함), 과·채 가공품	0.1 g/kg 이하
	면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기타 수산물 가공품, 전분가공품	0.2 g/kg 이하
	절임식품	0.5 g/kg 이하
	과자, 빵 및 이의 제조용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0.1 g/kg 이하

심사결과 알루미늄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준 설정할 필요,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실태 조사, 섭취량 평가결과, CODEX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사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 물질 추가 지정 **강화**

- 펜타닐 계열 7개 물질은 마약으로 지정하고, 2-벤지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국제협약에 따라 UN에서 마약류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국내법상 마약류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위해성 및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에서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과 유사 또는 동등한

수준의 위해성·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만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해동육 공급 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표시의무 **신설**

- (현행)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요청할 경우 냉동포장육에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후 해동하여 공급 가능

*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 (개정) 식육가공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동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해동 제품의 용도나 주의사항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냉동육을 해동공급 하는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냉장육과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고 용도와 주의사항을 추가 표시할 필요 등 기준은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해동과 관련한 표시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위해 의료기기 회수 기준 및 절차 **강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가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종료 예정일을 1등급 의료기기는 회수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2·3등급 의료기기는 15일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의료기기 영업자의 위해 의료기기 회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및 회수기한을 단축하여 국민 안전 강화 및 위해기기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행정처분기준 **신설**

- 제조(수입)업자가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

- 의료기기 외장이나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행정처분
-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 분	현행	개 정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의료기기 생산·수입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없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의료기기 표시기재 허위·오해유발 사항 표시	없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부작용 발생 미보고 또는 기록 미유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6개월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 업무 정지 1개월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 업무 정지 3개월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회수계획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의거,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의적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실효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재처분 역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이후 의료기기 출고 전에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품정보, 제조·수입업자 정보,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기준 준수
-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변경사항 등록
- 표준코드를 신규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기 정보를 새로 시스템에 등록
-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등록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여 제조·수입업자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업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 등록 및 보완자료 제출 등 조치

- 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 허가·인증·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및 기타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경우, 판매중단일로부터 3년간 의료기기 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
- 시스템 사용방법 및 정보등록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교육 실시
-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점검·확인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구 분	현행	개 정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미등록	없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 미준수	없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심사결과 상위법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시스템 운영방법 및 준수사항, 운영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신속 회수 등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제적으로도 표준코드를 통한 의료기기 관리로 전환하는 추세로, 국제 조화된 식별코드를 도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표준코드 이중 등록의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시스템 등록 정보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동의

(3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강화 1)

심사내용 현지실사 방해·기피하는 업체 제재근거 마련 **강화**

- (현행)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음
- (개정)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현지실사를 수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며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 규제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확대 **강화**

-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 기허가 항생제 주사제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추가

심사결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를 통해 부정·불량원료 사용을 차단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규 제품 개발·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혼란 방지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 전체가 아닌 다빈도로 사용되는 항생제로 등록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 강화
- 사료용,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거나 중금속, 식중독균, 일반세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기준 신설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진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표시, 사료용·공업용 원료 사용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악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할 필요. 특히 공업용·사료용 원료 사용에 대하여 위반 시 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 고려 시 과도하지 않음.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타법에서 정한 처분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기능성 원료 4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신설**

대상	현행	개정안
녹차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인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감 등을 나타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로에전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위·신장·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카뎀보 지아추출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심사결과 간독성,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음. 포장지 변경으로 인해 연간 29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표시의무화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함. 특히 취약계층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주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여 내용도 적절한 수준이고 유럽, 일본 등에서도 어린이, 임신부 등은 해당제품의 섭취를 금지하거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중 EGCG* 제한규정 마련 **강화**

*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 (현행) 최종제품의 카테킨 일일섭취량을 0.3~1g으로 정함
- (개정) 최종제품의 EGCG 일일섭취량도 300mg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카테킨의 주요 성분인 EGCG는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일상한섭취량을 규정하여 고용량 섭취를 방지할 필요. 현행 제조방법대로 제조 가능하고, 일일섭취량의 범위 내에서 카테킨 총량을 조절하여 EGCG 함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EGCG 성분 일일 복용 한계량을 300mg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려,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 **강화**

-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시 Enterococcus 속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도록 함

심사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에 사용되는 Enterococcus 중 일부 E. faecalis와 E. faecium은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균으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장기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함.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국 FDA나 유럽 EFSA에서는 해당 균주가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함. 중기영향평가 및 간담회 결과, 검사목록 및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EFSA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사대상목록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록을 제시할 예정인 점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임상시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지정 취소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약품 이상반응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신설**

- 잔류물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란 닭·오리·메추리 농장의 식용란에 대해 출하보류 조치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큰 농가에 대해서 출하보류 조치 한 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출하지연에 따른 비용이 연간 9천9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회수비용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이 수거 검사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출하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도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산란농가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강화**

- (현행) 21개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
-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준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잿’이 추가됨

심사결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준용하도록 하여 표시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적시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추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은 미미하나 어린이 안전 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큰 점을 감안하면 적정성도 인정되고, 업체도 동의한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단위 및 용어 **강화**

- (현행)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표시
- (개정)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표시 (단, 대용량제품은100g(ml)당 표시 가능)
*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 참고량의 3배 초과 제품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표시단위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포스터 교체 비용 등 업소당 약 2000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나 신제품 출시로 메뉴판, 리플렛 등을 자주 교체하고 있는 점, 유예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조건부 수입신고식품의 보관 장소 등 변경 시 보고의무 **강화**

-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가 해당식품의 보관 장소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및 보관창고에의 입고예정일·소재지·보관책임자

심사결과 수입식품 등이 조건부 신고수리되어 국내로 반입되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신고인이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고의무 강화가 불가피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로 보고하여 준수부담은 미미하나 부적합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보건 상 편익이 더욱 큰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의 확대 **강화**

- (현행)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 (개정) 임신·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수입·판매업자 추가

* 시행일 ('16년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상 : '19.12.1.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12.1.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1.12.1.
/ 1억원 미만 및 '17년 이후로 영업등록한 자 : '22.12.1.

심사결과 취약계층의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해당식품의 국내제조·판매업자도 이미 이력추적관리등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는 점, 영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의 적정성도 인정됨. 아울러,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보관업자 준수사항 신설 **신설**

- (수입·판매업자) 안전성 관련 증명서류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조건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은 검사결과 통보 전까지 다른 식품과 분리보관 하며, 식품용으로 수입·통관된 농임산물은 한약재로 판매 금지함
- (보관업자)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 화물관리 정보 표시란에 보관 장소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판매업자 및 보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할 필요. 분리보관 및 추가표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자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었던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4)

심사내용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규격 강화

- 멸균 및 살균제품에 위생지표균 공통규격 신설
- 소스류 중 비살균제품의 대장균 규격의 적합 최대 허용시료수 강화
- 식중독균 규격 적용 수산물 대상 명확화

심사결과 위생지표균은 통상 병원성은 없으나, 식품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멸균·살균제품에 대해 공통규격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해당 기준은 동 고시의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멸균 및 살균식품을 가공하게 되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액상제품인 비살균 소스류는 위해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대장균 규격을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액상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므로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님. 수산물 식중독균 역시 가열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라는 당초 취지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날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해 식중독균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은 동일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곰팡이독소 규격 신설·강화 강화

- 곰팡이 독소 4종의 기준·규격 강화 및 신설

곰팡이 독소	대상	세부기준
총 아플라톡신 (강화)	(현행) 곡류, 두류 등 16개 유형 → (개정) 식물성 원료* 및 모든 가공식품** * (참고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	15.0µg/kg (단 B1은 10.0 이하 이어야 한다.)
푸모니신 (신설)	수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 (분쇄, 절단 등)	4.0mg/kg
오크라톡신A (신설)	육두구, 심황(강황), 후추 및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	15.0µg/kg

곰팡이 독소	대상	세부기준
제랄레논 (강화)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 (분쇄, 절단 등)	200 → 100µg/kg (전분 또는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는 200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74개 유형 중 269개 유형(98.2%)과 곡류 등의 식물성 원료 12개 분류 중 11개 분류 (91.7%)가 기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규격이 적용됨

심사결과 곰팡이독소는 독성물질로 기후온난화,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식품의 오염수준이나 인체노출량이 높아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재평가 결과, 곰팡이 독소 오염도와 검출율이 높게 도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합률과 노출저감률을 모두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하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모든 식품에 아플라톡신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캔디류의 기준·규격 강화 **강화**

- (제조·가공기준) 캔디류의 표면에 구연산, 사과산 등 신맛 물질을 도포하여 제조하는 경우, 도포하는 신맛 물질은 산 함량이 50% 미만(여러가지 산을 혼합하는 경우 그 합)이 되도록 희석하여 도포
- (총산규격) 6.0 미만 (캔디류에 한하며, 캔디의 표면에 신맛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는 4.5미만)

심사결과 신맛캔디는 섭취직후에 매우 자극적인 맛이 나도록 제품 표면에 신맛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와 균일한 신맛을 내는 제품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캔디와 표면에 신맛 물질이 도포된 캔디의 총산 함량을 각각 규정하고, 표면에 도포하는 산의 기준도 설정할 필요. 사고사례가 발생한 캔디를 분석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하였고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은 동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 알 중 피리미포스메틸의 잔류허용기준을 0.05 → 0.01(mg/kg)로 강화

심사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사료로부터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잔류량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음. JMPR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알에 대한 피리미포스메틸의 기준을 0.01mg/kg으로 설정하였으며,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될 가능성은 없고, CODEX, EU, 일본 등 피리미포스메틸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모든 국가는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위생용품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설정 **신설**

- 분비물 흡수용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심사결과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분비물 흡수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생리혈 흡수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와 마찬가지로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성분, 제조법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생물학적제제의 용기·포장 기재사항 **강화**

- 주사제가 아닌 형태의 생물학적제제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1회 투여량에 해당하는 용량, 질량, 주성분의 함량으로 포장단위 기재

심사결과 기존에는 자사 포장단위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하여 제품 개봉없이 구체적인 내용물 함유량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세부 포장단위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 구매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사제 형태의 생물학적 제제는 이미 구체적인 용량을 기재하고 있어 형평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플루엔자백신 균주변경 심사 **신설**

- 현재 허가되어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해당연도 WHO 추천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기준·시험방법 심사

심사결과 WHO 균주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백신의 품질관리는 제조업체의 자율성만으로는 담보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강화
- (식품접객업)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고,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유사사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의 처분기준과 금지 동식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도과된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위반의 고의성에 비추어 더 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조제유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 영·유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14종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명	세부기준
구아검	2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9g/kg 이하
레시틴	5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5g/kg 이하)
로커스트콩검	2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
바닐린	0.05g/kg 이하 (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 이하)
변성전분	5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제조식품, 기타 영·유아식은 60g/kg 이하)
아라비아검	2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 이하)
L-아스코브산칼륨	0.2 g/kg 이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0.05g/kg 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유아식은 0.2g/kg 이하)
에틸바닐린	0.05g/kg 이하 (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 이하)
젓산	2 g/kg 이하
카라기난	1 g/kg 이하
d-토코페롤(혼합형)	0.03 g/kg 이하
펙틴	10 g/kg 이하

심사결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설정할 필요.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고 사용실태 조사 및 간담회를 거쳐 설정한 기준으로 업체에서도 동의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제조식품의 변성전분 사용기준을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기 품목 신설 **신설**

- 안구내주입용 가스킷 품목을 신설(가스충전용 재사용 제품 제외)하고 3등급 의료기기로 지정
- 의료용가이드내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 및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품목을 신설하고 2등급 의료기기로 지정

심사결과 안구내주입용 고압가스킷 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관리공백을 해소하여, 저품질 가스 사용으로 인한 실명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등 체내에 침습 또는 부착되어 사용되는 침습형일회용·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 기술문서 심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 중요사항 승인 **신설**

- 지정사항 변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중요사항과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정함
 - (중요사항) 명칭,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및 유해물질 항목
 - (경미한 사항) 명칭,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및 유해물질 항목

심사결과 안전성검사기관의 역량과 직결되는 업무범위, 검사분야 등의 사항은 변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기존에 중대한 사항은 지정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여 오히려 변경부담은 완화되었으며, 「식품의약품검사법」 등에서도 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업무범위,

검사분야, 명칭, 소재지 등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강화

- 위험평가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수산물
- ② 국내외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산물
- ③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 ④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산물
- ⑤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등

심사결과 해외에서 위해정보가 발생하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험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평가 시 생산자 등은 시료 수거로 인한 수인의무가 발생하나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해평가 대상에 비추어 과도 과다하지 않으며, 기존 위험평가 대상인 농산물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도시락의 제조·가공 기준 신설 강화

- (과채류 세척·소독) 도시락 제조 시 사용되는 과일류 및 채소류는 세척 후 살균제로 소독한 후 물로 충분히 세척 할 것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 (포장조건) 냉장상태에서 유통되는 도시락의 경우 조리된 음식은 냉장온도로 냉각 후 포장하도록 규정
- (해동요건) 냉동수산물을 물에 담가 해동하는 경우 21℃ 이하에서 위생적으로 해동하여야 함

심사결과 간편화된 식생활 습관 확대 등으로 도시락 소비량이 늘고 있어 도시락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냉동수산물을 우수해동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에 취약하므로 올바른 해동방법을 규정할 필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소독의무, 포장조건은 일반위생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냉동수산물 해동기준은 미국 FDA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 HACCP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냉수 온도를 정한 것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강화**

-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중대한 피부이상반응 발생 경고 및 조치사항 추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상반응 징후 발생 시 즉시 복용 중단”

심사결과 해외에서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등의 부작용 발생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부작용 발생위험을 명시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5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독성시험자료 면제범위 변경 **강화**

- (현행)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면류 품목이 2개국 이상 판매되는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
- (개정)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면류 품목이 OECD 가입국 중 2개국 이상 판매되는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

심사결과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지면류 품목에 대한 안전성 심사 조건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국민보건 향상 필요성 인정됨 강화된 면제조건을 의약외품 전체가 아니라, 국민생활품인 지면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내와 유사하거나 더 상향된 허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의약품 재평가 자료 신뢰성 조사 **신설**

- 의약품 재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설, 장부, 서류, 물건, 관계인에 대한 질문 가능

심사결과 의약품 재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제출받은 재평가 증빙자료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 유사입법례에서도 제출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강화 1)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추가 조사·평가 **강화**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평가함
- (개정)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함

심사결과 GMP 평가기간에만 적합한 상태로 기준을 유지하고 그 외 기간에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관리하는 등 부실 수검 사례가 발생하여 GMP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 유사제도인 HACCP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가 적법하게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자료를 기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수검에 대한 부담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주요사항 변경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신설**

- 동일 소재지에 있는 무균제제 등의 작업소에서 무균조작 공정 중 의약품이 직접 노출되는 작업실에 공기조화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급·배기구의 크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재평가

심사결과 무균주사제 작업소의 시설 변경 이후 충분한 작업환경 검증없이 시판된 제품에서 미생물균이 검출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던 무균제제 등 제조소의 중요사항 변경 시 시판전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소의 무균환경이 파괴되는 상황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화장품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에 원료 함량 추가 **강화**

-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에 보존제 원료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원료는 함량 표시 권장

심사결과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어린이의 색조화장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은 부재하므로 사용제한원료 함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성분 배합비율 등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고려, 의무표시대상을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강화**

- 착향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사용된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

심사결과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의 주요 원인은 착향제 성분이므로 현재 권장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권장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동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광고업무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 부여

심사결과

광고업무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중 광고업무를 하더라도 추가 행정제재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의 처분범위 내에서 유사입법례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6) 화장품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 **신설**

- 화장품 유형에 흑채, 제모왁스 및 화장비누 추가

심사결과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필요성 인정. 또한, 해당 제품 모두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고, 유사제품 또한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7)

심사내용 축산물에 외국어 혼용 시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강화**

- (현행)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 가능
- (개정)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 하는 경우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외국어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글자크기를 제한할 필요. 식품과의 형평성, 자문회의 의견 수용하여 시행일도 유예한 점 등을 고려,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리식품 사진 사용한 축산물에 ‘조리에’ 등 문구표시 **강화**

- 축산물 포장지에 조리사진·그림 사용 시 ‘조리에’ 등 문구 표시

심사결과 조리사진 사용한 경우 ‘조리에’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역시 동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물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젓’ 추가 **강화**

- (현행) 21개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 (개정) ‘젓’ 추가

심사결과 ‘젓’을 사용한 축산물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방지할 필요.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젓’을 알레르기 표시 품목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며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 및 닭·오리의 식육표시방법 개정 **강화**

- (현행) 표시사항별 활자크기 규정
- (개정) 정보표시면 표시방법을 표·단락으로 표시토록 하고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 표시 면이 부족한 경우 예외를 두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원재료명 표시할 경우 활자크기 제한 **강화**

- (현행) 원재료명과 함량의 글자크기 제한 없음
- (개정)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원재료명과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함량을 크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식품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며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통표시기준 **강화**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축산물 표시 규정 마련
- 원료용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 고카페인 함유 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 완화 (120%이하 → 90~110%이하)
-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는 축산물에 주의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시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고카페인 함유 축산물 역시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과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허용오차 범위를 120%이하로 유지하기로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별표시기준 **강화**

- 해동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 비가식 케이싱(비닐·종이 등 먹을 수 없는 포장재) 사용 여부 표시

심사결과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동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해동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식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정성도 인정됨.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육함량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사사례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이미 식육함량 및 비가식 케이싱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계시판이나 표지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 **강화**

- (현행)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또는 보관금지
- (개정)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또는 보관금지(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음식물은 제외)

심사결과 진열된 음식물이 공기 중 미생물에 노출될 경우 부패·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사용을 금지하여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 준수정도가 높아 업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젓병(젓꼭지 포함) 제조 시 비스페놀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 (개정)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BPA, DBP, BBP 사용금지

심사결과 해당물질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화학물질에 취약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영·유아용 기구에 해당물질을 사용금지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 영·유아용 식기에 해당물질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프로필렌글리콜 및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사용기준 **강화**

품목명(주용도)	현행	개정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산화방지제, 영양강화제)	기타식품* : 1.0g/kg 이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사용기준이 설정된 식품이외의 모든 식품을 의미	과자, 빵류, 떡류, 당류가공품, 액상차,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주류, 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어육가공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1.0g/kg 이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유당면,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만두피 : 0.5g/kg 이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프로필렌글리콜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기타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응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건과류가공품 : 5% 이하
		땅콩 또는 건과류가공품 : 5% 이하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할 경우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응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심사결과 독성이 우려되어 일일섭취량을 정하고 있는 물질로,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식품 및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 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치를 조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됨. CODEX, 중국, EU 등에서도 동 물질에 대하여 식품 유형별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용기준의 엄격성이 국제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의료기기 공급자는 모든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소유통단계에서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되,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는 ‘공급금액·단가’도 최초·최종 유통단계에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요구 시 중간단계에서도 보고)

○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시(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행정처분 부여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제조·수입업자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허가·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판매·임대업자	판매·임대 업무정지 15일	판매·임대 업무정지 1개월	판매·임대 업무정지 3개월	판매·임대 업무정지 6개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하여 공급내역 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행정처분기준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고항목 중 치료재료 의료기기의 공급단가·가격 보고는 영세 의료기기 유통업체 등 시장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초 및 중간 단계의 가격보고 의무는 삭제하고 공급자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최종 공급단가·가격 보고 의무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제 10 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외교부

[집필자]

신연희 사무관(Tel. 044-200-2913, syh2030@korea.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총 1건의 법령에 대한 1건의 규제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18.06.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여권 통계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변경 제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 기준이 되어, 일정한 기준 없이 변경을 쉽게 허용할 경우 범죄 악용 등으로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발음 불일치 관련 로마자 성명에 대한 변경(정정) 제한기준을 마련 **신설**

- 여권 통계상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성과 이름을 동일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표기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제한

심사결과 여권의 악용 소지를 없애고 대외 신뢰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가 우리보다 더욱 엄격히 여권의 성명변경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현행 내부기준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의 적정성·합리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통일부

[집필자]

신연희 사무관(Tel. 044-200-2913, syh2030@korea.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건의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2건의 규제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예비심사 (2018.07.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통일관의 지정요건 (신설 1)

심사내용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인력·예산·교육계획 등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신설

*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통일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통일관 운영인력(통일관장 이외 1인 이상)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적합한 교육 운영계획(체험 프로그램 포함)

심사결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체험활동 등 통일관의 공익적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법에서 정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통일관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기본적인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되고, 타 법률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신설 1)

심사내용 남북 간 합의 위반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

심사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남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변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한·금지를 위한 전제요건*이 타 법률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가간 교류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질서유지 수준에 해당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①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②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③국 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 이행을 위한 경우 ④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3. 국가보훈처

[집필자]

정세환 사무관(Tel. 044-200-2447, jungsh814@mail.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2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5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1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14.)	부대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3, 강화 2 (중요 3, 비중요 2)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14.)	부대권고 2 원안의결 4	신설 4, 강화 2 (중요 3, 비중요 3)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14.)	부대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2 (중요 3, 비중요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14.)	부대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3, 강화 2 (중요 3, 비중요 2)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8.12.14.)	부대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3, 강화 2 (중요 3, 비중요 2)
계	-	부대권고 10 원안의결 15	신설 15, 강화 10 (중요 15, 비중요 10)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고업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가 우선 매각을 통해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국·공유재산의 중요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강화**

- 현행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보훈단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 신규 승인 취소 대상에 대한 수익사업 정지규정 도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대상 확대, 수익사업 정지명령 규정 도입, 재승인 제한 기간 설정 등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운영(명의대여는 제외)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라는 **부대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 개정안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명의대여(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선 초래 가능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사업중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권고**에 대해 보훈처는 수용하여 이를 반영

심사내용 실태조사 및 행정관청의 검사 등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
- 실태조사·회계사항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받은 보훈단체 따르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조사, 서류검사는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이며 실태조사는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건전한 수익사업 운영 유도를 위한 규정이고,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없이 실시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제시로 회계처리의 편의 도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태조사, 조사·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가 우선 매각을 통해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국·공유재산의 중요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설

-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단체가 아니면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이외의 자가 동 명의를 사용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보훈단체 관련 법률에도 각 단체 이외의 자의 단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강화

- 현행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보훈단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 신규 승인 취소 대상에 대한 수익사업 정지규정 도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대상 확대, 수익사업 정지명령 규정 도입, 재승인 제한 기간 설정 등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운영(명의대여는 제외)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라는 **부대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 개정안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명의대여(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선 초래 가능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사업 중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권고**에 대해 보훈처는 수용하여 이를 반영

심사내용 실태조사 및 행정관청의 검사 등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
- 실태조사·회계사항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받은 보훈단체 따르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조사, 서류검사는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이며 실태조사는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건전한 수익사업 운영 유도를 위한 규정이고,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실시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제시로 회계처리의 편의 도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태조사, 조사·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와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강화**

- 현행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보훈단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 신규 승인 취소 대상에 대한 수익사업 정지규정 도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대상 확대, 수익사업 정지명령 규정 도입, 재승인 제한 기간 설정 등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운영(명의대여는 제외)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라는 **부대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 개정안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명의대여(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선 초래 가능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사업 중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권고**에 대해 보훈처는 수용하여 이를 반영

심사내용 실태조사 및 행정관청의 검사 등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
- 실태조사·회계사항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받은 보훈단체 따르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조사, 서류검사는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이며 실태조사는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건전한 수익사업 운영 유도를 위한 규정이고,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실시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제시로 회계처리의 편의 도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태조사, 조사·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가 우선 매각을 통해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국·공유재산의 중요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강화**

- 현행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보훈단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 신규 승인 취소 대상에 대한 수익사업 정지규정 도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권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대상 확대, 수익사업 정지명령 규정 도입, 재승인 제한 기간 설정 등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운영(명의대여는 제외)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라는 **부대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 개정안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명의대여(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선 초래 가능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권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사업 중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권고**에 대해 보훈처는 수용하여 이를 반영

심사내용 실태조사 및 행정관청의 검사 등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
- 실태조사·회계사항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받은 보훈단체 따르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조사, 서류검사는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이며 실태조사는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건전한 수익사업 운영 유도를 위한 규정이고,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없이 실시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제시로 회계처리의 편의 도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태조사, 조사·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와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가 우선 매각을 통해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국·공유재산의 중요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강화**

- 현행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보훈단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 신규 승인 취소 대상에 대한 수익사업 정지규정 도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 등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대상 확대, 수익사업 정지명령 규정 도입, 재승인 제한 기간 설정 등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사유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운영(명의대여는 제외)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라는 **부대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하여 반영

* 개정안 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명의대여(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선 초래 가능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단체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은 인정되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시 사업중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권고**에 대해 보훈처는 수용하여 이를 반영

심사내용 실태조사 및 행정관청의 검사 등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
- 실태조사·회계사항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받은 보훈단체 따르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이견 존재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회계조사, 서류검사는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이며 실태조사는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건전한 수익사업 운영 유도를 위한 규정이고,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실시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훈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제시로 회계처리의 편의 도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태조사, 조사·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와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1 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안전부

[집필자]

김효선 사무관(Tel. 044-200-0445, khs1661@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 총 1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7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8.02.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5)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5.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0.)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비중요 7)
(9)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3.)	원안의결 13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3)
(1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2	신설 3, 강화 9 (비중요 12)
(12)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8.12.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67	신설 30, 강화 37 (비중요 67)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신설**

-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등으로 인증 품목을 구분하고, 품목별 제품을 정의

심사결과 제품 생산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 인증 제도이므로 신청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여부 판단을 용이하도록 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산업의 기본적 범주를 설정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인증대상 품목은 국내의 재난안전 제품 분석결과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재난안전제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타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타 인증대상과의 중복성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관리 등 검사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정기적 품질관리 등의 검사 및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사결과 인증의 유효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정기적 품질관리 검사가 수행되어야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정기검사 이외에도 유사 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유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그 횟수 또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국외 대부분의 안전인증 제도에서 품질관리 유지 확인을 위한 인증의 유효기간 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 중인 점 등을 고려 시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강화 2)

심사내용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 기준 변경 **강화**

-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 계산식*의 지수를 65에서 75로 상향

*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을 정하기 위해 정격하중(rated load, 엘리베이터의 설계된 적재하중)을 지수(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로 나누도록 한 식

심사결과 정원 조정 시 정격용량 초과 탑승 예방으로 이용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엘리베이터 카의 면적 증가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새로이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부터 적용되어 기존 설치 업체에는 비용이 미 발생되는 점,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발령일과 시행일에 합리적 시차를 두어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인 점, 국내 유사법 및 유럽 국제기준에서 승강기 정원 산정 시 기준 하중을 각각 750N(약 76.5kg) 또는 75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밀안전검사의 검사항목 보완 **강화**

- 설치상태에 있는 승강기의 모든 장치 및 부품 등에 대해 변형·마모·부식 및 훼손 여부를 검사하고, 자체점검의 실시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승강기 검사와 정밀 안전검사 관련 고시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두 규정을 통합하였으나 통합과정에서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일부가 누락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 정밀 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되나 정밀

안전검사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에 정밀 안전검사 시 정기검사도 진행되었으나, 법 개정 시 누락된 것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행정 행위는 크지 않으며, 인력 확보 등의 조치도 불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확대 지정 **강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

심사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 국비 지원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선제적·적극적인 가뭄극복 대책 마련이 가능하며, 지구 지정 시 피허가자의 일부 행위제한이 발생하나, 가뭄피해 해소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고, 지구 지정 시 관계전문가 검토 및 주민의견 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피규제집단 보호장치도 마련하였으며, 재해위험이 해소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지구 지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17.7.10)하여 지구 지정 범위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신설 6)

심사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선거관리위원 자격요건 신설 **신설**

- 선거관리 위원 중 '회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요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

심사결과 과열·혼탁 선거의 방지를 통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되고, 타법사례에 준하여 규정하였고, 개별금고의 사정을 고려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금고의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위원위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제한 사유 **신설**

- △입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입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심사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선거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신협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명선거 감시단 구성에 있어 감시단원의 해촉 사유 신설 **신설**

- △법규위반 또는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 불복종 및 임무 해태한 경우, △자료 유출 또는 정보 누설, △품위 손상·위신을 실추한 경우 감시단원에서 해촉

심사결과 공명선거 감시에 있어서 감시단원의 청렴성 및 성실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바, 해촉 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직선거 감시단을 두도록 한 타법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하게 규정하였는 바,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설 **신설**

- 여신거래 관련 상품의 해약·인출 제한 등 새마을금고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신설 **신설**

심사결과 새마을금고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불공정한 여신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외부 감사위원 자격요건 신설 **신설**

- 새마을금고중앙회 외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중앙회·금고·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금융관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법조인, △주권상장법인, △국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인 「농협협동조합법」을 참조하여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정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신설**

- 금고감독 위원의 자격요건을 △중앙회·금고(다만, 중앙회·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 근무자 제외),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 △법조인 등의 경력자로 제한

심사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기관(농협·수협) 관련법을 참조하여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정하였는 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신설 2)**심사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신설**

-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절차·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정함

심사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처분행정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임직원별로 구분 기술하였는 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현재 중앙회 검사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타 상호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였는 바,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 세부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정함

심사결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처분행정의 투명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현재 중앙회 검사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고, 타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심사내용** 승객 안전매뉴얼 비치대상 유·도선의 지정 **신설**

심사결과 승객 안전매뉴얼을 선내에 비치하여 유·도선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규모가 크거나 승객이 다수이므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한 바, 적정하며, 안전 매뉴얼은 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또는 관할관청(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서)에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객안전수칙, 행동매뉴얼 등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정부합동 안전 점검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안전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보수 보강, 점검결과 공개) 등은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유사입법례에서도 안전 점검 및 조치,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여, 그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집중 안전점검기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설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사항은 항상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집중 안전점검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안전시설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조치와 결과공개를 통해 국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강제대피조치 및 통행제한 강화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받은 선박·차량이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차장 등에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선박·차량 등을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연락두절 등으로 이행 불가능시 견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차량 및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여 피해 예방을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박·자동차의 강제대피 조치 또는 견인, 통행제한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므로 과도하지 않고, 강제 대피 또는 견인, 통행제한에 드는 비용보다 침수피해 예방을 통한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정보의 구축 활용 **강화**

- 행정안전안부장관이 수집하는 안전정보에 건축물·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를 포함하고, 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건축물·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관계자 및 소유자가 공개하는 것보다, 정부·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대진단을 통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며,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상승, 이에 따른 시설투자 등으로 안전성 강화의 편익이 크다고 보이고,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관계자 및 소유주의 기본적 책무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강화**

-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심사결과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자를 지역축제 개최자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축제는 그 특성상 다중이 밀집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크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며,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의 비용보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공연법에서도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신설 1, 강화 6)

심사내용 **현행 신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강화

- 현행법상 총톤수가 5톤 이상 이거나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그외 유·도선사업은 신고로도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유·도선 사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재 유·도선 사업은 유·도선의 규모, 승객 정원,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면허사업 형태로 운영중이므로 법규의 명확성과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신고 사업체에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체 또한 규제부담이 없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단서조항들은 면허제로 일원화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사실상 해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인 「해운법」도 여객선의 경우 면허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장 기준** 강화

심사결과 유·도선 사업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유·도선장*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유·도선장 내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며, 유·도선 및 기타 시설의 기준 외에 유·도선장의 부잔교, 승·하선장, 그 밖에 승객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인 「해운법」도 유·도선장과 유사한 선박을 대는 시설을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시켜 관리 중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유·도선장 : 유·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

심사내용 **유·도선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강화

- 현행 유·도선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대상이 되는 법률에 선박과 관련이 있는 법률 추가(유·도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을 어긴 경우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음)
 - (현행)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 (추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운법,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어촌·어항법

심사결과 유·도선사업과 관련 있는 선박 관련 법률 간 형평성 유지 및 건전한 유·도선 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추가 법률은 선박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로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입법례인 「해운법」에서도 결격사유 대상 법률에 동일하게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선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 시 운항이 제한된 유·도선을 운항할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유·도선이 이를 위반하고 조종할 시, 사업 면허의 취소 및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심사결과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률 위반, 시계제한 통제 규정 및 구명조끼 착용 의무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유·도선 사업의 영위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박 관련 법령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포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유·도선, 외부 갑판에서 낚시 등 활동을 하는 유선, 그 밖에 선장이 기상악화 등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함

심사결과 유·도선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낚시유선 등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선내 旣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피 규제자의 의무준수 부담이 크지 않으며, 유·도선 운항 시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사고 발생 시 최선의 인명구조 장비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정하며, 유사입법례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안전관리자 지정 **신설**

- 유·도선 사업자는 업체 직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신고하고 유·도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업체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신규 직원 채용이 아닌 업체의 기존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 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인 「해운법」과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강화**

○ 도선 내에 차량과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 운송 의뢰인이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도선 내에 적재되는 차량 화물의 중량을 명확히 파악하여 초과 선적하지 않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적재신고서 작성은 선박 건조 시 정해진 적재중량 기준 내 선적여부 확인을 통한 선박의 감항성(복원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유사입법례인 「해운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신설 1)**심사내용** 구속행위의 금지 **신설**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행위 등 규정

심사결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예탁금, 적금 등에 가입하게 하거나, 타 금고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 및 출자금 납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인 「은행업감독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였는바 과도하지 않으며, 제3자 명의 이용, 다른 지점 또는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시 구속행위로 간주하는 등 규제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므로 적절하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7, 강화 6)**심사내용**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상 승강기 부품 **신설**

○ 운행 상 중요한 승강기 부품 12종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 20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대상 승강기 부품으로 규정

심사결과 승강기 부품 등록을 통한 승강기 부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승강기 부품(약 2만 여개) 중 전자 접촉기 등 일부 범용제품은 다른 기기에도 사용되므로 일부 중요 부품만을 등록 대상으로 하여 적성정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인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 부품의 등록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결함정비 장비 등의 제공 의무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10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등 정보를 제공,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지도교육 방법 등 제조·수입업자 의무 부과

심사결과 유지관리업을 겸하고 있는 국내 주요 제조·수입업자의 특성 상, 자발적이고 적절한 사후관리는 기대하기 힘든바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부품, 자료 및 정보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품 가격정보가 없어 부품교체 시 제조·수입업자의 요구대로 가격을 지불하여 입는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강기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용 부품 및 결함 정비장비 등에 한하여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 기간 및 교육방법은 현실을 고려하여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 강화

- 이용자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 부품(개문출발방지장치, 비상통화장치, 유량제한기, 이동케이블, 출입문조립체, 구동체인 등 6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14종 → 20종)

심사결과 안전성 및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불량 제품의 유통 증가로 발생하는 승강기 고장을 예방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미국의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과 대다수가 동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설

- 승강기의 △정기심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정기심사 시 제품 및 공장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안전인증 당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승강기 정기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리프트 등의 타법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 3년으로 주기 규정한 점, 유사입법례의 경우도 정기심사 시 안전인증 심사사항(설계·제품·공장심사) 중 제품과 공장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 부품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원기준을 확대(2명 → 6명)하고, △승강기사업자 및 관련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심사결과

승강기 안전부품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증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근무 인원을 확충하고, 모든 승강기 사업자 및 관련 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 금지 및 독립성을 규정하여 지정인증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승강기 부품의 심사업무 및 안전인증 대상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확대한 것으로 적정하며, 현행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력은 10명으로 인력기준 상향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현행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는 바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신설**

○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는 각각 2일 및 15일 이내 새로운 부품·승강기로 교체하여야 함

심사결과

위반사항의 원인제공자인 제조업자가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하여 국민 생활 안전 위협 및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 인증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후조치 비용 등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도 소방용품의 경우 사후조치 기간을 5일로 두고 있어 이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재가입시기, 보상기준 **신설**

○ 관리주체가 가입하여야 하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재가입시기는 설치검사·관리주체 변경 시 2일 이내, 보험가입 만료일 이내로 하고, 보상기준은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별표4에 따름)으로 규정

심사결과

보험가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험가입 의무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공신력 있는 피해보상 기준 설정으로 적정 수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고, 대다수 국민이 승강기를 이용하므로 책임보험을 신속히 가입하여 보상공백이 없도록 가입·재가입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승강기와 같이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사입법례의 피해 보상액을 준용하여 기준을 규정하였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은 사무소별로 책임검사인력을 1명 이상 두고, 금속 줄자, 각도계 1개를 시험·검사 설비로 추가토록 규정

심사결과 관련 규정 및 국제기준에 맞추어 책임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기검사의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중 1명(책임검사인력)에 대하여만 기술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기술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실무경력은 유지관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강화**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무의 2분의 1 이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은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서면에는 하도급 업무비율, 금액비율 등 하도급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승강기 부품 하도급 제한 및 통보규정을 마련하여 부품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승강기 부품의 수가 2만여개이고 전기, 전자, 기계 등 분야가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공사의 하도급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신설**

심사결과 피해자 손해보전을 위해 명확한 원인규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사고조사 규정 마련이 불가피하며, 추가 사고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차 조사가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조사에 따른 승강기 운행불가 등으로 인한 민원감소가 가능함. 또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피규제자의 손해배상과 결부되므로, 피규제자도 명확한 원인조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력 등의 신고 대상 기술자 및 업무 **신설**

- 승강기와 관련된 10개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경력관리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한 자만 경력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심사결과 대다수의 승강기 기술자가 경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실제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경력신고가 가능하여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 및 인증기술자도 신고 대상 기술자로 포함하고 관련 경력을 규정하여 기술자 경력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사 입법례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기술 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고,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실무위주의 학습 및 실습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 및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도 마련하여야 하며, 기술교육, 직무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목적달성에 적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고유 번호 표지의 발급 등 **강화**

-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번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용 중인 승강기의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표지를 재발급 받아 부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고유번호 표지의 신규 부착·훼손 시 재부착 주체 및 부착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고, 승강기 번호표지의 부착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착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 규제로 인한 부담은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9)

심사내용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강화**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수입업의 등록기준 신설

심사결과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술인력 및 설비를 확보하고, 승강기 부품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필요가 있고, 일반기술인력 상향은 유지관리업자의 일반기술인력(8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하며, 현 업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규제 부담이 없으며, 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은 현행 승강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 비용이 수반되는

부품은 임대·대여가 가능한 점, 종전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지정 **강화**

○ 현행 38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중대한 고장 증가 등 국민 생활안전 위협

제조·수입업자가 독립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 공급하는 문제가 다수 제기

*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독립 유지관리업자는 경쟁관계임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업자에게 승강기부품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상 부품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 마련

| 추가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구분 및 분류			추가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기계류 공 간 (기계실)	제어반	전자접촉기·릴레이·스위치
			비상통화장치
		구동기	기어(감속기)
			유압 유니트
			럽처벨브·유량제한기
			추락방지안전장치 연계수단
	안전장치		
	운반구	카 내부	위치표시기
			소방·피난운전장치
		카문	카문 안내수단, 카문 개폐장치 카문 잠금장치
		카 상·하부	카 안내수단
			이동케이블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승강로	승강로	현수장치
			과속조절기 로프
주행안내 레일			
피트		완충기	
		배수장치	
승강장	승강장	위치표시기	
		비상통화장치	
		소방·피난운전장치	

심사결과 유지관리업을 겸하고 있는 국내 주요 제조·수입업자의 특성 상 자발적이고 적절한 사후관리는 기대하기 힘든 바, 승강기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부품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조·수입업자에 의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부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승강기 부품을 사후 제공하도록 할 경우 제조 수입업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어 주요 부품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강화**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업 정지하도록 규정(기존에는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 無)
- 중대한 사고 :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등록 취소
- 중대한 고장 :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심사결과 현재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이 있었음에도 승강기를 지속 운영할 수 있어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바 중대한 고장 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은 필요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기존 규정을 준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대한 고장의 경우는 중대한 사고에 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이 없으므로 처분의 정도를 낮추었는바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및 안전인증 취소 **신설**

-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준비해야 함
-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심사결과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인증 시험을 위한 시료(시험용 승강기)를 준비토록 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규정하였으며, 행정처분도 위반 시 차등화 하여 단계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기술 및 직무 교육을 받고,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근거리 상주하는 자를 선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자격 또는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추가로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안전관리자에 의한 승강기의 상시 안전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교육이수를 한 승강기 관련 업체 출신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신규로 선임해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본교육 이수자도 인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의 추가 자격요건은 현재 해당 안전관리자가 이미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승강기의 상시점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거리 상주자로 함은 적절함. 유사입법례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 또는 근거리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강화**

-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또는 설치한 후 25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해 검사주기(기본 1년)를 6개월로 단축

심사결과 최근 노후화된 승강기의 증가로 인해 승강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등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 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사고·고장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전체 약 0.4%) 및 설치 후 25년이 경과한 승강기(전체 약 3.4%)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강화**

- 지정검사기관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을 1개월 → 3개월, 3개월 → 6개월로 확대 규정하고, 검사결과를 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 또는 미입력하거나, 수수료를 규정과 다르게 받은 경우 행정처분 신설

심사결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위반차수 등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도 비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신설된 행정처분 위반차수에 대하여 위반차수 등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국내 유사입법례의 경우도 안전검사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기술자에 대한 처분보다는 강하게 처분하여 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자 하느니 취지를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강화**

- 고속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일반기술인력을 최소 6명에서 최소 8명으로 상향 규정하고, 유지관리업자의 설비에 감속도측정기,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 포함)등을 추가 규정

심사결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재정립이 필요하고, 종전에 고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는 최소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바 과도하지 않고, 승강기의 핵심 능력인 하중내구성 및 품질과 직결된 소음·진동과 관련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추가하였고, 종전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체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분동의 임대 또는 대여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가능한 승강기 대수의 상한 설정 **강화**

-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시·도에 등록된 기술인력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유지관리업자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수 :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 이하
- 다른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기술자 : 월간 90대 이하

심사결과

신속한 유지관리업자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승강기의 지역분포를 고려한 상한대수를 규정하고, 불공정 공동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도급 제한비율을 신설할 필요성과 적정정시 인정되고, 공동도급 비율은 인력채용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 후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일본 및 유럽의 경우 공동도급 방식의 유지관리 계약이 거의 없음에 비해 완화된 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 **강화**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규정

- 중대한 사고 :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등록 취소
- 중대한 고장 :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심사결과 현재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이 있었음에도 승강기를 지속 운영할 수 있어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바 중대한 고장 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은 필요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기존 규정을 준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대한 고장의 경우는 중대한 사고에 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이 없으므로 처분의 정도를 낮추었는바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교육기관 지정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심사결과 지정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위반행위·차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비례적으로 부과하였는 바,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유사 입법례의 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강화**

- 안전관리기술자중 인증심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신설하고,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안전관리기술자의 전문성 및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위반행위·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비례적으로 부과하였는바,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기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승강기 검사 기술자와 비례하게 규정하였는바 적정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와 심사 결과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정보의 미공개 또는 오류 시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도로명주소법 (신설 1)

심사내용 주소정보시설 등의 훼손 등에 따른 조치 **신설**

-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을 한 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원인자 원상복구 등을 통해 시설물 정비 등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절감과 주소정보 시설의 즉시 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안내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종 도로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탈착, 위치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공사 기간 내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사입법례의 표지·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규정과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화 2)

심사내용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제외요건에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

심사결과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검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유지·보수업체 등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인력채용, 장비구입 등의 불필요한 투자를 막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존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안전점검 대행업체들도 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 높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취소 요건 추가 **강화**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라도 지정 제외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검사기관 제외요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1차, 2차, 3차 단계적 업무정지 후 4차 위반할 경우 지정취소를 하도록 할 계획(시행규칙 개정 예정)이므로 그 수단이 과도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의 경우에도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강화

-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을 추가

심사결과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 설치 시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법률로 명확히 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지진발생 시 예상 가능한 물류터미널의 다수의 과중한 화물 및 열수송관의 열매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물류터미널과 열수송관 모두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어 동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한바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지정) 지정가능 기관을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고, 설비, 인력 운영규정 등을 요건으로 규정
- (지정취소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업무정지 1년 이하 또는 지정취소

심사결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과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보강 시공 등에 관한 검토는 내진분야 전문가만 가능하므로 관련 인력과 설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력, 설비를 요구함은 필수적이며, 유사입법례의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신설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필요한 대상을 고시하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 하여금 내진성능 평가를 미리 받도록 함

심사결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제 필요대상을 지정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증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할때 모든 시설물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 **강화**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 요구에 따르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주요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결과는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수단이 과도하지 않으며, 국회 및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록 폐기 중지 제도 **신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또한, 기록물 폐기 중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현황조사 또는 실태점검 등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중대한 사회적 사건으로 대두될 조짐이 드러나는 기록물의 멸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성격의 규제이며, 주요 사안에 대한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보존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정운영의 설명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록물 보관 비용보다 기록물을 보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유지·관리 **강화**

-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포맷,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술정보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기록물 관리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고 전자기록물 보존·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품질 및 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며, 제출해야 하는 기술정보는 확인이 쉽고 간단한 정보로 업무 과중 우려나 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신고 **강화**

-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철거될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 삭제를 위해 신고를 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철거된 놀이시설의 정보를 반영하여,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놀이시설을 찾아가거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철거 신고 및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법제화 해달라는 민원 등 감안 시 관리주체의 규정 준수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관리주체의 신고절차 문의 비용 경감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정기 점검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정기점검하는 경우, 횟수, 대상, 내용에 대하여 규정

구분	정기점검	
	서면점검	현장점검
횟수	반기별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대상	설치·운영중인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면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진가속도계측기
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상태 나. 계측자료 보관·관리 여부 등	

심사결과 이행실태의 정기점검을 통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 관리주체의 계측기 점검 의무 및 자료 보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에서도 실태점검의 횟수를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관리주체에 부과된 관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신설 3)

심사내용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신설**

- (교육프로그램) 안전영역 1개, 생애주기 2개, 교육시간 3시간 이상으로 구성
- (교재)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청각 교재 활용 가능

심사결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안전교육의 질 확보와 지역별·안전영역별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전분야 및 영역을 세분화하여 선택·집중 교육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며, 교육 대상의 공백이 없도록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여 적절함. 또한, 24개 안전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에 전문성이 있으면 세부기준을 충족하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신설**

-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특정 상근 전문가, 전담관리자를 확보하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며, 전문강사 30%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함

심사결과 전문인력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강사 인력(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자) 및 전문 운영인력(전담관리자) 각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규제로 과도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에서도 교육 전문인력의 경우 강사 및 관리자를 1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신설**

-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강의실 및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고, 체험교육을 하는 경우 체험시설 또는 체험학습 교구를 갖추어야 함

심사결과 시설·교구 기준이 없을 경우 기관 간 양적,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안전교육 기관의 시설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법무부

[집필자]

김기출 서기관(Tel. 044-200-2443, kmakkc@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5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4.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확대 강화

- 성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

심사결과

외국인근로자 숙소현황 파악 결과 성폭력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의 성폭력 관련 범법 행위를 사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에서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윤락행위 등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 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외국법자문사법 (신설 1)

심사내용 외국법자문사가 등록갱신 해태 시 임의적 등록취소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

심사결과

외국법자문사가 등록갱신 의무 해태 시, 등록의무를 독려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적정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와 동 법률에서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유효기간을 既 규정하고 있어 미갱신 시 등록 취소가 타당하며, 공인회계사법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단체전자사증 발급대행기관의 인력 및 시설요건 신설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 단체전자사증 발급
- 단체전자사증 발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 및 시설요건을 갖추 것

심사결과

단체관광객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예방을 위한 계도를 담당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증발급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요건의 대강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영주권 취득요건의 기준, 범위 **신설**

- 법률에서 정한 영주자격의 취득요건 중 ‘품행단정’ 요건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자, 강제출국 후 7년 미경과자 등은 제외
- ‘생계유지능력’의 요건으로, 본인 및 가족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
- ‘기본소양’의 요건으로, 법 제39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시행령 제48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평가에서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한 자

심사결과 법률에서 영주권 취득요건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행정청에 폭넓게 부여되어 온 재량권 행사의 방지와 영주자격 취득 희망 외국인에게 예측가능성 부여 및 부당한 사익 침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요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외동포법·국적법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국적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요건 **신설**

- 기소유예, 벌금형, 금고 등 형사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납세의무 준수 여부

심사결과 귀화의 요건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의 세부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귀화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려워 관련규정이 필요하고, 기존 법무부에서 수행해 온 귀화요건의 부합 여부 판단기준 대비 과도하지 않아 기존 사례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고, 귀화의 성격상 영주자격 보다는 강화된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요 선진국이 귀화 요건으로 ‘좋은 품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인사혁신처

|집필자|

주민규 사무관(Tel. 044-200-2414, mk.j@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08.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공직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명시 **신설**

- 공무원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연금급여 지급·환수 등의 원활한 결정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요청근거 신설

심사결과 법적지위 변동, 소득·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 참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연금급여 등의 산정·결정을 위한 것으로 국내 타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로규제로 원안의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명시 **신설**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요청근거 신설

심사결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재해보상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타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것이며,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경찰청

[집필자]

임진숙 사무관(Tel. 044-200-2442, rimc11@opm.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총 2개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신설 **신설**

항목	세부내용
교육대상	①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 경찰용 및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차 - 수사기관·교도소, 소년원 등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등 호송경비 차량 - 기타(전기·가스등 공익사업 응급차, 민방위·도로관리·전신전화 등 긴급차 등)
교육시간	①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 실시 전 운전자 - 강의·시청각 교육 등 3시간 이상 ②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자(3년 단위) - 강의·시청각 교육 등 2시간 이상
교육기관	① 도로교통관리공단 ② 운전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자체 교육 가능
교육내용	①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 법령 및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②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에 관한 사항 ③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주요특성 등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규제 신설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내용 등 신설 **신설**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①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②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③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④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강의·시청각·영화상영 등

(비고)

1.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

심사결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규제 신설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별사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신설 **신설**

-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심사결과 특별사면 받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그동안 의무 면제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준법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교육의 정도가 동일한 위반행위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 대상 소방시설 지정 **강화**

-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차 및 정차 금지

심사결과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이 지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일본·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경사진 곳 정차 또는 주차 시 운전자 조치의무 신설 **강화**

- ① 도로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설치, ②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③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 이행의무 부과 및 범칙금 부과

심사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방법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량 미끄럼 사고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등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며, 의무 이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신설 **신설**

-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강의·시청각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심사결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고령화로 인한 인지능력·신체반응 속도저하 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특화 교육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운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담당 및 필요 최소한의 교육 방법·시간 배정 등 적정성이 인정되고, 교육대상자 수(연간 50만명 미만),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소방청

[집필자]

정세환 사무관(Tel. 044-200-2447, jungsh814@mail.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총 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3.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7.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자동차압·과압조절형담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8.09.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8.11.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2	신설 8, 강화 4 (비중요 12)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수조 재료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 기준 **강화**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조 재료가 현재보다 우수한 인장강도 및 내식성을 갖도록 기준 강화
 - (현행)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7일간 방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 → (개정)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

심사결과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한 인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소화설비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에서의 수조 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바 적정하며, 인증 받은 설비의 정상작동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안전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 확대 **강화**

- (피난통로) 기존 구획된 실이 있는 7개 영업장에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전체로 확대
-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전체로 확대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피규제자 수 및 규제준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강화**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방법, 방해 행위를 규정

심사결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통한 국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에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최소한의 수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 인증시 최대사용 풍압에서의 개폐작동 시험 및 무전기 출력반응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오작동·미작동을 방지하여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대풍압은 업체가 해당 제품의 최대사용 가능 풍압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품에 표시한 후 이를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 가스관선택밸브의 내구성(가스부식시험), 절연성능(절연저항시험), 누전여부(절연 내력시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규정 신설

심사결과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개발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우수 품질인증 기술기준 등 타 시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위험물의 운반자격 및 교육 **신설**

-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에게 위험물 취급자격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위험물 취급자격 및 교육 등을 시행중인 미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소방장비의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시료 **신설**

-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 소방장비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및 시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증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한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인증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변경인증의 신청 **신설**

- 소방장비의 변경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변경인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변경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한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도 안전인증 변경에 대한 제출서류 및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소방장비의 인증대상 및 기준 **신설**

- 소방활동에 중요한 소방장비(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 등)를 인증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소방장비 제조·판매 과정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기·생활용품, 재난안전제품 등의 안전 분야는 국가가 안전성·품질을 인증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신청의 절차 **신설**

-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제조·판매자의 책임성 강화 및 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취득하도록 하는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타법·해외사례 등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취소 **신설**

- 인증취소를 한 경우 취소내용을 소방청장 등에게 알리고,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거짓·부정인증 예방, 소방장비의 필수적인 성능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용노동,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인증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비교 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 **강화**

- 대인 : (사망 1인당) 1억원 → 1억5천만원, (부상 1인당) 2천만원 →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원 → 1억5천만원
- 대물 : (재물 1건당) 1억원 → 10억원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난관리기본법, 화재보험법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국민권익위원회

[집필자]

정세환 사무관(Tel. 044-200-2447, jungsh814@mail.go.kr)

가.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18년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01.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 심사 내용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경조사비 가액 상한액 하향 조정 **강화**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의 경우 상한액 10만원 유지

심사결과 청렴·투명 사회 확립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국민 정서 부합 측면에서 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조사비 상한액은 타당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 화환·조화는 하향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규제영향분석

| 집필자

신연희 사무관(Tel. 044-200-2913, syh2030@korea.kr)

1. 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에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토록 한다.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는 도입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한다.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2.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
	3. 위임법령	• 규제가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
	4. 유형	• 신설/강화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5.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6. 검증단계	• 작성시점의 검증단계	
	7.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	
	8.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9.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10. 규제목표	•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11.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계량적 비용편익분석 요약표	
	12. 영향평가여부	• 기술·경쟁·중소기업영향평가 시행여부	
	13. 일몰설정여부 및 네거티브적용여부	•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여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적용여부	
	14. 규제비용관리제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적용유형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유발되는 직접순비용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을 서술 •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대안의 비교 - 복수의 규제대안 제시 - 대안의 비교표(규제대안별 장·단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안 비교시 고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결과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된 대안의 내용과 선택하게 된 상세 근거
		3. 규제의 목표	•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수단이 규제목적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지 검토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등 고려사항 - 기술규제 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유사제도와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검토의 필요여부 - 경쟁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필요여부 - 중소기업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필요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네거티브 규제 적용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규제의 적정성 입증시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 사례 등 국제기준에서의 판단근거 제시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법령 중 유사타법 사례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수준 및 품질 등 판단근거 제시
	4. 비용·편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하고자 하는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 피규제자의 현실적 규제준수 가능성 규제 차등화 방안 : 중소기업 등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방안 등을 기술하고, 차등화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
	2. 규제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의 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 집행가능성 : 조직·인력 및 일선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여건 검토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예산사항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도입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 기술
	2. 향후 평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표, 규제준수를 등 구체적 목표 제시 후 사후관리 계획 제시
	3.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는 간이형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는 표준형으로 작성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2),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영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사 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규제심사 의뢰(부처 → 국무조정실), ② 평가의뢰(국무조정실 → 작업단), ③ 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④ 검토의견 제출(작업단 → 국무조정실), ⑤ 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청)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통상자원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여 2007년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운용 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18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649건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25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25건(현재 24건 심사완료) 중 21건이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반영률 : 84%)되었다.

(6) 2018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교육부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의 가격 또는 쪽당 단가를 교육부가 산정 고시한 가격 또는 물가상승률 2배 이하의 범위 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간 경쟁유인 감소, 신규 교과서 개발 의욕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교과서의 품질을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교과서 가격제한을 폐지하고 학교가 지원 받은 교과서 대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과목별 포트폴리오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출판 시간 경쟁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2	고용노동부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 허위 정보 제공 방지 등을 이유로 직업정보제공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일정한 물적, 인적 조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중소기업의 경쟁능력을 제한, 사업자간 경쟁유인 약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무료서비스 유료화 전환 등 구직자인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인자와 구직자의 탐색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등록제 도입보다는 정부가 교육, 정책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법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구인정보에 대한 선별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능력 등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3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선 등록제한 기간 설정 가능 모든 예선업자가 참여하는 공동배정을 허용하고 공동배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 가격경쟁 차단 등 경쟁제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예선 사용자 및 사회 전체의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예선수요 증가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선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4	방송통신위원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경품)의 한도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 무역항의 경우에는 공동배정 참여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여 최소한의 경쟁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품제공에 상응하는 소비자잉여가 대부분 생산자잉여로 이전되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경품한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경품이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
5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요건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 150억원에서 300억원 개인 : 200억원에서 4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항공기 보유 등 항공운송사업 진입 요건을 상향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사업자간 경쟁압력을 약화시켜 항공운임 인상 등 소비자후생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항공운송시장의 수급상황, 기존 항공사의 재무구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6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공사규모를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국가발주 전문공사 입찰시장을 17개 시도단위 지역시장으로 분할하는 결과 초래하여 공급자수를 대폭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사업자간 경쟁압력을 약화시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낙찰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다.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 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도록 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18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306개 법령, 649건의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50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5건이 반영(반영률 50%) 되었다.

(6) 2018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소형자동차의 구조 및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특례를 인정받은 차량에 강화되는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경우, 기업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1년) 부여 필요
2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정보제공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 「화관법」에서 부여받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완 필요
3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감기준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 강화 바람직 • 자산, 종사자수 기준치를 현행 유지(자산 120억원, 종업원수 300명), 매출액은 완화된 기준(200억원) 적용, 부채총액 기준 폐지 검토
4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공동도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 유지관리업자간 과당경쟁 초래 우려 • 공동도급 비율을 50%로 상향 수정하고, 규칙 시행 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조정(시행 후 2년 60%, 시행 후 5년 50%) 검토
5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제한기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선수급계획’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긴급성, 필요성을 갖춘 경우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 마련 필요 • ‘예선수급계획’과 이에 따른 예선업 등록제한 조치는 시기간 큰 이격 없이 연동 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필요
6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용역업’의 등록요건중 기술사(특급) 보유는 특정 자격사에 대한 독점적 업무영역 설정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장진입(경쟁)이 제한될 우려 • 이에, 「엔지니어링산업법」상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특급기술자*를 산림기술사에 준하는 등급으로 인정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토록 개선 필요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7	식품의약품 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원료 4종의 섭취시 주의사항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시행에 앞서 기존 포장지의 재고 소진 및 포장지 변경 적용 등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시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 해외 검증 기준과의 조화, 국내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속 균주의 안전성 검증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
8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기준안을 일률적으로 적용 시, 대규모 영화 상영관은 규제부담이 적으나 소규모 영화상영관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피규제대상을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으로 규정하고, 그 외 소규모 상영관에 대해 단계적 확대 필요

라. 기술규제영향평가

(1) 개념

기술규제*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

(2) 추진경과

2012년 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2014년 1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2015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기술규제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16년에는 10개(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 보고), 2017년 16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018년 20개(규제개혁위원회 보고)의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3) 대상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18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조정과에 12개 부처(청)의 117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273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토완료·회신하였고, 총 53건(19.4%)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 규제심사대상심의 과정에서 심사대상 규제 중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건수임

(5) 2018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조정요건
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 등이 조치에 대한 통지를 3일 이내 대응하기에는 매우 촉박하므로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화평법 시행령(7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1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일)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제유류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사용되는 변성전분의 최대 사용량 기준(개정안 : 5g/kg)을 유럽 및 CODEX 기준을(20g/kg 이하)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3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기록 제출 요청에 대한 수인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워크레인 조정실 내부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촬영장소,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4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범위를 국제표준과 일치할 필요 * 600V 이하의 교류전압 → 1000V 이하의 교류전압 * 500V 이하의 직류전압 → 1500V 이하의 직류전압
5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 안전인증 대상 부품이 확대됨에 따라 WTO/TBT 통보 필요
6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업계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의 정해진 양식 있지 않아, 피규제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된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단위나 전문용어*가 잘못 표현된 조문이 있으며, 이는 피규제자의 혼동 및 적·부 판정 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 선속경화 인공물 → 선인공물 * 영상격자수 복셀 1mm → 1mm² 등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가. 추진배경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로 인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피규제자 집단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이나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반영하였다.

나.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 집단(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은 물론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피규제자 이외 집단 + 정부)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비용 관리제		
	간접	피규제자 비용·편익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사회적 비용편익)		
정 부		행정비용		
총 합계				

다. 주요내용

- (분석원칙)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전체·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 (분석방법)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외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한 후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게시판에 등록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찾아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국내외 사례를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분야와 진입, 가격, 품질, 거래 등 규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용과 편익 항목별로 색인표를 구성(사례는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분석서게시판) 사회적비용편익분석사례' 게시)

구 분		유형 및 항목내용
비용/편익	비용 (9)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
	편익 (18)	시장안정성 제고, 산업육성, 경쟁촉진, 공정거래, 비용절감, 매출증가, 환경오염 예방, 자원 재활용, 안전사고 예방, 자연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 일자리 확대, 비용절감, 소득(매출)증가
분야/수단	분야 (10)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금융, 농림·어업, 건설·에너지, 산업일반
	수단 (10)	자격, 입지, 가격, 생산관리, 경영관리, 교육훈련, 기업간 거래, 기업·소비자간 거래, 행정, 지배구조

- (심사검증) 각 부처는 규제심사 사전 협의 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에 반영하고, 규제연구센터 및 규제 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 색인 사례를 심사·검증 시 확인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한다.



2018 REGULATORY REFORM BOOK



PART

5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8년 규제혁신 평가

제2절 201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 1 절

2018년 규제혁신 평가

[집필자]

신용현 사무관(Tel. 044-200-2452, trustyonghyun@korea.kr)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2018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여 주요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개혁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기관 및 공무원들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행정 노력도를 가점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규제개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계획 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14개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9개 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장관급 기관(19개)과 차관급 기관(10개)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제 성격·부처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개선 60%, 규제심사 20%, 체감도 20%로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 항목에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등 중점 추진 항목이

포함되었다. 규제 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 및 일몰규제 정비·규제등록 실적이 포함되었고, 체감도 점검을 위해 규제개혁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노력도와 규제혁신 교육이 우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는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 2018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2018년 규제혁신의 중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혁신하여 제도 및 과제 개선을 병행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1월 22일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업·입지규제 및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들을 테마별로 발굴하여 혁신하였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대화’를 2회 개최하였고, 규제개혁위원장(민간)·국무1차장·규제조정실장 주제로 각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신문고 및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혁신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개선 등을 통한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아 왔다. 기관별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규제개혁 평가대상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말부터 1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결과, 29개 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2점 상승하여 최초로 70점에 도달하였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9.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보훈처(78.9점), 행정안전부(78.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고용노동부(59.7점),

교육부(59.9점), 공정거래위원회(61.2점) 등의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특허청의 만족도가 8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림청(80.6점), 농촌진흥청(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61.2점), 조달청(69.5점) 등의 순이었다.

종합만족도는 201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차관급 기관은 201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서 2018년에 반등하였고, 장관급 기관은 2017년에 반등하여 2018년에는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3. 부처별 평가결과

2018년 부처별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공통과제를 준수하게 이행한 것은 물론이고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등을 열심히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혁파(행정안전부·환경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이용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관(산림청), 식품·의료기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에 기여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관세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처 공통과제에 대한 이행도 등이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소방청과 조달청이 선정되었다.

4. 분야별 평가결과

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주요 성과로는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 신산업 관련 규제체계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네거티브 개념(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장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여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103건을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5법을 마련하였고, 개별 4개 법안은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11월에 발표하였고, 다른 핵심 신산업 분야(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까지 로드맵 확산을 추진중이다.

의료기기 규제혁신('18.7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18.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18.8월) 등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 및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를 혁파하여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산업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 중심으로 현장애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171건의 과제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및 기반 구축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나.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

주요 성과로 창업·영업활동 규제 등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4월에는 영업요건 완화, 영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영업·입지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창업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집입과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18.10월)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관광, 보건, 콘텐츠 등)과 기존 주력산업의 규제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도한 기존규제들도 발굴하여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불만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 2018년에는 두 차례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역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현장건의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인터넷으로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국민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테마별로 발굴하여 혁파하는 노력도 경주하였다. 지난 5월에는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고, 6월에는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또한 12월에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기업 등으로부터 발굴하여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여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에 주력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주거, 복지, 교통 등)를 혁신하고 지방규제와 그림자규제 등도 혁파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제2절

201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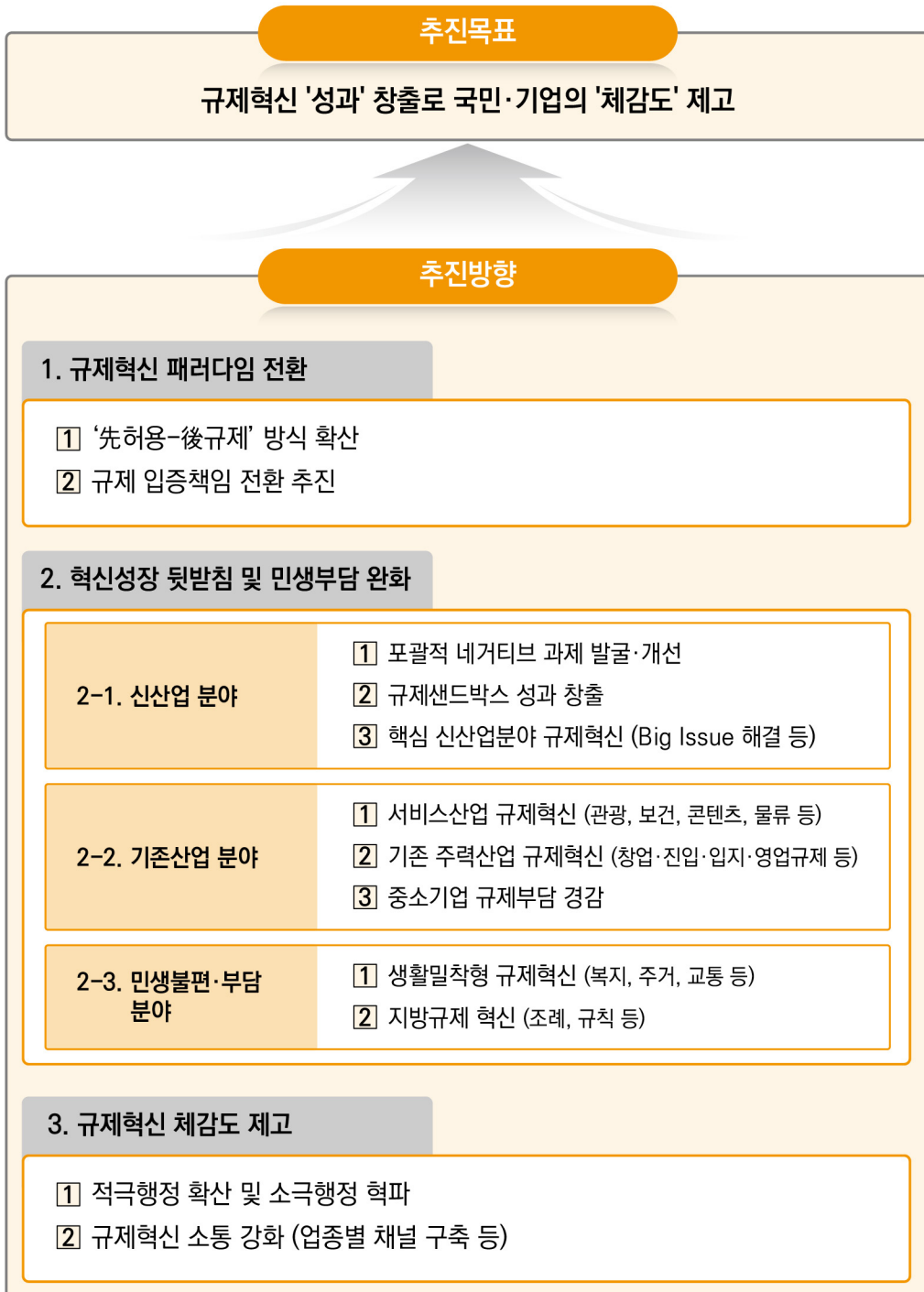
|집필자|

이대섭 사무관(Tel. 044-200-2416, kkachi70@opm.go.kr)

1. 기본방향

2019년은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접근방법으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입법방식 유연화 확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 창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계에서 요청한 것처럼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훈령,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1) 신산업 규제혁신

신산업 관련 법령조사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담컨설팅 등 현장소통 강화와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Big Issue’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 기존 산업 규제혁신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창업·진입·입지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투자 저해 규제를 발굴하여 패키지로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규제를 차등적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면제·유예할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3) 민생불편·부담 해소

행정서비스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제한 규제, 유희 국공유지 활용제한 등 도시생활 저해규제를 발굴·정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들에 대한 일괄정비와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 및 고질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 핵심규제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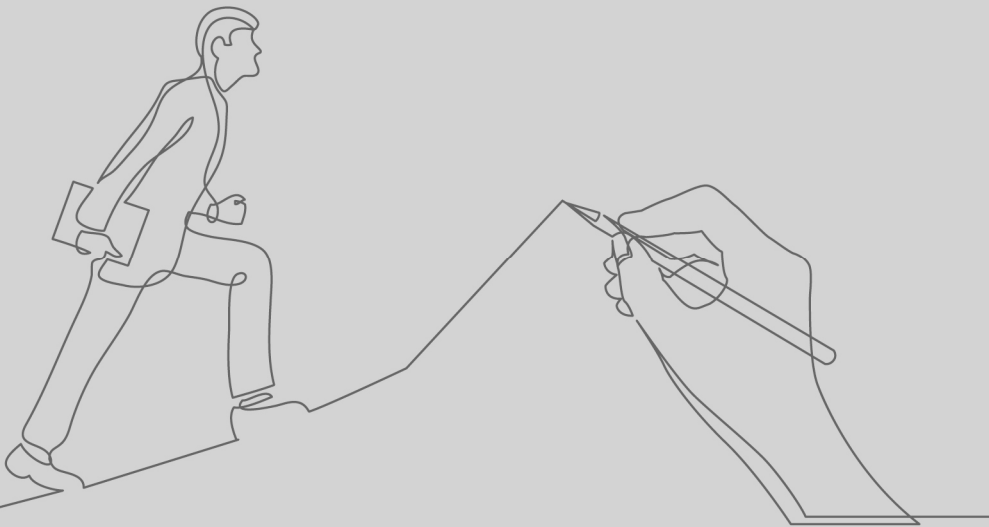
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유도조치들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고시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조치하여 규제개선과제 발표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유도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적발시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추진하고, 적발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현장의 애로를 건의한 국민과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피드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처별 현장방문·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세히 설명·공유하는 업종별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확산, 민간포털 공유 등 온라인 소통 다각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 REGULATORY REFORM BOOK



부 록

-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부 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이대섭 사무관(Tel. 044-200-2416, kkachi70@opm.go.kr)

주민규 사무관(Tel. 044-200-2414, mk_j@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06회 (18.1.12.)	국무조정실	2017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07회 (18.2.9.)	국무조정실	2017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0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1	0	0	0	1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08회 (18.2.23.)	국무조정실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보고					
	국무조정실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1	0	2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전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09회 (18.3.9.)	국무조정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7년 주요 활동실적	보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결	0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 규제 심사안	의결	0	1	0	0	1
제410회 (18.3.23.)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정비 방안	보고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11회 (18.4.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12회 (18.4.27.)	국무조정실	'18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보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13회 (18.5.11.)	국무조정실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2	0	0	0	2
제414회 (18.5.25.)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의결	0	0	0	1	1
제415회 (18.6.8.)	금융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3	0	3
제416회 (18.6.22.)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0	2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17회 (18.7.1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의결	0	0	2	0	2
제418회 (18.7.27.)	국무조정실	2018년 상반기 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2018년 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의결	1	0	0	0	1
제419회 (18.8.2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국무조정실	2018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국가기술표준원	범부처 적합성평가 제도 관리방안	보고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전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20회 (18.9.2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의결	1	0	0	0	1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21회 (18.10.26.)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22회 (18.11.9.)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어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6	1	0	0	7
제423회 (18.11.2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보고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24회 (18.12.1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실적	보고					
	국가기술표준원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국무조정실	2019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의결	1	0	0	0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0	0	3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0	0	3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의결	1	2	0	0
고엽체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0	0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0	0	3	
제425회 (18.12.28.)	산업통상자원부	특고압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정안	의결	0	1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계	안건수 : 54 (의결안건 35건, 보고안건 19건)			27	15	10	3	55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9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참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에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조사방법·공동조사 실시계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사방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

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

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의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 「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②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 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 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11호, 2017.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전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전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 8. 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사.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2. 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감수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
정현용 규제총괄정책관	류동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지원TF팀장
남형기 규제혁신기획관	정일황 심사총괄과장
이영범 규제심사관리관	김완수 경제규제심사1팀장
박광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부단장	김인경 경제규제심사2과장
김달원 규제총괄과장	김성규 사회규제심사1팀장
이한형 규제정책과장	조영선 사회규제심사2팀장
류승목 규제정보과장	이종민 총괄기획팀장
최용선 규제혁신과장	김정대 규제개선전략팀장
한동희 기획과제과장	신해진 투자환경개선팀장
임흥기 규제혁신제도팀장	이찬민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팀장

집필진

고지숙 서기관	박광훈 사무관
이대섭 사무관	주민규 사무관
신용현 사무관	신연희 사무관
김월중 사무관	임진숙 사무관
이다은 사무관	이현정 사무관
이규배 사무관	김효진 사무관
주은성 사무관	공대희 전문위원
이용하 사무관	설민아 사무관
김정아 서기관	김동주 사무관
김동현 서기관	김연주 사무관
김영조 사무관	이진용 사무관
박유리 사무관	김기출 서기관
최진수 사무관	이효진 사무관
김정훈 사무관	강주연 주무관
한레지나 서기관	김효선 사무관
정성진 사무관	정세환 사무관
최정석 사무관	이미경 사무관

2018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9.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 집·인 쇄 : 경성문화사 (044-868-7636)

발간등록번호
11-1092000-000005-10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2018 규제개혁백서

2018 REGULATORY REFORM BOOK